

議政白書

제 6 집 [제4대 전반기]



蔚山廣域市北區議會

제 6 집

議政白書

—제4대 전반기—

(2006. 7. 1 ~ 2008. 6. 30)



蔚山廣域市北區議會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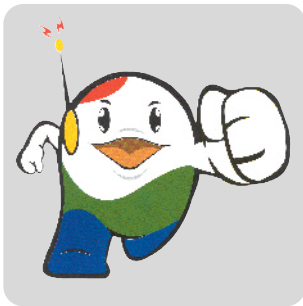
www.bukgu.ulsan.kr



북구의 상징



- 마크**
- **녹색부분** 산, 육지 - 자연
 - **파랑부분** 바다 - 자연
 - **주황색원** 자동차를 포함한 산업, 공단
 - **의미** 전체적으로 산과 바다를 함께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자연과 산업 중 어느 한곳에만 치우치지 않는 균형잡힌 지역발전의 모습을 의미.



- 캐릭터**
- **컨셉** 든든한 북구, 달리는 북구, 아이디어 북구
 - **형태** 돌고래
 - **의미** 강한 생명력을 나타냄과 동시에 젊고 높은 지능의 돌고래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반짝이는 아이디어, 새로운 탄생,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



구화 참나리

청초 우아함과 순결함을 지닌 꽃으로 번식력이 강하여 신설 북구의 깨끗함과 번영을 상징함.



구목 느티나무

화합, 번영, 안정성과 강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장수성 나무로서 북구의 힘찬 번영과 도약을 의미하며 미래를 선도하는 북구의 희망을 상징함.



구조 산까치

친숙성과 아름다움을 함께 갖추고 있으며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는 새로 더불어 사는 북구의 희망과 친환경성으로 자연과 함께 하는 이미지를 상징함.

상징물

目 次

- 발간사
- 축 사
- 제4대 북구의회의원 일람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제1장 일반현황

제1절 우리고장의 연혁	51
제2절 의회연혁	53
제3절 의회일반현황	55
1. 제4대(전반기)의회 원구성	55
2. 의회기구	56
3. 의원현황(직업, 학력, 연령, 성별)	56
4. 의회예산(당초)현황	58
5. 의사당 시설현황	58
6. 의회사무과 직원현황	59
7. 의회의 권한	59
8. 의회의 역할	60

제4절 구정기본현황	62
1. 지역여건	62
2. 구정현황	62
3. 구민생활지표	63
4. 동별 인구면적 현황	65
5. 울산광역시 구군 일반현황	66

제2장 의회운영현황

제1절 집회현황	69
1. 의회역대 집회 현황	69
2. 연도별 집회 현황	70
3. 회기별 소집요구 및 집회 현황	71
제2절 회기별 안건 처리현황	72
제3절 회기별 주요 의정활동 내용	73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제1절 제90회 임시회	79
1. 개회이유	79
2. 개회사	79
3. 의사일정	82
제2절 제91회 임시회	83

1. 개회이유	83
2. 개 회 사	83
3. 의사일정	85
제3절 제92회 임시회	87
1. 개회이유	87
2. 개 회 사	87
3. 의사일정	89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91
□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호)	91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호)	93
□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호)	94
□ 울산광역시북구구민창안장려및보장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 제8호)	95
□ 울산광역시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9호)	97
□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호)	98
□ 울산광역시북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의안번호 제11호)	99
□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호)	101
제4절 제93회 임시회	103
1. 개회이유	103
2. 개 회 사	103
3. 의사일정	104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105

□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호)	105
□ 울산광역시북구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18호)	106
□ 울산광역시북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19호)	108
□ 울산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호)	111
□ 울산광역시북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 제17호)	113
제5절 제94회 제2차 정례회	116
1. 개최이유	116
2. 개 회 사	117
3. 의사일정	120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123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22호)	123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23호)	124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24호)	126
□ 울산광역시북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호)	127
□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28호)	129
□ 울산광역시북구21세기구정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25호)	130
□ 울산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호)	131
□ 울산광역시북구노사정주민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29호) ·	133
□ 울산광역시북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의안번호 제30호)	135

□ 울산광역시북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26호)	138
□ 울산광역시북구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26호)	141
□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호)	143
□ 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8호)	146
□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호)	148
□ 울산광역시북구분양가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35호) ·	150
제6절 제95회 임시회	154
1. 개회이유	154
2. 개 회 사	154
3. 의사일정	155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157
□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1호)	157
□ 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1호)	158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40호)	159
□ 울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7호)	161
□ 울산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6호)	163
□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4호)	164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5호)	165
제7절 제96회 임시회	168
1. 개최이유	168
2. 개 회 사	168
3. 의사일정	169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170
□ 울산광역시북구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9호) ...	170
□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0호)	171
□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1호)	174
□ 울산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2호) ...	177
□ 울산광역시북구21세기구정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53호)	178
제8절 제97회 임시회	180
1. 개최이유	180
2. 개 회 사	180
3. 의사일정	181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183
□ 울산광역시북구평생교육진흥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 제54호)	183
□ 울산광역시북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55호)	187
□ 울산광역시북구청대회의실사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1호)	189
□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를위한입법촉구결의안(의안번호 제61호) ...	190
제9절 제98회 제1차 정례회	192

1. 개회이유	192
2. 개 회 사	193
3. 의사일정	194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197
□ 울산광역시북구구보조레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4호)	197
□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5호)	199
□ 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6호)	201
□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등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67호)	205
□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8호)	208
□ 울산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9호)	209
□ 울산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구성·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70호) ..	211
제10절 제99회 임시회	215
1. 개회이유	215
2. 개 회 사	215
3. 의사일정	216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218
□ 울산광역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5호)	218
□ 울산광역시북구동명칭과구역확정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6호)	220
□ 울산광역시북구울산쇠부리축제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72호) ..	222
□ 울산광역시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73호)	224

□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4호)	226
제11절 제100회 임시회	230
1. 개최이유	230
2. 개 회 사	230
3. 의사일정	231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233
□ 울산광역시북구건강도시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77호)	233
제12절 제101회 제2차 정례회	236
1. 개최이유	236
2. 개 회 사	238
3. 의사일정	240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245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90호)	245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98호)	247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91호)	248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92호)	250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89호)	251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97호)	253
□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93호)	254
□ 울산광역시북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 제99호)	255
□ 울산광역시북구동명칭과구역확정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0호)	258
□ 울산광역시북구차상위계층난방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1호)	260
□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1호) ...	262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2호)	263
□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3호) …	264
□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의안번호 제84호) ……………	267
□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74호) ……………	269
□ 울산광역시북구지하수조례안(의안번호 제85호) ……………	273
□ 울산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6호) ……………	275
□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7호) ……………	276
□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5호) ……………	279
□ 울산광역시북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6호) ……………	280
제13절 제102회 임시회 ……………	282
1. 개최이유 ……………	282
2. 개 회 사 ……………	283
3. 의사일정 ……………	285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288
□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3호) ……………	288
□ 울산광역시북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7호) ……………	289
□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4호) ………	291
□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5호)	293
□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소1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의안번호 제106호)	294
□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2호)	297
□ 울산광역시북구평생교육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8호)	298
□ 울산광역시북구제3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109호)	299
□ 울산광역시북구거주외국인등에관한지원조례안(의안번호 제111호) ...	301
□ 울산광역시북구명예통역관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110호)	304
제14절 제103회 임시회	307
1. 개회이유	307
2. 개 회 사	308
3. 의사일정	310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312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뒷동 소류지 기부채납)	
(의안번호 제114호)	312
□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2호)	313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3호)	
.....	315
□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1호)	317
□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자문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9호)	318
□ 울산광역시북구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0호)	320
□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8호)	322
☐ 울산광역시북구분뇨처리등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 제115호)	324
☐ 울산광역시북구가축분뇨의관리등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 제116호)	325
☐ 울산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7호)	326
☐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5호)	328
☐ 종합복지회관 건립 현황	329
☐ 국민체육센터 건립 현황	330
☐ 장등마을 체육시설 설치 공사	332
☐ 호계공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333
☐ 건강도시사업 추진계획	334
제15절 제104회 임시회	335
1. 개회이유	335
2. 개 회 사	335
3. 의사일정	337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339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9호)	339
☐ 울산광역시북구청대회의실사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8호)	342
☐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130호)	343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의장 제의)	344
제16절 제105회 임시회	346
1. 개회이유	346
3. 의사일정	346

제4장 예산·결산심의사항

제 1절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49
제 2절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355
제 3절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62
제 4절 2007년도 당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67
제 5절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72
제 6절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378
제 7절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85
제 8절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87
제 9절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93
제10절 2008년도 당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97
제11절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05

제5장 행정사무감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사항

제1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413
1. 감사개요	413
2. 감사실시기관 및 출석요구 공무원	414
3. 행정사무감사 일정	416

4. 감사자료 제출요구	417
5.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417
6. 증인 선서 방식	418
7. 기타 행정사항	418
8.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현황	419
제2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456
1. 감사의 목적	456
2. 근 거	456
3. 감사기간	456
4. 감사실시기관	456
5. 감사실시 경과	457
6. 감사결과	461
제3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490
제4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492
1. 시정·건의요구사항 현황	492
2.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	49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사항

제5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537
1. 감사의 개요	537
2. 감사실시기관(부서) 및 출석요구 공무원	538
3. 행정사무감사 일정	540

4. 감사자료 제출요구	541
5.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541
6. 증인 선서 방식	542
7. 행정사항	542
8. 2007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현황	543
제6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580
1. 목 적	580
2. 근 거	580
3. 감사기간	580
4. 감사실시기관	580
5. 감사실시 경과	580
6. 감사결과	584
제7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628
제8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630
2.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결과	630

제6장 기타의정활동

제1절 구정질문	695
제2절 5분 자유발언	706
제3절 진정·건의서 처리현황	734
제4절 주요의정활동	748
1. 의회민원상담실 운영	748

2. 『조례입법연구회』 운영	750
3. 정례회 및 임시회 현장활동 강화	752
4. 의원별 민원 간담회 및 현장활동	758
5. 『경주방폐장 피해대책』 서명운동 전개	763
6. 의정실무능력향상 특별연수	765
7. 자원봉사활동 실시	767
8. 서울시 송파구의회 의원 일행 우리구 방문, 상호 정보교환 간담회 ·	768
9. 중국 상해시 남회구 대표단 북구의회 방문	769
10.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연수 보고회	770
11. 청소년 모의의회	773
12. 『제100회』 임시회 개회 및 기념 행사	774
13. 初心 현판 제막식	776
14. 사회복지시설 방문 설·추석 위문품 전달	777
15. 전국 선진지 벤치마킹	779
16. 극기훈련 및 지역임도 현장답사활동	782
17. 유관 기관과의 친선축구대회 및 커플마라톤대회	783
제5절 의정활동일지	786

[附 錄]

1. 역대 의장단 명단	819
2. 초대의원 명단	820
3. 초대의원 사진	821

4. 제2대의원 명단	822
5. 제2대의원 사진	823
6. 제3대의원 명단	824
7. 제3대의원 사진	825
8. 북구지역 전직의원 명단('97.7.15이전)	826
9. 역대 구청장 명단	827
10. 역대 사무(국)과장 명단	827
11. 역대 전문위원 명단	827

발/간/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윤 임 지

구민의 뜨거운 성원과 기대 속에 제4대 북구의회가 개원한지도 어느덧 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의 발자취를 고스란히 담은 「의정백서 제6집」을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의정사 연구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더욱 발전하는 의회 상을 정립하고자 의정백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북구의회는 21세기 지방화와 지방분권의 시대흐름 속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상과 자치시대에 걸맞는 의회 전문성 제고, 그리고 생산적 의정활동 지원과 경쟁력 있는 의회 운영을 통해 17만 주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리 북구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그 동안 자료수집과 편찬을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1세기 북구의회의 모범적인 운영 모델을 정립하는데 소중한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12.

축/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제4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뒤돌아 볼 수 있는 제6집「의정백서」가 발간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17만 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에 발간된 「의정백서」는 그야말로 지방자치의 생생한 보고서로써 그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2008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구는 어려운 대외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열과 성을 다해 달려온 결과 ‘국가지역 경쟁력연구원’ 주관 민선자치 10년간의 성장발전 경쟁력 평가에서 전국 69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고, 울산외고 유치를 통해 울산의 교육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과 아울러, 쇠부리 축제가 ‘2008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은 그 결과물이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상호 믿음과 신뢰를 주는 행정과 의회로서 관계를 이어나가기를 바라면서, 이번 「의정백서」가 북구의회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하여 구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12.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강 석 구

축/사



국회의원
윤 두 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윤두환입니다.
먼저 울산 제4대 북구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돌아볼 수 있는 『의정백서 6집』이 발간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17만 북구민을 대변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해 오신 북구의회 윤임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발간된 『의정백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바탕인 지방의회 활동을 담은 지방자치시대의 생생한 보고서로서 그 자료적 가치는 매우 클 것이라 생각되며 아울러 우리 울산북구의 발전상황을 되돌아보고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해주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울산북구 의회가 언제나 구민생활 깊숙한 곳에서 구민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구민의 뜻에 따라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것은 과감히 지적하고 잘된 것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로 행정과 의회가 상생의 관계를 유지한다면 지방자치 시대에 가장 모범적인 지방자치 단체로 자리매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이번 백서가 울산북구 의정사의 역사적 사료로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연구,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울산북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소중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많은 자료수집과 함께 집필에 애써주신 윤임지 북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 사무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8. 12.

제4대 북구의회의원일람

의 장 단

(재임기간 : 2006. 7. 3 ~ 2008. 7. 2)

의 장



류 재 권

부의장



윤 임 지



제4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개원(2006. 7. 3)



제4대 북구의회의원일람

第4代 議員現況 (임기 2006. 7. 1 ~ 2010. 6. 30)



選 舉 區	姓 名	學 歷 及 經 歷	住 所 · 電 話
가 선거구 농소1동 강동동 송정동	 尹 任 志	■ 學 歷 - 강동초등학교 졸업 - 강동중학교 졸업 - 울산공업고등학교 졸업 ■ 經 歷 - 민주자유당 제14대 대통령선거 중앙대책위 지도위원 역임 - 제16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울산북구 지구당 선거대책위 부위원장 역임 - 경상남도 농민후계자연합회 감사2선 역임 - 경상남도 울주군 농민후계자 회장 역임 - 북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역임 - 울산공업고등학교 30회 동기회 회장 역임 - 울산공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역임 - 제3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역임 - 제4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역임 - 현) 울산광역시 새농민회 부회장 - 현) 북구 수산조정위원회 - 현) 북구 지명위원회 - 현) 북구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현) 제4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후반기 의장	(자) 울산광역시 북구 신현동 596-1 ☎ 295-5598 (사) 울산광역시 북구 청자동 173-7 ☎ 295-8833 (E-mail) mi55982@nate.com 017-564-8833
가 선거구 농소1동 강동동 송정동	 朴 炳 錫	■ 學 歷 - 근덕농업고등학교 졸업 - 방송통신대 농학과 졸업 ■ 經 歷 - 현대자동차노동조합 교육위원 역임 -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상무 집행위원 역임 - 현) 신천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자문위원 - 현) 농소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현)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현) 북구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 - 현) 북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	(자)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358-9 협성노블리스 110동 802호 ☎ 295-8187 http://blog.daum.net/greenps/ 017-588-1217
나 선거구 농소2동 농소3동	 文 碩 柱	■ 學 歷 - 대구 경신고등학교 졸업 - 대구 미래대학 졸업 ■ 經 歷 - 농소고, 천곡중 운영위원 역임 - 쌍용아진1·2·3·4단지 아파트 연합회장 역임 - 제4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역임 - 현) 농소3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현) 북구 아파트 연합회 고문 - 현) 북구 배드민턴 연합 회장 - 현) 천곡초등학교 운영위원 - 현)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현) 북구 분양가 자문위원 - 현) 북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 - 현) 북구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 - 현) 울산광역시 학교운영위원 연합회 부회장 - 현) 제4대 울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후반기 부회장 - 현) 제4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자)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달천아이파크 107동 2002호 ☎ 298-1937 (E-mail) munsju88@hanmail.net 011-854-1937



제4대 북구의회의원일람

第4代 議員現況 (임기 2006. 7. 1 ~ 2010. 6. 30)



選 舉 區	姓 名	學 歷 及 經 歷	住 所 · 電 話
나 선거구 농소2동 농소3동	 李 銀 英	■ 學 歷 - 부산초등학교 졸업 - 학성여자중학교 졸업 - 울산여자고등학교 졸업 - 경상대학교 생물학과 졸업 ■ 經 歷 - 울산여성회 부설 북구 가정폭력 상담소장 역임 - 울산여성회 부설 북구성폭력 상담소장 역임 -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북구지역 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역임 - 현) 울산여성회 성교육강사 - 현) 농소3동 여성회 회장 - 현) 동천초등학교 운영위원 - 현) 울산광역시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위원 - 현) 울산광역시북구 지방재정 심의위원 - 현) 북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위원	(자)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쌍용아진 102동 802호 (사) ☎ 289-7162 (E-mail) bukwomen@naver.com 018-536-1366
다 선거구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柳 在 鍵	■ 學 歷 - 울산고등학교 졸업 - 용인대학교 졸업 -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재학중 ■ 經 歷 - 동울산청년회의소 상임부회장 역임 - 제2·3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 의원 역임 - 제4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 전반기 의장 역임 - 북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역임 - 북구 공공근로 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역임 - 연암초등학교 운영위원 역임 - 현) 재울용인대학교 동문회장 - 현) 효문동 환경정화위원회 회장 - 현) 효문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현) 울산광역시유도회 이사 - 현) 효문동 청소년환경봉사단 단장 - 현) 울산광역시 용무도협회회장 - 현)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현) (사)새마을운동 울산광역시 북구회장 - 현) 재성종합상사 대표	(자)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380-6 ☎ 288-0203 (사)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32-1 재성종합상사 ☎ 287-5060 (E-mail) 0203rj@hanmail.net 017-558-8931
다 선거구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柳 寅 牧	■ 學 歷 - 학성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졸업 ■ 經 歷 - 현대자동차노동조합판매본부 부분부장 역임 -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상무집행위원 역임 - 제3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 전반기 운영위원장 역임 - 현) 북구 보육정책 위원 - 현) 북구 문화정책 위원 - 현) 북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	(자)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64-1 문화아트빌 202 ☎ 287-5644 (사) ☎ 288-8333 (E-mail) ryoo1604@yahoo.co.kr 011-573-1604



選 舉 區	姓 名	學 歷 及 經 歷	住 所 · 電 話
비례대표	 李 英 姬	■ 經 歷 - 현)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상임위원 - 현) 한나라당 북구여성자원봉사회 봉사부장 - 현) 울산광역시 아동협의회 이사 - 현) 한나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 - 현) 북구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 현)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 현)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자)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쌍용아진 101동 1204호 ☎ 295-9369 (사) ☎ 282-6790 (E-mail) y93699@hanmail.net 010-8526-6139



寫眞으로 보는 議政活動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제4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개원 의원선서 (2006. 7. 3)



제4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개원 의원 기념촬영 (2006. 7. 3)



제4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개원 축하 내빈들과 기념촬영 (2006. 7. 3)



태풍 '에위니아' 피해 현장점검 (2006. 7. 21)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의정실무능력향상 특별연수 (2006. 8.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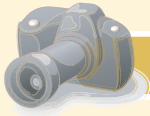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위문품 전달 (2006. 10. 4)



구·군 선출직 친선 축구대회 (2006. 11. 13)



2006 극기훈련 및 지역임도 현장답사 (2006. 11. 18)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2006년 의원 일본연수 보고회 (2006. 11. 27)



2006년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2006. 12. 4)



경주 방폐장 설치 관련 지원금 촉구 서명운동 (2007. 1. 11)



달천 만석골저수지 상부 경주 공장 설치지역 현장확인 (2007. 3. 2)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공명선거 다짐 식목행사 및 등반대회 (2007. 3. 13)



경주 방폐장 피해대책 서명운동 (2007. 4. 7)



2007년도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합동연수 (2007. 5. 16)



중국 상해시 남회구 대표단 방문 (2007. 6. 18)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제98회 제1차정례회 개회 (2007. 7. 2)



2007년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2007. 7. 13)



2007년 행정사무감사 (2007. 7. 15)



북구의회 개원 10주년 기념 식수 (2007. 7. 15)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북구의회 개원 10주년 기념 사진전 (2007. 7.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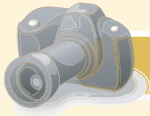
제8회 구민한마음 생활체육대회 (2007. 10. 14)



제100회 임시회 개회 (2007. 10. 16)



제100회 임시회 기념 행사 (2007. 10. 16)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제1회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 (2007. 10. 17)



민원상담실 운영 정례회 개최 (2007. 10. 22)



제100회 임시회 강동산하지구 개발사업 현장활동 (2007. 10. 24)



2007년 의회 공무국외연수 보고회 (2007. 11. 26)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고현장 자원봉사 (2008. 1. 7)



이화경로당 신축 준공식 (2008. 2. 1)



울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합동 워크숍 (2008. 2. 22)



“초심” 현판 제막식 (2008. 3. 3)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주민불편사항 민원 관련 주민들과 간담회 (2008. 3. 5)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자원봉사활동 (2008. 3. 7)



송파구·북구의회 상호 정보교환 간담회 (2008. 4. 30)



중앙도서관 개관 (2008. 5.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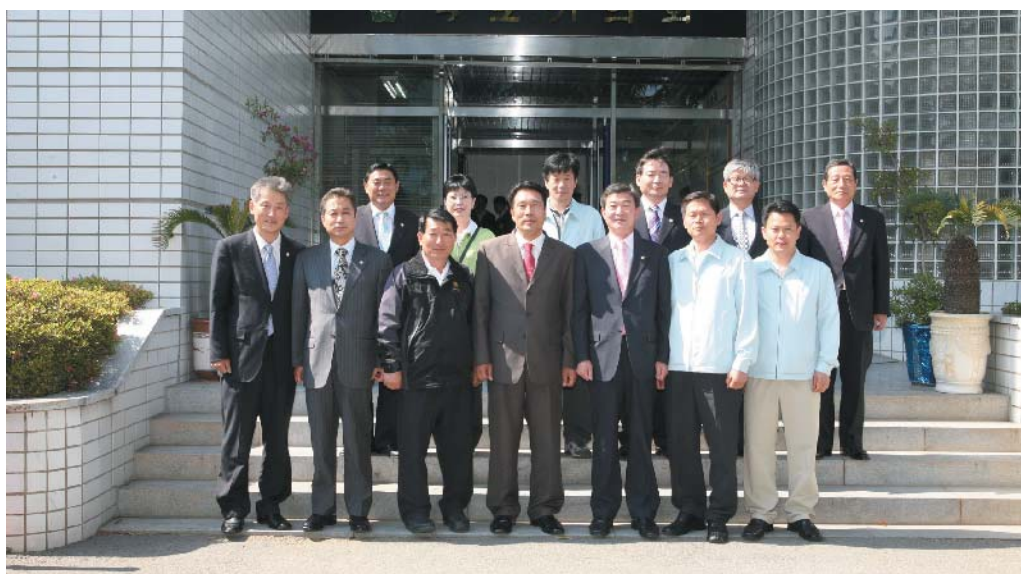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제103회 임시회 현장활동 (2008. 5. 1)



조례입법연구회 (2008. 5. 19)



목포시의회 방문 의정활동 관련 벤치마킹 (2008. 5. 20)



명촌문화센터 개관 (2008. 6. 30)



제 1 장 일반현황

- 제1절 우리고장의 연혁
- 제2절 의회연혁
- 제3절 의회일반현황
- 제4절 구정기본현황



제1절 우리고장의 연혁

□ 부족국가시대

- 삼한시대에는 진한에 속하였으며, 굴야화촌이라는 촌락 형성

□ 삼국시대

- 신라 제35대 경덕왕 16년에 지명을 하곡으로 개칭, 임관군에 속함.

□ 고려시대

- 태조때 하곡, 동진, 우풍현을 합하여 홍려부로 승격
- 제16대 현종때 울주로 개칭

□ 조선시대

- 제3대 태종 13년 울주를 울산으로, 선조 31년 울산 도호부로 승격
- 고종 32년 울산군으로 개칭

□ 근 대

- 1941년 부군 정리 폐합하는 지방제도 개편 시 언양군을 울산군에 병합하고 울산면, 사항면, 대현면으로 행정구역개편

□ 현 대

- 1962. 2. 1 : 각령 제403호로 울산특정공업지구로 지정 공포
(당시 농소면 송정리, 화봉리 편입)

제1장 일반현황

- 1962. 6. 1 : 법률 제1086호로 울산시로 승격
울산군을 울주군으로 명칭변경
(농소·강동면→울주군 편입)
- 1985. 7. 15 : 대통령령 제11716호로 구제 실시
(2구 1출장소 40개동, 중·남구)
- 1988. 1. 1 : 대통령령 제12367호로 방어진출장소 설치
- 1991. 1. 1 : 방어진출장소→동구청으로 승격(3구 40개동)
(울주군→울산군으로 명칭변경)
- 1995. 1. 1 : 법률 제4081호로 울산시·군, 도·농통합
(울산군→울주구로 명칭변경)
- 1995. 3. 2 : 농소면→농소읍으로 승격
- 1996. 12. 31 : 법률 제5243호 “울산광역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 공포
(북구는 종전 울산시 중구 송정, 효문, 진장, 양정동
과 울주군 농소읍, 강동면으로 구역확정)
- 1997. 7. 15 : 울산광역시 및 북구 설치<신설> → 8개동
(농소읍→농소1, 2, 3동, 강동면→강동동으로 전환)
- 1998. 3. 1 : 대통령령 제15652호 “광주광역시 북구 등 4개 자치구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규정”에 의거 동구 염포동이
북구로 편입→ 9개동
- 1998. 10. 1 : 인구과소동 폐치분합 진장동·효문동 → 효문동(8개동)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1차 구조조정 지침>
- 2001. 6. 1 : 청사 소재지 변경
(남구 신정3동 585-9→북구 연암동 1004-1)

제2절 의회연혁

□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 1952. 4. 25 : 초대 읍·면의원 선거(56명)
- 1956. 8. 8 : 제2대 읍·면의원 선거(50명)
- 1960. 12. 19 : 제3대 읍·면의원 선거(50명)
- 1961. 9. 1 : 울산읍·면의원 해산

□ 울산시 승격 이후

- 1991. 3. 26 : 울산시의회의원 선거(50명)
- 1991. 4. 15 : 초대 울산시의회 개원
 - 임기 : '91. 4. 15 ~ '95. 6. 30
- 1992. 7. 12 : 울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중·남·동구 각 1명)
- 1993. 7. 10 : 울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동구 1명)

□ 울산시·군 통합 이후

- 1995. 1. 10 : 울산시·군 통합 울산시의회 개원(64명)
- 1995. 6. 27 :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1995. 7. 11 : 제2대 울산시의회 개원(60명)
 - 임기 : '95. 7. 1 ~ '98. 6. 30

□ 울산광역시 승격 및 북구의회 설치

- 1997. 7. 15 : 초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개원(7명)

제1장 일반현황

－ 임기 : '97. 7. 15 ~ '98. 6. 30

- 1997. 7. 15 : 초대 울산광역시의회 개원(72명)
- 1998. 3. 1 : 동구 염포동 선거구 북구 편입(8명)
- 1998. 6. 4 :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1998. 7. 7 : 제2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개원(8명)

－ 임기 : '98. 7. 1 ~ 2002. 6. 30

- 2000. 2. 21 : 송정동의원 사직(7명)
- 2000. 6. 8 : 송정동의원 보궐선거(8명)
- 2002. 6. 13 :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02. 7. 9 : 제3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개원(8명)

－ 임기 : 2002. 7. 1 ~ 2006. 6. 30

- 2006. 5. 31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06. 7. 3 : 제4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2006. 7. 1 ~ 2010. 6. 30

제3절 의회일반현황

1. 제4대<전반기>의회 원구성

○ 집회공고

최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06년 6월 27일에 의회사무과장이 집회공고 하였으며, 집회일시는 '06년 7월 3일 10시 00분으로 공고하였음.

○ 본회의장 의석 배정

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의석을 배정

○ 의장단 선거 【제1차 본회의】

2006년 7월 3일 10시에 개최된 제9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7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윤임지의원의 사회로 먼저 의장선거를 실시하고 계속해서 부의장을 선출하였으며, 의장에 류재건의원, 부의장에 윤임지의원을 선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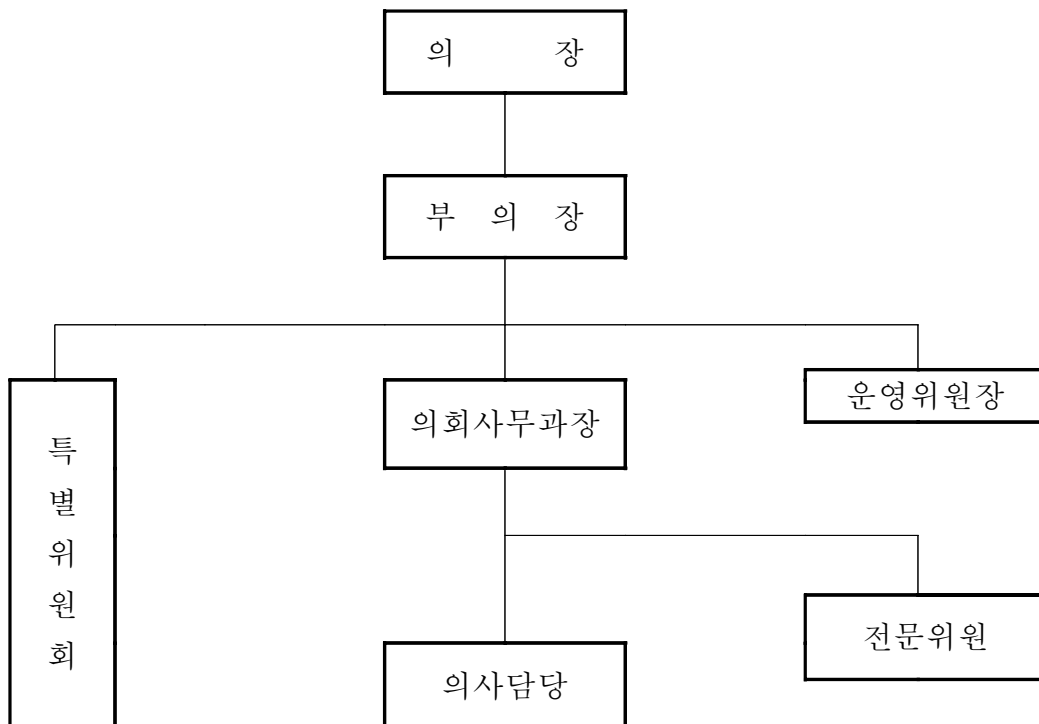
○ 의장단선거 실시결과

- 투표참석 의원 7명
- 선거방법 : 무기명 투표실시

제1장 일반현황

- 총 투표수 7표 중 무효와 기권 없이 류재건의원이 4표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여 의장에 당선되었음.
- 총 투표수 7표 중 무효 1표, 기권 없이 윤임지의원이 4표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여 부의장에 당선되었음.

2. 의회기구



3. 의원현황

□ 의원정수

계	가 선거구	나 선거구	다 선거구	비례대표
	농소1·강동·송정동	농소2·3동	효문·양정·염포동	
7	2	2	2	1

제3절 의회일반현황

☐ 직업별

직업별 의원수	농업	상업	회사원	기타	비고
7	1	1	3	2	

☐ 학력별

학력별 의원수	국졸	중졸	고졸	대재	대졸	대학원재	기타
7			1		3	2	1

☐ 연령별

연령별 의원수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이상	50세 이상	60세 이상
7			6	1	

☐ 성별

의원수	계	남	여	비고
7	7	5	2	

제1장 일반현황

4. 의회예산(당초)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일 반 회 계		
	계	의사운영	의정활동
2004년도	803,439	598,543	204,896
2005년도	858,020	604,052	253,968
2006년도	899,138	616,022	283,116
2007년도	949,808	634,366	315,442
2008년도	1,190,896	611,526 (행정운영경비)	579,370 (지방의회 운영지원)

5. 의사당 시설현황

-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1004-1)
- 면적 : 북구청 5층 1,052㎡ (318평)

(단위 : ㎡(평))

시 설 명	전용면적(평)	비 고
본 회 의 장	208.43(63.05)	
방 청 객 실	60.23(18.22)	
소 회 의 실	108.00((32.67)	
의 장 실	70.47(21.32)	
부 의 장 실	60.70(18.36)	
의 원 사 무 실	129.05(39.04)	2인1실 3개
민 원 접 견 실	72.00(21.78)	
의 회 사 무 과	117.43(35.52)	
전 문 위 원 실	36.00(10.89)	
방 송 실 등 5 실	189.40(57.29)	

6. 의회사무과 직원현황

직위 및 직급	정 원	현 원	비 고
계	13	13	
5급(과 장)	1	1	
5급(전문위원)	1	1	
6급(의사담당)	1	1	
7급(행 정 직)	3	3	
8급(행 정 직)	1	2	
9급(행 정 직)	1	0	
기 능 직	5	5	운전원1, 필기원2, 속기원2

7. 의회의 권한

○ 의결권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함.

- －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
- －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 기금의 설치·운용
- －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 － 공공시설의 설치 및 처분
-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제1장 일반현황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행정감시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정부의 행정집행 상태를 감시하는 통제권으로 매년 정례회 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특정사안을 조사하는 행정사무조사가 있음.
- 자율권
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 스스로 규율을 정함.
(회의규칙, 회기결정 등)
- 선거권
의장, 부의장, 특별위원회위원장 등 선출
- 청원처리권
주민이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함.
- 의견표명권
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하여 집행기관, 공공·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건의안 등)을 제시할 수 있음.

8. 의회의 역할

- 주민대표기관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주민을 대신하여 지역의 이익을 대변함과 동시에 주민의 뜻을 정책결정에 반영시키는 역할
(선거지역뿐만 아니라 해당 자치단체 전 주민 대표)
- 의결기관

자치단체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 그 자치단체의 주요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의 역할

○ 입법기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자치단체의 법규인 조례를 발의하고 의결하는 역할

○ 감시기관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확인하기 위해 보고, 승인, 질문, 행정사무감사·조사하는 역할

제4절 구정기본현황

1. 지역여건

- 주거, 공단, 해양관광, 수산의 3개 권역별 지역·기능적 구분
- 주민생활 및 의식이 도시·농촌적 요소 공존
- 신개발지로서 도시기반시설 미비와 행정수요의 다양

2. 구정현황(2008. 6. 30.현재)

□ 면 적

- 행정구역 □□□□□□□□□□ 157.35km²
- 도시계획구역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기타(미지정)
116.63km ²	11.41	1.08	9.60	94.54	-

※ 개발제한구역 76.34km²(48.98%)

□ 인 구

가 구	총 인 구 수			외 국 인 수 등 록 수
	계	남	여	
53,454세대	164,019명	85,151	78,868	1,666

□ 행정조직

- 기 구

구 분	본 청	사 업 소	동
현 황	3국 1실 16과	1사업소(보건소)	8개동

제4절 구정기본현황

○ 공 무 원

(정원/현원)

계	본 청	의회사무과	보건소	동
493	373	13	37	70

○ 예산(당초)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정자립도
2004년도	66,576	65,742	834	37.3%
2005년도	74,699	73,889	810	38.8%
2006년도	74,022	73,507	514	38.4%
2007년도	85,087	84,318	769	37.9%
2008년도	111,672	110,778	894	28.3%

3. 구민생활지표(2008. 6. 30.현재)

☐ 보건복지

식품 접객	공중 위생	의료시설		생활보호대상자(세대/명)					생활폐기물 발생량(일평균)		1일분뇨 수거량 (수거율)
		기관	병상 수	소 계	일 반	시 설	조 건 부	특 례	1인1일 발생량	총 발생 량	
1,576 개소	364 개소	136	668	987 (5개소) 1,924	946 1,648	5 개소 231	25 25	16 20	0.46kg	74 ton	64ton (100%)

제1장 일반현황

□ 지역경제

경 지 면 적				기 업 체		노조설립업체	
소 계	전	답	과수원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조합원수
2,174ha	785	1,240	149	826개	40,957명	18개	28,677명

□ 도시건설

도 로(2007. 12. 31)				주 택	상 수 도(2007. 12. 31)			하 수 도(2007. 12. 31)		
연장	도로율	포장도	포장율	보급률	1일평균 생산량	1인당1일 급수량	보급률	총인구	보급 인구	보급률
497.9 km	11.56 %	191.4 km	96.74 %	38,534 107.88%	333,000 ton/일	320ℓ	93.5 %	150,078 명	105,727 명	70.45 %

□ 교 통

자 동 차				
소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66,100대	53,292	3,028	9,304	476

□ 교 육

(개소/학생수)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34개소 33,176명	17 16,573	11 9,250	6 7,353		2 297

4. 동별 인구·면적현황(2008. 6. 30.현재)

구 분	면 적 (km²)	법정동	인구수	지 역 여 건 및 특 성
계	157.35	27	164,019	
농소1동	14.91	4 (2개동중복)	22,006	농소라는 말은 고려 태조 때의 박윤웅 공의 식읍지(食邑地) 인데서 생긴 말이며, 아파트단지가 많고 경주시와 인접하고 있으며, 급격한 도시화로 재래시장 및 신개발주거지역 임
농소2동	11.41	3 (2개동중복)	29,090	
농소3동	31.07	5	36,804	
강동동	60.68	9	4,905	강동 지역은 신라 초에 읍포현이 있고 울산지역의 동쪽이며, 해수욕장과 산과 바다가 조화된 천혜의 관광지역 이며 국제규격의 강동 축구장이 있음
효문동	16.28	4	29,773	효문은 세종때 효자였던 송도의 효성을 기리기 위해 효문 이라 하였으며,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이 많은 준공업지역 임
송정동	10.79	2	14,579	송정은 큰 노송들이 많이 우거져있고 좋은 정자가 있었다하여 송정이라고 하였으며, 울산공항이 있고 북구 중심의 교통요충지역 임
양정동	6.67	1	12,819	영조때 오정리와 양정리의 두마을이 있었으며 우리나라 대기업인 현대자동차 회사가 소재해 있고, 7,800여평의 양정생활체육공원 이 있음.
염포동	5.54	1	14,043	염포는 이조때 수군의 군사기지와 왜군 회유책으로 개항한 제포, 부산포와 함께 3포의 하나 였으며 현대하이스코, 현대모비스 회사가 소재하고 있음.

제1장 일반현황

5. 울산광역시 구·군 일반현황(2008. 6. 30.현재)

□ 인구·면적현황

구 분	면 적(km ²)	인 구 (명)			외 국 인 등록수(명)
		계	남	여	
계	1057.4	1,106,051	569,344	536,707	14,198
중 구	37.0	234,966	120,289	114,677	1,549
남 구	72.2	340,158	173,637	166,521	3,182
동 구	35.8	177,163	93,125	84,038	3,119
북 구	157.4	164,019	85,151	78,868	1,666
울주군	755	189,745	97,142	92,603	4,682

□ 재정규모현황(당초)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정자립도
울산광역시	2,011,174	1,433,832	577,342	63.3%
중 구	146,634	136,561	10,073	15.1%
남 구	184,010	173,511	10,499	35.7%
동 구	102,237	98,817	3,420	33.1%
북 구	111,672	110,778	894	28.3%
울 주 군	363,997	323,362	40,636	56.9%



제 2 장 의회운영현황

제1절 집회 현황

제2절 회기별 안건 처리현황

제3절 회기별 주요의정활동 내용



제1절 집회현황

1. 의회역대 집회현황

구 분	연 도	정 령 회		임 시 회		합 계	
		회수	회기	회수	회기	회수	회기
초대	계	1	35	9	25	10	60
	'97	1	35	4	11	5	46
	'98			5	14	5	14
제2대	계	6	140	36	184	42	324
	'98	1	35	6	31	7	66
	'99	1	35	11	45	12	80
	2000	2	35	8	45	10	80
	2001	2	35	9	45	11	80
	2002			2	18	2	18
제3대	계	8	152	29	168	37	320
	2002	2	35	5	27	7	62
	2003	2	35	8	45	10	80
	2004	2	34	8	46	10	80
	2005	2	48	5	29	7	77
	2006			3	21	3	21
제4대	계	4	84	12	75	16	159
	2006	2	40	3	12	5	52
	2007	2	44	5	31	7	75
	2008			4	32	4	32

제2장 의회운영현황

2. 연도별 집회현황

연 도	정 령 회		임 시 회		합 계		법정회기일수
	회수	회기	회수	회기	회수	회기	
계	19	411	87	452	106	863	
'97	1	35	4	11	5	46	연 80일 (정기회 35일 이내)
'98	1	35	11	45	12	80	"
'99	1	35	11	45	12	80	"
2000	2	35	8	45	10	80	" (정례회 35일 이내)
2001	2	35	9	45	11	80	"
2002	2	35	7	45	9	80	"
2003	2	35	8	45	10	80	"
2004	2	34	8	46	10	80	"
2005	2	48	5	29	7	77	연 80일
2006	2	40	6	33	8	73	정례회 45일 이내, 임시회 매회기 15일 이내
2007	2	44	6	31	8	75	연 110일 이내 (정례회 50일 이내)
2008			4	32	4	32	"

3. 회기별 소집요구 및 집회현황

회 기	회 별	소 집 요 구 인	집 회 기 간	일수
제90회	임시회	사 무 과 장	2006. 7. 3 ~ 7. 3	1
제91회	"	문석주의원 외 2명	2006. 7.20 ~ 7.28	9
제92회	정례회	이은영의원 외 2명	2006. 9.11 ~ 9.19	9
제93회	임시회	류인목의원 외 2명	2006.10.23 ~ 10.24	2
제94회	정례회	북구의회정례회운영 조례 제4조(집회)	2006.11.27 ~ 12.27	31
제95회	임시회	박병석의원 외 2명	2007. 2. 5 ~ 2.14	10
제96회	"	문석주의원 외 2명	2007. 4.26 ~ 4.27	2
제97회	"	이은영의원 외 2명	2007. 5.29 ~ 6. 4	7
제98회	정례회	북구의회정례회운영 조례 제4조(집회)	2007. 7. 2 ~ 7.23	22
제99회	임시회	박병석의원 외 2명	2007. 9.19 ~ 9.20	2
제100회	"	문석주의원 외 2명	2007.10.16 ~ 10.25	10
제101회	정례회	북구의회정례회운영 조례 제4조(집회)	2007.11.26 ~ 12.17	22
제102회	임시회	이은영의원 외 2명	2008. 2.21 ~ 3. 6	15
제103회	"	류인목의원 외 2명	2008. 4.25 ~ 5. 1	7
제104회	"	이영희의원 외 2명	2008. 5.28 ~ 6. 5	9
제105회	"	윤임지의의원 외 2명	2008. 6.30 ~ 6.30	1

제2절 회기별 안건 처리현황

제4대울산광역시북구의회<전반기>(2006.7.1 ~ 2008.6.30) 2006 ~ 2008년도

회 수	기 간	일 수	계	예산 안	결 산	조례 안	동의안 (승인)	건의 안	결의 안	청 원	보 고	질 문	기 타
합 계		227	257	11	3	123	23	0	3	0	11	6	77
소 계	2006년도	52	59	3	1	25	7	0	0	0	3	0	20
제90회	2006. 7. 3 ~ 7. 3	1	4										4
제91회	2006. 7.20 ~ 7.28	9	6	1							1		4
제92회	2006. 9.11 ~ 9.19	9	15		1	8	1				1		4
제93회	2006.10.23 ~ 10.24	2	9			5	1						3
제94회	2006.11.27 ~ 12.27	31	25	2		12	5				1		5
소 계	2007년도	75	86	4	1	40	10	0	1	0	4	1	25
제95회	2007. 2. 5 ~ 2.14	10	12			6	1				1		4
제96회	2007. 4.26 ~ 4.27	2	8			5							3
제97회	2007. 5.29 ~ 6. 4	7	10	1		3	1		1				4
제98회	2007. 7. 2 ~ 7.23	22	15		1	7	1				1	1	4
제99회	2007. 9.19 ~ 9.20	2	9			5					1		3
제100회	2007.10.16 ~ 10.25	10	6	1		1							4
제101회	2007.11.26 ~ 12.17	22	26	2		13	7				1		3
소 계	2008년도	32	49	1	0	22	3	0	1	0	2	2	18
제102회	2008. 2.21 ~ 3. 6	15	15			9	1				1		4
제103회	2008. 4.25 ~ 5. 1	7	19			10	1				1	1	6
제104회	2008. 5.28 ~ 6. 5	9	11	1		3	1		1			1	4
제105회	2008. 6.30 ~ 6.30	1	4										4

제3절 회기별 주요의정활동 내용

회 별	집 회 요 구 자	집 회 기 간	회 기	주 요 활 동 사 항
제90회 (임시회)	사무 과장	2006. 7. 3 ~ 7. 3	1	○ 제4대 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 ○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 변경
제91회 (임시회)	의 원	2006. 7. 20 ~ 7. 28	9	○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의결 ○ 주요 사업에 대한 현장활동
제92회 (정례회)	제1차 정례회	2006. 9. 11 ~ 9. 19	9	○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 ○ 조례안 8건 의결 (울산광역시북구 구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 한 조례안 등 8건)
제93회 (임시회)	의 원	2006. 10. 23 ~ 10. 24	2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 조례안 5건 의결 (울산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제94회 (정례회)	제2차 정례회	2006. 11. 27 ~ 12. 27	31	○ 2006~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승인 (양정동사무소 건립)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진장·명춘 문화센터 건립, 중산동 문화센터건립)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 조례안 12건 의결 (울산광역시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 영 조례안 등 12건)

제2장 의회운영현황

회 별	집 회 요 구 자	집 회 기 간	회 기	주 요 활 동 사 항
제95회 (임시회)	의 원	2007. 2. 5 ~ 2. 14	10	○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 ○ 조례안 6건 의결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등 6건) ○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 ○ 조례안 6건 의결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등 6건)
제96회 (임시회)	의 원	2007. 4. 26 ~ 4. 27	2	○ 조례안 5건 의결 (울산광역시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
제97회 (임시회)	의 원	2007. 5. 29 ~ 6. 4	7	○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 가경정예산안 의결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결의안 의결 ○ 조례안 3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제98회 (정례회)	제1차 정례회	2007. 7. 2 ~ 7. 23	22	○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조례안 7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 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제99회 (임시회)	의원	2007. 9. 19 ~ 9. 20	2	○ 조례안 5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18건 (종합복지회관 건립 현황 등 18건)

제3절 회기별 주요의정활동 내용

회 별	집 회 요 구 자	집 회 기 간	회 기	주 요 활 동 사 항
제100회 (임시회)	의 원	2007. 10. 16 ~ 10. 25	10	○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 ○ 조례안 1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 ○ 현장활동 5건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 등 5건)
제101회 (정례회)	제2차 정례회	2007. 11. 26 ~ 12. 17	22	○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 2007~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6건 (농소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등 6건) ○ 조례안 13건 의결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
제102회 (임시회)	의 원	2008. 2. 21 ~ 3. 6	15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결 ○ 조례안 9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등 9건)
제103회 (임시회)	의 원	2008. 4. 25 ~ 5. 1	7	○ 2007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결 ○ 조례안 10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제104회 (임시회)	의 원	2008. 5. 28 ~ 6. 5	9	○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 조례안 1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장 의회운영현황

회 별	집 회 요 구 자	집 회 기간	회 기	주 요 활 동 사 항
제105회 (임시회)	의 원	2008. 6. 30	1	○ 제4대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제106회 (정례회)	제1차 정례회	2007. 7. 1 ~ 7. 21	21	○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조례안 3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3건)
제107회 (임시회)	의 원	2008. 9. 3 ~ 9. 11	9	○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 가경정예산안 의결 ○ 조례안 4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제108회 (임시회)	의 원	2008. 10.23 ~ 10. 31	9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승인 ○ 조례안 11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
제109회 (정례회)	제2차 정례회	2008. 11.24 ~ 12. 22	29	○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 경정 예산안 의결 ○ 조례안 18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등 18건)



제 3 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제1절 제90회 임시회
제2절 제91회 임시회
제3절 제92회 임시회
제4절 제93회 임시회
제5절 제94회 제2차 정례회
제6절 제95회 임시회
제7절 제96회 임시회
제8절 제97회 임시회

제9절 제98회 제1차정례회
제10절 제99회 임시회
제11절 제100회 임시회
제12절 제101회 제2차정례회
제13절 제102회 임시회
제14절 제103회 임시회
제15절 제104회 임시회
제16절 제105회 임시회



제1절 제90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북구의회 사무과장

나. 개회일시 : 2006. 7. 3 (월) 10:00

다. 회 기 : 2006. 7. 3(1일간)

라. 부의안건

○ 제4대 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 의장(유재건)당선인사

－ 부의장(윤임지)당선인사

○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 변경의 건(의장 제의)

2. 개회사

존경하는 1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4대 북구의회가 구민의 염원을 가득 안고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5.31 지방선거에 승리하여 당선되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들을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의회에 나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구민 여러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4대 북구의회는 풍부한 의정경험을 가진 의원들과 전문성과 참신성을 겸비한 신진 의원들로 구성되어 우리 의회에 구민들이 거는 기대 또한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는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며, 차별화된 지방만이 급변하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는 세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세계는 무한경쟁 시대로써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국가간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 또한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의 시대에 앞서가기 위해 제4대 북구의회는 1대부터 3대까지 선배 의원님들의 땀으로 일궈온 지방자치의 기틀을 이어받고, 한층 더 발전시켜 주민이 떠나지 않고 정착하는 지역, 주민이 불만 없이 만족하는 지역, 주민이 보람을 찾아 노력하는 지역으로 내 고장을 승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구민 여러분!

오늘날 지역적 사회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중심이 된 지역 활성화 운동이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지역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에 관련된 논의를 하고 지역에 활력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풀뿌리 혁신이 중요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의회는 구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전문성 확보로 지역 활성화의 선두주자로 나서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 활성화를 이룩하는데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들의 구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우리 북구가 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희망찬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여 15만 구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부응하는 정책개발과 대안제시를 통하여 보다 높은 차원으로 의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의회는 의원 한사람의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의결기관으로 한 사람의 탁월한 지혜보다 7명 의원 여러분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좋고,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모두가 함께 일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의원 여러분들은 서로의 생각과 이념이 다르더라도 건강한 토론의 장을 거쳐 진정한 복지 북구 및 구민들의 바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500여 북구 공무원 여러분!

오늘날의 행정환경은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로 압축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행정에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균립하고 규제하고 매사에 관여하던 과거의 행정으로는 이제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게 되었고, 효율과 능률을 바탕으로 민간과 경쟁하고 성과지향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서비스개념 도입 등 기다리는 행정에서 찾아가는 행정으로 행정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강석구 구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집행부에 대하여 감시와 견제만이 아닌 동반자적 관계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 협조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북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구민여러분!

이제 제4대 북구의회가 개원을 하여 앞으로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오늘 개원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이번 제4대 북구의회 개원과 더불어 하반기의 모든 의사일정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개원식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7월 3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유 재 건

3. 의사일정

제9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6. 7. 3(1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6.7.3. (월)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본회의장
	1	1. 제4대 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2. 9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제9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4.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 변경의 건	본회의장

제2절 제91회 임시회

1. 개최이유

- 가. 소집요구 : 문석주의원 외 2명
- 나. 개최일시 : 2006. 7. 20 (목) 10:00
- 다. 회 기 : 2006. 7. 20 ~ 7. 28 (9일간)
- 라. 부의안건
 -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구청장 제출)
 -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91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및 추경 예산 등 당면한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아울러 지난 3일 출범한 제4대 의회가 원 구성을 시작으로 원만한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구민 여러분의 이러한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의원선서 할 때의 마음가짐을 앞으로 4년 동안의 의정활동에 변함없이 간직하여 북구 주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긍심과 행복감을 실제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감동적인 지방자치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또한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의 모든 갈등을 조정 통합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시책과 예산확충으로 15만 구민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평무사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특히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으나, 의회는 예산에 대한 심의와 의결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민의 세금인 모든 예산이 한 톨도 낭비되지 않고 구민을 위하여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사업과 시책에 대해서는 계급사명감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가운데 우리 의회에서도 보다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누가 뭐래도 지방자치 시대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특히 성숙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역할과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집행기관과 의회가 구정의 양대 수레바퀴로서 더욱 협력을 아끼지 않을 때 더욱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쯏록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소상하게 보고하여 의원님들의 구정과약에 도움을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구정에 대한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대안들을 많이 제시하여 보다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건강과 성취의 기쁨이 늘 함께 하는 보람된 날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7월 20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유 재 건

3. 의사일정

제9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6. 7. 20 ~ 7. 28(9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6.7.20 (목) 10:00 개회식 직후	1	개 회 식	
		1. 제9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제 안 설 명)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제9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본회의장
		5.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 기획홍보실 ○ 총무국(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소회의실
2006.7.21 (금) 09:30	2	○ 현 장 활 동	소회의실
2006.7.22 (토)		휴회(토요일)	
2006.7.23 (일)		휴회(일요일)	
2006.7.24 (월) 10:00	3	1.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계속) ○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 환경미화과) ○ 보건소	소회의실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6.7.25 (화) 10:00	4	1.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계속) ○ 도시경제국(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주택과, 생명산업과, 재난관리과)	소회의실
2006.7.26 (수) 10:00	5	1.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 기획홍보실, 보건소, 의회사무과, ○ 총무국(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소회의실
2006.7.27 (목) 10:00	6	1.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 환경미화과) ○ 도시경제국(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주택과, 생명산업과, 재난관리과) ○ 계수조정	소회의실
2006.7.28 (금) 10:00	7	1.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종합심의 의결	소회의실

제3절 제92회 임시회

1. 개최이유

- 가. 소집요구 : 이은영의원 외 2명
- 나. 개최일시 : 2006. 9. 11 (월) 10:00
- 다. 회 기 : 2006. 9. 11 ~ 9. 19 (9일간)
- 라. 부의안건
 -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결산검사 대표위원)
 -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92회 회기로 울산광역시북구의회 2006년도 제1차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제4대 의회가 지난 2개월 동안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및 구정의 모든 부분을 파악하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방향과 기틀을 설정하여 전 의원이 합심된 모습으로 대의기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앞으로도 우리는 지역민의 봉사자라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여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행복감과 만족감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보다 감동적인 지방자치문화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승인하게 되는 세입·세출, 기금결산은 지난 한 해 동안 집행기관의 예산집행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사후적 재정 통제 수단으로써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므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안제시와 함께 새로운 방안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며,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다음해 예산을 심의할 때 이번 결산심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불용액을 비롯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이 하나 하나 개선되어 구민의 세금인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끝으로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건강과 성취의 기쁨이 늘 함께 하는 보람된 날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9월 11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유 재 건

3. 의사일정

제9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6.9.11~2006.9.19(9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2006.9.11 (월) 10:00 개회식 직후	1	개 회 식	본회의장
		1. 제9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검사 결과 보고 4. 제9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6.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 의회사무과	
2006.9.12 (화) 10:00	2	1.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홍보실>	원안가결
		2.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홍보실>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홍보실>	원안가결
		4. 울산광역시북구 구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안 <기획홍보실>	원안가결
		5. 울산광역시북구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 조례안 <회계정보과>	원안가결
		6.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지방세과>	원안가결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7. 울산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도시녹지과>	원안가결
		8.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 <보건소>	원안가결
2006.9.13 (수) 10:00	3	1.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승인의 건 <계속> ○ 기획홍보실 ○ 보건소	소회의실
2006.9.14 (목) 10:00	4	1.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승인의 건 <계속> ○ 도시경제국(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주택과, 생명산업과, 재난관리과)	소회의실
2006.9.15 (금) 10:00	5	1.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승인의 건 <계속> ○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 환경미화과)	소회의실
2006.9.16 (토)		휴회(토요일)	
2006.9.17 (일)		휴회(일요일)	
2006.9.18 (월) 10:00	6	1.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계속> ○ 총무국(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소회의실
2006.9.19 (화) 10:00	7	1.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계속> ○ 종합의결	본회의장

4. 주요안전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9. 5 (구청장)
- 심의일자 : 2006. 9. 12 (제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계약심사제를 도입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5조제2항 총무국의 분장 사무에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계약 심사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법정·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공사, 구매, 제조, 용역 등의 경우에 계약 전 원가분석, 충분한 시장조사를 통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하여 건전재정 운영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신설하는,
- 계약심사팀은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2003년도에 계약심사과로 발족 되어 매년 10%의 정도의 절감효과로 우수한 사례로 전국적으로 확산 될 것으로 예상되면 현재 시행중인 자치단체를 보며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 단체별 절감 현황

단위:억 원

자치단체명	부서명	2003	2004	2005	2006(상)	비고
서울시	계약심사과	656 (10%)	2,463 (8.4%)	1,353 (9.8%)		2003년도 신설
울산시	기획감사실, 계약심사팀	-	-	-	3,160	2006년도 신설
대구, 남구	회계과 계약심사팀		723	488		2004년도 신설

○ 현재 자치단체별로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전문성과 업무의 폭죽 등으로 원가분석계산 등 시장조사가 불가함으로 전문성이 부여 되는 계약심사팀 신설은 재정이 연약한 우리 북구로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필요한 부서라고 예상이 되며,

○ 계약체결이전에 원가절감을 위하여 계약심사 기준을 정하여 득한 다면 절감효과는 발생 할 것으로 판단되며,

- 계약심사 기준금액

- 공 사 : 1,000만 원 이상
- 용 역 : 500만 원 이상
- 물 품 : 100만 원 이상

○ 원가분석 심사를 위하여 계약심사팀을 회계정보과내에 신설함에 따라 원가분석심사와 계약이 동시에 한 부서에서 이루어져 독립성 저해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결재라인을 계약심사팀→부구청장→구청장으로 함으로써 독립성 확보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9. 5 (구청장)
- 심의일자 : 2006. 9. 12 (제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 및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심사제 도입을 위한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를 467명에서 470명으로 하고,
- 집행기관의 정원을 454명에서 457명으로 함(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 안은 예산 절감을 위해 각종 계약체결이전에 전문성을 가지고 시장조사와 원가심사분석을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는데 최소한의 필요 인원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 현재 우리 구의 보정정원은 472명이며 현정원은 467명 원으로 5명 증액 요인이 있으며 이번 계약심사팀 신설로 3명(6급1, 7급2)이 증원되면 2명의 증액요원이 남게 되며 3명에 대한 연간 추가되는 인건비는 1억 3,326만 정도가 예상되므로
- 계약심사팀이 신설되어 2005년 기준 공사·용역·물품구매 건수가 858건으로 금액은 181억 1,400만원으로 계약심사제의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10% 절감 효과를 얻는다면 18억1140만원이며, 첫 시행으로 최소한 5%의 절감효과를 얻는다 해도 9억570만원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의 절약효과로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8억 이상의 예산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 예산은 최소화로 능률은 최대화로 할 수 있는 계약 심사팀을 신설운영 하는데 필요한 최소인력인 3명을 증원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9. 5 (구청장)
- 심의일자 : 2006. 9. 12 (제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2006. 4. 28 공포, 2006. 7. 1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던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제명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를 “울산광역시북구 사무위임조례”로 변경(2005. 1. 1일부터 법령제명 띄어쓰기 시행)
-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의 위임 대상자에 의회사무과장을 추가함. (안 제1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 신설(별표3)
- 실·과명을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맞게 변경(별표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에 의하며 의회 사무직원
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
도록 되어 있는 것을 2006. 4. 28일자 법 개정에 의하며
- 일반직은 당초와 같이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으나,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
직에 대하여는 지방의회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임명
토록 하므로
- 구청장의 관장하던 의회사무과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임명권
위임과 구민에게 달려가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동민과
직결 되는 일부 업무를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로 동민들
은 먼 구정보다 가까운 동을 방문 해결 할 수 있어 시간과 예
산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되므로
- 본 조례는 의회사무과장에게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직원의 임
명권 권한위임 조례와 구민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동장
에게 권한 위임한 사무로 판단되므로,
- 지방의회의 인사운영에 대한 어느 정도의 독립성 유지와 민원인
에게 행정서비스 하고자 하는 내용임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구민 창안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9. 5 (구청장)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 심의일자 : 2006. 9. 12 (제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구민들이 구정 발전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창안제도를 활성화 하고, 참여기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창안의 종류(안 제2조)

- 지정창안 :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창안
- 자유창안 : 구의 발전과 구민의 생활에 편리를 제공할 수 있고 실현 가능한 창안

○ 창안의 제출(안 제5조)

- 자유창안 : 서식의 제한 없이 수시로 인터넷·우편·팩스 또는 직접방문
- 지정창안 : 구청장이 지정한 제출방법에 의하여 제출

○ 창안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안 제6조)

○ 창안 심사기준 마련 (안 제7조)

○ 선정등급 및 부상 등(안 제8조 및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 안은 구민이 구정발전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구정 참여도를 높이고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구민 누구나 북구 발전과 구민의 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실현 가능한 창안을 제출하여 심사기준에 의하여 연말에 시상이 된다면 좁게는 개인의 영광이지만 넓게는 우리 북구의 발전을 앞

당 길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으므로

- 원안대로 가결하여 구민이 항상 구정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하는바 입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 조례안(의안번호 제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9. 5 (구청장)
- 심의일자 : 2006. 9. 12 (제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폐지이유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 안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 규정에 회계공무원들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 지방재정법 제95조가 2006. 1. 1자 개정되고 그에 따른 시행령이 2006. 6. 30자 개정예 의하면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 울산광역시북구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안이 상위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설치 마련 근거가 폐지되므로 설치보전 가치를 잃게되어 본 조례안은 폐지함이 타당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9. 5 (구청장)
- 심의일자 : 2006. 9. 12 (제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자치단체간 수수료 격차를 줄이고 수수료 적기 현실화를 통해 우리 구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지방세납세증명, 세목별과세(납세)증명,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일부 개정(안 별표)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본 조례에 신설 규정함에 따라 「울산광역시북구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하던 발급 수수료 삭제(안 부칙 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의하면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대하여 관할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보니 각 지방자치단체별 수수료 및 분담금이 천차만별로 국민들로부터 혼돈을 초래하게 되어

-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 기준을 마련한다는 조항으로 2006. 6. 29.자 대통령령 제19567호에 의하여 개정되므로
-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의한 수수료 기준 단가로 적용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임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국민들이 혼돈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의안번호 제1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9. 5 (구청장)
- 심의일자 : 2006. 9. 12 (제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안 제3조)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 기반시설부담금의 구 귀속분,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금을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규정(안 제4조)
- 특별회계의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사용토록 규정(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 안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 1. 11자 법률 제7848호로 제정되어 동 법률 4조4항에 의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
- 기반시설이라 함은 시설 그 자체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 공공시설을 말함으로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건축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 신·증 축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안에 의하며 건축 행위자가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 중 국가에서 100분의 30, 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70을 귀속하여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를 마련하는데 사용할 재원임으로
- 이를 관리하고자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임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9. 5 (구청장)
- 심의일자 : 2006. 9. 12 (제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울산광역시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
 - 중점 추진 과제명 : 『건강한 신혼가정 가꾸기』
-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
- 건강증진 사업계획 수립
- 구강보건 사업계획 수립
- 개별사업 계획 수립
-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수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 의료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 되어 있으며,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최상황

- 「지역보건법」 제5조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4년이 경과하는 이 시점에서 제4기(2007~2010)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하는 것은 타당하며,
- 본 계획서 작성을 위해 2006. 6. 21~6. 27까지 중점과제선정을 위하여 지역주민, 공무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 등 2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 자료작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북구 통계연보, 울산시통계연보, 강북교육청, 보건정보시스템, 북구 구정백서, 2006년 울산시에서 시민 4,088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계획안은 객관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 2006. 9. 7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계획안을 마련하여 제출 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4절 제93회 임시회

1. 개최이유

- 가. 소집요구 : 유인목의원 외 2명
- 나. 개최일시 : 2006. 10. 23 (월) 10:00
- 다. 회 기 : 2006. 10. 23 ~ 10. 24 (2일간)
- 라. 부의안건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석주의원 외 2인 발의)

2. 개회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93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다가오는 정례회에서 다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을 심의
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승인, 조례심
의와 함께 의회에서 처리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주민의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여 내실 있고 정책적인 행정사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신속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93회 임시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결실의 계절을 맞아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성취의 기쁨이 늘 함께 하는 보람된 날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7월 1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유 재 건

3. 의사일정

제9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2006.10.23.~2006.10.24.(2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2006.10.23 (월) 10:00 개회식 직 후	1	개 회 식	본회의장
		1. 제9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9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06.10.24 (화) 10:00	2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6호)	수정가결
		5.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호, 의원발의)	원안가결
2006.10.24 (화) 10:00	2	1. 울산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7호, 총무국 총무과)	수정가결
		2. 울산광역시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8호, 총무국 총무과)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9호, 도시경제국 건축주택과)	원안가결
		4. 울산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호, 도시경제국 건축주택과)	원안가결

4. 주요안전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0. 23 (구청장)
- 심의일자 : 2006 10. 23 (제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자율적으로 결정 운영토록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정례회는 연2회 45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의 매회기는 15일 이내로 함 (안 제3조)
-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두 번째 월요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네 번째 월요일에 집회하고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토록 함(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이 2006. 4. 28 공포되어 2006. 7.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되는 조례를 2006. 9. 11일 제92회 제1차정례회의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 제2차 정례회의 회기일정에 차질이 예상되어 앞서 제정된 정례회의 일수를 35일에서 45일이내로 또한 제2차 정례회 회기 집회일을 11월 세번째 월요일에서 네 번째 월요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최상황

- 원활한 회기운동을 위하여 일수를 조정하는 내용임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0. 16 (구청장)
- 심의일자 : 2006.10. 23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06년 1월 11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구청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40분의 1이상으로 정함(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이 2006년1월1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에서 발의하여 가능한 것을 주민들도 할 수 있도록 추가된 법 개정으로
- 주민이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요건으로는

- 지방자치단체별 선거권을 가진 19세 이상 주민이 연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 연서 주민 수는 전년도 12월31일자 기준으로 50만 이상 대도시
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1이상 70분의1이하로 기타
시·군 및 자치구는 50분의1이상 20분의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 할 수 있으며
- 우리 구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1이상으로 하겠다는 조
례제정 내용이며,
- 주민 청구로 할 수 없는 조례 제정 및 개폐 대상은
 -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 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
대 하는 사항 등이며
- 청구권이 접수 될 시 추진과정을 보면
 - 자치단체장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표하여야하며
 - 공표 날로부터 10일간 청구인 명부 또는 사본을 공개 된 장소
열람
 - 이의가 있는 자는 열람 기간 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가능
하며
 - 이의신청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열람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 심사·결정하여
 -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될시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의
신청자와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결정될시 이의 신청인에게만 통지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가 완료되고 모든 요건을 갖추시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않을시 청구를 각하하여 청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 다만 청구가 각하 되었을 때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청구를 수리 할 때는 수리한날로부터 60일 이내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안을 의회에 부의 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 지방자치법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0. 16 (구청장)
- 심의일자 : 2006.10. 24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우리 구는 전체 아파트의 20%가 임대아파트로서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간 주택관리규약·관리비 및 분양전환 가격 등에 대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원만한 분쟁조정으로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

리·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 정 원 : 10인 이내
- 위 원 장 : 구청장
- 위 원
-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자
- 임대주택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 위원회의 기능(안 제4조) : 다음 사항에 대한 분쟁을 조정

-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가격에 관한 사항

○ 분쟁의 조정 절차 및 효력(안 제8조 및 제10조)

- 임대주택관련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주택분쟁조정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
-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분쟁당사자에게 제시
- 분쟁당사자는 조정안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
- 분쟁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

○ 조정신청의 거부 및 중지(안 제11조)

-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 제8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조정예 응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통지하였을 경우 등

○ 조정의 종결 및 보류(안 제12조)

- 종결 :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경우 조정안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거부가 있을 경우
- 보류 : 분쟁당사자가 분쟁 조정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 안은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개정예에 의하면 임대아파트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분쟁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하고 심의하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임대주택분쟁조정 위원회 구성은 10명 이내로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3명, 임대차대표회의에서 3명,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추자 중 3명은 구청장이 위촉하며 그 3명의 임기는 3년으로 운영하는 내용으로
- 현재 우리 구의 분쟁의 소지가 예상되는 임대아파트는 9개소에 6,368세대로 현재 분양전환 중인 농소 천곡동 아남 임대 아파트에 이어 평창리비에르 1, 2, 3차 단지가 단계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예상 되므로 분쟁의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 현 분쟁의 소지가 임대 자는 임대 시 가격으로 분양요구 하고 임대 업자는 현 가격으로 분양을 원하고 있으니 가격 차이가 너무 커서 상방 합의점 찾기가 매우 어려우며 임대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절충점을 제시할시 그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지 않아도 제제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운영에 있어 실효성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가며

-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대 계약 시 향후 임대 분양 전환시 현시가 또는 감정가액의 80%~90%선의 가격으로 전환한다는 임대계약서에 명시 할 수 있는 법적 조항 등을 둘 수 있다면 분쟁의 소지가 최소화 되지 않을까 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0. 16 (구청장)
- 심의일자 : 2006.10. 24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6. 6. 23일 일부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안 제31조, 별표 1의2)
 - 옥외광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2에서 정한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영업내용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군·구의 조례로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설기준을 정함.

-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문 수정

○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안 별표 5)

- 옥외광고업을 휴·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재개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신고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 과태료 금액을 신설하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일부 수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6. 6. 23 자 대통령령 제 19548호 의하여 옥외 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도 바뀌면서 운영 과정상 미비점에 대한 보완개선 함과 시·군·구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이며

○ 등록제로 바뀌면서 무등록 업자 방지를 위하여 이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 강화 된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옥외 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 재개시 미 신고자에 대하여는 최고 300만원까지 기간 별 차등을 두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과

○ 무질서한 옥외 광고업자 및 미신고업자들의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임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0. 16 (구청장)
- 심의일자 : 2006.10. 24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북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요되는 교육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지방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에 대한 지역 경쟁력을 확보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보조사업의 범위와 제한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교육경비 보조 기준 액은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구청장은 보조사업 신청이 접수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조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13조)
-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북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는 관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할 지역내 초, 중, 고등학교에 소요되는 교육경비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 울산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조기준은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내용이지만
- 2006년도 구세(18,552백만 원)대비 1.5%를 지원한다면 최대 278백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셈이며 현재 울산광역시 내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없으나 남구가 조례제정을 위하여 2006.10.20~2006.11.9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지원기준 액은 구세 1%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울주군은 제88차 임시회 중의원발의로 2006.10.17 본회의에서 확정하였고 지원 기준 액은 군세수입의 1.5%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동구는 구세 2% 이내 정도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 현재도 우리 구에서는 시비보조를 포함해서 학교 급식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한 지원은 어떤 것보다도 우선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 현재 자치구에서 지원이 되지 않으면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므로 현재 우리 구는 신생도시와 마찬가지로 우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편의시설 및 복지 관련 부분에 우선투자 할 필요성도 중요하므로
- 교육경비 지원에 대하여는 열악한 북구 재정을 볼 때 타 자치단체보다 앞장서서 지원하는 것보다 같이 공조를 맞추어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 있어 의원들 간에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 5) 개정·수정안 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4조(보조기준액 등) 구청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기준액 등) ----- ----- <u>전년도</u> <u>결산</u> -----

제5절 제94회 제2차 정례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지방자치법 제38조(정례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집회)

나. 개회일시 : 2006. 11. 27 (월) 10:00

다. 회 기 : 2006. 11. 27 ~ 12. 27 (31일간)

라. 부의안건

- 2006~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양정동사무소건립)(구청장 제출)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진장·명촌동 문화센터건립)(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 동명청과 구역확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 분양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벽찬 기대와 사명감속에 제4대 북구의회가 출범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금년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새해를 설계하게 될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의회에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의 성원에 마음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봉사자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오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또한 북구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에 개원한 제4대 북구의회는 개인적인 영광에 앞서 구민의 고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귀한 선택을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구민의 소중한 뜻을 받들어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의 무한한 봉사자가 되고자 엄숙히 다짐하며 희망차게 출발하였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주민의 고충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생활현장을 오가면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등 대의기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뒤돌아보면 만족감보다는 아쉽고 미흡한 점들이 더 많이 생각나는바 내년에는 보다 신뢰받고 사랑받는 성숙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는 금년 한 해 동안의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결산하게 되며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의 심의·의결을 통해서 구민이 구정의 주인 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단편적인 잘못을 가려내기 보다는 종합적이며 거시적인 차원에서 구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미래 지향적이며 정책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새해 예산은 내년도 구정의 근간이 될 뿐 아니라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정확한 세입에 근거한 세출예산의 재원이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책별로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구민의 기대와 정서에 부응할 수 있는 알뜰하고 생산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는 내년 7월이면 자치구 출범 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97년 출범 당시 도시기반 시설 등 모든 부분이 미흡한 상태였지만 이제는 문화와 체육, 복지시설 등 어느 구 보다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젊은 북구, 미래가 있는 북구 로 변모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북구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바 직분에 최선을 다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구정전반에 대한 성과와 개선점을 돌아보고 내년도 구정이 나아가야 할 지표를 올바르게 설정하여 살기 좋은 북구의 이미지를 주민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의 위치에서 주어진 책무와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가 소기의 성과와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성취의 기쁨이 늘 함께하는 보람된 날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유 재 건

3. 의사일정

제9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2006.11.27.~2006.12.27.(31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개 회 식	본회의장
2006. 11. 27 (월) 10:00 개회식 직 후	1	1. 제9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33호) - 시 정 연 설(구청장) - 4. 2006~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기획홍보실) 5. 제9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본회의장
2006. 11. 28 (화) 10:00	2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34호, 기획홍보실) 2.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양정동사무소 건립, 의안번호 제22호, 총무국)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진장·명촌동 문화센터 건립, 의안번호 제23호, 총무국)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산동 문화센터 건립, 의안번호 제24호, 총무국) 5. 울산광역시북구 동명청과 구역확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호, 주민생활지원국) 6.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호, 주민생활지원국)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6. 11. 29 (수) 10:00	3	1. 울산광역시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25호, 기획홍보실) 2. 울산광역시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호, 총무국) 3. 울산광역시북구 노사정주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29호, 도시경제국) 4. 울산광역시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0호, 도 시경제국) 5. 울산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1호, 도시경제국) 6. 울산광역시북구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2호, 도시경제국)	부 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부 결

제9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2006.11.27.~2006.12.27.(31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6. 11. 30(목) ~12. 6(수)		행 정 사 무 감 사	소회의실 및 현장 확인
2006. 12. 7(목) ~12. 19(화)	4~12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예산안 심의	소회의실
2006. 12. 20 (수) 10:00	13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본회의장
2006. 12. 21(목) ~12. 26(화)	14~16	1.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 예산안 심의	소회의실
2006. 12. 27 (수) 10:00	17	1.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본회의장
		폐 회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심의 일정 (변경)

제9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2006. 12. 21~2006. 12. 27(7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장 소
2006. 12. 21 (목) 10:00	14	1.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홍보실 ○ 도시경제국 2.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7호, 총무국) 3. 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8호, 주민생활지원국) 4.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호, 주민생활지원국) 5. 울산광역시북구 분양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35호, 도시경제국)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6. 12. 22 (금) 10:00	15	1.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주민생활지원국 ○ 총 무 국	소회의실
2006. 12. 23 (토)		휴 회(토요일)	
2006. 12. 24 (일)		휴 회(일요일)	
2006. 12. 25 (월)		공 휴 일	
2006. 12. 26 (화) 10:00	16	1.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보건소 ○ 의회사무과 ○ 계수조정	소회의실
2006. 12. 27 (수) 10:00	17	1.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종합심의의결 폐 회	본회의장

4. 주요안전처리 경과 및 결과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2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1. (구청장)

○ 심의일자 : 2006. 11. 28 (제94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양정동사무소 신축예정지(양정동 488-2)인 상수도북부사업소 매각계획부지 3,561㎡(1,077평)중 1,650㎡(500평)를 우선 분할 매입하기로 '02. 12. 3 의회의 의결을 얻어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를 하였으나,

○ 지난, 9. 8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분할 매각이 아닌 전체면적 3,561㎡(1,077평)에 대한 일괄 매각 통보에 따라, 부지면적 및 사업비 변경계획안을 수립,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변경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후	변경사항
위 치	양정동 488번지	양정동 488-2번지	488번지 지번분할
취득부지	1,650㎡(500평)	3,561㎡(1,077평)	부지일괄매입으로 인한 부지매입면적 증가
건 물	1,091㎡(330평),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조	1,091㎡(330평),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조	
추정가격	1,727,000천원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2,573,000천원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부지매입비증가에 따른 총 공사비 및 기타비용 증가
사업기간	2003년 ~ 2004년	2006년 ~ 2007년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안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05.1.14. 대통령령 제18677호)의 개정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이 변경(기존 6.30 ⇒ 변경 5.31)되어 재산세 부과기준이 과세기준일(6.1) 전에 결정·공시한 현 년도 공시지가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급격히 증가되는 것을 고려하여 과세대상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2005. 8. 19, 행자부 지방세제팀-3069호)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임.
- 표준안에 근거한 안 제27조의 3(재산세 과표경감)의 신설 및 부칙 개정을 위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2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1. (구청장)
- 심의일자 : 2006. 11. 28 (제94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진장·명촌동 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진장·명촌동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 건 물 : 지상 3층, 연면적 1,140㎡(345평)
 - 사 업 비 : 1,500,000천원
- ※ 신축부지 : 북구 명촌동 116블럭(49호 근린공원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우리 울산북구는 산업의 도시로 성장하면서 시민들에게는 문화의 불모지로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나마 2003. 9 북구문화예술회관이 개관하므로 우리 북구 민도 문화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하였는데
- 권역별로 남쪽에는 신개발지구로 인구성장 잠재력이 있는 진장·명촌지역에 문화센터가 건립되는 것은 주민정서 함양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며
- 만일 설립지역인 공원부지가 완공되어 울산광역시로부터 관리권이 양이 되면 시비지원도 어렵게 되므로 현재 시비지원이 가능할 때 설립하는 것도 연약한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 특히 공동주택지 내 문화센터를 다목적 공간으로 만들어 주민들의 여가 선용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면 정말 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하루빨리 북구민들이 문화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2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1. (구청장)
- 심의일자 : 2006. 11. 28 (제94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산동 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중산동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 소재지 : 중산동 798-2번지 일원
 - 규모 : 토지 3,066㎡(927.4평), 건축연면적 1,323㎡(400평)
(지하1층, 지상3층)
 - 사업비 : 2,300,000천원(부지매입 800,000, 건축비 1,500,0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북구의 중심지인 연암동은 구청 내에 북구문화예술회관이 있고 남쪽으로는 진장·명촌, 북쪽으로는 개발 잠재력이 많은 중산동에 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문화의 혜택을 받게 하고자 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 현 건립부지 인근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현재 기금이 22억 정도가 조성되어 있으나

주민들 간에 운동장, 복지회관 등 의견이 맞지 않아 실행을 못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 문화센터 건립 사업비 총 23억중 17억은 국·시비를 계획대로 확보하여도 구비 6억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 먼저 중산동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주민들이 계획하고 있는 시설과 중복이 되지 않는 문화센터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예상되며
- 만일 중복성이 있다면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복합적인 문화 센터를 건립 할 수 있다면 예산 절감과 활용가치는 두 배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되므로 단독 건립보다는 우선 중산동 주민들과 협의를 통하여 합의점을 찾아 건립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 동명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1. 17 (구청장)
- 심의일자 : 2006. 11. 28. (제94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진장유통단지 1단계 개발사업이 2006. 10. 31일 완료됨에 따라 사업부지내 연암동 및 화봉동 토지를 산업로를 경계로 진장동으로 편입함으로서 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최상황

하고 조례상에 개정연혁표를 신설하여 동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개정연혁 조항 신설(안 제3조)

- 울산광역시북구 동 관할구역의 개정연혁표는 다음과 같다.

나) 개정연혁

- 울산광역시북구 연암동 164필지를 진장동으로 편입
 - 연암동 164필지 편입내역 : 별표 2 참조
- 울산광역시북구 화봉동 2필지를 진장동으로 편입
 - 화봉동 2필지 편입내역 : 별표 3 참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진장유통단지 개발 1단계사업이 완료되어 현재 85%정도가 분양이 되어 입주 중에 있으나 유통단지 내 토지가 진장, 연암, 화봉동 등 3개 법정동이 포함되어 있어 행정의 원활을 기하고자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지방자치법」 제4조3항에 의하면 명칭과 구역 변경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 진장유통단지 개발사업 이 법에 해당하며
- 사업 면적에 있어 총 447,691.6㎡중 진장동 317,692㎡ 연암동 164필지 129,990㎡ 화봉동 2필지 9㎡로 총면적의 71%가 진장동 지역임을 감안 할 때 진장동으로 편입함은 타당 할 것이며
- 또한 개발사업의 지구명도 진장동 유통단지 1단계 개발사업 부지로 조성 되어 왔는데 진장동 유통단지내 주소가 진장동, 연암동, 화봉동 번지가 각각 다르게 부르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을 뿐더

러 입주자들의 입주 시 많은 혼선이 예상됨으로 진장동으로 흡수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 산업로를 경계로 하여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진장동으로 편입시켜 조정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1. 17 (구청장)
- 심의일자 : 2006. 11. 28 (제94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05. 12. 30)으로 감량의무사업장 일부(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영업장 면적 규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감량의무사업장 정의 규정에 삽입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정의 규정 개정(안 제2조제2호)
 -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정함.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규정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조2항 별표 제4의3호의 라 목에서 정하던 사업장을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가 2005. 12. 31자 개정 되면서 감량의무사업장 일부(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사업장을 면적 규모에 따라 규제하는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신고 영업장 면적이 125m²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정하는 내용임으로
-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2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1. 17 (구청장)
- 심의일자 : 2006. 11. 29 (제94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주민생활 및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을 수립할 때 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자문으로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정책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 구민만족행정을 구현하고자 협의회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가) 협의회 목적과 기능(안 제1조, 제2조)

- 구의 주요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조언
- 새로운 정책발굴 및 대안 제시

나) 협의회 구성과 임기(안 제3조, 제4조)

다) 협의회 회의 운영방법(안 제7조)

라) 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는 구청장이 구민들의 소리와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민이 바라는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자문기관 설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울산광역시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주요정책 수립에 전문가를 통한 자문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을 추진한다면 행정의 시행착오 최소화는 물론 구민과 함께하는 북구 행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 아무튼 북구 행정의 점진적인 발전을 위해서 주민과 전문가들의 여론과 자문을 듣고 행정을 수행하겠다는 청장의 생각은 북구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심의결과 : 부결

□ 울산광역시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1. 17 (구청장)
- 심의일자 : 2006. 11. 29 (제94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어 제정·공포됨에 따라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조항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
에 필요할 경우 물품관리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물품운용
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제2조제3항, 제3조제2항)
- 기증품 취득 시 울산광역시북구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조례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던 물품관리 규정이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법률 제7665호로 2005. 8. 4자 제정되어 2006. 1. 1
자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담당직원들과 사전 연찬회 등을
통하여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의 효율
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정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달되어
- 우리 구도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실정에 맞
게 물품관리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현재 물품전체를 물품관리관(회계정보과
장)이 관리 하던 것을 부서의장을 물품 운용관으로 지정하여 사

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 기부금품의 취득에 있어 자치단체장이 수령 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울산광역시북구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되는 주 내용임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 유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2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1. 17 (구청장)
- 심의일자 : 2006. 11. 29 (제94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근로자와 사용자 및 행정과 구민 모두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의 신노사 협력 체제를 정착시켜 산업평화와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노사정구민의 책무

-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안 제2조)

나) 협의회의 기능

-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노사관계 안정 및 화합증진에 관한 사항, 노사문제와 관련된 실업 및 고용대책에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관한 사항,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협의회 구성 및 임기

-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안 제4조)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안 제6조)

라) 회의운영

-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안 제9조제2항)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안 제9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는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지역의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역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 하고자는 내용으로
- 울산은 산업도시로 성장하면서 노동조합의 설립 후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매년 크고, 작은 노사분쟁이 발생하여 경우에 따라 시민들에게 까지 불편과 고통의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를 우선 대화로서 해결점을 찾는데 행정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자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행정과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히 협의하고 그 결과는 최대한 존중하여 상생의 신 노사협력 체제를 이루고자 관련조례를 제정코

자 하는 내용임으로

-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서로 신뢰가 존중된다면 대화로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 울산 경제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1. 17 (구청장)
- 심의일자 : 2006. 11. 29 (제94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우리 구는 60%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거형태임에도 공동주택단지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행정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 입주민들은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도로, 하수도, 경로당 등) 유지 보수에 대하여 지자체의 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있음.
- 「주택법」 개정(2003. 11월)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파트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안 제2조)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 20세대 이상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사원임대 및 분양 전환되지 않은 임대아파트는 제외)

나) 지원대상 등(안 제4조)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별표3제1호에 의한 주차
장 추가 설치
- 보안등의 유지 보수
-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유지보수
- 단지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수목의 전지
-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지원 방법은 총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금 지원

다)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5조)

-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 지원대상 사업의 적합여부, 지원대상 순위 및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 심의

라) 위원회의 구성(안 제6조)

- 위 원 장 : 부구청장
- 부위원장 : 도시경제국장
- 위원자격 : 사업시행 부서의 장, 구의원, 주택관리사, 건축
및 토목 전문가
- 위원의 임기 : 2년
- 위 원 수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마) 지원신청 및 교부(안 제9조)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원신청서 제출
- 현장조사 실시 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는 「주택법」 제43조8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정하여 공동주택 비용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비록 우리구가 70%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지원은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공동주택 내 보안등,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시설 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똑 같이 개인 소유인데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로 수목전지 비용까지 지원은 단독주택과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 전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가로수 및 공원관리비는 점점 축소하여 2007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가로수 전지 인건비도 확보하지 못하여 가지치기도 다 할 수 없는 실정인데 공동주택 수목전지 지원비는 시기상으로 맞지 않으며 충분히 재검토가 필요하며
- 주차장 설치 지원비도 1994.12.31이전 건축에 대하여는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의해 입주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안의 도로, 어린이놀이 시설 등을 축소하고 주차장 시설로 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공동주택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한 공사를 실시할시 비용 일부를 지원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최상황

하자는 것도

-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단독주택만 추진하던 사업을 실적이 부진하여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2006. 4. 6차 일부 개정하여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의 경우 300세대 미만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됨으로 제외되는 아파트는 300세대가 넘는 11개아파트 단지만 해당 되면 다세대 아파트로 자체 운영비로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됨으로 주차장 설치지원도 재검토 가 요구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1. 17 (구청장)
- 심의일자 : 2006. 11. 29 (제94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개정 2005. 8. 4)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의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을 규정함(안 제3조)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 책임을 명시함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를 규정함(안 제4조)
 - 소유자 거주시와 비거주시로 나누어 제설책임 순위를 정함
-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경계에서 1미터 구간
-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규정함(안 제6조)
 -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 단,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는 24시간 이내
- 제설·제빙작업 방법을 규정함(안 제7조)
 -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을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로 옮겨 쌓음
-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안 제8조)
 -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 도구를 건축물 안에 비치·관리토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의 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2항에 의하면 제설작업 및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고 건축물 관리책임자에게 제설·제빙작업을 의무화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본 제정안은 제1조 목적에 대한 설명에 이어 총 8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입법 예고 한바 성숙된 주민들의 인식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으로 내 집 앞 눈치우기는 내가 하여야한다는 책임감을 인정하고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본인의 안전은 물론,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내 집 앞 눈 치우기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본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 단독주택 대부분 관리자가 고령자로 마루청에서 대문까지 제빙 작업도 힘 드는데 도로부분까지 제설은 무리가 따름으로 만일 부상 시는 자치단체장의 책임이 따를 것이며.
- 건물주를 책임 1순위를 주지 않고 통, 반에서 자발적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젊은 세입자를 독려 할 수 있을 것인데 우선순위가 건물주, 관리자 순으로 정해짐으로 젊은 세입자들은 제빙작업에 불참은 물론 법을 악용하여
- 만일 건물주가 제빙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눈 온지 수 시간 뒤 길을 가다 고령자 집 앞에서 넘어져 부상 입다 하고 가정 할 때
- 건물주에게 당신은 자기 집 앞 제설 제빙 작업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하지 않아서 부상을 입었다고 치료비 요구에 응하지 않을시 법적인 논란의 소지를 유발 시킬 수 있으며
- 조례로 제정하였으므로 제빙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법적인 책임 까지 지을 수 없으므로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급하여야 할 몫임으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1. 17 (구청장)

○ 심의일자 : 2006. 11. 29 (제94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구체적인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풍수해가 예상되는 무분별한 건축 및 형질변경 등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기본방향을 정함(안 제2조)
 -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
-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을 정함(안 제4조)
 -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음.
-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주민 홍보 강화(안 제5,6조)
 -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작성 및 침수위 표시
 -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위험예상 표지판 설치
-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따른 예외 규정(안 제7,8조)
 -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경우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최상황

-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건축·형질변경 등 구체적인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
- 우리 구의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은 염포로 현대자동차 정문 앞 12,532㎡(3,781평)와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명춘 배수장일원 18,846㎡ (5,701평)등 두 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 풍수해 취약지역에 무분별한 건축 및 형질변경을 사전에 막아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개인의 재산에 대한 행위제한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의 취지로는 좋은 방향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 재해위험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재해 취약지역으로 풍수해시 마다 재산의 피해를 입으면서도 조상이 물려준 재산과 내가 살아온 지역의 애착심 때문에 선뜻 떠나지 못하고 한평생을 살아온 주민들이 대부분인데
- 이제 와서 행정에서는 대책을 세운 것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완료시까지 행위 제한을 한다면 주민들로서는 개인 재산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4) 심의결과 : 부결

□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2. 11 (구청장)
- 심의일자 : 2006. 12. 21 (제94회 제2차정례회 제14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06. 12. 31일까지 감면시한인 본 조례의 감면시한을 2009. 12.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행정의 일관성 유지, 구·군간의 형평성 및 납세자 편의 도모를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종전과 동일 (2006. 12. 31.이전) ⇒ 18건

감 면 내 용	감면세목	감면정도	조문안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재산세	면제	제2조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재산세	면제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재산세	면제	제4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재산세	50%	제5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	면제	제6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재산세	면제	제7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재산세	면제	제8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40㎡이하의 공동주택 - 40㎡초과 60㎡이하의 공동주택 - 60㎡초과 149㎡ 또는 85㎡이하의 공동주택	재산세	면제 50% 25%	제9조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재산세	5년간 면제	제11조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	5년간 50%	제13조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감 면 내 용	감면세목	감면정도	조문안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재산세 사업소세	50%, 면제	제15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재산세, 사업소세	면제	제16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재산세	5년간 면제	제17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재산세	5년간 50%	제18조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 영위 및 사업개시일전에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 - 외국인투자중 사업의 양수 등에 해 당하는 투자에 대하여 신고한 사업 영위 및 사업개시일전에 사업에 사 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	재산세	7년간 면제 그다음 3년간 50%, 7년간 50% 그다음 3년간 30%	제19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재산세(세율)	3년간 1.5/1000	제20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외의 지역 -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 수도권외의 지역	재산세	5년간 면제 그다음 3년간 50%, 3년간 면제 그다음 2년간 50%	제21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재산세	5년간 면제	제22조

나) 종전과 상이(2007. 1. 1.이후) : 조문 개정, 삭제, 추가 ⇒ 10건

- 불부합된 관련법 조문 일치 (안 제1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 지방공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에

게 감면하던 것을 출연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여 확대시행
(안 제12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하여 불부합된 조문 삭제 및 경감
기간을 3년 → 5년으로 늘여 타 시·구·군과의 형평성 및
납세자의 편의 도모 (안 제23조)
- 감면규정 실효성 상실로 삭제 : 주차전용건축물 및 토지, 전
쟁기념사업회,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감면 (기존 조례 제4장
및 제9조의2, 제9조의3과 제20조, 제26조)
- 행정 일관성 도모 및 납세자 신뢰 구축을 위한 별지서식 추
가 (안 제2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면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
여 감면조례 표준안을 시달하여 여기에 맞추어 울산광역시도
구·군 담당자 간담회를 통해 구·군 간에 동일한 조례 안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개정된 내용을 보면 종전과 대부분 동일하며, 불부합된 관련조
문 수정과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구·군 형평성 고려 경
감기간을 3년→ 5년으로 늘리고, 감면규정 실효성 상실로 주차
전용건축물 및 토지, 전쟁 기념사업회,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감
면혜택을 삭제한 내용으로
-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조례는 1997. 7. 15자 북구가 자치구로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신설 되던 날 제정되어 8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2003. 12. 31차 제309호로 개정된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 까지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 만일 이번 회기에 조례가 의결되지 않을시 2007. 1. 1일부터 감면신청이 있을시 우리 구는 구세 감면조례가 없어 감면 혜택을 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며
- 여기에 따라 민원 발생이 우려되므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2. 11 (구청장)
- 심의일자 : 2006. 12. 21 (제94회 제2차정례회 제14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문화예술회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연장 등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가) 문화예술회관 원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하여 사용제한 항목 추가 신설(안 제10조)
- 나) 「별표2」의 시설 사용료를 구체화하여 현실에 맞게 부과

할 수 있는 근거마련

- 공연장 사용료를 평일과 토·일·공휴일로 구분하여
형평성 있게 부과
- 부대시설의 물품(합창대, 댄싱플로어매트, 팔로우스팟라
이트 등)에 대해 세분화하여 사용료를 부과
- 야외 공연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용료를 부과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강구와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조달하여야 한다는 근
거에 의하여
- 2003년도 북구문화예술관 개관에 맞추어 울산광역시북구 문화예
술회관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운영과정
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용료를 현실성에 맞게 조정하는데 목
적을 두었으며
- 주요 내용을 보면
 - 조례안 제10조 4호를 신설하여 순수 문화예술의 목적과 거리
가 먼 종교, 정치적, 노동집회, 제품의 선전, 판매등 상업적
행위는 사용허가를 제한함과
 - 공연장 사용료는 29.41%정도 현실에 맞추어 인상하였으나
연습실 사용료는 1회에 10,000원에서 오전, 오후, 야간 등으
로 구분하여 차등 사용료 징수와 토, 일, 공휴일은 평일의
30%가산하여 사용료 부과한다는 것과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 야외공연장은 1회에 의해 무료 사용하였으나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여 차등 사용료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 관리를 하고자 현실에 맞게 인상한 사용료 임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2. 11 (구청장)
- 심의일자 : 2006. 12. 21 (제94회 제2차정례회 제14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구·군간 종량제 봉투 가격 편차로 인한 주민 불만을 해소하고, 봉투가격 처리비와 실제 처리비 차이에 따른 구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봉투가격 인상과, 쓰레기불법소각 투기 신고 포상금의 지급방법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하도록 하며,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기준에 있어 일부품목을 세분화하는 등 조례 개정을 통하여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쓰레기봉투 가격의 조정 등

- 쓰레기봉투의 용량 및 용도 (안 제13조)
- 쓰레기봉투의 용량·용도·색상 및 재질 (별표 1)

- 쓰레기봉투 제작 사양 (별표 2)
-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 (별표3)

나.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2조)

다. 쓰레기불법소각 투기 신고포상 지급방법 개선 (안 제23조)

라. 대형폐기물처리 품목 세분화 (별표 4)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하면 생활폐기물 처리에 있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수집, 운반, 처리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상위법에 따라 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 구·군간 종량제 봉투가격이 상이하여 주민들의 불만해소를 위하여 4개 구의 쓰레기봉투 가격을 조정하여 동일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므로 우리 구는 평균 22.98%가 인상하게 되었고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 평균 22.98%인상하였으나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5ℓ는 33.33%, 10ℓ는 24.0%로 평균 인상률을 상회하나 영업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20ℓ 20.0%, 50ℓ 19.2%, 100ℓ 18.4%로 평균치 하향으로 조절되었고
 - 불법소각 및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악용되어 전문신고꾼(일명“스파라치”)이 대부분 수령하게 되어 제도악용을 예방하고자 현금만 지급 하던 것을 현금 또는 현물(상품권)로 지급
 - 2006년도 제작봉투와 구분을 위하여 쓰레기봉투 색상을 노란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색→ 녹색으로 변경제작

- 쓰레기봉투 후면에 광고를 공익광고로 제한하던 것을 광고로 변경하므로 일반광고를 가능하게 하므로 세수증대 효과
-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 누락품목 신설 삽입(가스렌지, 정수기, DVD플레이어 등)을 하였습니다.

○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을 22.98%는 주민들로서는 반가운 일은 아니지만 해마다 적자폭이 늘어남으로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주민들도 이해를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 분양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3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2. 7 (구청장)
- 심의일자 : 2006. 12. 21 (제94회 제2차정례회 제14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공동주택 분양가격 자율화('98. 12) 이후 분양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높은 분양가격은 투기를 조장하여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조언·권고를 위해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음에 따라 분양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분양가 자

문을 통한 공동주택의 공급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입주자 모집 승인 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

나) 기능(안 제2조) : 다음 사항을 자문

- 제출된 분양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택지비, 가산비용 등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 구성(안 제3조)

- 정 원 : 10인 이내
- 위 원 장 : 민간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 위 원 : 주택건설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시민단체 소속 직원, 관
계공무원, 대한주택공사 임직원 등

라) 회의(안 제4조)

- 구청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안전
등을 위원에게 통보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비공개로 회의 진행

마) 위원이 아닌 자의 참석 및 관련자료 제출 등(안 제6조)

- 위원장의 승인을 얻을 경우 구청장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체가 회의에 참석 및 관련자료 제출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바) 위원의 제척·회피(안 제8조)

- 위원이 당해 안건에 용역 등을 수행하거나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자문을 위한 의결에서 제척
-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고, 간사에게 통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업무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의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하여
- 울산광역시북구 분양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1998년부터 민간업체가 건설한 공동주택 분양가 자유화로 공동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 분양가 자문을 통하여 공동주택의 공급가격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는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하여는 높이 평가하는 바이며
- 지난 8. 24자 매일경제신문을 보면 천안시에서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 입주자 모집시기 및 조건 승인에 가격을 조정하는 것에 해당 자치단체에서 간섭 할 수 없다는 대전지법의 판결이 있었음을 감안 할 때,
-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분양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될시 분양가자문위원회의 결과는 객관성 자료로 활용하고 사전에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사업주체측과의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

어진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6절 제95회 임시회

1. 개회이유

- 가. 소집요구 : 박병석의원 외 2명 발의
- 나. 개회일시 : 2007. 2. 5 (월) 10:00
- 다. 회 기 : 2007. 2. 5 ~ 2. 14 (10일간)
- 라. 부의안건
 -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석주 의원 외 2인 발의)
 -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석주의원 외 2인 발의)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해년 새해 들어 첫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고장이 번영과 구민 여러분 가정마다 꿈과 행운이 가득한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7년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게 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새해에 계획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지역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번 업무 보고를 통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소상하게 보고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구정에 대한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많이 제시하여 보다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95회 임시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끝으로 올 한 해도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성취의 기쁨이 늘 함께하는 보람된 날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2월 5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유 재 건

3. 의사일정

제9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2007. 2. 5.~2007. 2. 14.(10일간)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7. 2. 5 (월) 10:00 개회식 직 후	1	개 회 식	본회의장
		1. 제9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9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보건소	
		5.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1호, 의원발의) 6. 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2호, 의원발의) 7. 울산광역시북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위원 추천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2. 6(화) 10:00	2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계속> ○ 도시경제국(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소회의실
2. 7(수) 10:00	3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계속> ○ 도시경제국(건축주택과, 생명산업과, 재난관리과)	소회의실
2. 8(목) 10:00	4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계속> ○ 총무국(총무과, 회계정보과)	소회의실
2. 9(금) 10:00	5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계속> ○ 총무국(지방세과,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소회의실
2. 10(토)		휴 회(토요일)	
2. 11(일)		휴 회(일요일)	
2. 12(월) 10:00	6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계속> ○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환경미화과)	소회의실
2. 13(화) 10:00	7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계속> ○ 주민생활지원국(문화체육과) ○ 기획홍보실	소회의실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 14(수) 10:00	8	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국민체육센터 건립, 의안번호 제40호, 총무국)	원안가결
		2. 울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7호, 기획홍보실)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6호, 기획홍보실)	원안가결
		4.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4호, 기획홍보실)	원안가결
		5.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5호, 기획홍보실)	원안가결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 25 (문석주의원 외 2인 발의)
- 심의일자 : 2007. 2. 5 (제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매년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정례회 시 실시하여 집행부의 당초예산 편성 및 주요업무 계획 등에 감사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 때 실시함으로 인하여 감사기간 및 하계휴가 등을 감안하여 1차 정례회 집회일을 7월 1일로 개정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나. 주요내용

-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7월 1일로 정함(안 제4조)
-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19조4항에 의하며 1차정기회는 6월, 7월에 2차정기회는 11월, 12월중 집회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 1차 정례회의시는 결산승인 건, 2차 정례회의시는 다음연도 당초예산안을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 이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2차 정례회의시 실시하므로 지적 및 시정 사항에 대하여 당초 업무계획 및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 행정사무감사를 2차 정례회의시 실시하던 것을 1차 정례회시로 변경하고 개최시기는 매년 7월1일자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 25 (문석주의원 외 2인 발의)
- 심의일자 : 2007. 2. 25 (제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매년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실시하던 행정

사무감사를 제1차정례회 시 실시하여 집행부의 당초예산
편성 및 주요업무계획 등에 감사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되
는 조례 안으로 지방자치법제38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2차 정례회의시에 실시하던 것을
-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에 따른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업
무량이 2차 정례회의에 집중적으로 몰려있어 업무의 안배 차원
에서 행정사무감사는 1차정례회의 시에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
하는 내용임으로
-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4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07. 2. 14 (제95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당초 국민체육센터 건립 대상지를 호계동 265-2번지로 '03.

12. 3 의회의 의결을 얻었으나, 건립대상지 및 사업규모 등을 변경하고자 변경 계획을 수립,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변경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후	비 고
위 치	호계동 265-2번지	신천동 580번지 일원	
취득부지	1,983㎡(600평)	4,705㎡(1,423평)	
건 물	2,310㎡(699평) 지상 1층	4,029㎡(1,221평) 지하 1층, 지상 3층	
사 업 비	4,000,000천원	6,754,190천원	
사업기간	2004년 ~ 2006년	2007년 ~ 2008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서울올림픽을 기념하고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 건축비 명목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30억원 지원하겠다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발표에 의해
- 2003년도에 농소1동 호계동 265-2번지 내 건립키로 울산광역시에 건립 신청하고 의회 승인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게 되었으나
- 토지소유자의 매각 반대로 인하여 인근 호계동 723-5번지 일원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토지매입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 부지 매입비 25억원 확보가 지연되어 오던 중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시한을 2007년도 7월까지 착공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 2006년도 현 위치 타당성 재검토 결과 접근성 불편 및 토지 보상비 구비확보가 복구 재정상 2007년도 당초예산에 25억 반영이 어려워서
- 시에서 시행하는 근린공원 지역 내 사유지로 이전하면 부지 매입비가 저렴하고 매입비 지급에 있어도 년차별 상환이 가능하였으며,
- 변경하고자 하는 신천동 580번지 일원 근린공원 지역은 또한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동시 공원까지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4년 동안 호계동 주민들은 호계동에 건립될 것으로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천동 근린공원내로 이전하게 된 사유를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주민이 많습니다.
- 담당부서에서는 반사회, 통장, 자치위원회 등 각종 회의 시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를 구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며
- 저렴한 토지매입과 접근성이 편리한 신천동 근린공원지역 내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 29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07. 2. 14 (제95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범위 중 운영비는 보조금의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50% 제한 규정을 둠으로써 보조금 지원의 원칙이 불합리하게 적용·운영되는 사례를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제명 「울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울산광역시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로 변경함

나)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2005. 8. 4공포, 2006. 1. 1시행)에 따라 본 조례에 인용되는 법령을 조정(안 제1조)

다) 보조금의 지원범위 중 단서조항의 내용에 운영비 지원은 보조금의 50%이내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단체가 운영비를 지원받기 위해 단체성격과 맞지 않는 다수의 사업을 신청하는 등 지원·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는 각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범위에 있어 운영비 지원은 50%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 때문에
- 각 사회단체가 운영비지원을 받기위하여 단체의 성격과 맞지 않는 사업을 신청하는 등 운영상 불합리한 것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대하여는 매우 고무적인 내용으로 판단되나,
- 지원의 범위가 사회단체 사업비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는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해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는 내용은
- 모든 사회단체가 해당 관련 사업을 하지 않아도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별 다름이 없으므로 현재 운영비 지원 기준

을 마련하여 지원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 그러나 점진적으로 사회단체 운영비 과다 지원이 우려되므로 미연에 방지를 위하여 운영비에 대하여는 자체 운영비 지급기준을 강화하여 지원에 신중을 기하였으면 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 29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07. 2. 14 (제95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현 조례에 ‘안전제출 부서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안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는 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모순이 있으므로 구정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당연직 위원 중 ‘안전제출 부서과장’을 삭제하고 각 국장과 기획홍보실장, 여성과장 1인으로 함(안 제2조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의 구정조정위원회 안전 처리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전 제출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시키자는 내용임으로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 현 조례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며, 위촉위원은 각 분야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
-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과 기획홍보실장, 안전 제출 부서장 및 여성 과장 1인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 담당 부서장이 위원으로 있을시 필요성의 논리에 현혹 된다면 타 위원들이 공정한 심의에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 안전 제출 부서장은 안전에 대하여 설명만 하고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위원회의 구성 및 공정한 심의에 있어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 29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07. 2. 14 (제95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조직개편 이후 행정자치부 지적사항인 120즉시민원처리 사무를 재분장함에 있어 소단위사무가 조례에 명시됨으로 인하여 부서간의 단순한 사무조정 시 원활한 조정이 어렵고 또한 소단위사무는 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20즉시민원처리” 사무 삭제(안 제5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 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서를 통합하여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난 해 6. 19자 조례388호로 개정 한 조례로서
- 주민생활지원과 분장사무 중 120즉시민원처리 사무가 소 단위사무로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에 명시되어야 함에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이를 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조 2항의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분장 사무 중 120 즉시민원처리사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 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 29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07. 2. 14 (제95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각종 신규사무 발생에 따른 인력보강지침과 부서별 업무추진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가) 정원의 총수 470명 $\Rightarrow$ 477명으로 조정

- 집행기관의 정원 457명 $\Rightarrow$ 464명으로 조정

나) 3조와 관련된 별표의 직급별 정원 추가 및 상계조정

- 7명(7급 5, 8급 2) 증

- 8급 Δ 1명 $\Rightarrow$ 6급 1명 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 안은 민선3기를 맞이하여 각종 신규사무 등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부서 간 업무 조정에 따른 전담인력을 확보 배치하고자 직급별 정원 추가 및 상계조정 하는 내용으로
- 현 정원 470명에서 477명으로 7명을 증원하며 이 중 6급 1명, 7급 5명, 8급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 과별 증감 내용을 보면 경제교통과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업무 사무위임에 따른 행정7급 1명과 신노사협력 업무 전담 요원으로 공인노무사 계약직(7급 상당)을 채용하고자하는 내용이며
- 건설과 하수도업무는 담당의 필요성을 느끼어 2004년도 하수와 치수업무를 분리하였는데 2006년도에 와서 하수업무 일부가 재난관리과로 이관되어 업무량 축소되었다는 이유로 치수담당과 통합하고는 1년 만에 다시 현재 2명의 전담직원으로 하수업무량이 과중하다며 토목직 8급 1명 보강 내용은 당초부터 조직부서의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며
- 민원지적과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 4. 5부터 시행됨에 따라 후속 업무처리를 담당할 지적 7급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 주민생활지원과는 조직개편에 따른 동행정 업무와 120기동대업무

일부가 총무과로 이관되면서 업무와 같이 직원 2명도 총무과로 배치하고 복지서비스연계업무는 전담요원으로 사회복지사 7급 1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 복지서비스과는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또는 복지 관련시설물 점검 등 시설물관리에 건축직이 필요 함에도 배치가 되지 않아
- 타 과 건축직에게 협조를 받아 업무 처리하므로 능률 저하와 건축직의 본인의 업무과중으로 타과 업무 협조가 어려운 실정으로 시설물관리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건축직 7급 1명을 증원 한다는 내용이며
- 환경위생과 위생업무에 있어 인·허가 담당자가 지도단속 업무를 병행하므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어 인허가와 단속을 이원화하는 위생담당을 위생관리담당과 위생지도담당으로 분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보건직 8급 1명을 감소하고 보건직 6급 1명을 증원시켜 담당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며
- 청장님(1호차) 운전기사가 업무 수행에 따른 공휴일 출근 등 격무에 비해 수당 등 인센티브 지원이 어려워져 사기저하 등 인사 때 선호하는 기사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으로
- 별정직(8급 상당)을 채용하여 단체장과 임기를 같이 하는 기사를 운영한다면 청장님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초과 되는 기능직 기사는 공공도서관이 준공되면 전환배치 할 계획이라 하니
- 현 상황을 보면 북구 주민들을 위하여 좀 더 앞서가는 행정과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한 전담요원으로 활용 하고자하는 인력보강으로 판단이 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7절 제96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문석주의원 외 2인 발의

나. 개회일시 : 2007. 4. 26 (월) 10:00

다. 회 기 : 2007. 4. 26 ~ 4. 27 (2일간)

라. 부의안건

- 울산광역시북구장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96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울산광역시북구장수수당지
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제96회 임시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각종 시

책과 사업들이 활기차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보람된 의정활동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4월 26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유 재 건

3. 의사일정

제9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2007. 4. 26~2007. 4. 27(2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7. 4. 26 (목)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본회의장
	1	1. 제9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3. 제9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7(금) 10:00	2	1. 울산광역시북구장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9호, 주민생활지원국)	원안가결
		2.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호, 총무국)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1호, 총무국)	원안가결
		4. 울산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2호, 기획홍보실)	원안가결
		5. 울산광역시북구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53호, 기획홍보실)	원안가결

4. 주요안전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장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4. 19. (구청장)
- 심의일자 : 2007. 4. 27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우리 구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장수수당을 도입하여 9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월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 타 지자체에 비해 금액이 적어 수당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노인복지 선진지로서의 자부심이 위축되고 있어 장수수당의 지급액 인상을 통해 선진지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급대상 : 연령이 만 90세 이상인 사람(현행유지)
- 지 급 액 : 월 2만원 ⇒ 월 3만원(안 제5조)
- 대상자 관리방법 :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작성·비치 ⇒ 전산자료로 갈음 가능(안 제7조 단서조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대한 책임행정을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 2004년도에 사회복지분야 특수시책으로 선정하여 제주도에 이어 전국지방자치단체로서는 두 번째로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하여

- 2005년도부터 주민등록상 만90세가 넘는 어르신들에게 월 2만원씩의 장수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며
- 현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3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월지급액은 평균 2~3만원 정도이며
- 우리 울산은 남구가 2006년부터 만90이상 99세까지는 월 2만원만 100세 이상은 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 울주군은 만85세부터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중구와 동구는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급 연령 하향 조정 및 지급액 인상건의 요구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집행부의 검토한 결과를 보면
- 대상을 만85세로 하향 조정할시 지급대상이 100명에서 400여명으로 증가하고 매년 평균 수명 연령도 증가 추세에 있어 재정여건상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 연령은 기존 만90세로 하고 지급금액만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임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4. 19. (구청장)
- 심의일자 : 2007. 4. 27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단서조항“다만, 가감 조정한 세율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가 개정(신설)되어 조례에서 정한 탄력세율 또한 당해연도에 한해 적용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2007년도에 적용할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탄력세율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현행“1,000분의 2”에서 기존납세자와 신규 납세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행정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현행과 같이“1천분의 2”로 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자치단체의 형평성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조정세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정된 세율은 변경 전까지는 계속 적용이 가능하였으나
- 2006. 9. 1자 같은 법 조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다만, 가감 조정한 탄력세율은 당해연도에 한해서 적용하도록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 2004년부터 부과한 대한항공기 재산세는 지방세법의 과세 표준액은 1,000분의3을 부과토록 되어있으나 탄력세율을 적용 1,000분의2로 적용 부과하여 왔으며
- 세수증대 차원에서 2006년도 아시아나 항공사를 방문 세율이 수

도권보다 낮게 적용하고 있다는 홍보로 아시이나 항공기 1대의 정치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 북구로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2007년부터는 2대를 부과하게 되었으며

○ 자치단체별 항공기 적용세율을 보면

구분	표준세율	자치단체별 탄력세율 적용							비고
		서울 강서구	부산 강서구	인천 중구	울산 북구	대구 동구	광주 광산구	제주시	
2006년	1,000분의3	2.5	2.5	2.5	2	2	2	1.8	
2007년		2.5	2.5	2.5	2	2	2	1.8	
대수		150	20	57	2	3	4	12	

※ 2007년도 1,000분의2로 적용 부과예상액 : 60,739천원

- 대한 항공 : 22,613천원
 - 재산세 18,844천원 + 교육세 3,769천원,
- 아시이나 항공 : 38,126천원
 - 재산세 31,772천원 + 교육세 6,354천원

- 현재 항공기 재산세 부과 조건은 항공법에 의한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에서 부과 할 수 있으므로
- 지방의 여건이 비슷한 대구, 광주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할 시 항공기 정치장의 소재지를 이전 변경도 배제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 2007년도에는 대구, 광주와 같은 세율인 1,000분의2로 부과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아시이나 항공사와도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 2006. 9. 1자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이제는 매년 조례를 개정하여야하는 번거로움도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필요에 따라 탄력세율로 조정 할 수 있다는 좋은 점도 있으므로
- 서울, 부산, 인천보다 0.5정도의 차이를 두고 있으니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대구, 광주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4. 19. (구청장)
- 심의일자 : 2007. 4. 27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주택을 소유하고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물권으로 설정된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경감하고자 함. (안 제5조의1)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경감하고자 함.(안 제21조의1)
-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울산항만공사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함. (안 제21조 의2)

나. 주요내용

-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이고, 소유하는 주택이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안 제5조의1)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안 제21조의1)
-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울산항만공사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 부동산 및 선박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안 제21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07. 4. 11.자 대통령령 제20002호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 「항만공사법」 일부개정 내용이 지방세 감면에 대한 개정 내용으로
- 이에 따른 울산광역시북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에 추가 신설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내용에 대하여
 - 만65세 이상 고령자 중 연간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이고 소유주택 연면적이 85㎡(25평)이하이면서 주택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한하여 금융기관에 저당권 설정하고 연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금방식으로 노후 생활자금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재산세를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는 내용이며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내용에 대하여는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이전 공공기관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 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50을 경감한다는 내용이며
- 울산항만공사에 대한 재산세 면제에 대하여
 -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울산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 후 납세의무자가 성립되는 날로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 우리나라도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주택은 있으나 연간 소득이 적어 빈곤하게 살고 있는 고령자를 위하여 정부에서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담보 연금대출을 받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제도로 사망할시 주택은 금융기관으로 귀속되는 제도로 재산세 25% 경감과

○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이전 및 항만공사 지방 이전시 일정기간 재산세 면제 및 경감 조치를 한다는 내용임으로 지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4. 19. (구청장)
- 심의일자 : 2007. 4. 27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제7846호, 2006. 1. 11)에 따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하한연령을 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의 감사 청구권자의 연령을 종전의 20세에서 19세로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 의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의 수 이상을 연서를 받아 시·도는 주무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청구 할 수 있는 제도로써
- 종전에는 연서 할 수 있는 연령을 20세 이상 주민으로 하였으나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 제7846호(2006.1.11)에 의하여 주민 연서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한조정 법률이 확정됨에 따라서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 본 조례안도 법령에 맞게 연서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 안임으로 원안대로 가결함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5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4. 19. (구청장)
- 심의일자 : 2007. 4. 27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주민생활 및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을 수립할 때 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자문으로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정책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 구민만족행정을 구현하고자 협의회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가) 협의회 목적과 기능(안 제1조, 제2조)
 - 구의 주요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조언
 - 새로운 정책발굴 및 대안 제시
- 나) 협의회 구성과 임기(안 제3조, 제4조)
- 다) 협의회 회의 운영방법(안 제7조)
- 라) 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소관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구민들의 소리와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의견, 조언, 권고, 건의 등을 수렴하여 구민이 바라는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 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

- 울산광역시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주요정책 수립에 전문가를 통한 자문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는 물론 구민과 함께하는 북구 행정을 펼치고자 제정한 조례로서
- 지난 해 제94회 2차 정례회시 제출된 조례 안으로 그 당시 구성위원수를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3개 분과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으로 심의를 한 바 있으나
- 협의회 위원수 과다로 수당 지급에 따른 예산낭비 요소가 있으니 위원수 축소에 따른 수정동의안 발의와 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등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서 표결 처리로 부결된 조례 안입니다.
- 이번에 재상정하면서 수정된 내용을 보면 위원수를 30명 이내를 20명 이내로 축소하였고 분과위원회도 3개의 분과위원회에 분과별 인원을 9인 이내를 7인 이내로 수정하고, 위원회 명칭도 기획자치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를 둔다고 하였으나, 문화복지위원회를 교육복지위원회로 수정 상정된 조례안 임을 감안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8절 제97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이은영의원 외 2인 발의

나. 개회일시 : 2007. 5. 29 (월) 10:00

다. 회 기 : 2007. 5. 29 ~ 6. 4 (7일간)

라. 부의안건

-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울산광역시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2. 개회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97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다가오는 정례회에서 다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승인, 조례 심의와 함께 의회에서 처리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주민의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여 내실 있고 정책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신속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개회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건강과 성취의 기쁨이 늘 함께하는 보람된 날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5월 29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유 재 건

3. 의사일정

제9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2007. 5. 29~2007. 6. 4(7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5. 29(화)		개 회 식	
10:00 개회식 직 후	1	1. 제9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3.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59호) - 제안설명(부구청장) - 4. 제9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본회의장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5.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58호)	
		6.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54호, 기획홍보실)	원안가결
		7. 울산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5호, 주민생활지원국)	원안가결
		8. 울산광역시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6호, 총무국)	원안가결
		9.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57호)	
5. 30(수) 10:00	2	1.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기획홍보실 ○ 주민생활지원국	소회의실
5. 31(목) 10:00	3	1.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총무국 ○ 도시경제국	소회의실
6. 1(금) 10:00	4	1.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보건소 ○ 의회사무과 ○ 계수조정	소회의실
6. 2(토)		휴 회(토요일)	
6. 3(일)		휴 회(일요일)	

6. 4(월) 10:00	5	1.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결의안(유인목의원 외 6인 발의) 2.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종합심의의결	원안가결 본회의장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5. 11. (구청장)
- 심의일자 : 2007. 5. 29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평생교육법」 제9조에 의거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와 장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평생교육도시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2장)

(1) 기 능(안 제5조)

-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평생교육에 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구성 및 임기(안 제6조 및 제7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과 전문분야 대학교수, 학교장 등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3) 회 의 (안 제9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접수하였을 경우
- 재적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나) 평생교육센터(안 제3장)

(1) 기 능(안 제12조)

- 평생교육 정책개발과 연구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 등
-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 평생교육 관련 실무자에 대한 교육과 연수
- 자율적인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운영(안 제13조)

- 평생교육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교육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운영·위탁 할 수 있음.

(3) 운영요원 등(안 제14조)

-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센터, 평생교육사 및 직원을 배치할 수 있음.
-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업무담당 과장이 평생교육센터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4) 운영비 등 지원(안 제15조)

-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5) 수강료 징수 등(안 제16조)

- 평생교육센터가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평생교육법」 제9조에 의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평생교육사의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로 국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10년까지 100여개 기초자치단체를 평생학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습도시로 지정코자 하는 정책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 선정된 자치단체는 3년 동안 매년 2억 원씩 6억원의 국비지원과 연 1회 평가를 통하여 우수단체는 특별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정책사업이며
- 현재 6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57개 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상태이며
- 우리 울산은 울주군이 2006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생활지원과내 평생학습담당이 2006. 12월말에 신설되었고 관련조례는 2006. 9월말에 제정되었습니다.

중구는 2006년도에 예비도시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조직은 문화체육과내 평생학습담당이 2006. 11. 20일자로 신설되었고 관련조례는 2007. 5. 14일자로 공포되었으며 동구는 금년도 우리와 같이 신청 준비 중에 있는 상태이나 조직은 2007. 1. 1일자로 문화체육과내 평생학습담당을 신설하였고 관련조례는 지난 주 5. 22일자로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듯이 모든 국민은 배움의 의무와 권리가 있으며 학문에 대한 도전은 끝이 없으므로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들을 위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므로
- 꿈과 미래가 있고 젊음이 넘치는 북구로 나아가기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선정이 필수적 과제임으로
- 선정되기 위해서는 1차 기준인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합니다.
- 이번 기회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다면 북구의 위상도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5. 11. (구청장)
- 심의일자 : 2007. 5. 29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향토사랑 정신을 배양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숭고한 애국정신을 선양함은 물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가) 공훈선양 및 예우(안 제5조)

- 국경일, 기념일 등 주요행사 국민의례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실시
- 각종 주요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및 좌석배치
- 지역 인물론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 수록
- 보훈관련 기념일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격려
-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 시행·재정적지원

나) 보훈단체 운영 및 사업 지원(안 제6조)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 단체운영 및 회원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사업
- 호국 및 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현충탑 참배 및 전적지 순례
- 불우 및 고령회원 위문·위안행사
- 보훈단체 정기총회 및 안보결의대회

다)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지원(안 제7조)

-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 구 및 그 직속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 사역 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우선 채용
- 보훈관련 행사 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 국경일, 현충일 등 각종 보훈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및 격려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행사 지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제18조, 제19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가 미흡하여 지원이 잘 이루어 지지 않아 국가보훈가족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애국심까지 잃어가고 있는 실정임으로
-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족 또는 가족들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 할 수 있도록 지원과 예우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
-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며 현재 전국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설치 시행중에 있는 실정임으로

- 국가를 위해 희생하였거나 공헌한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삶에 대한 예우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5. 14. (구청장)
- 심의일자 : 2007. 5. 29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05. 7. 1.부터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대회의실 사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회의실 사용시간 조정(안 제2조)
 -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토요일이 전면휴무가 되고, 동절기 퇴근시간이 1시간 연장됨에 따라, 평일 및 토요일·공휴일 대회의실 사용 시간을 일부 개정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 “주 근무시간을 40시간이상 초과 할 수 없다” 로 개정됨으로
- 2005. 11. 14자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주 40시간으로 토요일 휴무와 하절기에는 09:00~18:00(3.1~10.30)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까지, 동절기에는 09:00~17:00(11.1~2.28)까지 근무토록 한 것을 구분 없이 근무시간을 09:00~18:00까지로 조정하였고

- 2005. 6. 30까지는 매주 토요일을 격주로 휴무하였으나 7. 1부터는 토요일을 전면 휴무하게 됨으로
- 본관 2층 대회의실 사용시간을 토요일에는 13:00~17:00까지 사용토록 한 것을 휴일과 같이 10:00~17:00까지 사용토록 함과
- 동절기 하절기 구분 없이 평일에는 18:00~22:00 사용하도록 하는 일부 개정조례 안으로
- 대회의실 사용시간을 확대하여 주민들에게 사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임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6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5. 29. (유인목의원 외 6인 발의)
- 심의일자 : 2007. 6. 4 (제9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월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등 자영업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로서 중소 자영업자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고,
- 신용카드 사용 확대에 따라 중소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가

맹점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신용카드사들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부과체계는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 이런 상황에서 중소 자영업자 대책의 일환으로서 부당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해소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입법 촉구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임.

3)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9절 제98회 제1차정례회

1. 개회이유

가.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4조(정례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집회)

나. 개회일시 : 2007. 7. 2 수 10:00

다. 회 기 : 2007. 7. 2. ~ 7. 23 (22일간)

라. 부의안건

-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결산검사 대표위원)
- 울산광역시북구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2006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9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
습니다.

2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당면한 안건을 처리하
게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4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가 출범한 지도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들은 1년 전 이곳에서 의원 선서를 하면서 다짐했던
초심의 마음을 유지하면서 지역 발전의 무한한 봉사자로서 지역주민들
의 이해갈등을 통합, 조정하고 비전 있는 정책 개발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15만 구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의기관의 역할과 책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문제는 구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보다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모습으로 구민의 가슴에 희망과 감동을 줄
수 있는 북구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단편적인 잘못을 가
려내기 보다는 종합적이며 거시적인 차원에서 구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
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미래 지향적이며 정책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지난 한 해 동안 집행기관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의 예산집행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써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안 제시와 더불어 새로운 정책 자료가 발굴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 지적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불용액을 비롯하여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이 하나하나 개선되어 시민의 세금인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절기를 맞아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성취의 기쁨이 함께하는 보람된 날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7월 2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유 재 건

3. 의사일정

제9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2007.7.2~7.23(22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7.7.2 (월)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원안가결
	1	1. 제9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4.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 5. 제9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 6. 울산광역시북구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7.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65호, 총무국)	원안가결
7.3(화) 10:00	2	1. 울산광역시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6호, 주민생활지원국)	수정가결
		2.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 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67호, 주민생활지원국)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8호, 도시경제국)	원안가결
		4. 울산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69호, 도시경제국)	원안가결
		5.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70호, 도시경제국)	수정가결
		6.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71호, 기획홍보실)	원안가결
7.4(수) 10:00	3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 기획홍보실 ○ 총무국(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7.5(목) 10:00	4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 총무국(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7.6(금) 10:00	5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 주민생활지원국(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 환경미화과) ○ 보건소	
7.7(토)		휴회(휴무토요일)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7.8(일)		휴회(일요일)	
7.9(월) 10:00	6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 도시경제국(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7.10(화) 10:00	7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 도시경제국(건축주택과, 생명산업과, 재난관리과) ○ 의회사무과	
7.11(수)~ 7.20(금)		행 정 사 무 감 사 (세부 감사일정 붙임 참조)	
7.23(월) 10:00	8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 종합의결 2. 2007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07년 행정사무감사 일정

2007.7.11~7.20(7일 간)

구 분 일 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고
7.11(수)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증인선서 -국·소·실·과·동장 ○도시경제국 · 도시녹지과 · 경제교통과 · 건설과	
7.12(목)	10:00	"	○도시경제국 · 건축주택과 · 생명산업과 · 재난관리과	
7.13(금)	10:00	*대상사무현장	*현장 확인	붙임참조

일 시	구 분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7.14(토)	감사중지(토요일)			
7.15(일)	감사중지(일요일)			
7.16(월)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총무국 · 총무과 · 회계정보과 · 지방세과	
7.17(화)	감사중지(공휴일)			
7.18(수)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총무국 · 민원지적과 · 환경위생과 ○주민생활지원국 · 주민생활지원과	
7.19(목)	10:00	"	○주민생활지원국 · 복지서비스과 · 문화체육과 · 환경미화과	
7.20(금)	10:00	"	○보건소 ○기획홍보실 ○의회사무과	

※일정 및 장소, 대상기관은 변경될 수 있음.

4. 주요안전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4호)

1) 심의경과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6. 26.(구청장)
- 심의일자 : 2007. 7. 2.(제98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구보명칭 및 기자명칭을 민선3기 구정목표와 부합되도록 변경하고, 원고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보의 제호“희망북구”를 민선3기 구정방침에 부합되게 “행복일번지 울산북구”로 변경함.(안 제2조제1항)
-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구보의 범위를 소식지와 인터넷전자 신문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2항)
- 구보발행 관련 명예기자 명칭을 변경함.(안 제6조제1항)
 - “명예기자” ⇒ “객원기자“
- 정례간담회 개최, 연말 표창 등 우수객원기자 동기부여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안 제8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조례는 구보명칭과 기자명칭을 민선 3기의 구정목표인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에 부합되도록 변경하고자하는 내용 등으로
- 지난해 8. 30부터 9. 6일까지 북구청 직원대상으로 공모한 결과가 “행복 일번지 울산북구”로 결정 변경하는 것과
- 구보의 발행 범위를 소식지로만 하던 것을 인터넷 보편화에 따

른 인터넷 전자신문까지 확대 시행과 매월1회 발행에서 분기1회로 축소하는 내용이며

- 구보소식지에 전문성이 조금 부여되는 명예기자의 명칭보다 구민의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는 뜻으로 객원기자로 변경하여 20명 이내 위촉과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 객원기자 공모결과 본인 신청 7명과 동별 추천1명 등으로 총 15명의 객원기자를 위촉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 안 등으로
- 조금의 아쉬움이 있다면 구민을 포함한 좀 더 폭 넓은 공모로 통하여 구보 명칭을 결정하여 반복적으로 바꾸는 것보다
- 소식지 명칭도 복구를 상징하는 브랜드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6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6. 26.(구청장)
- 심의일자 : 2007. 7. 2.(제98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제정(2006.4.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7.1.19)됨에 따라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나) 주요골자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통관련업자 신고 또는 등록신청”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등록)”로 변경함. [별표 1중 7. (3)]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통관련업자 변경신고”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경 허가 또는 변경신고(변경 등록)”로 변경함. [별표 1중 7. (4)]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증(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징수규정을 신설함. [별표 1중 7. (15)] - 1건 5,000원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2006. 4. 2일자 폐지되고 개별사업단위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2006. 4. 28자 각각 제정되면서
- 변경된 내용을 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중 일반게임장의 등록 신고제가 허가제로 강화 되었으며,
-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이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개정과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증 재교부 수수료가 신규가 신설되므로

- 여기에 따른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인가, 허가, 등록, 신고, 입찰 등 수수료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 하도록 하므로
-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별사업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6. 26.(구청장)
- 심의일자 : 2007. 7. 3.(제98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조례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연장, 사용료의 세부적인 감면과 위탁 대상 범위를 정하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어린이, 청소년, 어른, 군인, 노인, 공휴일” 등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중 마감시간을 하절기(3월~10월)에는 18:00에서 22:00로, 동절기(11월~2월)에는 17:00에서 21:00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각종 행사의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며, 불우청소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훈대상자·장애인·어린이·군인 또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최상황

는 유공자(국가유공자, 독립 유공자, 5·18민주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 100분의 50 을 감면하는 등 사용료의 감면 대상과 그 비율을 명확히 함(안 제10조)

- 체육시설을 지역 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비영리 법인,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되, 위탁에 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 (안 제18조 및 제18조의2)
- 인조잔디축구장 사용료를 조정하고, 다목적미니구장의 사용료를 새로이 정함(안 별표)
- 인조잔디축구장

(단위 : 원)

축구경기		축구경기외(기타행사)	
평일 (야간)	토·일·공휴일(야간)	평일 (야간)	토·일·공휴일 (야간)
50,000 (60,000)	100,000 (120,000)	100,000 (120,000)	120,000 (150,000)

- 다목적미니구장 등

(단위 : 원)

구 분	평일 (야간)	토 · 일 · 공휴일 (야간)
사용료	2,000 (3,000)	3,000 (4,000)
비 고	○ 1회(1시간), 1,000원미만은 절사하며, 신청 순으로 함 ○ 야간은 조명시설 이용 시로 하며, 청소년(초·중·고)외 어른은 50% 가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조례는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과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자 조례 안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 사용자의 용어를 세분화하여 관리 운영하고자 어린이(7~12세), 청소년(13~18세), 어른(19~64세), 노인(65세 이상), 군인(의무경찰, 전투경찰 포함)으로 구분 하였고
- 체육시설 개방시간을 하절기(3~10월) : 06:00~18:00를 22:00까지로 동절기(11~2월) : 07:00~17:00를 21:0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며
- 사용료 감면을 사용자에게 따라 차등 감면하는 내용으로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과 구를 대표하는 각종 행사 연습 시 전액 감면
 -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어린이, 군인, 유공자 등은 100분의50.
 - 청소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100분의30.
 -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행사시는100분의30 등으로 구분 감면 조항이며
- 인조잔디축구장과 다목적미니구장을 구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조정된 사항으로
-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사용자들의 편리를 제공하고자 개방시간 연장과 감면 혜택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 안 임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 별표 중 2. 운동장(인조잔디축구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 운동장(인조잔디축구장)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최상황

【원 안】

(단위 : 원)

구분	축구경기		축구경기외(기타행사)	
	평일(야간)	토·일·공휴일(야간)	평일(야간)	토·일·공휴일(야간)
사용료	50,000 (60,000)	100,000 (120,000)	100,000 (120,000)	120,000 (150,000)
비 고	○ 1회(2시간), 1,000원미만은 절사하며, 야간은 조명시설 이용 시로 한다. 단, 1시간 사용 시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1/2을 감한다. ○ 사무실소재지가 우리구 관내 있을 경우 거주주민으로 본다(최소감면 30%)			
	○ 신청 시 회원명부를 자료로 감면적용(최초신청·변경시만 제출) ○ 축구경기 시 적용: 우리구 거주주민(주민등록상)회원 비율에 따라 감면 적용 91~100%(80%감면), 81~90%(70%감면), 71~80%(60%감면), 61~70%(50%감면), 51~60%(40%감면), 41~50%(30%감면), 31~40%(20%감면), 30%이하(감면없음) ○ 축구경기 외 기타행사 시 적용: 인원수에 따라 할증 적용 100~299명(60%할증), 300~499명(70%할증), 500~999(80%할증), 1,000~1,999(90%할증), 2,000명이상(100%할증) ※ “거주주민”이란 주민등록상 체육시설사용허가 신청당일 현재 3개월 이전에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 “소재지사무실”이란 체육시설사용허가 신청당일 현재 3개월 이전에 북구 지역내 사무실 소재지 주소가 등재된 경우를 말한다.			

【수정안】

(단위 : 원)

구 분	운동장 이용 시(시간당)	
	평일 (야간)	토·일·공휴일 (야간)
사용료	25,000 (30,000)	50,000 (60,000)
비 고	○ 신청 시 회원명부를 자료로 감면적용(최초신청·변경시만 제출) ○ 운동장 이용 시 적용 : 우리구 거주주민(주민등록상)회원 비율에 따라 감면 적용 • 91~100%(80%감면), 81~90%(70%감면), 71~80%(60%감면), 61~70%(50%감면), 51~60%(40%감면), 41~50%(30%감면), 31~40%(20%감면), 30%이하(감면없음) ○ 인원수에 따라 할증 적용 • 100~299명(60%할증), 300~499명(70%할증), 500~999(80%할증), 1,000~1,999(90%할증), 2,000명이상(100%할증) ※ “거주주민”이란 주민등록상 체육시설사용허가 신청당일 현재 3개월 이전에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 울산광역시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6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6. 26.(구청장)
- 심의일자 : 2007. 7. 3.(제98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 조성면적 30만 m^2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지역 발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도록 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30만 m^2 이상의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폐기물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함.
- 대상폐기물 : 소각 및 음식물류 폐기물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계산방법 : ①+②
 - (1) 시설 부지매입 비용(①)
 - [1일 발생 폐기물량(톤)×변동계수] × 톤당 소요부지면적(m^2) × 당해 택지 등의 m^2 당 조성원가
 - (2) 시설 설치비용(②)
 - [1일 발생폐기물량(톤)×변동계수] × 톤당 설치단가
- 납부비용 산정기준
 - (1) 1일 평균 발생 폐기물량에 변동계수(1.3이상) 적용
 - (2) 폐기물 1톤당 소요 부지면적 : 소각 - 180 m^2 이상,
음식물류 - 80 m^2 이상
 - (3) 톤당 설치단가 등 설치비용
 -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연구 용역결과 및 타 지자체 설치비용 적용
- 시설의 형식과 방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함

- 사업시행자가 사업 착공 전 비용 납부계획서 제출
- 설치비용은 준공 12개월 전까지 4회 이내 분할납부 가능
 - 다만, 납입 보증보험을 통해 납부 가능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법률」이 2007. 1. 3차 개정되므로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등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30만 제곱미터)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 납부방법은 개발사업 준공12개월 전까지는 완납하여야 하며 4회 이내로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납입보증보험을 통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금액의 100분의20은 납부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잔액은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입보증보험증서를 관할 시·군 및 구청장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장은 납부 받은 금액은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최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 및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므로

-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면 현재 우리구의 해당되는 개발지구는 호계·매곡도시개발 사업지구(717천㎡), 산하도시개발 사업지구(996천㎡), 송정택지개발사업지구(1,449천㎡)가 적용 대상으로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장내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러지 못할 경우는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할 자치단체 산정 기준 의한 금액을 납부토록 하는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6. 26.(구청장)
- 심의일자 : 2007. 7. 3.(제98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경형자동차의 주차장 이용요금 경감률을 확대 조정하여 경형자동차 보급을 증대시키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경형자동차의 주차요금 경감률을 50%에서 60%로 조정하여

경형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안 제6조제4항 제2호)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조정과 각호의 사용방법 조정(안 제5조, 안 제6조제3항~제4항)

※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공포 : 2007. 1. 11.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정부에서는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경형자동차 주차장 이용요금 경감률을 확대하여 경형자동차 보급을 증대시키고자
- 공영주차장 경형자동차 주차요금 경감률을 최소한 60%이상 경감 조정과 민영주차장은 민간자율로 결정하고 있는 이용요금을 경형자동차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최대한 경감하도록 행정지도 하라는 건설교통부의 권장사업이므로
- 현행 경형자동차(800cc이하) 주차요금이 1시간당 500원(50%경감)에서 400원(60%)으로 100원이 경감될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경형자동차 확대 보급에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나,
- 경형자동차 주차이용료를 현행 50%에서 60%경감은 소유자들에게는 가계의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6. 26.(구청장)
- 심의일자 : 2007. 7. 3.(제98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최상황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한 도로점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2007년1월5일 「도로법 시행령」 중 점용료 산정기준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울산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점용료 산정기준을 합리적 조정(안 별표 1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호)
- 전주·가스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공시지가의 변동에 따라 점용료가 인상되고 있는 진·출입로의 정율제 도로점용 물건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점용료 부과·징수를 현실화 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도로법 시행령」이 2007. 1. 5일자 일부 개정된 사항으로
- 매년 공시시가는 인상되어 도로 점 사용료는 인상이 되는데, 전주, 가스관 수도관 등에 대한 점용료는 정액제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면서
- 1993년도 이후 한번 도 조정되지 않아서 형평성에 맞게 건설교통부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 별표 2의 점용료를 개정하여
- 전국 동일한 점용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시달하므로 여기에 맞추어 「울산광역시북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자 하는 내용임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7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6. 26.(구청장)
- 심의일자 : 2007. 7. 3.(제98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재해발생 시 자원봉사 등 주민들의 직·간접적 참여가 늘고 있어, 정부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난분야에 대한 주민참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율방재조직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방재단의 구성(안 제3조)
 - 방재단은 단장 1명, 간사 1명, 단원으로 구성된다.
 -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다.
- 방재단의 임무(안 제7조)
 -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분야에 활동
 -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등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 운영경비 등 재정적 지원(안 제10조)
 - 방재단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등
- 교육 및 훈련(안 제13조)
 - 단장은 연 1회 4시간 이상 재난관련 전문교육 이수
 - 단장, 동단장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 실시
 - 훈련은 연 1회 4시간 이상 실시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2005. 1. 27자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개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토록 함과
- 2006년도에 소방방재청에서 전국 61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지역을 지정 운영하였으며
- 우리 울산은 남구, 울주군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중구는 자체방재단을 구성하여 금년 3월에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동구도 우리와 같이 추진 중에 있으며
- 재해발생시 각 단체 및 주민들 스스로 직·간접적 참여가 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에서 관리 통제하는 것 보다 주민들로 하여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하는 것이 주민참여의 효과를 극대화 할 것으로 판단되어 구성·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 구성원을 보면 보통 회장(단장), 부회장(부단장), 총무(간사)로 구성 되어야 회장 유고시 업무대행이 자동적으로 이루어 질것인데

- 특히 방재단은 재난지역 지원에 있어 단장 유고시 부단장이 있어야 업무의 연속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구성)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② 단장은 단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선출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②-⑧ (제정안과 같음)	제3조(구성) ① ----- 부단장 1명 -----. ② ----- 및 부단장 -----. ②-⑧ (제정안과 같음)
제4조(직무 및 임기)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③ (생 략) ④ 단장, 간사, 동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직무 및 임기) ① (제정안과 같음) ② 부단장은 단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단장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정안 제2항과 같음) ④ (제정안 제3항과 같음) ⑤ 단장, 부단장 , 간사, 동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생 략) ① (생 략) ② 협의회는 단장, 동단장, 방재전문가,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다. ③-⑥ (생 략)	제6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제정안과 같음) ① (제정안과 같음) ②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 동단장, 방재전문가,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다. ③-⑥ (제정안과 같음)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운영경비 등 재정적 지원) ① (생 략) 1.-6.(생 략) 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② (생 략)	제10조(운영경비 등 재정적 지원) ① (제정안과 같음) 1.-6.(제정안과 같음) 7.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② (제정안과 같음)
제13조(교육 및 훈련) ①-② (생 략) ③ 단장, 동단장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⑥ (생 략)	제13조(교육 및 훈련) ①-② (제정안과 같음) ③ 단장, 부단장, 동단장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⑥ (제정안과 같음)

제10절 제99회 임시회

1. 개최이유

가. 소집요구 : 박병석의원 외 2명

나. 개최일시 : 2007. 9. 19. 10:00

다. 회 기 : 2007. 9. 20.(2일간)

라. 부의안건

- 울산광역시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 동명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1호 태풍 ‘나리’ 북상에 따른 비상근무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울산지역에는 큰 피해가 없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나리’의 뒤를 이어 12호 태풍 ‘위파’가 북상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태풍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제99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울산광역시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 심의와 구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게 됩니다.

아무쪼록 제99회 임시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당초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길 잘 다녀오시고 즐거운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9월 19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유 재 건

3. 의사일정

의 사 일 정

제9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7.9.19 ~ 9.20(2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19(수) 10:00		(개 회 식)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최상황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20(목) 10:00	2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11건 《도시녹지과》 : 10건 ○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 ○ 호계·매곡지구 도시개발사업 ○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 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 화봉제2지구 택지개발사업 ○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 ○ 강동리조트 사업(위터파크지구) ○ 상안초등학교 통학로 확보 문제 《생명산업과》 : 1건 ○ 정자항 어촌·어항 복합공간사업	

4. 주요안전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9. 11.(구청장)
- 심의일자 : 2007. 9. 19.(제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공직자윤리법」 개정(2006. 12. 28.)에 따라, 같은 법 제

9조와 제20조의 2의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현실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 변경 (안 제3조제2항 제1호)
 - 「공직자윤리법」 제9조의 개정으로 자치단체장, 의회의원, 4급이상 공직자의 윤리위원회 관할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우리 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을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직자와 퇴직자로 한정
- 지방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조항 신설 (안 제8조의 2)
 -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 2의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사항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2006. 12.28자로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동법 제20조의 2가 개정되므로 여기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먼저 「공직자윤리법」 제9조 개정사항을 보면 종전에는 관할자치단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등록 의무자들을 관할하던 것을 개정으로 인하여
- 자치단체장, 의회의원, 4급 이상 공직자 및 퇴직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이 상향 조정되어,
 - 자치단체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 의회의원, 4급 이상 공직자 및 퇴직자는 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변경 되었으며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 5급 이하 공직자 및 퇴직자는 종전과 같이 관할 자치단체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되었으며,
-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를 보면 현재까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서 매년 정기국회에 전년도와 재산등록사항 등 윤리위원회 활동사항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던 것이 법 개정으로 인하여
- 자치단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었으며,
- 연차보고서 제출사항은 2008. 1. 1.부터 시행한다는,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임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 동명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9. 19.(구청장)
- 심의일자 : 2007. 9. 19.(제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중인 울산진장유통단지 제2단계 개발사업이 10월경 완료됨에 따라 사업부지 내 연암동과 효문동의 일부를 진장동으로 편입하여 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진장유통단지 제2단계 개발사업부지 내 연암동과 효문동 11필지를 진장동으로 편입
- 편입내역

변경 전			➡	변경 후		
법정동	필지	면적(m ²)		법정동	필지	면적(m ²)
계	11	1,585				
연암동	9	1,287		진장동	11	1,585
효문동	2	298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법정 동 명칭변경에 있어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진장유통단지 개발2단계사업이 완료되고 사용자 입주에 맞추어
- 광로 2-1호선(울산중소기업종합지원 센터 ↔ 중부경찰서)도로가 확장개설 되므로
- 법정 동 명칭을 행정구역에 맞추어 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광로 2-1호 도로를 경계로 울산 진장동유통단지에 편입된 연암동 9필지 1,287m²와 효문동 2필지 298m² 등 총 11필지 1,585m²를 진장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임으로
- 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민들에게도 동일 단지 내 2~3개의 법정동이 있다면 혼선이 초래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최상황

□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쇄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7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9. 11.(구청장)
- 심의일자 : 2007. 9. 19.(제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삼한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울산 쇄부리는 철 원료의 생산·제련과정으로 역사적 정통성을 이어받아 온 것으로 울산의 문화 자긍심 고취와 지역문화 계승·발전을 위하여 울산 쇄부리축제를 지원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울산 쇄부리축제를 개최하면서 전 구민의 문화적 역량을 결집하고 철기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울산 쇄부리축제 추진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2조)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시·구의원, 시민단체, 종교·언론·교육·문화예술·경제·여성계 등 각계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행사 관련 공무원과 전문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함. (안 제3조 제1항, 제4항)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고, 부위원장 중 1명은 수석부위원장으로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1명은 위원 중에서 뽑도록 함. (안 제3조제2항, 제3항)
- 위원회의 기능은 축제의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안 제4조)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 간사 1명으로 구성·운영하며, 축제 세부계획수립 및 추진, 홍보 등 축제에 관한 모든 사항 처리, 예산의 집행 등을 관장함. (안 제10조)
- 구청장은 위원회에 축제 소요예산과 위원회 운영, 쇄부리 놀이와 불매소리 전승, 달천 철장 유물수집 보상금 등에 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삼한시대부터 농소 달천 산(山)에서 철을 생산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현대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철광산 지역이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면서 철기문화 흔적의 발자취가 점점 잊어져 가고 있는 시점에서
- 울산이 철기 문화시대의 광산과 제련소가 있었다는 것을 울산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역문화 계승 발전을 위하여
- 2005년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에서 주관하여 울산 쇄부리 축제를 개최하여 왔으나 쇄부리 축제 행사의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서
- 철기문화의 정통성을 계승·발전시키는 구민의 문화적인 역량과 결집 또한 미흡하여 각계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전문가 등을 통하여 울산 쇄부리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 울산 쇄부리 축제 추진위원회를 통하여 계획 및 추진토록 함과 축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전 구민들에게 전수하는 쇄부리 축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하므로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1항 및 동법 제39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강구와 보호육성을 하여야 하며 여기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보조금 지원이 없으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할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울산을 대표 할 수 있는 쇄부리 축제로 계승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철기문화의 정통성을 살리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고 원안가결 함이 타당할 것임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 ·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15명 ----- -----.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7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9. 11.(구청장)

○ 심의일자 : 2007. 9. 19.(제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설립된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하고, 지역고유문화 계발·보존·전승 및 선양 등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을 규정(안 제3조)
- 보조금 신청방법 (안 제4조)
 - 「울산광역시북구보조금관리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안 제5조)
- 보조사업 실적보고 등 (안 제6조)
 - 사업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타 비영리단체와 동일하게 지원을 하여 왔으나
- 문화원은 일반단체와 달리 우리의 문화를 알리고 후손들에게 전수의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우리의 고유문화 계발, 보전관리, 전승 및 선양에 필요한 문화 사업을 개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단체와는 다르므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충분한 이해는 됩니다만
- 북구는 각 단체 등에 보조금 지원을 위한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어 현재까지 여기를 통하여 지원을 받아 운영하여 왔는데 문화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원을 지원하고자 문화원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 각 사회단체에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지원을 받는데 문화원은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도 없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한다는 것은 타 사회단체와 형편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임.

4) 심의결과 : 보류

□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9. 11.(구청장)
- 심의일자 : 2007. 9. 19.(제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유도 및 구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 방식을 현 “월정액”에서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종량제”로 징수방식을 전환·시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납부필증, 납부필증 보관함의 용어 신설(안 제2조제7호, 제8호)
-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변경(안 제5조제2호)
 - 납부필증을 납부필증 보관함에 삽입 후 배출

-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1호)
 - 무상 수거 가축먹이 또는 퇴비 재활용도 처리방법에 포함
- 감량의무사업장 준수사항 신설 (안 제7조제2호)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 처리실적을 작성·보존하고, 연간 발생량 및 처리실적을 구청장에게 제출
-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2항, 제3항)
 - 무상 수거 가축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의 경우 대
행 가능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청결유지 규정 신설
-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제작규격, 설치기준 신설(안 제11조 제2항)
- 납부필증 제작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의 2)
 - 구청장이 제작하고 사양은 규칙으로 정함.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의 3)
- 추진협의회 등 추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의 4)
 - 구 추진협의회, 각 동 추진위원회
- 추진협의회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근거 규정 신설(안 제11조의 5)
-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수수료 및 납부필증 공급·판매가격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 단독, 공동주택, 사업장 용기별 ℓ 당 판매가격 등
- 수수료의 차등 부과·징수 및 징수방법
- 감량화 시책 추진 시 공동주택 수수료 차등 부과·징수 가능
- 공동주택 수수료 부과기준
- 공동주택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 명시
-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방법 신설 (안 제14조의 2)
 - 배출자가 납부필증 직접 구입 부착
 - 납부필증 판매가격에 일정률(5%)의 수수료 부여
-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신설 (안 제17조제1항)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감량의무사업장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매년 늘어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수료를 현재 월정액에서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 하는 방법으로 전환하여 구민 스스로 감량을 할 수 있도록 개정과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로 인하여 늘어나는 재정부담을 최소화 시키고자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주민들 부담률을 인상하고자 조정되는 내용으로
- 인상률은 구 재정의 연약함을 앞세워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 차등 부과 한다는 명분으로 단독주택에 매월 월정액으로 1,000원씩 부과하던 것을 평균 40% 정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매달 정액 1,000원에서 배출량을 기준으로 1,400원정도로 한 달에 400원 증액 부담은 금액으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 현실화 인상 비율로 따지면 과다 인상효과가 있어 충분한 주민 홍보 및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울산시의 타구를 보면 중구가 ㎡당 30원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남구는 공동주택은 제외한 단독주택만 ㎡당 24원, 동구도 ㎡당 24원으로 준비 중에 있는데
- 우리 북구는 ㎡당 48원으로, 남구, 동구에 비해 200%, 중구에 비하면 160%나 높은 수수료 이므로 주민들 납득이 어려우며
- 배출량 감소를 위하여 배출량에 따라 차등부과에 있어 단독주택은 감량에 따라 절약 효과가 바로 가계부에 나타나므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 공동주택은 나 혼자 감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면 전세대가 합심하여야 하는데 현 주민들의 정서상 감량의 효과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동주택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4) 심의결과 : 심의보류

제11절 제100회 임시회

1. 개회이유

- 가. 소집요구 : 문석주의원 외 2명
- 나. 개회일시 : 2007. 10. 16. 10:00
- 다. 회 기 : 2007. 10. 16. ~ 10. 25.(10일간)
- 라. 부의안건
 -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77호)

2. 개회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뜻 깊은 제100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올바르게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불필요하고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수의 이익 보다는 다수의 이익이, 사회적 강자보다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우선 될 수 있는 최적의 예산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

라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답변과 준비로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어 주민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로 우리 북구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며 아울러 우리 의회도 어느덧 100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전의원은 아주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앞으로 좀 더 발전하고 지방자치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수레의 양바퀴 처럼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협력과 적당한 견제가 꼭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구민의 입장에 서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불합리한 것은 서로 조정해 나가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아울러 지금까지 북구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역대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제100회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 북구 발전을 위해 매진합시다.

감사합니다.

2007년 10월 16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유 재 건

3. 의사일정

의 사 일 정

제10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7.10.16~10.25(10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0.16(화) 10:00		(개회식)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개회식 직 후	1	1. 제10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79호) - 제안설명(부구청장) - 4. 제10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10.17 (수) 10:00	2	1.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계속> ○ 기획홍보실 ○ 총무국 ○ 보건소 2.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77호, 보건소)	원안가결
10.18 (목) 10:00	3	1.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계속> ○ 주민생활지원국 ○ 도시경제국	
10.19 (금) 10:30	4	1.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계속> ○ 의회사무과 ○ 계수조정	
10.20(토)		휴회(휴무토요일)	
10.21(일)		휴회(일 요 일)	
10.22(월) 10:00	5	1.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계속> ○ 종합심의의결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0.23(화) 10:00		☐ 현장 활동(도시녹지과) ☐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 강동 리조트 사업(위트파크지구)	
10.24 (수) 10:00		☐ 현장 활동 ☐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도시녹지과) ☐ 달천I-PARK 비소 문제(환경위생과)	
10.25 (목) 10:00		☐ 현장 활동 ☐ 양정동사무소 건립사업(건축주택과) ☐ 개 별 현 장 활 동	

4. 주요안전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7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9.(구청장)
- 심의일자 : 2007. 10. 17.(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도시”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주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환경적 안녕의 증진을 추구하고 건강형평성 보장은 물론 보다 쾌적한 도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의 건강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나) 주요골자

○ 건강도시 기본계획 (안 제3조)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구정목표인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이 으뜸일 것입니다.
- 우리 울산은 산업수도 울산으로 공해와 노사분규가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어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서도
- 하루빨리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는 건강도시로 가는 것이 공해도시의 꼬리표를 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으로 구민들의 행복과 직결되는 건강 도시 북구로 만들겠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시책으로 판단이 되며
- 지금까지는 우리 구민들도 나 자신보다 가족과 국가를 위하여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경제발전을 위하여 앞 만보고 달려와 현재의 우리가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건강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시기이며 여기에 따른 자치단체에서도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과 시기가 됨에 따라
- 구민들을 위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조성과 살맛나는 행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강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시책으로
- 여기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하는 건강도시 11가지 특징을 실천하므로 WHO 건강 도시에 가입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 현재 우리나라는 23개 도시가 가입한 실정이고 우리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내용임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2절 제101회 제2차정례회

1. 개회이유

가.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4조(정례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집회)

나. 개회일시 : 2007. 11. 26. 10:30

다. 회 기 : 2007. 11. 26. ~ 12. 17(22일간)

라. 부의안건

-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94호)
- 2007~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90호)
 - 송정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98호)
 - 농소1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91호)
 - 장등마을 공동주차장 조성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92호)
 - 창평동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89호)
 - 진장유통단지 배수펌프장 시설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97호)
 - 국민체육센터 건립
-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93호)

- 울산광역시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99호)
- 울산광역시북구 동명칭과 구역확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0호)
- 울산광역시북구차상위계층난방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1호)
-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1호)
-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2호)
- 울산광역시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3호)
- 울산광역시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안번호 제84호)
-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4호)
-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안(의안번호 제85호)
- 울산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6호)
-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7호)
-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5호)
- 울산광역시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6호)

2. 개회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무자년(戊子年) 새해를
설계하는 2007년도 제2차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우리 구 의회에 뜨거운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
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헌신적인 의정활동
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앞장서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2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
서는 2008년도 당초예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
도 제3회 결산추경,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특히 2008년도 당초예산안의 경우 내년 한 해 동안의 우리 구 살림을
꾸려 나갈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
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우리 구의 균형적 발전과 구민들의 복
리증진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예산심의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구
민의 기대와 부응에 맞게 사업우선 순위가 정해졌는지, 불필요하거나 시
급하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답변과 준비로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어 주민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의 경우 기존의 투입과 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산출과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별 예산제도로 예산체계가 바뀌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이니만큼 다소의 혼란이 예상됩니다만, 의회와 집행부간 이해와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도 불과 한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 되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정례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유 재 건

3. 의사일정

의 사 일 정

제10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2007.11.26-12.17(22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7.11.26 (월)		개 회 식	
10:00 개회식 직 후	1	1. 제10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94호) - 시 정 연 설(구청장) - 4. 2007~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건 (기획홍보실) 5. 제10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07.11.27 (화) 10:30	2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송정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의안번호 제90호, 총무국)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농소1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의안번호 제98호, 총무국)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장등마을 공동주차장 조성, 의안번호 제91호, 도시경제국) 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창평동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의안번호 제92호, 도시경제국)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진장유통단지 배수펌프장 시설, 의안번호 제89호, 도시경제국) 6.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국민체육센터 건립, 의안번호 제97호, 주민생활지원국)	원안가결 부 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7.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93호, 기획홍보실)	원안가결
2007. 11. 28(수) ~12. 7(금)	3 ~ 10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예산안 심의	
2007.12.10 (월) 10:00	11	1.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 ○ 종합심의의결 2.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 종합심의의결 3.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부구청장) -	
2007.12.11 (화) 10:00	12	1.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81호, 기획홍보실) 2.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82호, 기획홍보실) 3. 울산광역시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83호, 총무국) 4.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안번호 제84호, 주민생활지원국) 5.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4호, 주민생활지원국) 6.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안 (의안번호 제85호, 도시경제국) 7. 울산광역시북구결산감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6호, 의원발의)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7.12.11 (화) 10:00	12	8.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7호, 의원발의) 9.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5호, 의원발의) 10. 울산광역시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6호, 의원발의)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7.12.12 (수) ~12.14 (금)	13~ 15	1.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예산안 심의	
2007.12.17 (월) 10:00	16	1.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종합심의의결	
		폐 회	

2008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일정

제10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2007.11.28~12.10(13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2007.11.28 (수) 10:00	3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 보건소 ○ 기획홍보실	
2007.11.29 (목) 10:00	4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 총무국(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7.11.30 (금) 10:00	5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 총무국(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 주민생활지원국(문화체육과)	
2007.12.1 (토)		휴회 (토요일)	
2007.12.2 (일)		휴회 (일요일)	
2007.12.3 (월) 10:00	6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환경미화과)	
2007.12.4. (화) 10:00	7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 도시경제국(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2007.12.5 (수) 10:00	8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 도시경제국(건설과, 건축주택과)	
2007.12.6 (목) 10:00	9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 도시경제국(생명산업과, 재난관리과) ○ 의회사무과	
2007.12.7 (금) 10:00	10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 계수조정	
2007.12.8 (토)		휴회 (토요일)	
2007.12.9 (일)		휴회 (일요일)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최상황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2007.12.10 (월) 10:00	11	1.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 ○ 종합심의의결 2.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 종합심의의결 3.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제안설명(부구청장) -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일정

제10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07.12.12~12.17(6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2007.12.12 (수) 10:00	13	1.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기획홍보실 ○ 총무국 ○ 보건소	
2007.12.13 (목) 10:00	14	1. 2007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주민생활지원국 ○ 도시경제국	
2007.12.14 (금) 10:00	15	1.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의회사무과 ○ 계수조정	
2007.12.15 (토)		휴 회(토요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2007.12.16 (일)		휴 회(일요일)	
2007.12.17 (월) 10:00	16	1.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종합심의의결	
		폐 회	

당일 의사일정 변경(안)

□ 제10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2007.12.10 (월) 10:00	11	1.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 ○ 종합심의의결 2.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 종합심의의결 3.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102호) - 제안설명(부구청장) -	
		4.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99호, 총무국) 5.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0호, 총무국) 6. 울산광역시북구차상위계층난방비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101호, 주민생활지원국)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4. 주요안전처리 경과 및 결과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9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1. 20.(구청장)
- 심의일자 : 2007. 11. 27.(제101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現송정동주민센터는 국도7호변에 위치하여 주민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며, 인근의 택지개발 시행에 따른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 현재의 열악한 주차시설과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송정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송정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 : 부지 1,697㎡, 건물 1,091㎡ (지상 3층)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현 위치에 있는 송정동 주민센터는 국도7호선을 접하고 있지만 인근에는 주택이 없고 청사만 홀로 있어 주민들의 접근성이 불편하며 승용차로 방문할시 주차시설 부족과 노후 건물로 인한 동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 향후 송정동의 행정수요가 급증하여 중심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봉2택지개발사업지구 내(화봉동555번지일원) 송정동

주민센터 부지로(1,697㎡)매각하겠다는 주택공사로부터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 현 건물은 노후화는 물론 부지 및 주차장 면적도 협소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이 불편하므로 향후 행정수요가 증가되어 인구의 중심부로 자리잡고 주차장 확보가 용의한 곳으로 이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9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1. 23.(구청장)
- 심의일자 : 2007. 11. 27.(제101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농소1동 주민센터 청사는 신축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된 건물로써, 우천시 잦은 누수로 인하여 매년 보수하고 있는 실정이며,
- 특히,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용공간의 협소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소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대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농소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 건 물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최상황

- 본 관 : 지상3층, 연면적 694m²
- 별 관 : 지상3층, 연면적 495m²
- 사 업 비 : 1,640백만 원 정도
- ※ 부 지 : 호계동 874-1번지(1,111m²) - 현 청사 부지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농소1동 주민센터는 지난 경상남도 울주군 시절에 건립된 청사로 노후가 되어 우천 시 여러 곳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 광역시 승격이후 북구가 신개발지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청사는 과거 울주군 농소면 시절에 직원들만 사무관리 할 수 있는 구조형으로 건축하여서 활용의 가치도 떨어짐은 물론 협소하여
- 주민차치센터 운영에도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따라 갈수가 없는 공간부족 현상으로 수용이 불가하여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청사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 늘어나는 행정의 수요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서도 신청사를 조속히 신축하여 주민편의 도모에도 이바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부결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9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1. 20.(구청장)
- 심의일자 : 2007. 11. 27.(제101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장등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등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 위 치 : 신현동 889번지 외 1필지
 - 사업규모
 - 사업부지면적 : 3,147㎡(주차장 50면정도)
 - 부대시설 : 체육시설, 파고라 등 휴게시설, 조경
 - 사 업 비 : 300백만 원 정도(부지매입 192, 공사비 108)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주민지원 사업으로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에 지원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 늘 강동 주민들은 화봉지역에서 무룡산을 찾을 시는 등산로가 잘 가꾸어져 있는데 강동지역에서 무룡산을 등산 할 시는 물론 등산객수를 보면 많은 차이가 나지만 등산로가 잘 가꾸어져 있지 않다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등산로 정비가 미흡하여
- 강동 지역에서 무룡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만남의 장소로 이용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최상황

할 수 있도록 등산로 입구에 편의시설 및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고자 신현동 889번지 외1필지 3,147㎡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국비70%, 구비30%)으로 등산객 편의시설을 이번에 설치하게 되어 그나마 강동 주민들에게 위안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므로 가결함이 타당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9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1. 20.(구청장)
- 심의일자 : 2007. 11. 27.(제101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창평동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창평동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 위치 : 창평동 1052-1번지 외 2필지
 - 사업규모
 - 사업 부지면적 : 3,077㎡

- 주차장 조성 : 2,600m²(100면)

- 사 업 비 : 1,000백만 원 정도(부지매입 558, 공사비 442)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주민지원 사업으로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에 지원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 농소 운동장 인근에 위치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창평동 1052-3번지 외 2필지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농소운동장 행사시에는 참석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 평소에는 인근주민들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운동장 앰프 등 소음공해로 인한 피해로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로 줄 수 있어 민원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8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1. 20.(구청장)
- 심의일자 : 2007. 11. 27.(제101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진장유통단지 서측은 저지대의 농경지로(18ha) 이루어진 상습침수 지역으로 진장유통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인근 지역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최상황

주민들의 농경지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진장유통단지 배수펌프장 시설』 설치로 이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진장유통단지 배수펌프장 시설 인수』

• 사업규모

- 배수시설 : 배수펌프장(129.9m²), 배수로(655.5m)

• 사 업 비 : 2,996백만 원(철골구조물 1,539, 시설물 1,457)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진장유통단지 1. 2차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서쪽 농경지(18ha)가 저지대로 변화하여 상습침수지역으로 바뀌게 되므로
-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민들과 간담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배수장 설치요구가 있어
-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2,996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배수 펌프장 시설 및 배수로를 설치하여 시설 관리는 「유통단지 개발촉진법」 제19조에 의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은 해당 자치단체에 무상귀속 하도록 되어 있어
- 배수시설물과 10년간 유지관리비로 전입금 3억원을 조건부로 인수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9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1. 22.(구청장)

○ 심의일자 : 2007. 11. 27.(제101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국민체육센터 진입로 부지를 매입하여 민원편의 제공 및 운영의 효율화를 기함은 물론 향후 국민체육센터 진입로가 사도라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건축면적 증가 등 사유로 공사비가 증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변경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후	변경사항
위 치	신천동 580번지 일원	좌동	
취득부지	4,705㎡	7,598㎡	증 2,893㎡ 진입로 부지매입에 따른 매입면적 증가
건 물	4,029㎡ 지하1층 지상3층	4,128㎡ 지하1층 지상3층	증 99㎡ 설계용역완료에 따른 증가
사 업 비	6,754,190천원	7,325,000천원	증 570,810천원
사업기간	2007~2008	2007~2009	설계용역연장, 문화재시굴 등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공유재산 취득의 승인 후 국민체육센터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용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역 결과 당초계획보다 건축면적이 99m² 증가와 현재 사용 중인 기존도로 폭이 협소하여 6m도로로 확장하고자 측량 및 보상 심의조사 과정에서 기존도로도 개인 소유인 것을 확인하고 사용동의로 개설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들의 보상요구가 있어

- 미보상시에는 개인재산권 침해 등으로 준공 이후에도 진입로 관계로 민원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로부지 전면적(2,893m²)을 보상하기로 결정하여
- 증액된 건축비 와 진입로 개설에 편입되는 도로부지 면적을 매입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이 제출 된 것입니다
- 구민의 건강과 편의제공을 위한 체육시설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9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1. 20.(구청장)
- 심의일자 : 2007. 11. 27.(제101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공공성 제고

- 기금사업의 확대 등 지속적 운용개선 추진
- 각종기금의 통합체계 및 여유자금의 탄력적 활용방안 적극 검토
- 기금운용 총괄

(단위:천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출연금	차입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고유목적 사업비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치금
계	2,661,269	86,690		46,680	2,383,017	80,778	64,104	2,661,269	1,987,498	136,881			536,890
식품진흥기금	170,785				158,067	6,718	6,000	170,785					170,785
사회복지기금	328,022	20,000		46,680	250,430	10,432	480	328,022	4,000	136,881			187,141
주민지원기금	1,669,145				1,564,033	47,488	57,624	1,669,145	1,669,145				
재난관리기금	493,317	66,690			410,487	16,140		493,317	314,353				178,964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매년 기금의 일부로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사용해 왔으나 2008년도에는 지출계획이 없이 전액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기금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2008년도 일반회계에 반영한 내역과 총금액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9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2. 3.(구청장)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 심의일자 : 2007. 12. 10.(제101회 제2차정례회 제11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8027호, 2006. 10. 4 공포) 제정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고시내용(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 1/5 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후 1/2 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함.
-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시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안내 사항을 추가하고 방문고지를 우선하여 추진하도록 함.

나. 자체 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안 제6조부터 제8조 까지)

-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의 최소 규격을 정함.
- 구청장은 건물번호판 재교부신청을 받은 경우 설치관련 정보를 안내하도록 함.

다.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등(안 제9조와 제10조)

- 도시개발사업자는 준공일 90일 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이를 사업 승인 시 안내하도

록 함.

- 구청장은 도로명부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라. 도로명의 사용과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 관련사업에서도 도로명주소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 도로명 관련 자료의 통보 및 도로명기본도의 추가 구축사항 규정
- 도로명 부여사유를 정리하도록 규정함.

마.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 도로명시설을 일제조사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안내함.
- 도로명시설의 위탁관리 대상자, 절차, 지도 감독 규정

바.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 광고사업자 선정 관련 공고방법,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규정

사. 그 밖의 사항 (안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

- 도로명주소 홍보물의 제작·배포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작할 홍보물의 종류를 명시함.
-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최상황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6. 10. 4차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되어
-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도로 명 새주소 부여 및 변경, 고시 등 새 주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 새주소 위원회를 통하여 심의 결정하도록 명시하므로
-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당연직 공무원들은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50%을 초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 도로 명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도로명 주소 사용자 1/5이상 변경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1/2이상 동의가 있을때 변경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 새주소 번호판을 자체제작 설치하고자 신청이 있을 때는 관련 정보를 안내 하여야하며 가구주는 번호판 규격에 맞추어야 한다.
- 도시개발 지역 등은 사업자가 준공 90일 전까지 도로명 주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 새주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명을 부여하여 통보하도록 하였고
- 행정기관에서 독단적으로 도로 명을 부여하는 것 보다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전문가들을 통한 위원회에서 의결하고자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2. 3.(구청장)
- 심의일자 : 2007. 12. 10.(제101회 제2차정례회 제11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현대산업개발(주)에서 시행중인 달천 I'PARK 주택건설사업이 '08년 초 준공(예정)됨에 따라 사업부지 내 천곡동 일부를 달천동으로 편입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 도모 및 향후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 유연산업개발(주)에서 시행하고 (주)대우건설에서 시공 중인 매곡푸르지오 주택건설사업이 '07년 말 준공(예정)됨에 따라 사업부지 내 신천동 일부를 매곡동으로 편입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 도모 및 향후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달천 I'PARK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천곡동 일부를 달천동으로 편입

- 편입내역

경계변경 前			➡	경계변경 後		
법정동	필지	면적(m ²)		법정동	필지	면적
천곡동	1	59,685		달천동	1	59,685

- 매곡 푸르지오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신천동 일부를 매곡동으로 편입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 편입내역

경계변경 前			➡	경계변경 後		
법정동	필지	면적(m ²)		법정동	필지	면적
신천동	2	191		매곡동	2	191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현대산업개발(주)에서 농소3동 달천동 지역에 2005년3월에 현대 I'PARK명칭으로 1958세대의 사업승인 인가를 받아 건축주택 사업을 시행하여 2008년도 초순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 사업부지내에 두개의 법정동인 천곡, 달천, 동이 편입하고 있어 향후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동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천곡513번지 59,685m²를 달천동으로 변경하고자하는 내용과
- (주)대우건설에서 농소2동 매곡동 지역에 2004년12월에 대우 푸르지오 명칭으로 1,137세대의 사업승인 인가를 받아 건축 주택 사업을 시행하여 2007년도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 대우건설 역시 사업부지내 신천동과 매곡동 부지가 편입되어있어 행정의 효율과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신천동92-5번지 외1필지 191m²를 매곡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임으로
- 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민들의 동 아파트 단지 내 두개의 법정동의 해소를 위하여도 원안 가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차상위계층난방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2. 3.(구청장)

○ 심의일자 : 2007. 12. 10.(제101회 제2차정례회 제11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조정하여 차상위계층의 난방비 지급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 삭제 → 제3조의 2 신설

나) 주요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를 제3조의 2로 함.
(안 제1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6조에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120미만인 자를 말한다는 내용이 삭제되어 거기에 대처 할 수 있는 법으로
- 동법 제3조의2가 신설 되면서 제36조의 조문이 조정된 내용으로 현재 사용 중인 「울산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난방비지급조례」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상대적으로 공적부조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36조에 규정된 차 상위계층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는데 최소한의 난방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 동법 제36조가 삭제되고 제3조의2가 신설되어 조문 내용이 조정 되어 조례에도 여기에 맞게 제36조를 제3조의2로 수정하는 내용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최상황

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1. 13.(구청장)

○ 심의일자 : 2007. 12. 11.(제101회 제2차정례회 제1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구민의 자아실현 및 삶의 질에 대한 궁극적 향상을 위한 중앙도서관 개소에 따른 소요인력 증가, 기존 권역별 도서관 직제 통폐합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평생교육과를 신설하여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

나) 주민생활지원국에 평생교육과를 신설(안 제5조의 2제1항)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구민들의 지식 함양을 위한 중앙도서관 건립과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 연암동 378번지 상방공원 내 설치하는 공공도서관은 2008년도 개관에 맞추어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자

- 주민생활지원국 내 평생교육과를 신설하여 평생교육담당과 중앙도서관담당 등 2개 담당을 신설하고 직제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 환경미화과, 평생교육과 순으로 한다는 내용이며

- 쾌적한 환경으로 건강한 도시를 만들고자 업무를 추진 할 수 있는 건강도시담당을 보건소 직제에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1. 13.(구청장)
- 심의일자 : 2007. 12. 11.(제101회 제2차정례회 제1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구민의 자아실현 및 삶의 질에 대한 궁극적 향상을 위한 중앙도서관 개소, 기존 권역별 도서관 직제 통폐합과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 신규사무 발생에 따른 부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477명 $\Rightarrow$ 488명으로 조정 (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464명 $\Rightarrow$ 475명
- 별표의 직급별 정원 추가 및 상계 조정
 - 11명 증(5급 1증, 6급 3증, 7급 2증, 8급 2증, 9급 5증, 기능 Δ 2)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2007년도 하반기 정원조정계획에 의거 중앙도서관 설립에 필요한 인력 1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 현원 477명에서 488명으로 조정하여 11명이 증원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증원 부서를 보면
- 중앙도서관 관리하는 평생교육과에 과장 행정5급 1명과 평생교육담당 6급1명, 7급1명, 8급2명, 9급2명으로 6명과 중앙도서관 담당 6급1명, 7급1명, 8급1명, 9급1명으로 4명이 조정되어 총11명을 배치하는 내용이며
- 지난 100회 임시회의시 의결한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에 대한 후속조치로
- 보건소는 정원37명에 4개 담당(보건행정담당, 방역의약담당, 가족보건담당, 진료담당)으로 편제 되어 있는 직제를
- 8급 의료기술직 1명을 감소시키고, 행정, 간호, 의료기술 중에 6급1명을 복수직으로 하여
- 건강도시 북구 프로젝트 업무를 추진하는 건강도시담당을 신설 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1. 13.(구청장)
- 심의일자 : 2007. 12. 11.(제101회 제2차정례회 제1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06. 12. 30) 및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기준 수립('07. 3. 9)에 따라 조례 개정 추진

- 공유재산 관리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반영
 - 개별법령 제·개정사항 및 그 밖의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 관리의 효율화 추구
 - 공유재산 소유·관리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

나) 주요내용

- 혁신도시 건설 관련 대부료 감면율 규정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유재산 대부 감면율 항목 신설(제31조제2항)
-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인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에서 한도액을 1천만원에서 3천만 원으로 3배 증액('06. 12. 30 개정)됨에 따라 개별 사안에 대한 보상금도 3배 증액(안 제63조)
-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 축소 등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 축소 및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하여 제40조제1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개정(안 제39조)
-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 반영
 -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조문 삭제
 - 분수림의 설정 조문 삭제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 조성원가 매각에서 근거 조문 변경(안 제38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6. 12. 30일자 개정됨으로 2007. 7. 30자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 조례를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으로.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9조 토지의 지하·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및 동 법 제45조 분수림의 설정 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삭제되므로 여기에 맞추어 조례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 혁신도시 건설에 관련 대부료 감면율 항목이 신설되어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다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에서 대부할 경우 80% 그 밖의 공공기관은 50%로 감면한다는 신설된 내용이며
-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축소 내용은
 - 건축법에 의하여 준공허가를 마친 건물에 한하여 건축바다면적 2배 이내 토지 매각과 단독주택의 경우는 200㎡ 한도로 한다는 내용과
-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은 3배로 인상한다는 내용으로
 - 보상률과 최고액을 1천만원 초과 할 수 없다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로 조정되었고
 - 재산을 신고한 자는 필지별 2백만 원 보상금을 6백만 원으로 조정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의 상액으로 한도와
 - 기타 재산신고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된 내용 등을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임으로 원

안가결함이 타당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번호 제8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1. 13.(구청장)

○ 심의일자 : 2007. 12. 11.(제101회 제2차정례회 제1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2007. 7. 16.)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금액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재원을 운용·관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특별회계의 세입 (안 제2조)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 특별회계의 세출 (안 제3조)

-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원으로 설치하는 해당지역의 생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이에 따른 경비
- 기존 사용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하거나 변경하는 경비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소각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경비 등

○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조례」가 공포되고 시행됨에 따라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 받은 금액은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므로
-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납부 받은 금액으로 그 지역에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시설 설치에 있어 적정규모의 시설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될시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여기에 따른 처리비용은 당해 납부금액으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 동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납부 받은 금액으로 조성한 재원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 현재 우리구의 조성 부과 예정 사업장은 강동 산하지구 부과금액은 5,520백만 원 중 2,760백만 원은 이미 징수한 상태로 이며
- 호계·매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장 45억 정도,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장 95억 정도 부과할 예정으로 있으므로
- 기 징수한 강동 산하지구 2,760백만 원은 환매체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

타당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9. 11.(구청장)

○ 심의일자 : 2007. 12. 11.(제101회 제2차정례회 제1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유도 및 구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 방식을 현 “월정액”에서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종량제”로 징수방식을 전환·시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납부필증, 납부필증 보관함의 용어 신설(안 제2조제7호, 제8호)

○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변경(안 제5조 제2호)

- 납부필증을 납부필증 보관함에 삽입 후 배출

○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호)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 무상 수거 가축먹이 또는 퇴비 재활용도 처리방법에 포함
- 감량의무사업장 준수사항 신설(안 제7조제2호)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 처리실적을 작성·보존하고, 연간 발생량 및 처리실적을 구청장에게 제출
-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2항, 제3항)
 - 무상 수거 가축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의 경우 대행 가능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청결유지 규정 신설
-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제작규격, 설치기준 신설(안 제11조 제2항)
- 납부필증 제작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의 2)
 - 구청장이 제작하고 사양은 규칙으로 정함.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의 3)
- 추진협의회 등 추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의 4)
 - 구 추진협의회, 각 동 추진위원회
- 추진협의회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근거 규정 신설(안 제11조의 5)
-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수수료 및 납부필증 공급·판매가격
 - 단독, 공동주택, 사업장 용기별 ℓ 당 판매가격 등

- 수수료의 차등 부과·징수 및 징수방법
- 감량화 시책 추진 시 공동주택 수수료 차등 부과·징수 가능
- 공동주택 수수료 부과기준
- 공동주택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 명시
-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방법 신설(안 제14조의 2)
 - 배출자가 납부필증 직접 구입 부착
 - 납부필증 판매가격에 일정률(5%)의 수수료 부여
-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17조제1항)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감량의무사업장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매년 늘어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수수료를 현재 월정액에서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 하는 방법으로 전환하여 구민 스스로 감량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함과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로 인하여 늘어나는 재정부담을 최소화 시키고자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주민들 부담률을 인상하고자 조정되는 내용으로
- 인상률은 구 재정의 연약함을 앞세워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차등 부과 하고자 단독주택의 매월 월정액으로 1,000원씩 부과 하던 것을 평균 40% 정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매달 정액 1,000원에서 배출량을 기준으로 1,400원정도로 인상은 단독주택은 개인감량에 따라 부담액이 조정가능하나
- 공동주택은 나 혼자 감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면 전세대가 합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심하여야 하는데 현 주민들의 정서상 감량의 효과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동주택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되어

- 제99회 임시회의에 상정되어 조례 안 심의에서 주민들에게 홍보 미흡과 특히 공동 주택은 단독주택과 개개인의 감량으로는 효과가 힘드니 충분한 홍보 및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파트별로 홍보와 주민여론 후 재검토하고자 보류된 사항으로

- 보류를 하였던 조례의 그간 홍보 실적을 보면

- 10. 10일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구정설명회에 참석한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자치회장, 부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영상물과 환경미화과장의 설명회의를 가졌고
- 11. 21일자 각동에 주민만남의 날 및 반상회 등의 홍보 협조 공문과 직접홍보도 하였으며
- 11. 28일자 관내 69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음식물류폐기물 공동주택 할인·할증 시행에 따른 홍보물을 배부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였다는 실적 등이 있습니다.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①②(생략) ③ 제14조제2항의 경우 공동주택 수수료는 별표 5에 따른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구성) ①②(개정안과 같음) ③ 공동주택은 매월 발생량을 측정하여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결정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②(개정안과 같음) 부칙 ① 이 조례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개정안과 같음)

□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안(의안번호 제8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1. 13.(구청장)
- 심의일자 : 2007. 12. 11.(제101회 제2차정례회 제1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하수법」(법률 제7569호, 2005. 5. 31 개정공포),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 제19158호, 2005. 11. 30 개정공포), 같은 법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482호, 2005. 12. 21 개정공포)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하수의 오염을 예방하고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하수법」 제14조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하여야 한다.(안 제4조)
-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역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 「지하수법」 제30조의 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안 제12조)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지하수법」 법률이 2005. 5. 31자 개정공포 하므로 동법 제30조의 2가 신설되면서 관할 구역 안의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므로
- 같은 법 제30조의 3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보전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강수계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부과금액(톤당 : 160원)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 단,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기본법」

「초·중·고등 교육법」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거 설치한 지하수 및 가정용으로 1일 100톤이하 지하수, 재해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 지하수, 전시 기타 비상사태 발생대비 비상급수용 등은 부과징수에서 제외도록 하므로,

- 실제로 부과 징수 대상은 일반 영업용, 공업용수, 공동주택 등이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공동주택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1. 13.(박병석의원 외 2인 발의)
- 심의일자 : 2007. 12. 11.(제101회 제2차정례회 제1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세입·세출 결산서 등의 제출)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서 첨부서류에 재무보고서 추가(안 제8조제1항)
-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함(안 제8조제2항)

- 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일 경우 직무활동으로 보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안 제11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도입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는 2007. 1. 1부터, 정부는 2008.1.1부터 전면 실시됨에 따라
- 2008년도부터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 원리에 의하여 결산한 재무보고서를 집행부로부터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제출받아 결산검사를 하여야 하므로
- 「지방자치법」 제53조 재무회계결산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세입·세출결산서 등을 제출토록 하는 법 일부가 개정됨으로
-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2009년도 결산검사 시부터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 원리에 의한 결산서인 재무보고서를 제출받아 결산검사를 하여야 하므로
- 본 조례에 2009년부터 재무보고서를 추가 제출 요구하는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1. 13.(문석주의원 외 2인 발의)

○ 심의일자 : 2007. 12. 11.(제101회 제2차정례회 제1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별로 월정수당 등 의정비의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된 당해연도 10월말까지 그 금액을 결정하게 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에 대한 지급기준이 통보(2007. 10. 31)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2007. 5. 11)과 같은 법 시행령(2007. 10. 4)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안 제1조)

○ 월정수당을 월 1,300,000원에서 월 3,100,000원으로 인상함(안 제5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각 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그리고 의원 의정활동실적 등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구성된 울산광역시 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네 차례의 심의를 통하여 합의 도출한 결과 울산광역시 4개 구·군 결정 평균치 51,137,500원과 한국·민주노총 도시민 4인 가족 최저 생계비 50,400,000원 발표 자료 등을 참고로 하여 토론한 결과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 도시민 4인 가족 최저 생계비 50,400,000원으로 결정하면서 의원들에게 권고안 3개항을 전체 위원의 이름으로 첨부 2007. 10. 31자 의회로 통보된 사항이므로
- 권고안 세 가지를 보면
 - 첫째, 의정활동에 전념을 위하여 겸직을 금지하고
 - 둘째, 의정활동비를 투명하게 사용하고 그 내역을 공개할 것
 - 셋째, 2009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심의하도록 하라는 3개항의 권고가 첨부되었습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울산광역시 4개 구·군 평균치보다 737,500원이 적은 도시민 4인 가족 최저 생계비를 택한 것도 우리 북구 의원님들께서는 의정비 보다는 더 열심히 뛰어 달라는 의정심의위원님들의 고뇌가 엿 보임으로
- 위원님들의 심사숙고 끝에 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현행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제5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①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으로 하고, 월정수당은 월 130만원으로 한다. ②(생략)	제5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월정수당은 월 295만원 ② 현행과 같음

□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1. 20.(윤임지의원 외 2인 발의)
- 심의일자 : 2007. 12. 11.(제101회 제2차정례회 제1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자율적으로 결정 운영토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과 아울러 알차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으로 구민들에 대한 참다운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간 회의일수를 늘리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연간 회의총일수를 110일 이내로 함(안 제2조)
-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함.(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지방자치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연간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최상황

- 의정활동을 강화하여 찾아오는 민원을 기다리는 것보다 구민의 귀와 발이 되어 먼저 현장을 달려가는 행정을 펼치고자 함과
- 구민들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북구 발전을 위하여 개인의 역할보다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회기 일수를 연간90일에서 110일로 늘리고 정례회의 연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를 50일 이내로 조정한 내용임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1. 20.(문석주의원 외 2인 발의)
- 심의일자 : 2007. 12. 11.(제101회 제2차정례회 제1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우리 구 전체아파트 중 20%정도가 임대아파트로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간 주택관리규약·관리비 및 분양전환 가격 등에 대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나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조정의 처리를 중지한다.” 는 강제규정으로 인하여 조정을 못하고 있어 좀 더 적극적인 조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당해 분쟁의 조정을 거부 또

는 중지할 수 있는 규정 중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중인 경우”를 “분쟁당사자가 아닌 자로부터의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로 개정(안 제11조제1항 제2호)

- “위원회 신청사건의 조정절차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한다.” 라는 규정을 삭제(안 제11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임대주택법」 제18조의3항에 의하면 분쟁이 발생할시 임대주택 분쟁조정 위원회를 개최 할 수 있으나
- 「울산광역시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1항에 의하면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분쟁의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로 되어있어
- 상위법인 「임대주택법」 과 불부합하는 내용을 바로 잡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임으로
- 현재 분쟁으로 인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임대주택 민원을 빠른 시일 내 해결하고 자하는 마음에서 의원발의하는 것으로
- 담당부서에서의 개정은 법적절차에 맞추어 처리할시 시기상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어 의원 발의로 일부 개정안을 제출하는 내용임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3절 제102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이은영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08. 2. 21. 10:00

다. 회 기 : 2008. 3. 6.(15일간)

라. 부의안건

-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 농소1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
장 제출)

2. 개회사

존경하는 16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강석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자년 새해 들어 첫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구 번영과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뜻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 한 해 우리구가 추진하게 될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조례 등 당면한 현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음식물쓰레기 30% 줄이기 운동, 중앙도서관 개관, 명춘·진장 문화센터 건립, 국민체육센터 건립, 전자여권발급 민원창구 운영 등 새해에 계획된 모든 시책과 사업은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 건설에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우리 구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구민의 여론과 정서를 존중하는 가운데 다양하게 분출되는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의 이해갈등을 조정하고, 비전 있는 정책개발과 합리적인 대안제시 그리고 현장활동을 강화하여 구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 자신감을 갖고 우리 앞에 놓인 현안문제를 하나하나 슬기롭게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는데 이번 새해 첫 임시회가 그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집행부에서는 새해에 계획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지역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등을 소상하게 보고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구정에 대한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많이 제시하여 보다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국보1호 승례문이 소실되어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준 매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한 개인의 사회적 불만 표시로 본 사건이 발생하였습시다만, 문화재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재와 관련 기관들의 안이한 생각으로 맡은바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를 예방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교훈삼아 우리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시스템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을 버리고 어느 한 부분이 미진하다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획기적인 정책이나 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도 이러한 달라지는 정책이나 사업에 신속하고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만 다른 어떤 자치단체보다도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미래가 기회’라는 생각으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북구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아무쪼록 제102회 임시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끝으로 올 한 해도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성취의 기쁨이 늘 함께하는 보람된 날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2월 21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류 재 건

3. 의사일정

의 사 일 정

제10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8.2.21 ~ 3.6(1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2008.2.21 (목) 10:00		(개 회 식)	
개회식 직 후	1	1. 제10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10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건	
2008.2.22 (금) 10:00	2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기획홍보실	
2008.2.23 (토)		휴 회(토요일)	
2008.2.24 (일)		휴 회(일요일)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최상황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2008.2.25 (월)10:00		□ 현장 활동 ○ 중앙도서관(평생교육과)	
2008.2.26 (화)14:00	3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계속》 ○ 총무국(총무과, 회계정보과, 환경위생과)	
2008.2.27 (수) 10:00	4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계속》 ○ 총무국(지방세과, 민원지적과) ○ 의회사무과	
2008.2.28 (목) 10:00	5	1.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3호, 총무국) 2. 울산광역시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7호, 총무국) 3.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4호, 총무국) 4.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5호, 총무국)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농소1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의안번호 제106호, 총무국)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2008.2.29 (금) 10:00	6	1.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112호, 기획홍보실) 2.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8호, 주민생활지원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109호, 주민생활지원국)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2008.2.29 (금) 10:00	6	4.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11호, 도시경제국) 5.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10호, 도시경제국)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8.3.1 (토)		휴 회(공휴일)	
2008.3.2 (일)		휴 회(일요일)	
2008.3.3 (월) 11:00	7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계속》 ○ 도시경제국(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2008.3.4 (화) 10:00	8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계속》 ○ 도시경제국(건축주택과, 생명산업과, 재난관리과)	
2008.3.5 (수) 10:00	9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계속》 ○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	
2008.3.6 (목) 10:00	10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계속》 ○ 주민생활지원국(환경미화과, 평생교육과) ○ 보 건 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 의사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4. 주요안전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2. 12.(구청장)
- 심의일자 : 2008. 2. 28.(제10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07. 7월 전국적으로 시행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으로 '07. 9. 1일부터 전국 145개 시·구의 2,166개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는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주소를 새 주소로 변경
- 양정동주민센터 이전·신축에 따른 소재지 변경('08. 3. 1 준공예정)

나) 주요내용

-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안 별표)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새주소에 맞게 변경(안 별표)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지방자치법」 제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 면, 동 사무소의 소재지를 자치단체 조례

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 행정자치부에서는 동사무소가 복지, 문화, 생활체육 등 주민의 삶의 질향상과 직결되는 통합 서비스 기관으로 전달체제로 혁신하고자
- 2007. 8. 10자 전국 2,166개 동 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 결정하고 이에 따른 지침이 시달되어 여기에 맞추어 동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 「도로명주소 등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주소를 종전에는 법정 동 번지를 사용하던 것을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게 되어 새 주소명으로 변경이 필요하며
- 양정동 주민센터 이전관계로 변경되는 주소지 관련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등임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2. 14.(구청장)
- 심의일자 : 2008. 2. 28.(제10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 제1항의 개정예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한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개정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하여 계약업무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북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변경
 - 당초 :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30억 이상인 공사계약, 5억 이상인 물품·용역
 - 변경 :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 이상인 공사계약, 10억 이상인 물품·용역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 제1항이 2007. 9. 20자 개정되므로
- 관련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이지만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임으로
- 울산광역시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조례 내용 중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당초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30억 이상의 공사계약을 50억 이상으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 물품 구입 및 용역에 있어도 당초 5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 아울러 조례 개정에 맞추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쉬운 우리말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등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2. 12.(구청장)
- 심의일자 : 2008. 2. 28.(제10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의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의무교육을 받은 주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자함. (안 제6조)
-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대하여 세제지원(안 제7조제5호)
 - 「도서관 및 도서관진흥법」은 「도서관법」으로 법령 변경 (안 제7조제6호)
 - 「과학관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대하여 세제지원 (안 제7조제7호)
-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07. 4. 11)에 따라 인용조문 정정 (안 제9조)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에 대하여 누락된 사항 일부정정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안 제10조)

-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인하여 인용조문 정정 (안 제13조)
- 시장정비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취득하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한해서 재산세를 감면 (안 제15조)
-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사항 등 구세 조례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세 감면조례로 이관하여 신설 (안 제20조)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여 알기 쉬운 용어의 조례를 만들고자 함으로
-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개정함과
- 평생교육시설 등의 감면은 박물관 및 도서관진흥법, 도서관법, 과학관 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시설 세제지원과
- 문화재보호법 및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의한 인용조문 정정 및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 누락 등을 수정하고
-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사항이 구세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을 구세 감면조례로 이관한 사항 등으로
- 행정자치부에서 감면조례 표준안 지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2. 12.(구청장)
- 심의일자 : 2008. 2. 28.(제10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자치단체 간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정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310호)이 2007. 10. 4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항목에 대하여 수수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증명 등 수수료액 개정(안 별표 1)
 - 공장등록증명 : 1통 300원 → 1,000원
 - 의료기관 개설신고 : 1건 30,000원 → 40,000원
 - 의료기관 개설허가
 - 종합병원 개설허가 : 1건 70,000원 → 100,000원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부속의료기관) : 1건 50,000원 → 100,000원
 -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 : 1건 30,000원 → 40,000원
 - 체육시설업 신고 : 1건 30,000원(신설)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 1건 10,000원(신설)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 : 1건 10,000원
→ 20,0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 : 1건 10,000원
→ 30,000원
- 공유재산 대부(신규)신청 : 1건 300원 → 5,000원
- 공유재산 대부(연장)신청 : 1건 300원 → 3,000원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료·수수료 또는 각종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또는 자치단체의 사무 중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수료가 필요로 할 시에는
-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
- 2007. 10. 4일자 대통령령 제20310호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항목에 대하여 수수료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임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소1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의안번호 제10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2. 14.(구청장)
- 심의일자 : 2008. 2. 28.(제10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농소1동 주민센터는 20여년이 경과한 노후된 건물로써, 우천시 잦은 누수로 매년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대단위 아파트단지 입주에 따른 인구 급증으로 행정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 이용공간의 협소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농소1동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농소1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 위 치 : 호계동 874-1번지 외 4필지(2,504m²)
 - 건축규모 : 1동(지상3층), 연면적 992m²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농소1동 주민 센터는 노후 건물로써 청사 재건축을 위하여 지난해 2차 정례회의시 본관 지상3층 694m², 별관 지상3층 495m²를 건축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으로 제출되었으나
- 건축 면적, 별관 동 건립, 주차면적 협소 등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어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후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결시켰는데
- 이번 임시회의에 보완하여 다시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충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통하여 별관 동은 삭제하고 본관 동만 지상3층 연면적 992㎡로 건축하고자 제출되었으며(층별 100평씩 총 300평)

-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주민 센터 앞 농소 소로1-10호 ㄱ자형 소방도로를 일직선으로 도시계획 변경하고자 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490백만을 확보 하여(특별교부세:200, 구비:290)
- 농소1동 주민센터 건립준공에 맞추어 선형 변경 직선으로 개설할 계획이며 개설 후 현 소방도로 부지는 농소1동 주민 센터 민원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주차면도 현 30면에서 54면으로 대폭 늘어나게 되므로
- 농소1동 주민센터 건립은 지난해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충분한 협의에 의해 해결 된 것으로 판단됨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 · 수정안 대비표

【원 안】

(단위:㎡,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 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수량				
1	신축 (건물)	대	호계동 874-1 외 4필지	992	1,400,000	2008	농소1동주민센터 신 축	건물 신축

【수정안】

(단위:㎡,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구조)	소재지	수량				
1	신축 (건물)	대	<u>호계동</u> <u>874-1</u>	992	1,400,000	2008	농소1동주민센터 신 축	건물 신축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2. 14.(구청장)
- 심의일자 : 2008. 2. 29.(제10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호적법」 폐지에 따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양성평등 원칙과 목적별 증명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의 효율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의하여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폐지·시행됨에 따른 자구 변경
 - 호적업무 ⇒ 가족관계 등록업무로 변경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민법」 개정으로 「호적법」이 폐지되고 2008. 1. 1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구 일부 조례도 여기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개정사항은 「호적법」에 의해 처리하던 업무를 가족관계 등록업무로 변경 처리하고자 「호적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는 내용임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2. 14.(구청장)
- 심의일자 : 2008. 2. 29.(제10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평생교육법」이 전부개정 공포(2007. 12. 14)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평생교육의 정의를“학교교육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함(안 제2조)
- 평생교육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구청장으로 함(안 제6조제1항·제2항)
- 제9조제1항 제2호를 삭제함(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접수하였을 경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평생교육법」이 2007. 12. 14자 전부개정 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 제2조(정의)에 의하면 법률 및 다른 조례에 의한 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으로 정의하던 것을

- 학교의 정기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교육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 제6조 구성에 있어 협의회에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였으며

○ 위원장의 명칭을 삭제하고 의장 명칭으로 바꾸면서 의장을 청장이 하도록 조정하였으며

- 구성 인원도 15명에서 12명으로 축소 개정되는 조례안임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0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2. 14.(구청장)
- 심의일자 : 2008. 2. 29.(제10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평생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정년퇴직자나 퇴직예정자가 30년 이상 노후생활을 해야 함에 따른 사회적응 교육과 건강 사회봉사, 재취업 등 안정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하여 제3대학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나) 주요내용

○ 총5장으로 구성

• 제1장 총칙	• 제2장 조직	• 제3장 학사일반
• 제4장 위탁	• 제5장 보칙	

○ 장별 주요내용

[제1장 총칙] - 목적, 위치, 교육목표,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2장 조직] - 학장, 교무위원회, 사무직원 등에 관한 사항

[제3장 학사일반]

- 대학운영, 정원, 입학자격, 학사업무 및 기능, 학과, 강사와 수업료, 졸업 등에 관한 사항

[제4장 위탁] -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제5장 보칙] - 학사관리 및 학생회, 보험가입 등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평생교육법」 제5조에 의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 할 수 있는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 추진하여야하며 아울러 평생교육에 대하여 적극 권장하도록 되어 있어
- 여기에 근거로 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제3대학을 설립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로 한 평생을 직장에서 일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을 위하여
- 이제는 직장을 떠나, 내 가족보다 나 자신을 위한 문화생활과 봉사활동으로 건강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 할 수 있도록 함이며

- 현재는 전국에서 최고의 젊은 도시이지만 우리 북구도 2020년 이후에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게 되므로
-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제3대학을 설립하여 먼저 퇴직자를 우선하여 사회 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과
- 또한 금년도 구정시책중 하나가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되는 것을 목표를 삼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 심사에도 많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교육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함 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 제1기 신입생 모집을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2. 11~2. 20까지 모집결과 133 명이 신청한 것으로 아는데
- 물론 운영일정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이 먼저 할 수밖에 없지만 향후부터는 조례가 의결 확정된 후 시행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1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2. 14.(구청장)
- 심의일자 : 2008. 2. 29.(제10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날로 증가하는 북구 관내 거주외국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고,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외국인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안 제1호)
- 거주외국인 :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안 제2호)
-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안 제3호)
- 외국인 지원단체 :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안 제4호)
- 지원대상 : 거주외국인, 결혼이민자(안 제3조)

○ 거주외국인 등의 지위(안 제4조)

- 관내 거주외국인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북구 주민과 동일한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안 제1항)

○ 지원의 범위(안 제6조)

-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 생활·법률·취업 및 고충에 대한 상담
- 거주외국인 등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 세계인의 날(매년 5월 20일) 행사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자문위원회의 설치(안 제7조)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수당 등 지급(안 제11조)

- 「울산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제18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 우리 북구 지역에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거주자들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으로
- 현재 전국 9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 울산은 광역시에서 2007. 11. 8자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07년 말 현재 우리 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수는 1,570명으로 전체 인구에는 1%정도 이지만 공단과 신생도시로 증가할 가능성이 타 구·군보다 높으며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임으로
- 재한외국인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사회적응과 개인의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면
- 재한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대한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사회 환경에 적응할 수 있어 대한민국에 대한 존중과 애정을 가질 것으로 판단됨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1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2. 14.(구청장)
- 심의일자 : 2008. 2. 29.(제10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향후 국제교류 증대, 거주외국인 지원, 국제 자매결연사업, 기업투자 통상활동 증가 등에 대비, 외국어에 능통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민간인을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통역관」으로 선정·위촉, 구정에 활용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명예통역관 : 통역, 번역 등에 활용하고자 구청장이 위촉한 자
 - 면접관 : 공개모집에 응시한 자를 심사하는 자
- 통역관의 선발(안 제3조)
 - 공개모집 원칙, 필요시 통역자격증 소지자 위촉(안 제1항)
 - 구에 주소를 둔 자(안 제 1호)
 - 구에 기업체, 영업소, 학교, 학원 등을 두고 종사하는 자(안 제2호)
 - 면접관 구성(5명 이내)·심사 실시, 심사결과 집계·작성(안 제2항)
- 통역관의 위촉(안 제4조)
 - 언어별 4명 이내 위촉, 필요시 추가 위촉, 위촉기간은 2

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안 제1항)

심사결과 고득점자 위촉, 동순위자 통역분야 고득점자
우선 위촉(안 제2항)

○ 통역관의 임무(안 제5조)

- 국제교류행사, 외국인 방문 시 통역(안 제1호)
- 거주외국인 지원업무, 기업 투자 통상활동 등 지원(안 제2호)
- 그 밖에 국제교류와 관련된 사항(안 제3호)

○ 통역관의 해촉(안 제6조)

- 임무수행 불성실, 품위손상, 구 전출시, 질병 등 위촉기간 만료전 해촉 가능

○ 실적관리(안 제7조)

- 통역관의 자문의뢰 사항 및 실적 기록·관리

○ 수당의 지급(안 제8조)

- 통역관 및 면접관 수당(안 제1항)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번역료(안 제2항)

구 분	관련규정	지 급 기 준		비 고
명예 통역관	제5조제1호	1회 100,000원/8시간이내	초과 시 50,000원 추가	
	제5조 제2호·제3호	1회 50,000원/4시간 이내	4시간 초과 시 80,000원/1회	
면접관	제3조제2항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기타 시험 면접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 해당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1/2을 지급한다.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최상황

○ 자료제공(안 제9조)

- 통역관이 구정에 대한 이해 필요시 교육 실시(안 제1항)
-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제공(안 제2항)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교류증대 및 거주외국인들의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에 능통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북구민 대상으로 선발하여 명예통역관으로 위촉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수당은 국제교류에 있어서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100,000원으로 하며 초과 시 50,000원 추가 지급하며
- 그 외 일반 업무는 1회 2시간은 30,000원, 4시간은 50,000원 기준으로하되 4시간 초과 시 80,000원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 번역료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1/2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으로
- 수당은 당초예산에 4,800천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앞서가는 행정을 추구하여 발전하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매결연 등 국제교류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들며
-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하면 통역관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며 현재 전국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4절 제103회 임시회

1. 개최이유

가. 소집요구 : 류인목의원 외 2명

나. 개최일시 : 2008. 4. 25. 10:00

다. 회 기 : 2008. 5. 1.(7일간)

라. 부의안건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평가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석주의원 외 2인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희의원 외 1인 발의)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
 - 종합복지회관 건립 현황
 - 국민체육센터 건립 현황
 - 장등마을 체육시설 설치 공사
 - 호계공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 건강도시사업 추진계획

2. 개회사

존경하는 16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자년 새해가 시작되고 두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임시회에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비회기 중에도 민생현장 곳곳을 찾아다니며, 구민의 생생한 민의를 수렴하여 보dana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느라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해 주시고 계시는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현재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현장 활동을 하게 되며, 조례 등 당면한 현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금번 현장 활동을 통하여 민생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들이 보다 만족할 수 있는 감동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어느덧 4월이 지나고 실록의 계절 5월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 연초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개최된 강동 수산물 축제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께 이번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개최되는 제4회 쇠부리 축제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가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구정이 더욱 발전하는 가운데 오늘 개최식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4월 25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류 재 건

3. 의사일정

의 사 일 정

제10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8.4.25~5.1(7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8.4.25 (금) 10:00 개회식 직 후	1	개 회 식	
		1. 제10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0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 의원 선임의 건 4.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의안번호 제126호) 5.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2008.4.26 (토)		휴 회(토요일)	
2008.4.2 (일)		휴 회(일요일)	
2008.4.28 (월) 10:00	2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뒷동 소류 지 기부채납)(의안번호 제114호, 도시경제국)	원안가결
		2.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122호, 기획홍보실)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123호, 기획홍보실)	원안가결
		4.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1호, 총무국)	원안가결
		5.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평가 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9호, 의원발의)	원안가결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8.4.29 (화) 10:00	3	1.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0호, 주민생활지원국) 2.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118호, 주민생활지원국) 3.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15호, 총무국) 4.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16호, 총무국) 5. 울산광역시 북구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7호, 총무국) 6.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125호, 의원발의)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8.4.30 (수) 10:00	4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종합복지회관 건립 현황(총무국 회계정보과) ○ 국민체육센터 건립 현황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 ○ 장등마을 체육시설 설치 공사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 ○ 호계공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도시경제국 경제교통과) ○ 건강도시사업 추진계획(보건소)	
2008.5.1 (목) 10:00		☐ 현장 활동(주민생활지원국) ○ 중앙도서관(평생교육과) ○ 명춘문화센터 건립 현장(주민생활지원과) ○ 교량하부 체육시설 설치 현장(문화체육과) - 오토밸리로 교량하부 체육시설 - 국도31호선 교량하부 체육시설	

4. 주요안전처리 경과 및 결과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뒷동 소류지 기부채납)
(의안번호 제11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3. 20.(구청장)
- 심의일자 : 2008. 4. 28.(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뒷동 소류지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 의결을 얻
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 치 : 매곡동 426-1번지 외 4필지
- 규 모 : 5,217m²(토지기부)
- 토지가액 : 230백만 원
- 취득사유 : 기부채납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1945년 3월경 조선총독부가 관장 할 시절에 농소 2동 신기, 냉천
뒷동들 천수답 해소를 위하여 매곡426-1번지 외 4필지 5,217m²
의 면적에 저수지시설로 만들어 천수답 해소에는 해결 되었으나
공부정리가 마무리되기 전에
- 그 해 8월에 해방이 되고 저수지 관리자가 지정되지 않아 저수
지의 물을 사용하는 농민들이 주축이 되어서 관리하여 오던 중
- 1981년도에 소유권 미등기자들의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별조치법 제도가 부활되어

- 미등기로 관리하여 온 저수지에 대한 경작자 협의회의에서 대표
자 3명(허재혁 외2)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하기로 결정 그해 6.
12자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 등기 후 현재까지 소유 관리를 하
였으나
- 도시개발계획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농지가 소멸되어
사실상 경작에 필요한 저수지로서 활용가치가 없게 되자
- 매곡마을 주민들이 이제까지는 농민들 위한 저수지로 사용 하였
지만 이제는 전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궁리
끝에 체육시설이 좋겠다는 다수 주민들의 의견으로
- 시설설치는 예산이 수반됨으로 체육시설 설치 조건으로 구청에
부지를 기부 채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부채납 즉시 공부정리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이 필요한
시설을 요구할 시 최우선적으로 검토 하여 기부채납에 대한 실망
감을 갖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4. 16.(구청장)
- 심의일자 : 2008. 4. 28.(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원활한 홍보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획홍보실에 분장된 홍보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업무를 구민과 밀접한 업무부서인 문화체육과로 분장함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과 2008. 6. 2차 여권사무 개시에 따른 분장사무를 추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근거조항 변경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기획홍보실 명칭을 기획감사실로 변경(안 제4조)

○ 여권사무 개시에 따른 분장사무 추가(안 제5조제2항 제5호)

○ 문화체육과 명칭을 문화홍보과로 변경(안 제5조의2)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2008년도 상반기 조직개편 및 인력운영 계획에 의거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먼저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사무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아 6. 2부터 시행하여야 하는 여권사무를 민원지적과 내 여권담당을 신설하고 여기에 따른 인력 확보는 회계정보과 복식부기담당을 폐지하고 상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 기획홍보실 홍보담당을 문화체육과로 전환하고 혁신분권담당 조직을 정책평가 담당으로 이름을 조정하고 기획홍보실을 기획감사실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이며
- 문화체육과도 기획홍보실 홍보담당을 흡수하여 문화홍보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등이며
- 6. 8차 명촌문화센터 준공에 따른 명촌 지역 주민 편의를 위하

여 관리 인력 2명 배치와 복지서비스과 기초노령연금 등 업무 증가에 따른 1명을 보강 총 5명이 증액되는 기구조정 내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4. 16.(구청장)
- 심의일자 : 2008. 4. 28.(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외교통상부 여권사무 수행기관 지정에 따라 여권업무 수행을 위한 여권담당 신설 및 명춘문화센터 준공에 따른 인력배치, 「기초노령연금법」 시행 등 신규사무 발생에 따른 부서 업무 추진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근거조항 변경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 정원의 총수 488명 ⇒ 493명으로 조정
 - 집행기관의 정원 : 475명 ⇒ 480명
- 제3조와 관련된 별표의 직급별 정원 조정
 - 5명 중(7급 1, 8급 4)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외교통상부로부터 2008. 6. 2부터 여권사무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민원지적과 내 여권담당을 신설 6급1, 7급1, 8급2, 9급1 총 5명이 여권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 기획홍보실 홍보담당을 문화체육과로 전환하면서 홍보인력 5명도 같이 문화체육과로 배치하는 내용이며
- 회계정보과 복식부기담당을 폐지하면서 6급은 여권담당으로 7급은 경리담당에 흡수되어 복식업무를 추진하고 기능직 1명은 명촌문화센터 근무로 조정된 것이며
- 복지서비스과는 늘어나는 기초노령연금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8급1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 문화체육과는 기획홍보실로부터 홍보담당 5명의 인력 중 9급1명을 민원지적과 여권사무에 전출시켜 기존 5명에서 1명 감소되어 4명이 홍보업무를 맡게 되었고
- 효문동 명촌 문화센터 시설운영 및 관리에 8급 1명과 기능직 1명은 복식부기 담당에서 배치되어 2명이 관리 운영 하도록 하므로
- 현 정원 488명에서 493명으로 순수하게 늘어나는 인원은 5명으로 행정7급1명, 행정8급3명, 복수직(행정·사회복지사)8급1명이 증원되는 내용으로
- 순수하게 늘어나는 5명의 인력배치는 여권사무에 3명, 복지서비스과 기초노령연금업무에 1명 보강과 명촌 문화센터 준공으로 관리 및 주민 편의 서비스를 위하여 1명이 증원되는 내용임으로
- 6. 2부터 여권사무 시행과 6. 8일 명촌 문화센터 준공으로 관리 및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인력 배치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함

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4. 16.(구청장)
- 심의일자 : 2008. 4. 28.(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지방세법」이 개정(2007.12.31)됨에 따라 재산세 분납기준 세액을 조정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2008년도에 적용할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탄력세율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산세 분납기준 세액을 1천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조정(안 제11조의3)
-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납세자의 행정 신뢰 제고 차원에서 “1천분의 2”로 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지방세법」 제26조의4의 조항에서 재산세액 1,000만원 초과 할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2007. 12. 31자 법률 제8835호에 의거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여기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과
- 「지방세법」 제188조 3항의 항공기 재산세 부과 세율은 과세표준액 1,000분의3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 다만 표준세율을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을 부여하여 조례로 가감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가감 조정 세율은 당해연도에만 한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 우리 북구도 탄력적인 세율적용을 실시코자 전년도에는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 부과를 하므로 2008년도에도 동일하게 1,000분의2의 세율로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임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함(부결 시 1,000분의3으로 부과)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평가자문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4. 15.(문석주의원 외 2인 발의)
- 심의일자 : 2008. 4. 28.(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언론·시민단체에서 관광성 외유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에 의거 전부 개정함

나) 주요내용

- 공무국외여행적용 범위 구체화(안 제2조)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로 명칭변경, 위원수 7인에서 6인으로 축소 및 심사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안 제4조)
- 여행계획서 제출일을 30일에서 15일로 축소(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각종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지방의회 의원 관광성 외유문제로 자주 언론에 보도가 되어 혹시나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높을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에 사전에 차단의 목적으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표준 규칙 안이 시달되어 여기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수를 7명에서 6명으로 1명을 축소하고 단 민간인 심사위원 비율이 3분의1이상 되도록 조정과
 - 현 조례에는 심사위원 임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조정하였고
 - 여행을 하고자 할시 여행계획서를 30일전까지 심의위원들에게 제출하여야 하던 것을 15일전까지 제출하도록 축소하였으며
 - 여행보고서는 귀국 15일 이내에 작성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 및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표준 규칙 안에는 명시하고 있으나
 - 귀국 후 15일 이내는 여행 후 밀린 민원 해결 등으로 충실한 보고서 작성에는 시간이 촉박 할 것으로 예상되어 축소하지 않고 현재의 30일 그대로 하기로 의원님 간담회시에 협의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4. 16.(구청장)
- 심의일자 : 2008. 4. 29.(제10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중앙도서관이 건립됨에 따라 권역별 작은 도서관과 연계하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일부를 개정하여 주민들의 도서관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중앙도서관의 건립으로 명칭과 위치를 변경(도로명주소체제로 전환)
 - 중앙도서관 :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 1길 9(연암동 378번지)
 - 기적의 도서관 :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 5길 53(중산동 570-2번지)
 - 농소1동 도서관 : 울산광역시 북구 희망 19길 37(호계동 268-8번지)
 - 농소3동 도서관 : 울산광역시 북구 신답로 59(천곡동 421-12번지)
- 조례의 폐지 : 「울산광역시북구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우리북구는 권역별 작은 도서관 설치운영의 구정방침에 따라 2004. 7월 농소 2동의 기적의 도서관 개관과 2005. 9월 농소 3동 도서관이 이어 준공으로 개관하게 되어 여기에 따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 2006. 9월에는 농소1동 도서관이 개관하므로 농소 지역은 권역별 작은도서관 운영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 되고 있으나
- 권역별 작은 도서관의 중심이 되어 관리운영 할 수 있는 중앙도서관이 2008. 5. 1자 개관 되면서 여기에 맞추어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권역별 작은 도서관과 연계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권역별 작은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농소1동 도서관은 2006년 9월에 개관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없이 운영하여 오다가 이번에 중앙도서관 조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근거에 의하여 운영하여 왔는지
- 만일 운영에 관한 근거도 없이 농소3동 도서관 과 같은 도서관으로 생각하고 농소 3동 도서관 조례를 근거로 하여 운영하여 왔다면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 아무튼 이번 개관하는 중앙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조례에 누락된 농소1동 도서관도 등재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하여는 조금 미흡한 점도 있지만
- 우리 북구 주민들의 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3. 27.(구청장)
- 심의일자 : 2008. 4. 29.(제10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2007.4.11)에 따른 조문, 용어정의, 자구수정, 법률용어 순화 등과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방법의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불법 소각·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함.

나) 주요내용

○ 주요개정 내용 요약

- 일 300Kg이상 생활폐기물 배출업체(대형마트) 자체처리
→ 종량제쓰레기봉투 사용금지
- 대형폐기물 환불규정 마련
→ 업체에서 수거 전까지 배출자가 수수료 환불요구시 환불
- 영업용 연탄재 → 종량제쓰레기봉투 사용 의무화
- 신고포상금 현실화 및 지급제한
 - 전문신고꾼에게 지급 건수 및 거주지 제한 : 월10건 (연50건), 울산거주자
 - 과태료 처분금액의 50%지급
 - 담배꽂초 투기신고 포상금 : 예산의 1/2 범위내

※포상금 예산 중 다량신고자 1명 지급율('06년: 84%, '07년: 72%)

○ 조항별 주요 개정

-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으로 조문, 용어 정의, 법률용어 순화 등 자구 수정(안 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 영업용으로 사용한 연탄재는 쓰레기봉투에 배출(안 제9조제2항)
- 시(市) 생활폐기물처리장 반입 통제에 따라 일 300Kg이상(대형마트 등) 생활폐기물 배출사업장 종량제봉투 사용금지(안 제12조제2항)
- 쓰레기봉투의 환경부 고시기준 적합봉투 사용 신설(안 제14조제4항)
- 대형폐기물 환불 규정 신설(안 제16조제1항 제4호)
-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투기 신고포상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 및 동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한 규정 신설(안 제23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폐기물관리법」이 2007. 4. 11자 전부개정 됨에 따라 여기에 관련되는 조례도 상위법에 맞게 수정과 법률용어 순화에 의한 누구나 알기쉬운 말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과
- 울산광역시로부터 생활폐기물처리장 및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확대 억제 권고 사항에 따라 조정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 생활폐기물을 일일 300kg이상 배출하는 업체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금지하고 자체 처리토록 하고(홈에버, 롯데, 하이마트)
- 개인 가정집을 제외한 영업용 연탄재는 종량제 쓰레기봉투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 포상금 예산 중 1인이 '06년도는 84%, '07년도는 72%로 포상금을 수령하게 되어 전문 신고 뿐이 신고하는 것은 제한을 두고자
- 1인당 월 10건 이하 또는 연간 50건 이하로 제한하고 신고자는 반드시 울산에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1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3. 27.(구청장)
- 심의일자 : 2008. 4. 29.(제10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하수와 오수는 동일한 물질임에도 그 관리체계가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어 하수와 오수를 통합하기 위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은 폐지(2006. 9. 27)되고 「하수도법」이 전부개정(2006. 9. 27)됨에 따라 현행의 「울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민생활지원국에 평생교육과를 신설(안 제5조의 2제1항)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하수와 오수는 동일한 물질임에도 하수에 관하여는 「하수도법」에 의하여 관리를 하고, 오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원화 관리하던 것을
- 하수와 오수를 통합관리를 위하여 2006. 9. 27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므로 여기에 따른 관리 조례인 「울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도 폐지를 하고
- 오수에 대하여는 개정된 「하수도법」 제2조의 삽입되어 하수와 오수관리를 일원화 하게 되었으나
- 분뇨에 대하여는 별도 관리토록 되어 있어 「하수도법」 제2조 및 41조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하수, 오수, 분뇨처리에 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임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1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3. 27.(구청장)
- 심의일자 : 2008. 4. 29.(제10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2006. 9. 27)됨에 따라 새로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규정 근거 마련

나) 주요내용

- 용어 정의(안 제2조)
-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3조)
- 가축사육의 허가절차 등을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6. 9. 27자 폐지되면서
- 「하수도법」을 개정하여 오수와 분뇨는 「하수도법」에 의해 관리하도록 하였고
- 축산폐수에 관하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관리에 대한 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하므로
-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축산폐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3. 27.(구청장)
- 심의일자 : 2008. 4. 29.(제10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수도법」 전부 개정(2007.4.11)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 적용되는 용어와 변경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수도법」 제3조의 용어의 정의 개정사항 반영
 - 제명“울산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를“울산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로 변경
 - 조문의“간이상수도”를“마을상수도”로 개정
(안 제1조, 제2조제1호·제3호, 제13조제1항, 제22조)
- 「수도법」 전부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조문 등 일치
(안 제1조, 제2조제2호, 제6조제1항, 제12조)
- 법령 제명 띄워 쓰기 등에 맞도록 개정(안 제6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5호, 제19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2007. 4. 11자 법률 제8370호로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여기에 따른 용어와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간이상수도”의 용어를 “마을상수도”로 변경하는 것으로 여기에 따라 제명인 「울산광역시 북구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로 변경 하는 내용과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 조문에 있어 “간이상수도” 명칭을 “마을상수도”로 변경하는 내용과 제명의 띄워 쓰기 등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임으로 원안 가결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4. 17.(이영희의원 외 1인 발의)
- 심의일자 : 2008. 4. 29.(제10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으로 중학생은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장학생의 자격을 당초 입법취지에 맞게 우등생 장학생을 일반 장학생으로 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으로 인하여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자에서 “중학교”를 삭제 **【안 제1조】**
- 장학금 종류 중 “우등생 장학금”을 “일반 장학금”으로 개정 **【안 제2조】**
- 우등생 장학생을 삭제하고 일반 장학생으로 개정하여 “일반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함 **【안 제3조제1항제2호】**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조례는 중학교 의무교육이 2002년도 신입생부터 시작되어 3년에 걸쳐 전학생이 의무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현재 사용 중인 조례는 2000. 11월에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
- 현실에 맞지 않게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중·고등학생으로 되어 있어 중학생은 2004년도부터 완전 의무교육으로 바뀌면서 수업료가 면제되는 중학생까지 장학금 지급은 맞지 않으므로 중학생은 삭제하는 내용과
- 새마을 지도자 5%이내 자녀 중 우등생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 우등생이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말하는데 정확한 기준의 설정이 애매모호하고
-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꼭 성적이 우수하여야 하는 필수 조건도 아니므로 좀 더 폭넓은 대상자를 찾기 위하여 성적보다는 품행이 단정하고 성실한 학생도 포함 될 수 있도록 우등을 삭제하고 일반장학금으로 수정하는 내용임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종합복지회관 건립 현황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4. 30
- 심의일자 : 2008. 4. 30.(제1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최상황

가) 추진배경

- 현대자동차는 울산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사회적 책무를 실행하는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우리구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005. 6. 8 쌍방 약정을 체결하였음.

나) 사업개요

- 위 치 : 연암동 1127-2번지 외 9필지

규 모	부지 면적	건축면적	건 축 연면적	주 용 도
지하1/ 지상4/ 1동	9,014m ²	3,375.52m ²	11,564.39m ²	지하1층: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1층: 수영장, 전시홀, 임대시설 2층: 헬스장, 문화공간 등 3층: 체육관, 탁구장, 예식장 4층: 다목적실, 휴게공간

- 총사업비 : 200억

- 사업기간 : 2006. 3. 30 ~ 2009. 6. 30

□ 국민체육센터 건립 현황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4. 30
- 심의일자 : 2008. 4. 30.(제1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사업개요

- 건립위치 : 북구 신천동 580번지 등 15필지(신천 근린공원 내)

- 시설규모 : 토지 7,598㎡(건립부지 4,705㎡, 진입로 2,893㎡)
 건물 4,128㎡(지하 1층 지상 3층)
- 시설내용 :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다목적실 등
- 사업기간 : '05. 7 ~ '09. 6.
- 사업비 : 7,325백만 원(기금 3,000백만 원, 시비 2,000백만 원,
 구비 2,325백만 원)

나) 추진사항

- '05. 7월 : 국민체육센터 건립협약 체결(공사비 30억원 확보)
- '06. 8월 :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06. 11월 : 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건립위치 변경)
- '06. 12월 : 공유재산 취득심의(구정조정위원회)
- '07. 1월 : 진입도로 사용동의(금세기디앤씨)
- '07. 2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의회승인
- '07. 3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168,329,255원)
 ※ 임채룡건축사(명촌동 911-7, ☎052-589-8112, 기간 3. 27~ 9. 28)
- '07. 4월 : 시 투·융자심사 승인
- '07. 9월 : 울산광역시 공원조성계획 변경승인
 ※ 명칭(문화회관→국민체육센터), 위치(신청동 577→580)
- '07. 10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완료)
- '07. 10월 : 체육진흥기금 전액교부('07년도분, 9억원)
- '07. 11월 :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의(건축증가분, 진입로매
 입 등)
- '07. 8월 : 울산광역시 1회추경 예산교부(5억원 확보)
- '07. 12월 : 문화재청 시굴허가(울산문화재연구원)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최상황

- '07. 12월 : 부지 및 진입로 경계측량
- '08. 3월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07. 11. 22 ~ '08. 3. 12)
- '08. 3월 : 감정평가완료, 부지 및 진입로 매입 진행 중

□ 장등마을 체육시설 설치 공사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4. 30
- 심의일자 : 2008. 4. 30.(제1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사업개요

- 공 사 명 : 장등마을 체육시설 설치공사
- 위 치 : 북구 신현동 산 200번지 일원(무룡산 정상 동쪽 500m인근)
- 시설내용 : 파고라, 의자, 운동기구(윗몸일으키기 등) 및 산책로 조성 등
- 사업기간 : '08. 1 ~ '08. 12.
- 사 업 비 : 2억원(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나) 추진사항

- '07. 8월 : 예산확보
- '07. 12월 : 관련부서 업무협의(예산, 추진부서 변경 등)
- '08. 3월 : 국토해양부 도시환경과 업무협의
- '08. 3월 : 시 녹지공원과 업무협의(부지무상)
- '08. 4월 : 세부사업내역 진행 중

□ 호계공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4. 30
- 심의일자 : 2008. 4. 30.(제1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8. 7월 ~ '09. 3월
- 사 업 비 : 600백만 원(국비360, 시비90, 구비150)
- 사업내용 : 리모델링 및 시설물 추가 설치

나) 추진사항

- '07. 3. 23 :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균특 예산 신청
- '07. 4. 13 : 시설현대화사업 지역주민·상인 설명회
- '07. 5. 18 : 시설현대화 사업 사전 컨설팅 실시(1차)
- '07. 6. 23 : 시설현대화 사업 사전 컨설팅 실시(2차)
- '07. 8. 14 : 컨설팅 결과 통보 및 접수
 - 내부 리모델링을 최우선과제로 추진
- '08. 1. 28 : 시설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및 집행계획서 제출
- '08. 3. 25 : 시설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08. 4. 15 : 시설현대화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지역주민 및 상인회 시설 리모델링 필요성 인정
 - 공사에 따른 영업 공백 최소화 요구
 - ※ 지역주민 막구조 설치 부정적, 상인회 생계대책 요구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최상황

□ 건강도시사업 추진계획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08. 4. 30
- 심의일자 : 2008. 4. 30.(제1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추진배경

-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도시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주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환경적 안녕을 추구하고 건강형평성 보장은 물론 쾌적한 도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환경문제의 대두와 보건 의식의 변화
- 건강수준과 삶의 조건이 좋은 건강도시 사업추진
-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

다) 추진사항

- 2007. 11. 05. 건강도시 운영조례 제정
- 2007. 11. 15. WHO 건강도시 연맹 정회원 인정(가입)
- 2008. 02. 04. 건강도시사업 추진 협의회 개최(북구청 실과별)
- 2008. 03. 04. 건강도시사업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전 직원)

제15절 제104회 임시회

1. 개회이유

- 가. 소집요구 : 이영회의원 외 2명
- 나. 개회일시 : 2008. 5. 28. 10:00
- 다. 회 기 : 2008. 6. 5.(9일간)
- 라. 부의안건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병석의원외 2인 발의)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2. 개회사

존경하는 16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20일 “울산외국어고등학교”부지로 우리 북구가 최종 결정 되었습니다.

울산 외고 유치는 16만 구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에 힘입은 것으로 전 구민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아울러 그동안 북구 유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강석구 구청장님,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 무엇보다 부지를 기증해 주신 약수동산회 주민여러분들과 북구외고유치위원회,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유치에 적극 협조하신 우리 구 의원들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어고등학교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북구가 교육도시로 나아가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개최하는 104회 임시회에서는 다가오는 1차 정례회에서 다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조례심의와 함께 의회에서 처리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구정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사전에 구민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충분한 자료수집과 검토를 통하여 지적 위주 보다는 대안 위주의 정책적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자료 제출과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한정된 예산이 적절히 배분되어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시급성과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검토해 보시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충분한 준비로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어

주민불편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가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개최식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5월 28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류 재 건

3. 의사일정

의 사 일 정

제10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8.5.28 ~ 6.5(9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8.5.28 (수) 10:00		개 회 식	
개회식 직 후	1	1. 제10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33호) - 제안설명(부구청장) - 4. 제10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5.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6.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제131호, 의원발의)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7.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9호, 총무국) 8.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8호, 총무국) 9.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130호, 의원발의) 10.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132호)	수정가결 원안가결 부 결 원안가결
2008.5.29 (목) 10:00	2	1.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기획감사실 ○ 보 건 소	
2008.5.30 (금) 10:00	3	1.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주민생활지원국	
2008.5.31 (토)		휴 회(토요일)	
2008.6.1 (일)		휴 회(일요일)	
2008.6.2 (월) 10:00	4	1.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총 무 국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8.6.3 (화) 10:00	5	1.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도시경제국	
2008.6.4 (수) 10:00	6	1.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의회사무과 ○ 계수조정	
2008.6.5 (목) 10:00	7	1.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종합심의의결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5. 15.(구청장)
- 심의일자 : 2008. 5. 28.(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공무원여비규정」이 사후정산제도로 개정·시행(2008. 1. 1)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함.
 - 자가용 이용 출장 직원에 대한 증빙자료 징구 곤란
 - 장기교육과정의 경우 사비(私費) 사용 후 정산해야하는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문제점 발생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개정안) 통보 :
2008. 4. 8.

나) 주요내용

-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의 여비지급 기준 명시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제1호 다목적용
-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시 「공무원여비규정」(사후정산) 적용 제외
 -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급
 - 현행 운임 및 숙박비 사후 정산제 ⇒ 정액제로 환원(별표)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조직 명칭 변경
 - 행정자치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기획예산처장관 → 기획재정부장관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공무원여비규정이 2008. 1. 1자 개정·시행 되면서 여비를 지급 받아 출장 하던 것을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식비와 일비는 선 지급하나 교통비 및 숙박비는 사후 영수증 첨부 정산으로 지급 하게 되어있어
- 출장하는 직원들에게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조정하고자 행정 안 전부에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을 시달하여 거기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함이며
- 현재 여비지출에 대한 실태를 보면 교통비는 실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증빙서류(운임영수증)를 첨부 할 수 없는 개인승용 차 등으로 출장 할 때는 교통비를 지급 받을 수가 없으며

- 숙박비 역시 출장지 숙박시설 카드결제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숙박비 상한제에 의하여 40,000원까지 지급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친·인척 집 등에 방문 거주할시 숙박비 영수증 미첨부로 지급 받을 수가 없으므로
- 이런 것을 보안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들의 여건에 맞는 표준안을 제시하여 식비와 일비 그리고 숙박비는 정액제로 하고 교통비는 실비로 지급하되 지금까지 후 정산에서 선지급으로 조정되는 조례개정 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운임 및 숙박비(제3조의1 관련) (단위 : 원)						[별표] 운임 및 숙박비(제3조의1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버스) 운임	숙박비 (1야당)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버스)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자량차단차량은 실비로 지급)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자량차단차량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u>30,000</u>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u>40,000</u>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5. 15.(구청장)
- 심의일자 : 2008. 5. 28.(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구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개방하여 온 대회의실 사용에 있어 부대시설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구민 최우선 행정을 실현하고 사용료의 현실화로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회의실 사용에 있어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시설범위에 구내식당 시설 사용을 추가(안 조례 제2조)
-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별 사용료 세분화 및 현실화 (안 조례 제4조)

현 행	개 정 안			
	구분	항목	사용료(원)	비 고
대회의실 사용료 90,000원	기본 시설	대회의실	100,000	▪ 1시간 기준 ▪ 기준시간 초과 시 매시간당 20% 가산 ※ 60분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부대 시설	폐 백 실	30,000	▪ 1시간 기준 ▪ 기준시간 초과 시 매시간당 20% 가산 ※ 60분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구내식당	100,000	▪ 2시간 기준 ▪ 기준시간 초과 시 매시간당 20% 가산 ※ 60분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1일1팀만 사용가능함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구민의 편의를 위하여 대회의실을 사용하지 않는 공휴일 및 국경일에 우선적으로 구민들에게 개방하여 예식장 및 폐백실로 사용하도록 함과 각종 시민, 단체행사장으로도 사용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번 조례개정은 예식장 하객을 위한 피로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사용하는 구내식당까지 개방하여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매우 좋은 생각으로 판단됩니다만
- 그러나 구내식당 개방에 있어 1일 1팀만 사용토록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권리를 제한하고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1일 한 팀만 사용하겠다고 명문화 하는 것 보다 탄력적으로 적절하게 조절이 가능하게 하여 필요에 따라 2~3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므로
- 대회의실 사용처럼 1일 사용 회수를 제한하지 말고 그날에 신청자가 사용시간 접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13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5. 16.(박병석의원 외 2인 발의)
- 심의일자 : 2008. 5. 28.(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3장 제4대 전반기 개회상황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현재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회의규칙」에 따르면 의장 및 부의장 선거의 경우 무기명 투표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절차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선거 시 의장과 부의장에 누가 입후보 하였는지를 알지도 못한 채 투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최소한 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자는 등록신청을 하고, 앞으로 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는 정견발표를 하는 것이 우리구의회 위상을 높이고 민주적인 선거문화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회의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후보자 입후보 등록 :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입후보할 의원은 선거일 3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입후보 등록신청 【안 제8조제5항】
- 정견발표 : 의장과 부의장 후보는 투표시작 전 정견발표를 5분 이내 실시 【안 제8조제6항】

3) 심의결과 : 부결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5. 19.(의장 제의)
- 심의일자 : 2008. 5. 28.(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구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도록 감사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감사기간 : 2008. 7. 14~7. 18(5일간)
- 감사장소 : 북구의회 소회의실 및 대상사무 현장
- 감사주체 : 본회의(전의원 7명)
- 감사방법 : 보고의 청취, 질의와 답변, 자료의 요구 및 확인, 현장 확인, 증인·참고인의 증언 청취 등

제16절 제105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개회일시 : 2008. 6. 30. 10:00

다. 회 기 : 2008. 6. 30.(1일간)

라. 부의안건

○ 의장선거의건

○ 부의장선거의건

3. 의사일정

의 사 일 정

제10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8.6.30(1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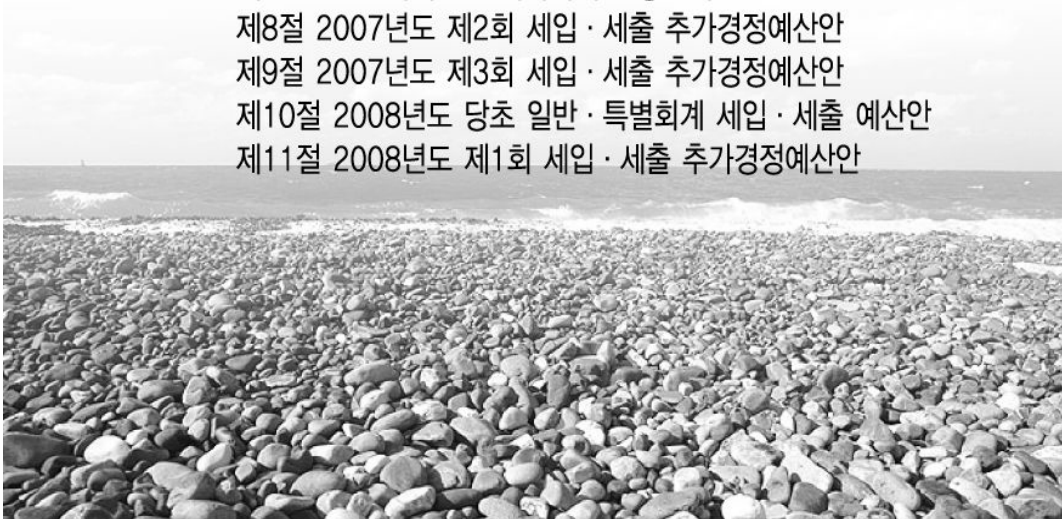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8. 6. 30	1	1. 제10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 2. 제10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제4대 후반기 의장 선거의 건 4. 제4대 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	



제 4 장

예산·결산심의사항

- 제1절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2절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 제3절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4절 2007년도 당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제5절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6절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 제7절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제8절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9절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10절 2008년도 당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제11절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절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 2006년 7월 14일
- 제출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상정일자 : 2006년 7월 20일
- 본회의의결일자 : 2006년 7월 28일

2.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 원)

구 분	2006년 예산액	기정예산액 (2006. 1회)	증 감	
			금 액	비 율(%)
계	88,304,749	81,109,942	7,194,807	8.87%
일 반 회 계	87,493,603	80,419,919	7,073,684	8.79%
특 별 회 계	811,146	690,023	121,123	17.55%
의 료 급 여 기 금	97,123	39,000	58,123	149.03%
주 차 장	714,023	651,023	63,000	9.67%

3.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에산액 (예산총액)	일시 차입금
		삭 감 액(B)			예 비 비				
		세 입	세 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 계	88,304,749	-	54,500		1,105,748	1,160,248	88,304,749	2,649,142	
일 반 회 계	87,493,603	-	54,500		873,247	927,747	87,493,603	2,624,808	
특 별 회 계	811,146				232,501	232,501	811,146	24,334	
특 별 회 계	의료급여기금				660	660	97,123	2,914	
	주 차 장	714,023			231,841	231,841	714,023	21,421	

붙임 : 삭감조서 참조

4. 심의의견 요지

□ 세 입

-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1,109,942천원보다 7,194,807천원이 증가된 88,304,749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 600,000천원, 세외수입 1,137,678천원, 지방교부세 676,183천원, 조정교부금 2,647,093천원, 국·시비보조금 2,133,853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세입 예산중 의존재원을 제외한 재원에 대해서는 사전 정확한 세수추계로 가급적 당초예산에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현안사업에 조기에 집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략적인 추계로 인하여 순세계 잉여금이 제1회 추경시 4,700,000천원, 금회 추경시 147,994천원이나 발생한다는 것은 공공도서관 신축, 종합사회복지관 진입도로 개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등 당면 현안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개월간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도록 하는 것은 집행부 안일한 태도라고 밖에 볼 수 없어 심히 유감스러우며, 집행부의 분발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리며,
- 그리고,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여 타 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구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최대한 제공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보조금, 특별교부세·교부금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함.

제4장 예산 · 결산 심의사항

□ 세 출

-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보조금 변동 및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분과 기타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소요경비, 그리고 기타 의존사업에 대하여는 교부 목적에 맞게 긴축위주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둔 건전재정 운영 기본원칙을 어느 정도 준수하였다고 여겨지나, 농소2동 동사무소 천정 방수 및 바닥 타일, 텍스 보수공사에 대하여는 2001년도 준공한지 채 5년만에 천정 등 벽면 누수로 인하여 보수공사비가 급회 추경시 계상하는 것은 부실공사를 의심치 않을 수 없음.
- 그리고, 보건소 비만클리닉사업 결과보고서 학술용역 등 각 과별 각종 용역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그 결과를 행정에 접목시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환경미화과의 경우 음식물자원화시설 개선 학술 용역외 1건에 대하여 철저한 사업 추진으로 용역사업 완료 후 그동안 제기되었던 악취발생에 대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바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람.
- 그리고, 예산 심의시 각 실과별 언급되었던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홍보실 기자실 설치와 관련하여 의원들의 강도 높은 갈등과 반대속에 의원 상호간 마라톤 심의 끝에 논의한 결과 기자실 설치시 현재 계획중인 밀폐된 공간에서 복도 등 개방된 공간으로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일부 의원들의 반대속에서 결론이 도출되었으며, 또한 향후 추가적인 지원은 불가함을 명백히 언급하고자하며,

전부서 공통사항으로써 특히 도시녹지과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단속반 근무복 구입과 같은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기 바람.

- 또한, 회계정보과의 경우 금회 추경시 반영된 업무용 컴퓨터 구입시 조달구매에만 의존하지 말고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상의 모델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위생과의 간이상수도 43개소에 대한 보수공사비 50,000천원 및 복지서비스과의 경로당 99개소에 대한 개보수비100,000천원만 계상되는 것은 주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로써 매년 집중호우 및 시설노후화로 파손의 심각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예산이 다소 적게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음.
- 그리고, 복지서비스과를 비롯한 일부 부서에서는 매년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 집행 잔액이 과다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어렵게 확보한 의존재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것은 집행부의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향후 면밀한 사업추진으로 보조금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 문화체육과의 경우 제40회 처용문화제 복구 홍보관 설치와 관련하여 쇄부리 축제를 울산의 대표적인 문화제로 육성 계획하고 하는 만큼 치밀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역적 특색이 있는 축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라며,
- 건설과의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및 미불용지 보상에 대하여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연차적인 예산확보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람.

제4장 예산·결산 심의사항

- 마지막으로 생명산업과의 경우 제2회 농·도 한마당 축제와 관련하여 사전에 치밀한 준비로 농어민 및 도시민이 다함께 참여하여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 이상과 같이 언급된 제2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전 부서에서는 충분히 보완하여 향후, 예산심의시 반드시 개선되어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전 직원 모두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5. 심의결과 : 수정가결

제2절 2005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의 건

1. 심의경과

- 가. 제출일자 : 2006. 8. 17
-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 다. 심의일자 : 2006. 9. 11 ~ 9. 19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을 울산광역시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입결산액 : 118,226,581,080원
 - 세출결산액 : 91,287,320,820원
 - 세계잉여금 : 26,939,260,260원
- 나.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입결산액 : 181,597,730원
 - 세출결산액 : 181,597,730원
 - 세계잉여금 : 0원
- 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4장 예산·결산 심의사항

○ 세입결산액 : 33,651,300원

○ 세출결산액 : 28,877,600원

○ 세계잉여금 : 4,773,700원

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입결산액 : 59,724,020원

○ 세출결산액 : 52,000,000원

○ 세계잉여금 : 7,724,020원

마.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입결산액 : 693,388,250원

○ 세출결산액 : 432,811,230원

○ 세계잉여금 : 260,577,020원

바. 기금결산

○ 기금 : 522,548,560원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 0원

－ 노인복지기금 : 112,447,010원

－ 식품진흥기금 : 134,749,130원

－ 재해대책기금 : 166,467,540원

－ 재난관리기금 : 108,884,880원

4. 결산검사위원 감사의견 요지

□ 세입부문

- 2005년도 세입예산액은 924억 5,771만 1천원이며, 수납액은 941억 1,923만원으로써 예산액의 101.8%가 되겠으며, 징수결정액에

제2절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대한 수납액의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0.1%가 높아졌으며, 결손처분액은 1,259만원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4억 1,849만 5천원이 증가하였음.

특히, 결손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시효완성이 78.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징수유예 37.8%, 거소불명 20.8%, 무재산 15.0%, 고질적체납 12.0%,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8.7%, 기타 5.4%순으로 나타났음.

미수납액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고질적 체납을 줄이고 채권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수납액을 살펴보면, 금고출납명세서상의 출납액과 결산서상에 4백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바, 이는 복식부기 정착 지원보조금으로 2005년에 금고에 입금되었으나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예산편성 시 보다 세밀한 주의가 요구되어 지는 사항임.

□ 세출부문

- 세출의 경우 예산액은 924억 5,771만 1천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된 231억 3,898만 8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155억 9,669만 9천원이었고, 세출예산전용액은 예산액의 0.09%인 8,170만원이었으며 전용의 주요내용은 당초 민간보조사업으로 계획하였던 어르신 환경가꾸미사업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고자 재료비 및 일반보상금 목으로 변경한 7,670만원

제4장 예산·결산 심의사항

등 목간 전용이 3건이며, 세출 예산이체액은 예산액의 0.67%인 6억 1,635만 3천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의 인력관리의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예산이용은 없음.

- 예비비 예산액은 21억 937만 3천원으로써 태풍 “나비”로 인한 도로 붕괴에 따른 응급복구 및 하수구 배수암거 공사 등 6건에 9억 5,944만 8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집행잔액이 11억 4,992만 5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지출결정 한 금액 중 8억 5,200만 2천원을 지출하고 1억 644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8.4%에 해당하는 905억 9,203만 4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211억 5,652만 9천원으로써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효문동사무소 건립 등 15억 5,238만 6천원 등 91건 149억 4,992만 2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선은실비요양원 신축공사 4억 3,686만원 등 13건에 18억 7,372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양정동사무소 건립비 5억원 등 12건에 43억 3,288만 6,400원입니다. 사고이월의 주요사유는 민원에 따른 착공지연, 토지사용 동의 지연 등으로 인한 공사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등 임.
-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3%에 해당하는 38억 4,813만 6천원이었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하였음.

□ 특별회계부문

- 세입의 경우 수납액 9억 6,836만 1천원은 예산액의 100.9%로써 1,789만 7천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거의 예산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납되었음.

제2절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발생한 미수납액은 6억 788만 7천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94.6%를 차지하며 그 사유는 소송계류 및 재산 압류 중이 80.2%, 고질적 체납이 10.9%, 무재산이 6.4%, 기타 1.6%, 거소불명이 0.8%순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60.1%로써 전년도 64.8%에 비하여 4.7% 낮아진 것으로 이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53.2%로 전년도 57.5%에 비해 다소 떨어졌기 때문임. 주차장특별회계의 수납율이 매년 조금씩 하락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됨.

□ 기금부문

- 기금결산보고서 검토결과 식품진흥기금과 재해대책기금 잔액예치가 보통예금에 되어 있어 이자수익 발생이 적은 것으로 생각되며, 보다 높은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정기예금이나 환매채 등에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5. 심의의견 요지

□ 세입부문

- 2005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165억 4,716만 4,58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25억 1,536만 370원, 수납액은 1,182억 2,658만 1,080원으로써 96.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당해년도 징수실적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미수납액에 대해 보다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고질적 체납을 줄이고 채권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제4장 예산·결산 심의사항

- 우리 북구는 지역특성상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개발여력이 높아 신규 재원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 실·과·소에서는 자체재원 확보방안 뿐만 아니라 국·시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각별한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출부문

-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이 실제 집행된 것을 확정적인 계수로써 표시하는 행위으로써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위법 지출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집행기관의 재정집행 상황 및 성과, 그리고 미래재정수요 등을 파악하여 장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전년도에 비해 불용액이 상당히 감소한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 사업비 및 경상적 경비 등 예산편성 시 적정 소요금액만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사전 충분한 조사나 분석 없이 과다 편성함으로써 잘못된 예산추계로 인하여 불용액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한 사례는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기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함.
- 따라서, 추후 사업의 비용분석, 시장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한 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라며, 아울러 과다 편성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드시

제2절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감액 정리하여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급하고도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 꼭 필요한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시설공사의 경우” 예산편성 후 공사 준비단계에서 준공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므로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기 바라며, 이월된 사업은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특히, 각종 공사시행 시 보상지연,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사업차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금부문

- 기금의 경우 잔액을 예치함에 있어 좀 더 이율이 높은 곳에 적립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6.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3절 2006년도 제3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6. 12. 7
- 제출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06. 12. 21
- 본회의 의결일자 : 2006. 12. 27

2. 2007년도 일반 ·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천 원)

회 계 별		2006년 예산액	%	기정예산액 (2006. 2회)	%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계		92,147,258	100.0	88,304,749	100.0	3,842,509	2,764,418
일 반 회 계		91,388,334	99.2	87,493,603	99.1	3,894,731	2,741,650
특 별 회 계		758,924	0.8	811,146	0.9	△52,222	22,768
기 타 특 별 회 계	의료급여기금	97,126	0.1	97,123	0.1	3	2,914
	주 차 장	661,798	0.7	714,023	0.8	△52,225	19,854

3.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시 차입금
		삭 감 액(B)			예 비 비				
		세 입	세 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 계	92,147,258				2,768,122	2,768,122	92,147,258	2,764,418	
일 반 회 계	91,388,334				2,473,337	2,473,337	91,388,334	2,741,650	
특 별 회 계	758,924				294,785	294,785	758,924	22,768	
기 타 특 별 회 계	97,126						97,126	2,914	
	장	661,798			294,785	294,785	661,798	19,854	

4. 심의의견요지

□ 세입 · 세출

- 『2006년도 제3회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예산은 921억 4,725만 8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13억 8,833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 5,892만 4천원입니다. 이는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38억 4,250만 9천원이 증액 편성요구 되었음.
-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대부분 국 · 시비 변경분, 집행잔액 삭감분으로 심의결과 삭감액은 없음.
-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국 · 시비 보조금 변경분 정리, 각종 경상적 경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 성립전 예산편성,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에 따른 사업비 편성 등 법적 · 필수경비 위주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나, 일부 예산의 경우 제1회 및 제2회 추경에 미리 삭감해야 할 예산이 이제야 정리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한 사례가 다수 있었음.
 - 인건비 과다 집행잔액 발생 총무과 13억, 보건소 2억, 동사무소 2억 등 총 17억원의 예산이 인건비 추계가 잘못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우리구의 경우 매년 당초예산 편성 시 실제 가용재원은 50~60억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너무 과다한 집행잔액이 아닐 수 없으며, 이 예산이 개발수요와 구민의 요구가 많은 우리구에서 적절히 사용된다면 많은 혜택이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돌아갈 것임. 추후에는 잘못된 인건비 추계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

제3절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청사 청소용역비 집행잔액 관련 청사 청소용역의 경우 매년 초에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계약 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 시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나 제1·2회 추경도 아닌 제3회 추경에서 이를 삭감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임. 구청사, 보건소, 문예회관, 도서관 등 청사에 대해 청소용역을 실시하는 모든 부서에서 청소용역비 집행잔액을 금회에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을 다루는 공무원들의 마인드와 아울러 예산을 총괄관리하는 부서가 이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는데 좀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임.
- 북구 관광안내도 제작예산 전액 삭감 관련 2006년 당초예산에 관광안내도 제작 예산 4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예산으로 의도한 안내도를 제작할 수 없어 금회 추경에 이를 전액 삭감하고 2007년도 당초예산에 1천만원을 반영한 것은 예산편성 시 사전에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밖에 볼 수 없음. 만약 예산이 부족하였다면 지난 두 번의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했어야 옳았을 것이며, 예산편성 시 사업목적, 기대효과, 소요예산액 등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예산의 적극적 사용 관련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 당초 계획한 사업목적에 부합한다면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재투입하여 사용해야 할 것임. 환경미화원 복지예산 피복비의 경우 집행잔액에 대해 삭감하는 대신 꼭 필요한 피복관련 예산을 집행하여 미화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

제4장 예산·결산 심의사항

을 것이며, 아파트 관리교육을 위한 외래강사 초빙예산과 관련 기록 자체에서 책자를 제작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으나 이를 평소 교육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소규모 아파트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예산집행이 요구됨.

- 마지막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좀 더 장기적 안목이 필요 금년 상반기에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로 인해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 다수 발생하였음. 예산편성 시 선거로 인해 불가피하게 추진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를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하였다면 선거로 인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최소화 되었을 것임.
-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경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기에 집행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편의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당부함.

5.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4절 2007년도 당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6. 11. 20
- 제출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06. 11. 27
- 본회의 의결일자 : 2006. 12. 20

2.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천 원)

회 계 별		2007년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2005당초)	%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계		85,087,452	100.0	74,021,731	100.0	11,065,721	2,552,624
일 반 회 계		84,318,482	99.1	73,507,285	99.3	10,811,197	2,529,554
특 별 회 계		768,970	0.9	514,446	0.7	254,524	23,069
기 타 특 별 회 계	의료급여기금	93,800	0.1	39,000	0.1	54,800	2,814
	주 차 장	513,170	0.6	475,446	0.6	37,724	15,395
	기 반 시 설	162,000	0.2	0	0	162,000	4,860

3.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시 차입금
		사 감 액(B)			예 비 비				
		세 입	세 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 계	85,087,452	0	519,479	0.6	1,080,891	1,600,370	85,087,452	2,552,624	
일 반 회 계	84,318,482	0	517,479	0.6	862,158	1,379,637	84,318,482	2,529,555	
특 별 회 계	768,970	0	2,000	0.3	218,733	220,733	768,970	23,069	
기 타 특 별 회 계	의료급여기금	93,800	0	0	0	0	93,800	2,814	
	주 차 장	513,170	0	2,000	0.4	70,051	72,051	513,170	15,395
	기 반 시 설	162,000	0	0	0	148,682	148,682	162,000	4,860

※ 삭감조서 불임 참조

4. 심의의견요지

□ 세 입

- 2007년도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대비 110억 6,572만 1천원이 증액된 850억 8,745만 2천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내역은 지방세수입 25억 7,600백만원, 세외수입 13억 4,079만 6천원, 지방교부세 5백만원, 조정교부금 87억 8,397만원, 보조금 41억 1,953만 8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세입에 있어 지방세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인상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으로 증가가 예상되나 전반적인 경기둔화로 인한 지난년도 수입은 감소가 예상됨.

세외수입에 있어 경상적 세외수입은 구민의 복지·문화생활 요구 증가로 구의 문화·체육시설 확충과 국·공유재산 등 시설물에 대한 임대료와 사용료수입 현실화로 증가가 예상되며, 부동산경기 과열로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등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 세외수입원 발굴과 적극적인 경영수익사업으로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개발의 여지가 많은 우리구의 현실을 감안하여 적기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방세과 등 관련부서에서는 누락 및 탈루세원 발굴은 물론 특별교부금·교부세 확보를 위한 세입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람.

□ 세 출

- 2007년 당초예산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2006

제4장 예산·결산 심의사항

년도 당초예산대비 110억 6,572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경상예산의 경우 전년도대비 42억 9,627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도 전년도 대비 20억 961만 2천원이 증액되었음.

2007년도 당초예산안은 자체사업의 확대 및 예산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경상예산을 삭감하였으며,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기관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 일반운영비와 차량선박비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토대로 10%정도로 삭감하였음.

- 2007년 당초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가장 아쉬웠던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공무원들의 자세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전례답습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구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바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의회에서 지적한 예산문제에 대하여 올해에도 큰 개선 없이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위원회수당이 편성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하겠음.
-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쳤음에도 사업내용의 비실효성, 빈약성, 전시성행사, 그리고 운영비를 많이 배정받기 위한 사회단체 고유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편성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존중하여 문제가 되는 최소금액만을 삭감하여 승인하였지만 집행부에서도 보다 철저한 예산집행과 관리·감독을 당부드립니다.

제4절 2007년도 당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한 사항을 참조하여 각종 축제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우리구를 알리기 위한 홍보관련 예산편성을 보면 랜드마크 제정 용역비, 구정홍보영상물 제작, 구정홍보 화보집 제작, 구정소식지 발행, 주요시책 광고료 등으로 구정홍보에 대한 방향, 구체적 목적이 결여된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일회성 홍보가 아닌 우리구가 홍보해야 할 방향과 목적 등에 대하여 좀 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모든 예산은 전 구민의 소중한 재산임을 깊이 인식하여 작은 누수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소중히 집행하시고, 각종 단위업무별 구체적이고 명확한 산출근거를 토대로 사업예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전 의원을 대표하여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5. 심의결과 : 수정가결

제5절 2007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 2007년 5월 21일
- 제출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07년 5월 29일
- 본회의 의결일자 : 2007년 6월 4일

2.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 원)

구 분		2007년 예산액	기정예산액 (2007년 당초)	증 감	
				금 액	비 율(%)
계		98,197,583	85,087,452	13,110,131	15.4%
일 반 회 계		97,107,611	84,318,482	12,789,129	15.2%
특 별 회 계		1,089,972	768,970	321,002	41.7%
	의 료 급 여 기 금	125,252	93,800	31,452	33.5%
	주 차 장	802,720	513,170	289,550	56.4%
	기 반 시 설	162,000	162,000	0	0%

3.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시 차입금
		사 감 액(B)			예 비 비				
		세 입	세 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 계	98,197,583	-	234,807		1,774,399	2,009,206	98,197,583	2,945,927	
일 반 회 계	97,107,611	-	234,807		1,342,218	1,577,025	97,107,611	2,913,228	
특 별 회 계	1,089,972				432,181	432,181	1,089,972	32,699	
특 별 회 계	의료급여기금				997	997	125,252	3,758	
	주 차 장				282,502	282,502	802,720	24,082	
	기 반 시 설				148,682	148,682	162,000	4,860	

붙임 : 삭감조서 참조

4. 심의의견 요지

□ 세 입

-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5,087,452천원 보다 13,110,131천원이 증가된 98,197,583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5,098,201천원, 지방교부세 1,856,441천원, 조정교부금 1,830,000천원, 국·시비보조금 4,325,489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여 타 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구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최대한 제공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보조금, 특별교부세·교부금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함.

□ 세 출

-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할 부분과 반드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을 지닌 부분 그리고 불합리하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하여 삭감을 하여 14건에 총 2억 3,480만 7천원을 삭감하였음.
-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 정리, 시급한 사업비, 정확한 추계를 통한 인건비 및 제 수당 정리분, 국·시비 보조금 반납분 등 법적·필수경비 위주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나, 일부 예산의 경우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한 사례가 다수 있었음.
-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한 경우

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인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수행하는 “전종목 생활체육인 체육대회”, “자원봉사자 및 생활체육지도자 단합대회”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사전에 공고를 하여 신청서를 접수받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이러한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원 소속의 쇄부리 보존회가 계획한 “쇄부리 놀이”의 경우 당초예산에 문화원 사업에 포함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마땅하나 그렇지 못하였음. 어떤 단체를 운영하다보면 꼭 필요한 사업비나 운영비가 불가피하게 필요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임. 현행 「울산광역시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하면 당초예산 편성시에만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당초예산 편성 관련하여 2007년도 당초예산의 경우 2006년도 하반기에 업무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게 됨. 비록 어느 정도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삭감하지는 않았으나 “브랜드슬로건 메뉴얼 개발 용역”의 경우 당초예산 심의시나 각종 업무계획 보고시에 “브랜드슬로건 메뉴얼 개발 용역”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 단지 “디자인 공모”만 하면 이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전의원들은 판단하였음. 그러나 이제 와서 디자인 공모가 완료되었으니 디자인 활용을 위한 메뉴얼 개발 용역비를 요구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

는 일임.

“브랜드슬로건 디자인 공모”와 “브랜드슬로건 매뉴얼 개발”이 별개의 사업이 아니므로 당연히 한데 묶어 당초예산 심의시나 업무보고시에 설명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므로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경우 집행부에서 당초예산에 3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의회에서 전의원들이 격론을 거친 끝에 5천만원을 삭감하고 2억 5천만원으로 확정을 하였음. 그런데 금번 추경에 삭감한 5천만원을 재차 요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사료됨.
- 금번 추경 심의시에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아쉬웠음.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되어 예산심의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였으며,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하여 지적한 의원에게만 설명을 하고 다른 의원들에게는 설명을 하지 않아 심의에 상당한 애로를 겪었음. 또한 성혜마을 공동취사장의 경우 2004년도에 시에서 우리구로 관리 전환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관련도면 등을 인계받지 않아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특히 이번과 같이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대처할 수 없는 문제점도 노출되었음. 지금이라도 시설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인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로 예산심의가 지장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연찬과 적극적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업무에 대한 뚜렷한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함.

제5절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인건비 과다 집행잔액 발생문제가 금년에는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이 예산이 개발수요와 구민의 요구가 많은 우리구에서 적절히 사용된다면 보다 많은 혜택이 구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임.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 드림.
-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경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향후 예산심의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 직원 모두가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림.

5. 심의결과 : 수정가결

제6절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 심의경과

- 가. 제출일자 : 2007. 6. 26
- 나. 제출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 다. 심의일자 : 2007. 7. 4 ~ 7. 10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세입·세출 결산
 - 세입결산액 : 114,088,601,780원
 - 세출결산액 : 90,311,839,870원
 - 세계잉여금 : 23,776,761,910원

4. 결산검사위원 감사의견 요지

- ☐ 세입부문
 - 2006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913억 8,833만원이며, 수납액은 920억 3,899만원으로써 예산액의 100.7%로 6억 5,066만원이 초과 수납

제6절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되었으며,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은 96.4%로 전년도에 비해 0.9%가 낮아졌으며, 결손처분액은 4억 9,465만원이 증가하였음. 특히, 결손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공매시무배당이 38.13%, 무재산이 35.26%, 시효완성이 24.81%, 행방불명이 1.80%순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이 66.79%, 고질적 체납이 13.51%, 거소불명이 8.23%, 무재산 8.20%, 기타가 3.23%, 징수유예 0.04%순으로 나타났음. 결손처리액 중에는 과년도에 이미 결손처리 할 금액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었음. 결손사유가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결손확정을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고질적 체납을 줄이고 채권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세외수입예산 중 하천사용료의 징수결정액이 지난해 보다 3,567만원이 감소하였는데는 사용료 결정시 공시지가 적용의 오류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사용료 결정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아울러 하천주변 용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세출부문

- 세출의 경우 예산액은 913억 8,833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된 211억 5,653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125억 4,486만원이었고,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액의 0.51%인 4억 6,721만원이었으며 전용의 주요내용은 당초 민간보조사업으로 계획하였던 어르신환경가꾸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고자 재료비 및 일반보상금 목으로 변경한 1억 8,721만원 등 목간 전

제4장 예산·결산 심의사항

용 4건이며, 세출예산 이체액은 예산액의 36.08%인 329억 7,157만원으로 2006년 7월 1일자 대대적인 조직개편으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예산이용은 없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9.86%에 해당하는 898억 7,887만원이었으며, 이월액은 151억 4,377만원으로써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박상진의사생가 보수공사 4억 9,487만원 등 36건 57억 4,303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음식물자원화시설진입로 확·포장공사 2억 6,606만원 등 13건에 24억 5,705만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양정동사무소 건립비 10억 5,400만원 등 13건에 69억 4,369만원임. 사고이월의 주요사유는 보상지연, 설계변경, 지장물 철거지연 등 임. 가정복지 세항, 민간자본이전 세세항, 민간자본보조 목에서 18억 8,3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중 15억 5,239만원은 전년도부터 추진해 온 실비전문요양시설 건립공사가 당해연도에 전면 취소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이는 당초 실비전문요양시설 건립 계획안이 위치선정과 업체선정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으로 보다 철저한 계획수립과 민원조사, 업체선정으로 향후 아까운 보조금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이용, 전용 및 이체에 있어 당해 세출결산 중 무룡천 수해복구공사비 1억 4,160만원 중 재해대책 세항, 자체사업 세세항, 시설비목, 수해복구공사비 1억원은 하천관리 세항, 자체사업 세세항, 시설비 목 공사로 세항간 예산 전용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할 것임.

□ 특별회계부문

- 세입의 경우 수납액 8억 8,308만원은 예산액의 116.36%로써 1억 2,415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의료급여기금에서 1,428만원, 주차장에서 1억 988만원이 초과 수납 되었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발생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1,756만원으로 전체 다음연도 이월액의 90.85%를 차지하며,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는 고질적 체납이 60.59%,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이 30.31%, 무재산이 8.75%, 거소불명이 0.35% 순임.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52.79%로써 전년도 57.80%에 비하여 5.01%가 낮아졌음. 이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60.65%로 전년도 74.42%에 비해 다소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다 주의가 요망됨. 특별회계 세출의 경우 예산액은 7억 5,892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천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7억 6,892만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액, 세출예산 전용 및 이용·이체는 없음. 특별회계 예산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6.31%에 해당하는 4억 3,297만원이며, 이월액은 1,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1.74%에 해당하는 3억 2,095만원이었으며, 이는 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잔액 등에 기인한 것임.

□ 기금부문

- 당해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종으로써 전년도말 잔액은 5억 3,027만원이고 수납액은 24억 9,272만원, 지출액은 4,469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잔액은 29억 7,831만원임.

5. 심의의견 요지

□ 세입부문

- 2006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133억 1,379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193억 3,322만원 중 수납액이 1,140억 8,860만원, 미수납액이 52억 4,462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의 95.6%를 수납하였음. 세입의 경우 당해연도 징수실적은 비교적 양호하다 할 수 있겠으나 과년도 세입징수는 거의 모든 부서에서 극히 저조한 실정임. 과년도분과 체납이월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고질적 체납을 줄이고 채권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2005회계연도에 비해 결손처분액이 4억 9,465만원이 증가하였음. 적법한 절차를 통한 결손처분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는 하나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람.
- 1997년 7월 15일 광역시 출범과 동시에 신설된 우리구는 양적인 면은 물론 질적인 면에서도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음. 도시 인프라 구축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문화, 체육, 청소년 분야 등에서 구민의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체납액 일소와 경영수익사업 등을 통한 자체재원 확보방안 뿐만 아니라 국·시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각별한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람.

□ 세출부문

- 세출의 경우 예산액은 913억 8,833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된 211억 5,653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125억 4,486만원이었고,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액의 0.51%인 4억 6,721만원이었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이 실제 집행된 것을 확정적인 계수로써 표시하는 행위로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위법 지출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집행기관의 재정집행 상황 및 성과, 그리고 미래재정수요 등을 파악하여 장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전년도에 비해 불용액이 상당히 감소한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특히 우리 의원들이 작년에 지적한 인건비 관련 과다 집행잔액 부분이 상당히 개선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음. 그러나, 예산전용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사용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가 있었으며, 직원연가 보상비의 경우 정확한 예측은 어려울 것이나 어느 정도 사전에 이에 대한 부서확인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이와 같이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실비전문요양시설의 경우 당초 건립계획 수립 시 위치, 업체선정, 민원 등에 대한 예측이 잘못되어 아까운 보조금이 반납되는 일이 있었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또한 예산을 편성할 때 소요되는 예산액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대충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추후 다양한

제4장 예산·결산 심의사항

방법을 통하여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한 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라며, 아울러 과다 편성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드시 감액 정리하여 구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급하고도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공사의 경우” 예산편성 후 공사 준비 단계에서 준공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므로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기 바라며, 이월된 사업은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특히, 각종 공사시행 시 보상 및 지장물 철거지연,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사업차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금부문

-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종으로 기금의 경우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써 매년 지출액이 미미하므로 잔액을 관리함에 있어 안정적이면서 좀 더 이율이 높은 곳에 적립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6.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7절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 심의경과

- 가. 제출일자 : 2007. 6. 26
-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 다. 심의일자 : 2007. 7. 3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2006년도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일반회계
 - 지출결정액 : 179,811,000원
 - 지 출 액 : 171,890,050원
 - 집중호우 및 태풍응급복구사업 등 총 6건
 - 지 출 잔 액 : 7,920,950원

4. 심의의견 요지

-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 하여야 하며,

제4장 예산·결산 심의사항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 총 179,811,000원 중 집중호우 및 태풍응급복구 등 6건에 171,890,050원을 지출하였으며, 7,920,9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음.
- 2006회계연도 예비비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보면 민사소송 판결 선고에 따른 화해금(2건) 67,824,000원, 자활사업 참여자 증가에 따른 자활장려금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교부에 따른 구비 부담금 847,64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수급자에게 지급할 생계급여액 증가로 부족한 구비 부담금 33,204,410원, 집중호우 및 태풍 “에위니아” 내습에 따른 하천복구에 필요한 장비 임차료 부족분 49,224,000원, 태풍 “에위니아” 내습시 사유재산 피해자를 위한 재해보상금 7,000,000원, 너울성 파도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자에 대한 재해보상금 13,790,000원을 집행하였음.
- 민사소송 판결 선고 화해금 중 호계소방도로 개설시 공탁을 위탁 받은 법무사가 집행공탁을 해야 함에도 변제공탁으로 하여 패소하여 패소금을 지급한 사례로 법무사에 등기 위탁시 전적으로 이에 대해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이에 대해 세심하게 챙겨보아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이와 같은 구민의 세금이 낭비된 사례로 추후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승소가능성이 전혀 없는 소송에 대해서는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5. 심의결과 : 승인의결

제8절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 2007년 10월 9일
- 제출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07년 10월 16일
- 본회의 의결일자 : 2007년 10월 22일

2.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 원)

구 분		2007년 예산액	기정예산액 (2007. 1회 추경)	증 감	
				금 액	비 율(%)
계		100,930,759	98,197,583	2,733,176	2.8%
일 반 회 계		99,833,231	97,107,611	2,725,620	2.8%
특 별 회 계		1,097,528	1,089,972	7,556	0.7%
기 타 특 별 회 계	의 료 급 여 기 금	132,808	125,252	7,556	6.0%
	주 차 장	802,720	802,720	0	0%
	기 반 시 설	162,000	162,000	0	0%

3.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시 차입금
		사 감 액(B)			예 비 비				
		세 입	세 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 계	100,930,759	0	0		1,824,146	1,824,146	100,930,759	3,027,923	
일 반 회 계	99,833,231	0	0		1,391,965	1,391,965	99,833,231	2,994,997	
특 별 회 계	1,097,528	0	0		432,181	432,181	1,097,528	32,926	
기 타 특 별 회 계	132,808	0	0		997	997	132,808	3,984	
	주 차 장	802,720	0	0		282,502	802,720	24,082	
	기 반 시 설	162,000	0	0		148,682	162,000	4,860	

※ 삭감내역 없음

4. 심의의견 요지

□ 세 입

-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98,197,583천 원보다 2,733,176천 원이 증가된 100,930,759천 원으로 편성되었음.
이중 일반회계는 2,725,620천 원이 증액된 99,833,231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7,556천 원이 증액된 1,097,528천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100,948천 원, 지방교부세 13,600천 원, 조정교부금 992,793천 원, 국·시비보조금 618,279천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세외수입 중 주민지원기금 전입금 8억 원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인센티브로 중산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주민들이 구에 기부한 것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조속한 시일내 문화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5억 원, 교량하부 체육시설 설치비 4억 5천 만 원, 총 9억 5천 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한 것은 집행부의 노고가 매우 많았음. 앞으로도 이와 같은 보조금 확보에 주력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해 줄 것을 당부함.

□ 세 출

-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예산은 1,009억 3,075만 9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98억 3,323만 1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 9,752만 8천 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액보다 27억 3,317만 6천 원이 증액 편성요구 되었음.

제4장 예산 · 결산 심의사항

-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할 부분과 계획성 없이 방만하게 편성된 예산 그리고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일부 있었으나 어느정도 필요성을 인정하여 삭감은 하지 않았음.
-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분 정리, 시급한 사업비 및 운영비 반영, 인건비 및 제 수당 정리 등 법적·필수경비 위주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나, 일부 예산편성의 경우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한 사례가 있었음.
- “청소년공부방 운영”과 관련하여 이 예산의 경우 대부분 공부방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당초예산 편성 시 1년 동안의 운영에 관한 소요경비가 충분히 예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회도 아닌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임. 예를 들어 우리구청이 구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체사업 편성 이전에 구정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인건비와 구청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등이 필수적이듯 일반 개인이나 단체도 마찬가지일 것임. 인건비 및 운영비와 관련된 예산편성에 있어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집행부의 잘못된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건비나 운영비 등은 당초예산에 꼭 반영되도록 하고 금번과 같이 추경에 편성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람.
-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사료의 경우 2007년 당초예산 심의 시 집행부에서 올라온 2억 4,000만원 전액이 반영되었고, 1회 추경

시에도 집행부에서 편성한 2,000만원 전액에 대해 의원들간 토론 끝에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정하여 전액 반영하였음.

그런데 2회 추경에 또다시 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이것은 2007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운영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임. 물론 모든 사항을 예측하여 100% 완벽하게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을 것임. 그래서 1회 추경에 강사료를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1회 추경이 끝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또다시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일한 생각이 아닐 수 없으므로 관련 부서의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요할 것임.

- 『지역 PNR 모델 연구용역』의 경우 아일랜드 “국가재건협약” 모델을 우리구에 적합한 모델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위한 것으로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 용역결과에 따른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용역을 하는 목적은 용역을 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용역결과를 구정에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을 것임. 본 용역의 경우 국가나 시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아직 구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임. 기업관련 행정업무 처리과정의 효율성, 긴축 재정, 노동쟁의 예방,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유인 개발, 실업대책, 중소기업활동 지원체계 수립, 노·사·정 협의 체결 등의 문제에 대해 연구용역 결과를 우리 구에 접목하여 구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연구용역 의뢰 시 연구과제 선정에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제4장 예산·결산 심의사항

-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경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제3회 추경과 특히 내년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5.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9절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 2007. 12. 3
- 제출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07. 12. 10(제11차 본회의)
- 본회의 의결일자 : 2007. 12. 17(제16차 본회의)

2.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천 원)

회 계 별		2007년 예산액	%	기정예산액 (2007. 2회)	%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계		102,009,225	100.0	100,930,759	100.0	1,078,466	3,060,277
일 반 회 계		100,871,081	98.9	99,833,231	98.9	1,037,850	3,026,132
특 별 회 계		1,138,144	1.1	1,097,528	1.1	40,616	34,144
기 타 특 별 회 계	의료급여기금	133,308	0.1	132,808	0.1	500	3,999
	주 차 장	842,836	0.8	802,720	0.8	40,116	25,285
	기 반 시 설	162,000	0.2	162,000	0.2	0	4,860

3.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시 차입금
		삭 감 액(B)			예 비 비				
		세 입	세 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 계	102,009,225	-	-		4,662,126	4,662,126	102,009,225	3,060,277	
일 반 회 계	100,871,081	-	-		4,068,774	4,068,774	100,871,081	3,026,132	
특 별 회 계	1,138,144	-	-		558,497	558,497	1,138,144	34,144	
기 타 특 별 회 계	의료급여기금	-	-		997	997	133,308	3,999	
	주 차 장	-	-		408,818	408,818	842,836	25,285	
	기 반 시 설	-	-		148,682	148,682	162,000	4,860	

4. 심의의결요지

□ 세입·세출

-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예산은 1,020억 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008억 7,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 3,800만원임. 이는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10억 7,800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음.
-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하여 전 의원들이 참석하여 3일 동안 심의한 결과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정리와 집행잔액 삭감분으로 심의결과 삭감액은 없음.
-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 정리, 각종 경상적 경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편성 등 법적·필수경비 위주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나, 업무용 컴퓨터 80대 구입과 인터넷 유해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 구입의 경우 마땅히 당초예산에 올려야 함에도 제3회 결산추경에 편성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추후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기 바람. 또한 예비비를 보면 총40억 정도로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0분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우리구 예산에 있어 너무 많은 예비비가 계상된 것으로 판단됨. 예비비가 너무 많다는 것은 결국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분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의미가 있으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 2006년도 제3회 추경 때와 비교하여 개선된 사항

- 공무원 인건비 추계 관련

작년의 경우 잘못된 인건비 추계로 총17억원을 제3회 추경 시 삭감하였으나, 올해의 경우 인건비 집행잔액 정리분 7억 5천만원 중 실제 예측이 어려운 명예퇴직 수당 1억 7천만원, 일용인부퇴직금 2억 6천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금번 삭감분은 3억 2천만원 정도로 상당히 개선되었음. 내년에도 이와 같이 예산이 편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림.

- 집행잔액 삭감 관련

예년의 경우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기 집행이 마무리된 예산 집행잔액을 삭감하지 않고 제3회 결산추경에 정리하는 건수와 금액이 상당하였으나 금회의 경우 일부 그러한 건이 있었으나 그 건수와 금액에 있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개선이 되었음. 이는 예산편성과 집행 그리고 사후관리에 모든 부서가 그만큼 노력한 것으로 생각됨.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림.

○ 끝으로, 금회 추경 시에 확보된 예산이 있는 부서에서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림.

5.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0절 2008년도 당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 2007. 11. 20
- 제출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07. 11. 26
- 본회의 의결일자 : 2007. 12. 10

2.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천 원)

회 계 별		2008년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2007년 당초)	%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계		111,671,551	100.0	85,087,452	100.0	26,584,099	3,350,145
일 반 회 계		110,777,947	99.2	84,318,482	99.1	26,459,465	3,323,338
특 별 회 계		893,604	0.8	768,970	0.9	124,634	26,807
기 타 특 별 회 계	의 료 급 여 기 금	84,285	0.08	93,800	0.11	△9,515	2,528
	기 반 시 설	137,250	0.12	162,000	0.19	△24,750	4,117
	주 차 장	672,069	0.60	513,170	0.60	158,899	20,162

3.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시 차입금
		사 감 액(B)			예 비 비				
		세 입	세 출	A:B(%)	확정액				
					편성액	확정액			
합 계	111,671,551	0	3,869,773	3.5	1,203,817	5,073,590	111,671,551	3,350,145	
일 반 회 계	110,777,947	0	3,869,773	3.5	1,125,169	4,994,942	110,777,947	3,323,338	
특 별 회 계	893,604	0	0	0	78,648	78,648	893,604	26,807	
기 타 특 별 회 계	의료급여기금	84,285	0	0	0	0	84,285	2,528	
	기 반 시 설	137,250	0	0	0	56,487	137,250	4,117	
	주 차 장	672,069	0	0	0	22,161	672,069	20,162	

※ 삭감조서 불임 참조

4. 심의의결요지

□ 세 입

- 2008년도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대비 265억 8,410만원이 증액된 1,116억 7,155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의 주요증가내역은 지방세수입 16억 5,200만원, 지방교부세 9억 6,100만원, 조정교부금 134억 7,671만원, 보조금 126억 7,648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세입에 있어 지방세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인상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으로 인한 과표 인상으로 증가가 예상되나 각종 부동산 정책의 강화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광역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세외수입에 있어 각종 시설 사용료 수입과 수수료 수입의 현실화로 소폭의 증가가 예상되며, 부동산 경기 둔화로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등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경기침체로 현상유지 또는 감소가 예상된다. 따라서 신규 세외수입원 발굴과 적극적인 경영수익사업으로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 도시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강동권 개발 등 개발의 여지가 많은 우리구의 현실을 감안하여 적기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방세과 등 관련부서에서는 누락 및 탈루세원 발굴은 물론 특별교부금과 교부세 확보를 위한 세입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람.

제4장 예산 · 결산 심의사항

□ 세 출

- 2008년 당초예산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265억 8,4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7억 1,240만원, 교육분야에 4,856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52억 7,964만원, 사회복지분야에 95억 6,673만원, 보건분야에 4억 8,225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7억 8,279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0억 9,563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2008년도 당초예산안은 자체사업의 확대 및 예산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경상예산을 삭감하였음.

□ 세출예산 주요 삭감내역

-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기관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 부서별 기본경비 중 일반수용비를 총액대비 5%정도를 삭감하였음. 또한 사업별 목적에 맞지 않게 편성된 “TV 스포광고료 7백만원”과 사용용도가 제한된 구정홍보용 “패키지백”제작비 6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편성에 법적 근거가 없는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 부담금 3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과통장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통장선진지 견학비 4백만원”과 음식물쓰레기 30%줄이기 운동 등 반장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 편성한 반장수당에 대해 주민자치기능과 수당지급에 따른 문제로 인하여 전액 삭감하였음. 또한 농소1동 주민센터의 경우 농소1동 주민들의 민원과, 본관과 별관의 활용문제, 부지문제 등으로 인하여 11월 27

일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소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시급성과 필요성이 떨어지는 청사게시용 그림 구입비 1천만원과 디지털 컬러링시스템 구입비 3,3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음. 동천마스터플랜 제작 용역비의 경우 현재 건설과에서 동천에 대해 용역 중에 있으며, 지난 태풍 “나비” 내습 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시설물들이 유실되는 피해를 경험하였으므로 동천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본 용역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아래 삭감하였음. 또한 대한민국 축제 박람회 참가의 경우 현재 우리구에서 개최하는 축제 중 대표축제인 쇄부리축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활성화한 후에 참가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 조치 하였으며, 단독주택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 설치비의 경우 재활용 분리수거를 위한 고정용 용기 설치의 수거의 불편함과 주위가 계속적으로 지저분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장점 보다는 단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삭감조치 하였음.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따른 피복구입과 관련하여 방재단 단원들의 변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끼를 구입하여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으로 2천만원 중 1천만원을 삭감하였음.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분석용역의 경우 용역은 실시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용역결과를 활용하는 데에 목적이 있을 것이므로 용역결과 활용도가 의문시 되어 삭감 조치하게 되었음.

제4장 예산·결산 심의사항

□ 문제점 및 당부사항

-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가장 아쉬웠던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공무원들의 자세였음. 사업내역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전례답습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으로 산출내역을 작성함에 있어 전혀 맞지 않는 예년의 산출내역을 고민 없이 그대로 사용한 건이 몇 건 있었고, 현수막 단가에 있어 부서별로 5만원에서 7만원까지 제각각이었음. 또한 차량구입을 하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편성해야 할 예산을 기타 보상금에 편성하였으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하면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 초기라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사업별 예산제도에 맞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으므로 예산 편성에 좀더 신중한 검토와 사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요구됨.
- 회계질서 문란행위 관련임. 노래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올해 10월 31일 노래교실 강사와 계약을 완료함과 동시에 수강생을 모집하고, 임의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2008년 2월까지 제3기 수강생에 대한 접수를 받아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명백한 회계질서 문란행위로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삭감한다면 12월로 노래교실은 못하게 되는 상황임에도 설마 일반국민이 다수 참여하는 노래교실에 대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지 않겠는가 하는 안일한 생각이 이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였음. 당연히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운영되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명백한 잘못임.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년도 노래교실과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하지만 의회와 집행부

의 존재 목적이 “구민”이라는 원론적 문제로 인하여 부득이 일부만 삭감하였음. 그러나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어떠한 피해도 감수할 것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 임.

-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조례개정을 통해 사업비에 대한 운영비의 비율을 삭제함으로써 일부 사회단체의 경우 사업예산보다 운영비의 비율이 높은 단체도 있었음. 어떤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비는 꼭 필요하지만 “사업을 위한 단체”가 되어야 하지 “운영을 위한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임. 사회단체보조금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람. 이와 관련하여 자율방법대 지원에 있어 해병전우회는 방법활동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므로 향후에는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하지 말고 반드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존중하여 문제가 되는 최소금액만을 삭감하여 승인하였지만 집행부에서도 보다 철저한 예산집행과 관리·감독을 당부 드림.
-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문제임. 주정차 단속업무의 경우 다른 업무와 달리 일시적으로 끝나는 업무가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이므로 당연히 무기계약하여 채용하는 것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수차례 지적한 바 있으나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 여전히 무기계약화하지 않고 기간제로 운영하는 것에 우려를 표시하는 바 임. 현재 편성된 5명에 대해 교체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

제4장 예산·결산 심의사항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여 주기 바람.

- 예산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정 시 자생단체장 위주로 구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된 공정한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하여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강동해변 수상구조대 및 여름파출소 지원을 위한 컨테이너 사무실의 경우 이제는 고정식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내년에는 공중화장실 위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여 고정식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아울러 무룡운동장 조성과 관련 교육청과 조속히 협의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풋살구장 등 현 청소년활동장의 활용도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 드림.
- 마지막으로 모든 예산은 전구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여 작은 누수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소중히 집행하기 바람. 각종 단위사업별 구체적이고 명확한 산출근거를 토대로 사업예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간곡히 당부 드림.

5. 심의결과 : 수정가결

제11절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 2008. 5. 19
- 제출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08. 5. 28
- 본회의 의결일자 : 2008. 6. 5

2.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천원)

회 계 별		2008년 예산액	%	기 정 예산액 (2008년 당초)	%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계		131,472,858	100.0	111,671,551	100.0	19,801,307	3,944,186
일 반 회 계		124,447,410	94.66	110,777,947	99.20	13,669,463	3,733,422
특 별 회 계		7,025,448	5.34	893,604	0.8	6,131,844	210,764
기 타 특 별 회 계	의료급여기금	133,521	0.10	84,285	0.08	49,236	4,006
	폐기물 처리시설	5,520,552	4.20	-	-	5,520,552	165,617
	기 반 시 설	340,137	0.26	137,250	0.12	202,887	10,204
	주 차 장	1,031,238	0.78	672,069	0.60	359,169	30,937

3.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시 차입금
		삭 감 액(B)		예 비 비		확정액		
		세 입	세 출	A:B(%)	편성액			
합 계	131,472,858	-	1,187,684	0.90	10,472,102	11,659,786	131,472,858	3,944,186
일 반 회 계	124,447,410	-	1,187,684	0.95	4,462,043	5,649,727	124,447,410	3,733,422
특 별 회 계	7,025,448	-	-	-	6,010,059	6,010,059	7,025,448	210,764
기 타 특 별 회 계	의료급여 기금	-	-	-	3,996	3,996	133,521	4,006
	폐기물 처리시설	-	-	-	5,520,552	5,520,552	5,520,552	165,617
	기 반 시 설	-	-	-	259,374	259,374	340,137	10,204
	주 차 장	-	-	-	226,137	226,137	1,031,238	30,937

붙임 : 삭감조서 참조

4. 심의의결 요지

□ 세입분야

-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98억원이 증액된 1,314억 7,000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114억 9,000만원, 지방교부세 57억 8,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8억 9,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3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음.
- 중산산업단지 조성, 모듈화 지방산업단지 조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오토밸리 2공구 도로개설,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산업로 확장, 강동권 개발 등 지역의 기반시설, 복지·문화시설 확충 등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당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자체세입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의존재원 확보가 국·시비 보조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이 요구됨. 또한 지방세과 등 관련부서에서는 누락 및 탈루세원 발굴은 물론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세출분야

-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당초예산 대비 19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5억 6,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8억 6,0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94억 2,0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1억 5,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1억 2,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사회복지 분야에 11억원, 예비비에 5억 3,000만원이 각각 감액 편

제4장 예산 · 결산 심의사항

성되었음.

- 성립전 예산 등을 제외한 모든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명찰의 경우 의회 예산승인 없이 임의로 먼저 제작하여 직원들에게 지급을 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음. 이러한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명백히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임. 비록 집행부의 난처한 입장을 이해하여 삭감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할 경우 모든 책임은 집행부의 몫이라는 것을 유념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람.
- 7765부대 2대대 예비군주차장 개선공사의 경우 본 지역은 GB지역으로 당연히 GB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의회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없었다면 불법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음. 또한 구청사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의 경우 부지 소유자인 울산광역시교육청과 당연히 선 협의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과정에서 부랴부랴 이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나 교육청에서 자체 활용계획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 가장 기본적인 부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마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그리고 농소1동 동사무소옆 소방도로개설공사의 경우 6월중 개최 계획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루어짐에도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임. 또한 신천동 소2-78호선 소방도로의 경우 현재 귀영 하
이얏트 아파트 입주민과 협성노블리스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이에 대한 예산을 편
성하고 예산확정 후 협의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아
니할 수 없음.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
은 그 만큼 고민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예산편성에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구내식당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구입의 경우 뚜렷한 구입계획
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구입기종에 대하여도 비교 검토한 내용이
전혀 없었음. 제1회 도서관 축제의 경우 행사내용이 단지 부스 3
개만 설치하여 운영한다는 계획만 있어 이에 따른 세부계획이
미진하여 삭감하였음. 또한 비록 삭감하지는 않았지만 제3대학
운영비 중 패 제작 건과 관련하여 거의 모든 학생들에게 감사패,
개근패를 준다는 것은 이해가 힘든 예산편성 임. 특히 개근패의
경우 개근한 학생들에게 상장을 주는 것이 상식인데 그렇지 못
했음. 집행에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 권고 및 당부사항

-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한 “직원 하나되기 한마당 큰잔치”의 경
우 현재 주민들의 정서상 구청 광장에서 일반 주민이 아닌 공무
원들을 위한 음악회, 장기자랑 등을 하는 행사는 시기상조라
는 인식이 팽배한 실정입니다. 본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한
“직원체육대회” 예산과 합하여 직원체육대회가 충실히 치루어

제4장 예산·결산 심의사항

질 수 있도록 권고하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람.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경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향후 예산 편성 시 개선하여 국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 직원 모두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림.

5. 심의결과 : 수정가결



제 5 장 행정사무감사

- 제1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 제2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 제3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 제4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제5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 제6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 제7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 제8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제1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1. 감사개요

가. 감사의 목적

- 2006년 자치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하고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나. 근 거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 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다. 감사 기간 : 2006. 11. 30 ~ 2006. 12. 6(7일간)

라. 감사 장소 : 북구의회 소회의실

마. 감사의 주체 : 본회의

- 의 장 : 유 재 건
- 부 의 장 : 윤 임 지
- 의 원 : 전 의 원
- 전문위원 : 박 민 수
- 사무직원 : 장 판 성

제5장 행정사무감사

2. 감사실시기관(부서) 및 출석요구 공무원

감사대상 기 관	감사대상 부 서	출 석 요 구 공 무 원			감사대상 사 무
		직	성 명	전 임 자	
울산광역시 북 구 청		구 청 장	강 석 구		감사요구 자료참고
		부구청장	김 광 오		
	○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장	구 일 우		
	○총 무 국	총 무 국 장 총 무 과 장 회계정보과장 지방세과장 민원지적과장 환경위생과장	권 혁 진 조 계 현 박 경 규 서 강 수 박 삼 점. 정 순 상		
	○주민생활지 원국	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서비스과장 문화체육과장 환경미화과장	박 봉 환 송 태 호 이 차 범 김 경 재 박 경 수		
	○도시경제국	도시경제국장 도시녹지과장 경제교통과장 건 설 과 장 건축주택과장 생명산업과장재난 관리과장	김 도 현 김 덕 룡 최 효 원 서 인 보 박 성 근 주 수 생 강 걸 수		
	○보 건 소	보 건 소 장	이 병 회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 상 현		

제1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감사대상 기 관	감사대상 부 서	출 석 요 구 공 무 원			감사대상 사 무
		직	성 명	전 임 자	
울산광역시 북 구 청	전 동	농소1동장	이 상 련		감사요구 자료참고
		농소2동장	홍 장 희		
		농소3동장	신 종 도		
		강동동장	김 종 구		
		효문동장	강 수 상		
		송정동장	신 해 진		
		양정동장	오 광 희		
		염포동장	송 지 환		

○ 관계공무원 출석

- 출석일시 : 2006. 11. 30 ~ 2006. 12. 6(7일간)
- 출석장소 : 감사장(소회의실)
- 기 타 : 당일 감사대상 부서 외 출석공무원은 항상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 출석공무원은 대상사무에 따라 추가 될 수 있음.

제5장 행정사무감사

3. 행정사무감사 일정

구 분 일 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06. 11. 30 (목)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증인선서 · 실·국·소·과·동장 ○기획홍보실 ○총 무 국 · 총 무 과 · 회계정보과	
2006. 12. 1 (금)	10:00	"	○총 무 국 · 지 방 세 과 · 민원지적과 · 환경위생과	
2006. 12. 2 (토)	10:00	(대상사무현장)	(현장확인)	
2006. 12. 3 (일)	10:00	"	"	
2006. 12. 4 (월)	10:00	"	○주민생활지원국 · 주민생활지원과 · 복지서비스과 · 문화체육과	
2006. 12. 5 (화)	10:00	"	○주민생활지원국 · 환경미화과 ○도시경제국 · 도시녹지과 · 경제교통과	
2006. 12. 6 (수)	10:00	"	○도시경제국 · 건 설 과 · 건축주택과 · 생명산업과 · 재난관리과 ○보 건 소	

※ 일정 및 장소, 대상기관은 변경될 수 있음.

4. 감사자료 제출요구

○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 : 「별첨」

계	공통	기획 홍보실	총무국	주민생활 지원국	도시 경제국	보건소	의회 사무과
258	18	18	55	68	76	20	3

※ 감사당일 제출된 자료와 관련된 원본서류 일체

○ 제출서류

- 행정사무감사자료 : 15부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15부
- 작성요령 : 「붙임 2」 참조
- 작성기간 : 2005. 11. 1~2006. 10. 31

※ 요구자료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 작성기준일 : 2006. 10. 31일 현재

○ 제출기한 : 2006. 11. 17일 한

5.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 감사선언(의장)
- 의장인사
- 증인선서(집행기관)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소개
- 주요업무보고(청취)
 - 개괄적 총괄 보고 : 실·국·소장
 - 세부사항 보고 : 해당 실·과·소장

제5장 행정사무감사

-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서류검증 또는 현지 확인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6. 증인 선서 방식

- 선서장소 : 감사장(소회의실)
- 선서방법
 - 감사 첫날 실·국·소·과장·동장 합동 실시 - 29명
(국장 3명, 소장 1명, 실·과장 17명, 동장 8명)
 - 선서문 낭독 : 총무국장
- 선서문 : 서명날인 후 제출

7. 기타 행정사항

- 감사장 설치 : 장판성외 2명
- 감사지적사항 당일작성 제출 : 감사의원
- 감사지적사항 취합 작성 : 장판성
- 녹음, 녹화 등 회의록 작성 : 엄현주외 2명
- 현장확인 활동
 - 준비사항 : 차량, 장비 및 담당공무원 현지안내

8.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현황

소 속		요 구 건 수	비 고
합 계		258	
공 통 사 항		18	
기 획 홍 보 실		18	
총 무 국	소 계	55	
	총 무 과	9	
	회계정보과	13	
	지 방 세 과	11	
	민원지적과	8	
	환경위생과	14	
주민생활지원국	소 계	68	
	주민생활지원과	18	
	복지서비스과	18	
	문화체육과	18	
	환경미화과	14	
도시경제국	소 계	76	
	도시녹지과	14	
	경제교통과	16	
	건 설 과	14	
	건축주택과	10	
	생명산업과	15	
	재난관리과	7	
보 건 소		20	
의 회 사 무 과		3	

제5장 행정사무감사

(전부서)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울산광역시 북 구 [전부서 공동사항]	1. 예산집행현황(일반, 특별회계 구분작성)										
	항 목	예 산 액				집행액	잔 액	미집행사유			
		합계	당초	1회 추경	2회 추경						
	2. 각종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민원명	접수일자	처리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계										
	3. 사업비 3,000만원 이상의 사업현황										
	사업명	위 치	사업개요	사업비	진 도	시공자	예산확 보시기				
	계						당초, 1회, 2회추경				
	4.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단체에 대한 집행내역 및 정산내역 (정산서 사본첨부) - 2005. 11. 1 ~ 2006. 10. 31 ※ 일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포함.										
	5.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용역종류	용역비 (천원)	착수 일자	완료일자	용역 결 과	계약자				
	6.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 및 반납내역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반납내역		반납사유			
		국비	시비	국비	시비	국비	시비				
	7. 3,000만원 이상 도급공사 하자 보수 보증금 관리 현황 및 하자발생 처리내역										

(전부서)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8.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붙임 1 서식) 9.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붙임 1 서식)」 10. 인·허가 처리불가 및 반려된 내역(사유) 11. 2006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 12. 2005년 예산 2006년도 이월사업 현황(계속, 명시, 사고 이월)내역 및 추진현황 13. 공사금액 1억원 이상 설계변경 내용 <table> <tr> <th>공사명</th> <th>변경사유</th> <th>공사금액 증 가 액</th> <th>설계변경 요 청 자</th> <th>설계자</th> <th>비 고</th>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14. 최근 6년간 카메라 구입현황 및 현재 보유현황 (동별 자료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취합 제출) 15. 비정수물품 관리대장 (동별 자료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취합 제출) 16. 시설부대비 및 특별회계에서 지출된 출장여비 지급내역 (지급방법 - 계좌이체 또는 현금지급 명시) 17. '06년 법인카드 발급대장 18.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 - 위탁·용역 현황 : (붙임 2) - 위탁·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 : (붙임 3)	공사명	변경사유	공사금액 증 가 액	설계변경 요 청 자	설계자	비 고							
공사명	변경사유	공사금액 증 가 액	설계변경 요 청 자	설계자	비 고									

제5장 행정사무감사

(붙임 1)

☐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 예산과목 :

지급일자	지출액	지출처	지출목적(내용)	대상인원 전체명단
계				

※ 예산과목(203-01, 203-03) 별지작성

(붙임 2)

☐ 위탁용역 현황(2006년도)

위탁 부서 및 기관	위탁 용역 업무명	수탁 용역 기관	계약 기간	모집 방법	재계약 횟수	총 수탁 기간	입찰 참여 업체수	입찰 예정 가격	수탁 총액 (낙찰가격)	수탁 업체 고용 인원	수탁자 선정 방법과 근거

※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1) 민간위탁과 용역업무를 구분 작성

(2) 모집방법은 일반경쟁, 공개경쟁, 수의계약, 조달청 등으로 분류

(3) 제출서류

- 도급(위수탁, 용역)계약서 및 표준계약서

- 과업지시서 혹은 시방서

- 복구의 입찰시 내정한 전체 용역원가 및 인건비 내역

- 도급체결(낙찰)시 반영된 전체 용역원가 및 인건비 내역

(붙임 3)

□ 위탁·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2006년도)

구분	위탁기관명		위탁 용역 업무 명	수탁용역기관			근로 계약 서	임 금	상 여 금	퇴 직 금	근로 시간	법 정 수 당	법 정 휴 가	사 회 보 험	계 약 기 간	근 속 기 간	재계약 방법
	실국	부서명		업체 명	구성	인원 (명)											
본청	기획 홍보실	기획 홍보실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총무국	총무과			:												
					:												
					:												
	주민생활 지원국	주민생활 지원과															
		...															
	...	...															
	의회	구의회															
직속 기관	보건소																
	농소1동																
	...																

(1) 구성 :

- 정규직 : 계약기간 정함없이 상시고용된 자
- 계약직, 임시직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 파견직 : 상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상이한 자

(2) 근로계약서 : 서면 근로계약서 있으면 ○, 없으면 ×

(3) 임금 : 2006. 10월 지급된 임금, 상여금 제외(천원단위)

(4) 상여금 : 연간 지급율(%)

제5장 행정사무감사

- (5) 퇴직금 : 퇴직금 지급지급대상 ○, 지급대상이 아니면 ×로 표기
- (6) 근로시간 : 2006. 10월 실근로시간
- (7) 법정수당 :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으면 ○, 지급하지 않았으면 ×
(단, 사유가 없어 미지급하였으나, 사유발생시 지급할 것이라면 ○로 표기)
- (8) 법정휴가 : 주휴, 연차유급휴가 등 법정휴가 부여하였으면 ○, 미부여하였으면 ×
(단 부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미부여하였으나, 충족될 경우 부여할 것이라면 ○)
- (9) 사회보험 : 산재보험 1, 고용보험 2, 국민연금 3, 건강보험 4 로 하여 적용되는 것의 번호를 모두 기재
(예 : 1,3 / 1, 2, 3, 4)
- (10) 계약기간 : 계약기간이 없으면 무기, 계약기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입
- (10) 근속기간 : 평균근속기간
- (11) 재계약방법 : 자동갱신 1, 재선발(공개채용) 2, 재계약 안됨 3
- (12) 제출서류 : 업무별 임금대장(월급명세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무편성표**

기획홍보실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기획홍보실	1.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계획 2. 구청장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 3. 2006 주요사업 투·융자 사업 심사내역 4.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실적 및 예산반영 내역 5. 예산 전·이용 현황 및 사유(전부서 취합) 6. 행정심판 및 소송(행정, 민사)수행사항 (일시, 사건내용, 담당부서, 진행상황 등) 7. 승소사례금 지급내역(사건별) 8. 자체감사, 시, 행자부, 감사원 등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일상감사 포함) 9. 동 종합감사 실시 결과 및 조치내역 (동명, 감사기간, 지적사항, 조치사항, 징계처분사항, 모범사례) 10. 구정홍보 관련 업무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11. 구정소식지(전자신문 등) 발간 및 배부내역 12. 주민편의시설 기동감찰 실시결과 13.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제 및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실적 14. 기자실 브리핑 및 기자회견 자료 15. 기자실 비품목록 및 구입비용(지출증빙서) 내역 16. 구정조정위원회 '06년 회의록 17. 위원회 현황 관련(2005~2006년도) ① 설치근거별 현황 - 법령, 조례/ 비상설, 의결적, 행정내부, 기금관련으로 세분 ② 성격별 현황 - 심의, 의결, 자문, 협의로 구분, 위원회 개수 및 위원회명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기획홍보실	③ 위원 구성현황(공무원, 민간위원-시민사회단체추천 별도)										
	구 분	여성위원 (비율)	공무원	구의원	민간위원	시민단체추천 (비율)					
	총 계										
	위원회										
	④ 위원장 현황										
	구 분	구청장	부구청장	실국장	지역주민	시민단체					
	총 계										
	위원회										
	⑤ 각 위원회별 기본 현황 및 운영 실적										
	위원 회명	설치 근거	설치 목적	설치일	위원구성(여성)			임 기	위원장	주관 부서	
					당연직	민간 위원	시민단 체추천				
	⑥ 위원회별 위원명단(성명, 위원회내 직위, 직업, 남녀, 연령 등)										
	⑦ 2002년~2006년 연도별 위원회 개최 실적										
	- 위원회명, 회의주기, 개최실적(참여인원), 회의록, 주관부서										
	⑧ 각 위원회 위원 전체 출석율 및 개별 위원 출석율										
	- 위원회명, 위원성명, 직업, 성별, 최초임명일자, 05년출석율										
	⑨ 각 위원회별 2004년~2006년 회의참석 수당 및 집행실적										
구분	국	과	위원회	2004년-2006년(연도별 작성)							
일반 회계	총무국	총무과	00위원회	예산액	인원	회수	집행실적				
특별 회계											
18.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관련(별첨 1 참조)											
- 상급단체 공문											
- 현재 진행중인 현황											
- 추진방안 : 보고공문 중심으로 작성											

[별첨] 1

□ 정부 종합대책의 세부추진 일정

추진과제	추진일정	담당부처
1. 비정규직 사용원칙 정립		
1-1. 기간제의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 각 기관별 검토 및 중앙행정기관 등에 요구 ○ 중앙행정기관·광역지자체·시도교육청 검토 ○ 행자부 협의 ○ 기획처 협의 ○ 「추진위원회」에 심의의뢰 및 최종결정	'06. 9월까지 '06.11월까지 '07. 1월까지 '07. 3월까지 '07. 5월까지	▪ 각 기관 ▪ 각 부처 등 ▪ 각 부처 등(행자부) ▪ 각 부처 등(기획처) ▪ 각 부처 등→추진위원회
1-2. 적정한 인력·예산관리 체계 확립 ○ 1년이상 기간제 등 인원관리방안 마련 ○ 예산과목(102목) 명칭 변경 ○ 비정규직 인사관리 표준안 마련	'06.12월까지 '07. 3월까지 '06.12월까지	▪ 행자부 ▪ 기획처 ▪ 추진위원회(중앙인사위 협조)
1-3. 총액인건비제 적용제의 대상 최소화	계속	▪ 행자부·기획처·중앙인사위
1-4. 비정규직 실태조사 정례화 ○ 조사대상기관의 범위, 조사대상 비정규직 범위, 조사기준일, 조사표 등 마련 ○ 실태조사 실시	'06.12월까지 매년	▪ 추진단 ▪ 각 부처 등
1-5. 비정규직 직무훈련계획 수립·시행	'07.2월까지	▪ 각 기관
2.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요인 제거 및 처우개선		
2-1. 공공부문에 적합한 차별원칙 마련	'06.12월까지	▪ 노동부(노동위원회)
2-2. 차별여부 일제점검 및 시정조치	비정규법 시행이전	▪ 각 기관
2-3. 차별에 대한 고충처리시스템 구축 ○ 비정규직 차별처우 고충처리 담당자 지정 ○ 비정규직 차별관련 고충사례 정기점검	'06.12월까지 (계속)	▪ 각 기관 ▪ 노동부
2-4. 퇴직금·법정수당 및 사회보험료 별도편성 요구 및 반영	'06.8월까지	▪ 기획처(중앙행정·공기 업·산하기관) ▪ 행자부(지자체) ▪ 교육부(교육기관)
2-5. 저임금 근로자 예산 노무단가 인상조정	'06.8월까지	- 상동 -

제5장 행정사무감사

추진과제	추진일정	담당부처
3. 위법·탈법적 비정규직 사용 지도·감독		
3-1. 노동관계법 준수, 모성보호제 활용 및 사회보험 가입누락 지도·점검	매년	▪ 노동부 ▪ 복지부(건강보험, 국민연금)
3-2. 인사노무담당자 전담교육기관 지정, 인력·예산확충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07. 1월시행	▪ 중앙인사위(중앙공무원교육원) ▪ 행자부(지방혁신인력개발원) ▪ 노동부(노동교육원) ▪ 교육부(교육인적자원연수원)
3-3. 퇴직금제의 퇴직연금제로 일원화 유도	(계속)	▪ 각부처(당해기관·소관공기업·산하기관) ▪ 행자부(지자체) ▪ 교육부(교육기관)
4. 합리적인 외주화 원칙 정립		
4-1. 외주화 타당성 일제 점검 ○ 각 기관별 검토 및 중앙행정기관에 요구 ○ 중앙행정기관별 검토 ○ 행자부 협의 ○ 기획처 협의 ○ 「추진위원회」에 심의의뢰 및 최종결정	'06.9월까지 '06.11월까지 '07.1월까지 '07.3월까지 '07.5월까지	▪ 각 기관 ▪ 각 부처 ▪ 각 부처(행자부) ▪ 각 부처(기획처) ▪ 각 부처→추진위원회
4-2. 단순노무 외주업무 노임단가 인상·조정	'06.8월까지	▪ 기획처(중앙행정·공기업·산하기관) ▪ 행자부(지자체) ▪ 교육부(교육기관)
4-3. 단순노무 외주업체 선정 입찰제도 개선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 노임단가 변경 ○ 낙찰하한률 협의·조정 ○ 적격심사 평가항목 추가 ○ 적격심사 입찰자격 제한 ○ 다년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인상분 반영	'07.1월부터 '07.1월부터 '06.12월까지 '07.12월까지 '07.3월까지	▪ 각 공기업·산하기관 ▪ 행자부 ▪ 재경부·행자부 ▪ 재경부 ▪ 재경부·행자부
5. 추진실적 점검·평가		
5-1. 총리훈령 제정	'06.8월까지	▪ 국조실(노동부 협조)
5-2. 추진위원회 구성 및 추진단 구성	'06.8월까지	
5-3. 추진실적 평가체계 정비	'07년 평가	▪ 국조실(중앙행정기관) ▪ 행자부(지자체) ▪ 교육부(학교) ▪ 기획처(공기업·산하기관)
5-4. 세부 추진일정계획 제출	'06.9월까지	▪ 각 부처 등→추진단
5-5. 추진실적 점검	(계속)	▪ 추진단

총 무 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총 무 과	1. 인력운용 관련					
	- 전체 인력현황 : 서식 - (붙임 1)					
	- 기관별 인력현황 : 서식 - (붙임 2)					
	- 기타 인력현황 : 서식 - (붙임 3)					
	- 상근인력, 인시사역인부 근로조건 - (붙임 4)					
	2.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					
	[(연수 및 출장) 목적, 부서명, 연수기간, 경비 등]					
	3. 민간인, 공무원, 유공자 표창 수여 현황					
	4. 성과별 연가, 특별휴가, 관외출장, 교육 등 월별 사용 인원 및 사용일수					
	성과명	월별	정원	사용인원	사용일수	비고
	※ 성과별, 구분별(연가, 특별휴가 등) 별지작성					
	※ 교육현황은 기간, 과정명, 장소 등					
	5. 일용임부임(일시사역인부임 포함) 현황- 전부서 취합					
	부서명	성 명	사역목적	사역기간	단가(원)	비 고
	6. 행정자료실 서적 구입 현황(예산포함)					
	7. 국제교류 추진 현황					
	8. 공무원 노조사무실 강제폐쇄 법적근거 자료					
	9. '06년 공문서 수·발신 목록					

제5장 행정사무감사

(붙임 1)

□ 전체 인력 현황 (2006년 10월 31 기준)

구분	지방공무원인력									기타 인력				
	정 무 직	일 반 직	기 능 직	연 구 직	지 도 직	별 정 직	기 능 직	소 방 직	기 타	상근인력				일시사 역인부
										단순 노무원	도로 보수원	환경 미화원	청원 경찰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전 동														
:														

※ 위 표의 각 항목마다 현원을 기입하고 만약 정원과 현원이 다를 경우에는 (괄호)안에 정원을 표기

(붙임 2)

□ 기관별 인력 현황(2006. 10. 31 기준)

구분	기관명		지방공무원인력								
	실국	부서명	정무직	일반직	기능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계약직	소방직	기타
		계									
본 청	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									
		총무국	총무과								
	회계정보과										
	:										
	:										
	:										
	주민생활 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									
		:									
	도시경제국	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									
		:									
의 회	의 회										
보건 소	보 건 소										
동	농 소 1 동										
	:										
	:										

(붙임 3)

□ 기타인력 규모(2006. 10. 31기준 단, 일시사역의 경우 연인원을 표기)

구분	기관명			기타 인력													
	실국	부 서 명	업무	상근인력				일시사역인부									
				단순 노무 원	도로 보수 원	환경 미화 원	청원 경찰	30일이하		60일이하		90일이하		180일 이하		240일 이하	
								현재	연 인원	현재	연 인원	현재	연 인원	현재	연 인원	현재	연 인원
본청	기획홍보실																
	총무국	총무과	:														
			:														
			:														
		회계 정보과															
	:																
	:	:															
의회	의 회																
직속 기관	보건소																
	농소1동																
	:																

※ 업무란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인원을 기입

제5장 행정사무감사

(붙임 4)

□ 상근인력, 일시사역인부 근로조건(2005. 7. 1~2006. 6. 31)

구분	기관명			구분	서면 근계약 서	임금(천원)		상여금 (천원)	퇴직 금	법정 수당	법정 휴가	사회 보험	경조사 휴가	재계약 방법
	실국	부서명	업무			총액	단가							
본청	기획 홍보실	기획 홍보실		상근인력	단순노무									
				일시사역	도로보수									
					환경미화									
					청원경찰									
					30미만									
					60미만									
					90미만									
					180미만									
					240미만									
				상근인력										
				일시사역										
	총무국	총무과		상근인력	단순노무									
				일시사역	도로보수									
					환경미화									
					청원경찰									
					30미만									
					60미만									
					90미만									
					180미만									
					240미만									
				상근인력										
				일시사역										
				:	:									
				:	:									
				:	:									
의회	구의회	:	:											
직속 기관	보건소	:	:											
	농소1동	:	:											
	:	:	:											

※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 (1) 구분 : 직종별 분류
- (2) 근로계약서 : 서면 근로계약서 있으면 ○, 없으면 ×
- (3) 임금 1
 - 총액임금 : 2005.7.1~2006.6.31 까지 지급된 임금(천원단위)
 - 단가 : 업무별 책정 단가
- (4) 상여금 : 2005.7.1~2006.6.31 까지 지급된 상여금 총액(천원단위)
- (5) 퇴직금 : 퇴직금 지급대상이면 ○, 지급대상이 아니면 ×로 표기
- (6) 법정수당 :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으면 ○, 지급하지 않았으면 × (단, 사유가 없어 미지급하였으나, 사유발생시 지급할 것이라면 ○로 표기)
- (7) 법정휴가 : 주휴, 연차유급휴가 등 법정휴가 부여하였으면 ○, 미부여하였으면 × (단 부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미부여하였으나, 충족될 경우 부여할 것이라면 ○)
- (8) 사회보험 : 산재보험 1, 고용보험 2, 국민연금 3, 건강보험 4 로 하여 적용되는 것의 번호를 모두 기재(예 : 1,3 / 1, 2, 3, 4)
- (9) 교육훈련 : 교육훈련을 받았을 경우 ○, 받지 않았을 경우 ×
- (10) 경조사휴가 : 상근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 있으면 ○, 없으면 ×
- (11) 재계약방법 : 자동갱신 1, 재선발(공개채용) 2, 재계약 안됨 3
- (12) 업무란은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인원을 기입
- (13) 상근인력에 대한 제출서류**
 - 상근인력관리대장,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무편성표 각 1부
- (14)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제출서류**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무편성표, 인부사역부 각 1부

총 무 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회계정보과	1. 각종 공사·물품구입 계약현황 (공사 3,000만원이상, 물품·용역 500백만원 이상)							
	부서명	일자	건명	사업량 (수량)	예정가	낙찰가	낙찰율	낙찰자
	2.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전부서 취합) - 차량번호, 종류, 용도, 구입연월일, 상태							
	3. 각종 공사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현황							
	4. 공사 지체상금 징수 현황							
	5. 계약위반업체 행정조치 현황							
	6. 공유재산 대부, 임대, 매각, 임대료 체납 등 관리현황							
	7. 공유 재산현황(구소유 - 토지, 건물)							
	품 명	구입(취득)일	구입(취득) 방 법	구입(취득) 가 격	구입(취득) 목 적	비 고		
8. 청사 여유허간 활용 제고방안								
9. 대회의실 월별 사용료수입/횟수 현황(사용자 표기)								
10. 양정동사무소 건립추진 현황								
11. 전산·통신장비 유지보수비 사용내역								
12. '06년 관급공사 계약현황 (발주부서명, 계약일자, 방법, 공사명, 공사개요, 설계금액, 계약금액,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계약금액 500만원이상								
13. '06년 수의계약 현황 - 부서명, 일자, 공사명, 설계금액, 계약금액,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지방세과	1.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세목별) 2. 고액 체납자 및 체납처분 현황 (1백만원 이상, 압류, 독촉사항 등) 3.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현황과 환급내역 (건수, 금액, 사유 : 10만원 이상) 4. 지방세 부과징수 이의신청(민원)내용 및 처리현황 5. 세무조사결과 추징현황 6. 지방세,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 (시효소멸제외 건당 10만원 이상) 7.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황 8. 비과세 감면, 면세, 세액감면 현황 9. 체납세 징수 활동 주요 실적 10. 모범·성실 납세자 우대실적 11. '06년 세외수입의 잡수입 중 변상금,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상세내역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민원지적과	1.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정현황(과년도 대비) 2.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3. 민원 1회방문처리제 추진실적 4. 토지거래 계약허가제 운영 및 사후관리 현황 5. 재택전자민원 (G4C)신청 및 처리실적 6.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및 발급건수(월별) (설치일자, 발급종류 등) 7.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범시행에 따른 추진 현황 및 실적 8.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에 부과·징수 현황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환경위생과	1. 위생접객업소 위생검사 단속실적 및 불법 영업업소 단속실적														
	2. 환경감시요원 단속실적 및 각종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3. 부정 불량식품 수거검사 처리내역														
	4.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대기, 수질)														
	- 배출업소 현황 - 점검결과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5. 공중화장실 및 간이 화장실 관리현황(개소수) (근린공원, 정자해변 등)														
	6.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처분사항														
	7. 관내 숙박시설 관리현황														
	<table> <tr> <th>업 소</th> <th>위 치</th> <th>건축허가일</th> <th>객실수</th> <th>위반현황</th>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업 소	위 치	건축허가일	객실수	위반현황					
	업 소	위 치	건축허가일	객실수	위반현황										
	8.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비 집행 내역														
	9.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내역(자동차, 시설물)														
	10. 최근 3년간 신고된 게임장 현황 (성인게임장, 청소년게임장, PC방 구분, 폐쇄현황 포함)														
	11. 최근 3년간 게임장 단속실적 및 처리현황														
12. 최근 2년간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검사 관련 대장															
13. 최근 3년간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개·보수 현황 (공사일자, 공사내역, 공사금액, 업체명 등)															
14. 학교앞 유해환경 지도 점검															
- 점검결과, 조치내역 및 건수, 처리결과 - 향후 학교앞 유해환경 지도점검 계획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주민생활 지 원 과	1.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운영현황 2.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 3.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운영 실태 4. 자활후견기관 사업추진현황 및 실적 - 2006년도 사업계획, 예산지원현황 - 2006년도 사업실적 - 연간 총수익금 - 수익금 집행내역 5.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동별 취합) 6. 동별 예산 집행현황(동별 취합) 7.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 융자실적 및 회수실적 8.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9.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10.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동별) 11. 고용촉진훈련 추진 내역(예산집행내역 포함) 12.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13.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현황 14. 지역사회복지 계획 관련 ① 지역사회복지계획 최종보고서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및 최종보고서 예산, 집행내역 - 지역사회복지계획 최종보고서 수립 절차 관련 ② 지역사회복지계획 최종보고서 수립 의견수렴 결과서 - 지역주민,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기관·단체, 전문가의 의견수렴결과서 -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심의 결과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주민 생활 지 원 과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 대표협의체 위원명단(주요경력 포함), 임원(위원장, 간사), 실무분과 구성현황 - 협력위원의 구성현황 및 위원명단(주요경력 포함) - 분과위원회 구성현황 및 위원명단 (주요경력 포함) - 실무협의체위원회 구성현황 및 위원명단 (주요경력 포함) - 2005, 2006년 현재 회의실적 및 회의록 - 2005, 2006년 예산 및 집행실적(세부항목별 예산 및 집행내역) 15. 동 상담실 운영현황(동별 취합) - 예산 집행 내역 - 사회복지 상담내용(내용별 분류), 상담 인원수, 상담수(월별), 처리상황 및 조치결과 16. 임대아파트 취약계층 현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세대수, 한부모세대수, 노인세대수 등 - 최근 3년간 취약계층 관련 사업계획, 추진실적, 예산, 집행내역 17. 종합사회복지회관/보훈회관 운영현황 18.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현황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복지서비스과	1.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현황 - 시설현황, 시설별 이용자수(상주인원과 비상주하여 이용하는 인원수 구분 표시), 미이용자수 현황 2. 아동, 노인, 여성복지 지원사업 현황 3. 경로당 및 북구 노인회 지원 현황(실적) 4.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현황(판매실적 등) 5. 가정의 달 행사 개최 내용 및 실적 6.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지도점검 및 조치 내용 포함) 7.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현황 8. 장애인 차량 식별표지 스티커제작 및 발급현황 - 부정 부착 적발현황 및 조치내역 9. 노인복지기금 운영실태 10. 태연재활원·메아리복지원 운영현황 - 2006년도 사업계획, 예산 지원현황 - 2006년도 사업실적 - 연간 총수익금(후원금 포함) - 재단출연금 현황 - 기부금 영수증 발급현황 - 재학생 입학 및 대기자 현황 11. 여성권익신장사업 현황 및 성과 12. 장수수당 지급현황(동별/월별/인원 등) 13. 보육시설(국공립, 법인, 직장, 민간, 영아·장애아전담) 현황 - 총예산, 집행내역(인건비, 운영비 등) - 보육시설 종사자 현황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복지서비스과	① 2005년~2006년 보육시설 점검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 - 보육시설별 상세한 지적 및 조치결과를 반드시 기재 ② 2003년~2006년 보육시설 위생안전점검 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 - 보육시설별 상세한 지적 및 조치결과 ③ 2002년~2006년 보육시설 소방안전점검 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 - 보육시설별 상세한 지적 및 조치결과 ④ 2003년~2006년 10월 현재 국공립보육시설 신축현황 및 향후계획 ⑤ 2002년~2006년 10월 현재 보육시설 관련 민원내용 및 조치 결과 ⑥ 영유아보육법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현황 - 대상보육시설수, 설치한 보육시설, 미설치 보육시설 및 향후 계획 - 설치한 운영위원회 수, 명단 및 직위 - 설치한 운영위원회의 회의내용 (표본위원회별2건) ⑦ 2004년~2006년 보육료 대상 아동 인구수와 지원 아동수 현황 - 지원 예산, 지원내역, 신청 비율대비 지원 아동수 - 보육료지원 홍보·안내 방법 - 보육료지원 대상 아동 중 미지원 아동수 현황과 그 사유 및 대책 ⑧ 2004년~2006년 복구자체 보육사업예산 대비 만0~5세 영유아 1인당 예산 - 만0~5세 영유아 인구수, 복구청의 자체 보육사업예산 - 만0~5세 영유아 1인당 예산, 전국대비 예산 - 지자체 보육관련 특수시책사업 현황과 예산(국·시비 제외)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복지서비스과	⑨ 2004년~2006년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지원 현황 및 내역 - 장애아 아동수, 전담보육시설이용수, 미이용아동수 및 그 사유 - 민원 및 문제점, 만족도 -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에 따른 특수교사 확충 및 인건비 지원현황 ⑩ 보육서비스의 실태와 보육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계획 -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수, 나이별 수 -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부모 직업별 현황 -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현황과 아동수 - 장애아 보육 확대를 위한 계획 - 야간근무를 하는 부모를 위한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현황과 확대 계획 -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등 응급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한 보육도우미 사업단 운영계획 ⑪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대체인력 예산 확충 계획 - 보육교사 급여, 4대보험가입, 근무형태, 근무시간, 중식비 지급여부, 노동조건의 만족도, 휴가규정, 수당, 이직율 현황 - 보육교사의 건강상 불편함에 대한 조사 및 결과 - 평가인증제의 성과와 문제점 - 보육시설내 비정규직 실태 및 계약기간, 임금 - 국공립시설 교사 인건비 확대 확대, 민간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계획 - 보육교사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각종 연수 등 참여시 대체 인력 예산 확충 계획 및 인력뱅크운영 계획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복지서비스과	14. 여성정책 기본 시책관련 ① 여성정책 기본시책 - 예산사업내역, 추진결과, 집행내역, 미추진사업내역 ② 여성주간 사업관련(2005~2006년) - 예산, 사업내역, 주체, 집행내역, 정산서, 영수증, 평가, 참가자수 ③ 상담소관련 - 소장 및 상담원 자격여부 - 구청·동에서 가정·성폭력 상담 건수 및 조치결과 - 민간의료기관에서 가정·성폭력 피해자 치료건수 및 조치결과 - 112로 접수된 가정·성폭력 사건건수 및 조치결과 ④ 성희롱예방교육·양성평등교육 추진결과(2004~2006년) - 실적, 강사(자격여부), 참가자수, 효과와 문제점 - 미참가자명단(직위), 사유 15. 지역아동센터 현황 (운영주체, 예산, 집행내역, 아동수, 교사수, 운영시간) 16. 장애인담보육시설 현황 (운영주체, 예산, 집행내역, 아동수, 교사수-자격여부, 운영시간) 17. 노인복지관련 ① 동별 노인의달 행사 현황 - 예산, 집행내역, 정산서, 영수증, 참가자수, 행사주체 ② 노령화사회에 대비한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18. 보육시설 관련 ① 노동조건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 계획 ② 보육시설 관리를 위해 관련 지역협의체구성, 지역현실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각종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계획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문화체육과	- 주민자치대학 운영 실적 - 일시, 참여인원, 강사, 주제 등 - 예산집행내역(강사수당 등 포함) - 강사 경력 - 생활체육시설 신규설치 및 보수현황 - 체육시설업 등록 및 지도단속 현황 - 청소년 관련 단속 실적(과태료 부과 등) - 각종 체육관련 행사 개최 및 지원현황(행사명, 일시, 예산, 내용, 주관) - 농소운동장/양정생활체육공원/효문운동장 월별 사용료징수 현황(2005, 2006년 월별 대비 작성) - 문화예술회관 운영 현황(문화교실, 공연 등 계획 및 실적) - 문화예술회관 월별 대관료 징수실적 - 문화재 지정현황 및 정비실적 - 청소년체육활동장 운영현황(2005, 2006년 사용료 수입 월별대비 작성 등) - 권역별 도서관 운영 현황 및 실적(예산, 하루평균 이용자 수, 연령대별) - 공공도서관 건립 현황 - 권역별 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현황(예산포함) -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 - 예산, 운영주체, 하루 평균 이용자수 - 사업현황 -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 위원현황, 위원위촉 등의 개정 계획 - 운영실적 및 계획 - 축제 및 문화행사(예산, 집행내역, 지출증빙서) 2005년도 구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 정산서 -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체련교실, 소외계층스포츠캠프 운영 관련 예산 및 정산서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환경미화과	- 폐기물 수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현황 - 청소대행업체 계약현황(음식물 포함) - 청소구역 및 투입인원(구청지역 포함) - 위탁업체 미화원 현황(구청포함) -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포상금 지급실적 현황 ※ 불법투기감시카메라 설치현황 및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내역 등) - 별도작성 - 환경미화원 정·현원(2005, 2006) 및 담당구역현황 - 병·의원 적출물 배출업소 지도 점검내용 - 분리수거 추진실태 - 환경미화원 복지관련 예산집행 현황 - 재활용교환판매장 현황 및 운영실태 - 매출실적 - 예산지원 현황 - 이용자수 - 음식물자원화 시설 운영현황 - 자원화시설 위탁 계약서 - 사용료 월별징수내역, 처리물량, 민원현황 ※ 자원화시설에서 접수한 민원과 과에서 접수한 민원 포함 제출 - 외부 위탁처리현황 및 처리비용 현황 - 월별 퇴비생산현황 및 소비현황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 등 - 쓰레기 불법투기감시단 운영실적 - 재활용 홍보관 운영 실적 - 폐기물 처리현황 및 표본(2개정도)업체의 폐기물 처리대장 2001~2006 음식물쓰레기수거통 제작예산, 제작수, 지정동 등	

도시경제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도시녹지과	1.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사업 공사현황					
	사업명		위 치	공사규모	사업비	업체명
	2.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내역					
	3. 도시계획사업 추진현황					
	4. 도시계획수립후 장기 미집행 소방도로, 공원 추진 계획 및 대책					
	5. 소나무 제선충 방제계획 및 실적					
	6. 달천 아이파크 건립 관련 인허가 현황 및 문제점					
	7. 양정동 송전탑 설치 행위허가 관련 민원처리상황					
	8. 산림훼손 지도단속 현황					
	9. 임도 개·보수 현황 및 계약업체 내역					
	10. 공원시설물 보수 및 정비 실적					
	11. 산림병해충 방제 현황					
	12. '06년 세출예산 정리부					
	13. 도로변 꽃길 및 화단조성 실적 (시기, 장소, 품종, 소요예산, 주관단체 등)					
14. 공원조성 현황 (장소, 시설현황, 개·보수내역, 관리대장)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경제교통과	1.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 점검 현황(행정처분 내역)												
	2. 가스판매업소 점검 현황(행정처분 내역)												
	3. 가격표시제 및 부정경쟁행위 지도단속 및 처리결과												
	4. 가스관련 허가, 신고 접수처리 현황												
	5. 달천농공단지내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실적												
	6.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현황												
	7. 솔라(Sola)프로젝트 사업 추진실적(에너지절감 효과 등)												
	8. 노동자 지원관련 사업 및 행사추진 실적												
	9.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항 및 실적												
	10. 자동차 관련 과태료부과 및 징수실적												
	- 현·과년도 구분작성 - 주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등												
	11.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자 조치사항 (부과대상 시설물 현황 등)												
	12. 공영주차장 관리현황 및 운영실태												
	13. 화물차 차고지 현황 및 단속현황												
	<table border="1"> <tr> <td>사 업 주</td> <td>차 고 지</td> <td>허가대수</td> <td>단속 및 조치내용</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r> </table>					사 업 주	차 고 지	허가대수	단속 및 조치내용				
	사 업 주	차 고 지	허가대수	단속 및 조치내용									
14. 주·정차위반차량 견인 실적 및 문제점 등													
15.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현황 및 실적													
16.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비전임계약직)운영실태 및 단속실적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건설과	1. 하천 점 사용료 부과 및 납부현황, 무단사용자 조치내역 2. 도로굴착허가 및 조치내역 3. 긴급도로 복구공사 현황 (도로명, 위치, 복구내용, 공사기간, 사업비 등) 4. 도로 점 사용료 부과, 징수내역 5. 가로등·보안등 용역업체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민원접수일자 내 용 완료일자 비 고			
	6. 가로등, 보안등 관련 주민불편사항 신고내역 및 조치사항 7. 제방 응급복구 공사 내역 8. 불법노점상 단속 실적 및 조치상황, 향후 대책 9. 전문건설업등록 및 관리현황 10.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추진현황(개설구간/부대시설 포함) (예산 투입액-2005년이전, 2006년, 향후예산투입예산액등) 11. 우·오수관로 뚜껑교체 정비현황 12. 소방도로 개설 현황 (위치, 사업개요, 사업비, 문제점 및 대책) 13. 하수도 정비 실적(하수도 준설, 보수, 맨홀 교체·수리 등) 14. '06년 세출예산 정리부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건축주택과	1. 무허가건물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 2. 건축허가 미준공 건물 및 방치된 건축물 내역 및 대책 3. 공유수면, 하천부지, 국·공유지상의 건축허가 현황 4. 관내숙박업 허가관련 허가사항 및 관리 현황 5. 건축허가 취소내역(취소 및 반려) - 건별 6. 준공검사 후 불법 확장공사 단속 및 조치 현황 7.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 8. 주요투자사업(공사) 추진현황 9.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사항 및 조치내역 (과태료 부과 등) 10. 임대아파트 현황 및 향후 분양일정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생명산업과	1. 농어촌 육성기금 운영실적 2. 농업인(농업관련단체)보조금 지원 및 자부담 내역 3. 휴경농지 보조금 집행내역 4. 농업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내역 5. 농축산물 불법유통(원산지표시 등) 단속실적 6. 수산물 관련 인허가 현황 7. 불법어업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8.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현황 및 사용료 부과징수 내역 9.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 내역 및 대책 10. 대체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부과및징수 현황 11. 농지 무단전용 현황 및 처리결과 12.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13. 호접란 해외수출전진단지 시설확충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14. 최근 2년간 학교급식 지원현황 및 심사위원명단 (품목, 금액 포함, 최근 2년간 심사위원회 회의록 제출) 15. 수산종묘 방류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재난관리과	1. 재해위험시설 지정내역 및 관리현황 2. 재해대책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3. 민방위교육 실시 현황 - 일시, 참여인원, 교육내용, 강사 - 민방위 교육불참자 처리 현황 4. 공익근무요원 복무 및 관리 현황 - 부서별 근무현황(인원, 복무목적 등) - 공익근무요원 징계현황(복무연장 등) 5. 재난 중점관리 대상물 현황 및 관리 실태 6. '06년 수해피해 내용 및 복구 현황 (피해내용, 피해금액, 복구비용, 복구현황, 시공사 - 건별작성) ※ 전실·과·소·동 취합 제출 7. '06년 재해대장 사본	

보 건 소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보 건 소	1. 수질검사 검사건수 및 결과 2. 방역, 소독 대행업자 지정사항 3. 진료비조정 및 징수현황 4. 주요약품 구입내역 및 관리현황 5. 의료장비 구입 및 관리 실태 6. 예방접종(정기 및 임시) 유형별 약품구입 및 접종 실적 7.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 및 보상내역 8. 방역장비 현황 및 방역실적 및 대책 9.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10. 정신질환 및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 현황 11. 특수학교 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 12. 결핵예방접종에 관한사항 13. 체력진단실 및 체력단련실 운영현황 및 실적 14. 비만·당뇨 예방대책 및 실적(효과) 15. 모스키토-존 효용성 및 경영수익실적 16. 출산장려사업 추진실적 17. 암치료비 지원 실적 18. 지역보건의료계획 관련 ① 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 결과 - 연도별 자체 평가안과 보건기관조직 진단 - 방문보건 등 핵심사업별 당초 계획 대비 추진결과 - 보건소 인력/장비 개선계획 대비 추진결과 ② 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서 - 의견수렴 결과서 - 무료예방접종에 관한 보건소의 예상가능한 변화지점과 그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서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보 건 소	③ 아토피성피부염에 관한 최근 3년간 조사 자료 및 향후 의료계획 ④ 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절차 관련 -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결과서 (지역보건법 제3조 1항) ⑤ 울산광역시 혹은 북구 자체 보건지표조사 자료 19. 보건소(보건지소 포함) ① 최근 3년간 보건의료 예산 및 집행내역 (사업별 세부예산 및 집행내역) ②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 대비 현재 근무인력 현황 - 의사, 간호사 등 직무별 정원대비 현원 기재, 과부족 사유 제출 ③ 보건의료 필수의료 장비 규정에 따른 보유 장비 현황 - 사용기간, 장비별 구입연도, 구입단가, 내구연한, 정상작동 여부, 노후정도, 교체계획 명기 ④ 관내 의료취약계층 현황 및 보건소진료실적, 예산 내역 - 최근 3년간 진료실적을 건강보험적용인구, 의료급여수급자 이용현황 취약계층, 이용환자수 구분 제출 - 최근 3년간 의료취약계층 관련 사업계획, 추진실적, 편성예산, 집행내역 제출 20. 전염병 예방접종 관련 ① 2002년~2006년 구(보건소, 보건지소) 예방접종 예산 및 사업 - 연도별 예방접종 관련 세부 사업계획 및 집행 실적, 집행부진 사유 - 연도별 예방접종관련 당초예산, 추경예산, 결산내역 및 불용액 발생시 사유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보 건 소	② 만6세 이하 아동(미취학아동) 등 예방접종 대상자별 인구수, 접종실적, 접종율(보건소/민간병원 구분) ③ 미접종자 관리실태 및 민간의료기관 지도감독 실적 및 결과 ④ 전염예방법 개정에 따른 인력, 예산 등 향후 계획 - 민간의료기관에서 무료예방접종에 대한 예산확보계획 - 2007년 예방접종 예산요구서, 국비/시비 보조금 가내시 내역 - 전염예방법 개정 관련 담당기관 인력확충 및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체계 추진계획 (법적용이 되는 대상인원수와 민간의료기관의 현황 포함) - 전염예방법 개정 관련 조례 제정 추진 계획 (민간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조례, 보건소 관련 조례)	

의회사무과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의회사무과	1. 예산집행 현황 2. 각종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3. 의회개최 및 회의록 발간배부 현황	

제2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1. 감사의 목적

- 2006년 자치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하고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2. 근 거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 「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3. 감사기간 : 2006. 11. 30 ~ 2006. 12. 6(7일간)

4. 감사실시기관

기 관 명	대 상 부 서	비 고
울산광역시북구	○ 기획홍보실 ○ 총 무 국 ○ 주민생활지원국 ○ 도시경제국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5. 감사실시 경과

□□ 감사주체 - 본회의

의 장	부 의 장	의 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유 재 건	윤 임 지	문 석 주 유 인 목 박 병 석 이 은 영 이 영 희	박 민 수	장 판 성

□□ 감사일시 및 장소

일 시	구 분	장 소	대 상 부 서	비 고
2006. 11. 30 (목)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 증인선서 · 실·국·소·과·동장 ○ 기획홍보실 ○ 총 무 국 · 총 무 과 · 회계정보과	
2006. 12. 1 (금)	10:00	”	○ 총 무 국 · 지 방 세 과 · 민원지적과 · 환경위생과	
2006. 12. 2 (토)	09:00	(대상사무현장)	(현장확인)	
2006. 12. 3 (일)	10:00	”	”	

제5장 행정사무감사

일 시	구 분		장 소	대 상 부 서	비 고
2006. 12. 4 (월)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 주민생활지원국 · 주민생활지원과 · 복지서비스과 · 문화체육과	
2006. 12. 5 (화)		10:00	"	○ 주민생활지원국 · 환경미화과 ○ 도시경제국 · 도시녹지과 · 경제교통과	
2006. 12. 6 (수)		10:00	"	○ 도시경제국 · 건 설 과 · 건축주택과 · 생명산업과 · 재난관리과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 감사방법

- 감사선언(의장)
- 의장인사
- 증인선서(집행기관, 감사첫날 관계공무원 합동실시)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소개
-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
 - 개괄적 총괄보고 : 실·국·소장
 - 세부사항 보고 : 해당 실·과·소장

제2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서류검증 또는 현지 확인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 증인출석 및 감사실시 현황

감사대상부서	감사자료 제출건수	증인출석	참고인출석	주요감사 실시건수
계	258	29		258
공 통 사 항	18			18
기 획 홍 보 실	18	1		18
총 무 국	55	6		55
주민생활지원국	68	13(동장 8)		68
도 시 경 제 국	76	7		76
보 건 소	20	1		20
의 회 사 무 과	3	1		3

제5장 행정사무감사

□□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72	44	28
공 통 사 항	3	3	-
기 획 홍 보 실	8	7	1
총 무 국	22	9	13
주민생활지원국	14	9	5
도 시 경 제 국	21	14	7
보 건 소	3	2	1
의 회 사 무 과	1	-	1

□□ 현장확인 감사

○ 현장확인 대상지

- 음식물자원화시설
- 동천강 제전보
- 장애인보호작업장
- 농소1동 도서관
- 강동 해안가꾸기 사업 현장
- 불무천

○ 참 석

- 의 회 : 전 의원, 사무직원
- 담당부서 : 환경미화과, 건설과, 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
생명산업과, 도시녹지과

○ 감사내용 : 대상 현장에 대한 현지 확인

6. 감사결과

시정요구

共通事項

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사후처리 철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처리결과가 미흡한 실정임. 실제 개선되거나 처리되지 않은 사항이 완결로 처리된 경우가 많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실과소에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것 보다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리가 요망됨.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 처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며 현재 처리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므로 시정 요구함

제5장 행정사무감사

② 위탁·용역업체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위탁·용역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구에서 업체에 위탁 시 최저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계 시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위탁·용역업체에 대하여도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함과 아울러 근로계약서에도 노동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임.

③ 업무추진비 투명성 제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시나 타 기관으로 축·조의금으로 사용한 사례, 원인행위 금액 이상으로 지출하여 거래처에 외상으로 남겨 놓은 사례, 내부직원 참여 사례, 기자들에 대한 과도한 식사제공 사례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음. 또한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 대부분이 식대로 사용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며, 업무추진비가 본래 목적대로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하므로 시정이 요구됨.

企劃弘報室

① 사전보도로 인한 부당한 의회압력 배제

각종 주요정책 입안을 위한 조례제정 시 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의회에 이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조율을 거치지 않고 미리 언론 등을 통해 보도함으로써

마치 의회를 통과하여 시행되는 것처럼 기정사실화 하는 경우가 몇 차례 있었음. 이럴 경우 의회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시정 노력이 필요함

② 신뢰성 있는 민원답변 요구

천곡 아남아파트 민원부조리 답변과 관련하여 비록 부조리 관련 담당부서에서 민원부조리에 대한 사항을 답변할 책임이 있다고는 하나 민원인들에게 정확하지 못한 답변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많았음. 이에 대한 것은 해당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면 이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성실하고 구체적인 책임성 있는 답변으로 구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하므로 시정 요구함

③ 위원회 정비 및 회의록 작성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다수 있음.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하고 기능이 유사한 것은 서로 통합 운영하여 행정적 낭비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위원회 개최시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함에도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므로 이에 시정 요구함

④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

2006년 8월 2일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총괄 추진부서가 지정되지 않는

제5장 행정사무감사

등 그 추진실적이 미진한 상태임. 기간제의 무기근로자로 전환, 비정규직 차별처리고충처리자 담당지정, 퇴직금·법정수당 및 사회보험료 별도편성, 저임금근로자의 예산 노무단가 인상, 합리적인 외주화 원칙 정립 등의 문제에 대해 조속히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필수적이므로 시정 요구함.

⑤ 창안제도 활성화

우리구의 창안에 대한 구민과 공무원들이 참여가 저조한 실정임. 공무원의 경우 인사상 우대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지지만 올해의 경우 3건 밖에 접수가 되지 않은 것은 상당히 큰 문제이며, 구민 또한 2건 밖에 접수되지 않아 창안을 통한 구정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구민과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⑥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통정회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올리게 되는데 그 반영률이 저조한 실정임. 비록 우리 구 재정형편상 모두 반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구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사업이 우선순위가 뒤쪽에 있고 반영되지 않아야 할 것이 반영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관리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⑦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강화

각종 사회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실제 그 단체와 무관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이것은 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사회단체에 대한 고유목적에 분명히 하여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 실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울산광역시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 “운영비는 보조금의 50%를 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각 단체들이 운영비 확보를 위해 무리한 사업을 올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례개정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도 각 단체에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므로 시정 요구함.

總 務 局

1. 총무과

① 정확한 인건비 추계

매년 잘못된 인건비 추계로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많았음. 금년의 경우 비록 노조 관련 공무원 정제와 결원 등으로 인건비가 많이 남는 사유가 발생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그러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많은 집행잔액이 (15억원정도)발생한 것은 문제가 되므로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인건비 추계가 정확히 이

루어져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정해야 할 것임.

2. 회계정보과

① 차량유지보수비 과다집행 시정

일반적으로 신차 구입 시 처음 2~3년간은 차량보수비가 크게 들어가지 않는 것이 상식인데 관용차량 유지보수비 내역을 보면 의회에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이 차량유지보수비로 집행되고 있음. 앞으로 관용차량운전기사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차량관리 및 유지보수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할 것이며 현재 회계정보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는 차량관리를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차량선택비가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시정 요구함.

② 구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및 소화시설 점검 추진

우리구가 얼마 전 보건복지부 선정 장애인 편의시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원들이 그 실태를 자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 1위라는 결과가 무색할 정도로 관리에 많은 허점이 노출되었음. 예를 들어 1층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장애물로 인하여 스위치를 켤 수 없었으며, 장애인 화장실내 화분방치, “사용중”이라는 등이 점등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며, 또한 소화기 위치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곳이 있었고, 화장실 물온도가 제대로 조정되지 않아 어린이 등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화상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청사 내 장애인 및 소화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됨

3. 지방세과

① 과오납 환부발생 최소화 요구

과오납의 경우 대부분이 이중납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과오납의 이중납부 사유는 독촉장과 기존의 고지서 동시 납부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므로 고지서 발송 시 신선했던 아이디어로 안내문을 작성하여 납부자가 혼란을 일으켜 이중납부 않도록 하는 등 다양한 홍보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②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자동차 미검사차량 등은 대부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현재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미흡한 실정임. 영치활동을 함에 있어 실제 차량이 많이 주차한 곳을 위주로 그리고 야간에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므로 영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해야 할 것임.

4. 민원지적과

① 장애인을 위한 민원실 운영

민원실 장애인 전용창구에는 이를 안내하는 표지판이 없는 실정이며, 1층 로비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시각장애인용이 작동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자블록도 없어 장애인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정이 요구되며, 시각장애인용 점자서류 도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제5장 행정사무감사

② 무인민원발급기 활용 제고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4대를 민원의 편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화 농협에 설치된 발급기는 야간에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민원인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신흥주거지역으로 옮기거나 이화농협과 협의하여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5. 환경위생과

① 공사장 주변 소음 및 분진대책 강구

달천 아이파크 공사장의 경우 공사장 소음 및 분진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해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소음발생 시 인근 주민들의 입장에서 소음측정을 실시하고 주간만 측정하지 말고 야간 또는 민원발생 시 수시로 측정하여 기준 초과 시 법적 제제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임. 또한 분진 최소화를 위하여 관련법에 근거하여 방진벽 설치 등에 따른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임.

② 먹는 물 관리 강화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약수터와 간이상수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약수터 관리 실태를 보면 약수터 주변에 각종 오물이 산재해 있는 등 청소상태가 불량하고 수질검사 성적서가 제대로 붙어있지 않은 곳과 폐쇄된 약수터를 제대로 폐쇄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문제 발생소지가 많으므로 구민

의 건강을 위해서 이에 대한 실태파악 후 사후조치가 철저히 요구되며, 간이상수도의 경우 물탱크 주변이 청결하지 못하여 오염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고, 뿔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관리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조속한 시정이 요구되며, 관리대장을 보면 아직 수기로 작성하고 있으므로 전산관리가 요구됨.

住民生活支援局

1. 주민생활지원과

① 주민자치센터 설치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에서 자치센터의 기능을 보면 주민자치 기능, 문화여가 기능, 주민편익 기능, 시민교육 기능, 지역사회진흥 기능이 있어 이러한 기능 수행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대부분은 문화여가 기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당초 자치센터 설치 목적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므로 시정이 요구됨.

2. 복지서비스과

① 직원들에 대한 성교육 참여율 제고 및 홈페이지 관리 철저

직원들의 성교육 참여현황을 보면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제5장 행정사무감사

좀더 많은 직원들이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홈페이지에 옛날자료가 수정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시정이 요구됨.

②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내실화

장애인작업장은 일반인들과 달리 장애인들이 작업을 하는 장소이므로 바닥의 점자블록을 조속히 보수해야 할 것이며, 안전을 위하여 작업상자를 너무 높게 쌓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함과 아울러 많은 장애인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3. 문화체육과

①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 민원해소방안 강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가 당초 농소중학교 인근(농소1동)에서 신천근린공원(농소2동)으로 위치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기존 농소1동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청의 책임 있는 공무원이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아울러 지역주민을 위한 또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 다각적 방안 마련이 요구됨.

② 북구생활체육협의회 지도·감독 철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 8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규정을 보면 하루 3시간이상 주민들에게 생활체육에 대한 지도를 하게 되어 있음. 현재 7명은 규정대로 운영되고 있으나 1명은 생체사무실에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각종

생활체육대회 준비에 지도자를 활용하고 있어 정작 고유 업무인 생활체육지도를 등한시 하는 사례가 있고 생체 사무국장의 경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인건비의 일부를 구청으로부터 지원받는 상근 직 임에도 불구하고 근태문제 및 지도자를 사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됨.

③ 청소년체육활동장 관리 철저

청소년활동장을 사용함에 있어 일반인들이 청소년들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음. 활동장을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실태를 보면 주로 야간에 폭죽사용, 앰프사용, 음무가무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임. 체육활동장 신청 접수 시 사용자에게 대하여 철저한 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 신청서에도 이를 명기하여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

4. 환경미화과

① 불법쓰레기투기 단속 카메라 운영방법 개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감시카메라 운영에 있어 카메라를 한 방향으로만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 단속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수시로 방향을 바꾸어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예방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쓰레기 불법투기 시 과태료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생활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시정 요구함.

제5장 행정사무감사

② 효문공단내 장기 방치폐기물처리 추진

효문공단내 합성수지 원단을 가공하여 자동차시트를 제조하던 공장이 오래전 부도처리 되어 약 1만 5천톤 가량의 산업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음. 감사자료에 의하면 완결로 처리하였으나 실제로는 처리되지 않은 사항으로 장기방치에 따른 화재발생 등 2차적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되므로 중앙부처와 협의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 바람.

③ 나눔장터 운영방법 개선

나눔장터 운영 시 개최일을 평일(금요일)로 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토요일 오후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당초 나눔장터의 목적은 학생들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 경제적 마인드 제고 등으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장소 선정 시에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며, 명사들의 후원품 또한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都市經濟局

1. 도시녹지과

① 소나무 제선충 제거목 및 간벌목 처리

소나무 제선충 감염 제거목 훈증처리를 위하여 관내 곳곳에 포장
을 쳐 처리 중인데 인근에 농약병 등이 방치되어 미관상 좋지 않
고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속히 조치되어야 할 것이며,
제거목 및 간벌목 처리시 등산로변과 임도 등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곳만 정비할 경우 우수기에 제거되지 않은 제거목으로 인하
여 하천이 막혀 장마 등 호우시 하천범람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
으므로 잘 보이지 않은 계곡의 제거목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임.

② 불무천 하천정비구간 안전조치 강구

불무천 하천 정비시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난간대 사이가 너무 넓어
(폭간 25cm) 어린이들이 들랑날랑 할 수 있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
며, 성원상떼빌아파트 바로 뒤편 하천 끝부분에는 안전난간대가 설치
되어 있지 않아(30m정도) 우수기 빠른 유속으로 인하여 상당히 위험
한 실정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2. 경제교통과

① 학교(초등학교)주변 안전조치 강구

초등학교 인근 교통안전에 대한 점검결과 어린이들이 상당히 위

제5장 행정사무감사

험에 노출되어 심각한 상황임. 2004년에 지어진 천곡초등학교의 경우 통학로에 포장마차가 위치해 보행을 방해하고 있고 이화초등학교의 경우 구에서 공사를 한 것으로 미끄럼방지물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등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으므로 초등학교 인근 교통시설물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기적으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② 석유판매업소 단속 강화

2003년부터 이 문제를 시정하도록 요청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석유판매업소에서 정량미달이 될 수밖에 없는 말통으로 양을 속여 판매하는 것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요구함.

3. 건설과

① 지하수 개발관련 사후관리 철저

지하수개발과 관련 수질검사 불합격, 물부족 등으로 폐공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 안되어 지하수 오염원이 되고 있는 실정임. 무허가 및 무신고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폐공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② 신명화장실 옆 나무계단 처리방안 강구

신명화장실 옆 나무계단은 2001년 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2002년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관리소홀로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어 흉물스러운 실정임. 해안가에 이러한 시설 설치시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치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방치된 나무계단은 제거, 보수사용 또는 보수하여 다른 적당한 장소에 사용하는 등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③ 자전거 전용도로 관리 철저

실제 자전거를 타고 전용도로를 이용해 보면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많은 실정이며, 특히 자전거 보관대의 관리상태가 전반적으로 불량한 실정임. 실제 거의 이용하지 않는 장소에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고 정작 많이 사용하는 장소에는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 등이 있으며, 보관대 유지관리 상태가 대체적으로 불량한 실정이므로 시정 요구함.

④ 원지삼거리~농소운동장구간 자전거전용도로 시정 요구

원지삼거리~농소운동장구간 자전거전용도로 폭이 0.8m~1.2m로 기존의 인도는 거의 없어진 상태임. 특히 농번기에는 지역특성상 경운기의 운행도 고려되어 저야 하나 가로등으로 인해 운행이 어려워 도로를 이용해야 하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실정임. 따라서 경운기 안전운행에 저해되는 가로등 이설이 요구되며, 미곡처리장 앞 급커브 지점은 아주 위험한 실정임으로 시정이 요구됨.

제5장 행정사무감사

⑤ 건설공사현장 뒷마무리 및 도로굴착 실명제 운영 철저

공사완료 후 현장을 보면 제대로 마무리가 안되 공사자재 방치, 철근콘크리트 노출, 청소 등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도로굴착공사 후 굴착된 부분과 기존도로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도로굴착에 대한 실명제 운영에 있어서도 공사명, 공사기간, 시공자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 구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므로 시정 요구함.

4. 건축주택과

① 방치된 기계식주차장 처리방안 모색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된 기계식주차장 관리개선 여부를 최근 살펴본 결과 여전히 대부분의 시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출입을 못하게 막아 놓고 있었음. 기계식주차장 설치 목적은 도심지 주차난 해소가 목적이지만 건물주들이 관리인 문제 등으로 운영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법적 규정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시설이라고 보면 무방할 것임. 따라서 행정에서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를 강요할 수도 없는 실정이므로 도색을 실시하여 1층이라도 개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거나 인근에 공동으로 토지를 임대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상급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제도개선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② 종합복지회관 부지 석재 정비

보건소 뒤편 종합복지관 부지에 석재가 쌓여져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조속한 정비가 요구됨.

5. 생명산업과

① 가축전염병 관리 시정

부루셀라병에 감염된 소 살처분 시 장소를 잘못 선정하여 인근 토양 및 물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발생하여 언론의 질타를 받은 사례가 있었음. 살처분 대상지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노력이 필요함.

② 농·도한마당 축제 개선

농·도한마당 축제가 농민과 어민만이 참여한 반쪽짜리 행사가 되었음. 도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며, 날짜를 금요일로 정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없었으며, 개최 장소(농소운동장)도 재고해야 할 것임. 전체적으로 볼거리가 작아 참여율이 저조하였음. 이 축제와 관련 추후에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6. 재난관리과

① 방독면 관리 만전

현재 경주에서 추진 중인 방폐장, 울주군 원전 등 우리지역도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유사시를 대비하여 현재 동사무소 및 구청에 보관중인 방독면에 대해 보관상태, 기능여부 등 전수조사를 실시

제5장 행정사무감사

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保 健 所

① 방역활동 강화

올해의 경우 모기가 10월말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실정임. 더위가 늦게까지 지속되고 가뭄이 오래 지속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내년부터는 방역기간을 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② 보건소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보건소 장애인화장실의 경우 1, 2, 3층 모두 점등이 되지 않고 있으며, 층별 비상키는 갑작스런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건의사항

企劃弘報室

① 여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반영

구청장 공약사항, 시정연설 등을 보면 여성을 위한 정책이 전무한 실정임. 또한 각종 통계를 보면 성별분리통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여성정책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며,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여성위원이 23%정도(여성발전기본법 여성 30%할당)로 너무 낮은 편으로 추후 새로 구성되거나 새로운 위원 위촉 시 좀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현재 중요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에는 여성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며, 여성정책을 총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여성정책 15개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總務局

1. 총무과

①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 조성

직원들의 연가사용율을 보면 아주 저조한 실정임. 연가사용 시 동

제5장 행정사무감사

료들 중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상사의 연가사용에 대한 무언의 압력이 있지 않는지 그리고 연가대신 병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총액인건비제 실시 시 연가보상비도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만큼 조직의 활성화 및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자유로운 연가사용에 대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② 학교신설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강구

달천 아이파크 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당초 예정부지에 문화재 문제로 학교가 건립되지 못하게 되었음. 시공업체, 교육청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대체부지를 조속히 확보하여 학교가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③ 공무원 노조관련 상생의 신노사문화 정립

금년 9월 22일 공무원 노조사무실에 강제폐쇄가 이루어졌음. 일부 의원들이 노조사무실 폐쇄에 따른 제고를 요청하였으나 받아지지 않아 강제 폐쇄가 이루어져 현재 1층 로비에 노조간부들이 임시 사무실을 차려 놓고 노조활동을 하고 있어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사무실로 출근하는 직원 그리고 의원들이 이러한 광경을 볼 경우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므로 집행부에서는 구청장이 표방하고 있는 상생의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먼저 우리 직원들과 직접 관련된 공무원 노조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징계를 받은 노조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할 것임.

④ 보건소 행정직 공무원 재직기간 조정

현재 보건소의 행정직 공무원의 평균 재직기간은 평균 1~2년 정도로 다른 부서 재직기간 보다 상당히 짧아 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보건소의 경우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부서보다 업무의 연속성, 특수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행정직에 대하여 좀 더 오랜기간 동안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2. 회계정보과

① 북구생활체육협의회 구청 별관 무상사용 관련

북구생활체육협의회는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협의회와 달리 무상으로 구청사를 계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2006년말 계약이 만료되는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임.

② 카메라 관리 개선방안 검토

전실과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 현황을 보면 현재 163대로 취득가액이 90,000천원 정도로 직원 3명당 1대 정도임. 물론 필름을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카메라로 전환하면서 이렇게 많은 보유대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사용하지 못하는 것 등은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현재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카메라 등에 대하여 일제정리가 필요할 것임

제5장 행정사무감사

③ 공사대금 지급예고제 확대시행

공사대금 지급예고제는 실제 대규모사업장 보다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더욱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현재 운영실태를 보면 공사금액 30,000천원 이상만 시행하고 있는데 30,000천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도 이 제도가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하청업체 및 인력시장에서 오는 일용근로자 등에게도 충분히 알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④ 시군구간 이중화 프로젝트 사업 관련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동사무소의 이중화 프로젝트사업 관련 현재 한국통신에서 2개선 모두 지중화로 2004년 설치를 완료한 실정임. 그러나 지하로 모두 선로가 구축되어 도로굴착 등 문제 발생시 안전을 도모할 수 없으므로 한 선로는 지하로 다른 한 선로는 지상으로 하는 것이 이중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⑤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계약 확대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총99건으로 이중에 북구관내 사업계약 건수는 9건으로 극히 저조한 실정임. 우리지역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동종의 업종일 경우 우선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3. 지방세과

① 고액채납자 관리 강화

고액채납자의 경우 악의적으로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하여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체납자의 재산이라고 밝혀진다면 압류 등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 노력이 필요함.

4. 민원지적과

① 도로명 및 새주소부여사업 홍보 강화

이 사업의 경우 아주 오랫동안 기존 번지 개념으로 주소가 쓰여져 왔으므로 한꺼번에 일시에 새주소로 사용하기는 다소 혼란이 예상되므로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시행하여 혼란을 최소화 할 필요성이 있음.

5. 환경위생과

① 학교앞 유해환경 단속을 위한 제도개선

현재 단속실태를 보면 대형 마트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학교 인근에 대해서는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문방구, 슈퍼에서 판매하는 각종 색소 등 첨가물이 포함된 빙과류, 과자류, 젤 등의 경우 관련법에 첨가물에 대한 세부 단속기준이 없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단속규정이 없어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식품위생법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관련법 개정 요구가 필요함.

제5장 행정사무감사

② 오존관련

농소1동과 효문동에 오존수치를 파악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2006. 10월 현재 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한 횟수가 20회 이상으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음. 비록 시에서 이러한 업무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구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시에 요청하여 이러한 기준초과 시 즉시 구민에게 알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노력이 요구됨.

住民生活支援局

1. 주민생활지원과

① 자원봉사자 확충 및 효율적 관리방안 강구

자원봉사자 중 공무원 수는 93명으로 참여자 수가 작으므로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자원봉사자 관리에 있어 자원봉사센터 및 해당과에서 개별로 봉사활동을 가는 것에 대한 현황파악 정도는 되어야 혜택이 골고루 가게 할 수 있을 것임.

② 자원봉사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회관 위탁 관련

내년부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방법을 직영에서 위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위탁보다는 자체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 할 것이며,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회관 수탁자 공고에 있어서도 실제 많은 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서 모집해야 가장 적당한 법인이 선정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 복지서비스과

①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확대방안 강구

“노인이 살기 좋은 북구” 건설을 위하여 장수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90세 이상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수혜자 확대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3. 문화체육과

① 운동장 사용료 인상 및 개방 검토

우리구 관내에는 농소운동장, 효문운동장, 양정생활체육공원 등 3개의 운동장이 있음. 평일에는 시간당 15,000원, 주말에는 22,500원을 받고 있는데 이는 운동장을 관리하는 인부임 및 유지관리비에 충당하기에는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운동장이 축구를 하는 동호인들의 전유물이 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진정한 쉼터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개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요구함.

4. 환경미화과

①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며 그 결과가 6개월 후 나옴.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자원화시설은 가동되므로 냄새 최소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용역결과에 대해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시 주민들에게도 이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임.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5개구군 단체장들이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광역화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 강구가 요구됨.

都市經濟局

1. 도시녹지과

① 상안어린이공원 조성관련 주민의견 수렴

상안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한 공사설계 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 경제교통과

① 교통지도단속요원(비전임계약직) 계약해지 관련

올해 7월부터 교통지도단속요원으로 13명을 비전임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 무인카메라 및 차량이동카메라 도

입으로 인해 올해 12월 말일로 13명 전원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고 2007년 새로이 7명을 모집하는 계획은 재고의 여지가 있음. 13명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실적평가를 통하여 7명을 선발하는 것이 그동안 교통지도 및 단속에 필요한 교육을 받았고 단속복 등을 지급받은 기존의 인원에 대해 공정한 심사기준이나 단속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또한 단속원 일부는 한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정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도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3. 건설과

① 불법노점상 단속 관련

쌍용아진아파트 2~3단지 사이 목요장터 관련 인근상가, 이용 주민, 아파트 전체주민, 2~3단지 사이의 주민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하여 행정기관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현재 관망하고 있는 실정임. 전체적인 실태 및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명확한 기준(방침)을 정하여 목요장터를 양성화(도로폐도, 차 없는 거리 지정)하든가 아니면 적극적 단속을 펼쳐 목요장터를 폐쇄하든 구의 결단이 필요함.

② 동천 모래채취 시 문제부분 우선 정비

동천 퇴적모래 채취 시 원동현대아파트 인근의 경우 퇴적된 모래로 인하여 하수관 물이 배수되지 않아 하수역류가 우려되므로 공사시 우선 정비가 요구됨.

4. 건축주택과

① 천곡아남아파트 분양 관련

천곡아남아파트 분양관련 분양회사(우방)가 임대법에 따라 분양을 하여야 함에도 4,000만원에 분양을 하였고 구청은 임대사업자가 분양을 임대법에 따라 분양하도록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데도 관리를 하지 않아 임대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입주민들이 최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청은 분양회사와 입주민 사이의 중재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분양회사가 분양 철회 시 입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중재노력이 요구됨.

5. 생명산업과

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활동 강화

우리구 관내 67농가에 40,500두의 닭과 오리를 사육하고 있음. 대규모 사육농장의 경우 자체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으나 소규모로 사육하고 있는 곳은 그러지 못하는 형편임으로 가축방제단을 적극 활용하여 방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6. 재난관리과

① 재해대장 전산화 추진

현재 해당과에서 재해대장을 수기로 관리하고 있어 관리현황 및 통계 등 효율적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전산화하여 대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保 健 所

① 보건소 인력 적재적소 배치 검토

보건소 인력배치 현황을 보면 간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진료 담당으로 그리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보건담당을 맡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인력배치로 이는 조직 활성화를 위한 순환배치와는 무관할 것이므로 재고해야 할 것이며, 또한 신규로 임명된 물리치료사의 업무분장을 보면 물리치료와 무관한 업무를 하고 있어 본연의 업무인 물리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議 會 事 務 課

① 의원 의정활동 보좌 강화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각종 자료수집, 신문스크랩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 대한 각종 자료요구 시 의원들의 뜻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제3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 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서,
- 2006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58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각종 정보와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여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였음.
- 감사의 중점 방향으로 구정 전반에 대하여 그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거론되었거나 문제점이 도출된 각종 사안들에 대한 적법성과 주민의 요구가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감사를 실시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지적되었던 사항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직도 주민을 위한 소신있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행정은 무엇보다 구민들에 대한 신뢰성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예산집행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고 대안이 제시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
- 각종 사항별 감사지적 사항으로는 총 72건이며 시정요구사항 44건, 건의사항 28건으로서 지적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조치하기 바람, 그 처리결과를 2007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기 바람.

제4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시정·건의요구사항 현황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71	26	41	4	44	16	26	2	27	10	15	2
공 통 사 항		3		3		3		3		-			
기 획 홍보실		8	2	6		7	2	5		1		1	
총 무 국	계	22	10	10	3	10	5	4		13	5	6	2
	총 무 과	6	3	3		2	1	1		4	2	2	
	회계정보과	7	2	4	1	2		2		5	2	2	1
	지 방 세 과	2	2			2	2			1		1	
	민원지적과	2	1		1	2	1		1		1		1
	환경위생과	4	2	2		2	1	1		2	1	1	
주 민 생 활 지 원 국	계	13	4	9		8	2	6		5	2	3	
	주민생활지원과	2	2							2	2		
	복지서비스과	3	2	1		2	2			1		1	
	문화체육과	4		4		3		3		1		1	
	환경미화과	4		4		3		3		1		1	
도 시 경 제 국	계	21	8	12	1	14	6	7	1	7	2	5	
	도시녹지과	3	1	1		2	3			1		1	
	경제교통과	3		3		2		2		1		1	
	건 설 과	7	3	3	1	5	3	1	1	2		2	
	건축주택과	2		2		2		2		1	1		
	생명산업과	3		3		2		2		1		1	
	재난관리과	2	2			1	1			1	1		
보 건 소		3	3	1	2	2	1	1		1	1		.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공통사항 [시정요구]	시 최저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계 시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위탁·용역업체에 대하여도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함과 아울러 근로계약서에도 노동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임.	업체 종사자(근로자)들의 임금이 최저 임금 수준에 미달하지 않도록 위탁계약서 명시 및 지속적인 지도 감독 철저	추진중
[시정요구]	③ 업무추진비 투명성 제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시나 타 기관으로 축·조의금으로 사용한 사례, 원인행위 금액 이상으로 지출하여 거래처에 외상으로 남겨 놓은 사례, 내부직원 참여 사례, 기자들에 대한 과도한 식사제공 사례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음. 또한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 대부분이 식대로 사용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며, 업무추진비가 본래 목적대로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하므로 시정이 요구됨.	○업무추진비 투명성 집행 제고 -업무추진비 집행시 사전에 예산편성 지침 등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는 집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충분한 업무 연찬을 통한 투명성 제고	추진중

제4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기 획 홍보실 [시정요구]	① 사전보도로 인한 부당한 의회압력 배제 ○ 각종 주요정책 입안을 위한 조례제정 시 미리 언론 등을 통해 보도함으로써 마치 의회 를 통과하여 시행되는 것처럼 기정사실화 하는 경우가 몇 차례 있었음. ○ 이럴 경우 의회에 상당한 압 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 지 않도록 적극적인 시정 노 력이 필요함	○ 주요 정책 입안을 위한 조례 제정시 의회 의결 전에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를 적극 지양하도록 함으로써 의정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음 ○ 전부서 이행 및 협조 통보 : '07. 1. 24	완결
[시정요구]	② 신뢰성 있는 민원답변 요구 ○ 민원부조리 답변 시 민원인 에게 정확하지 못한 답변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많으므로 신뢰성 있는 민원 답변 요구	○ 홈페이지 부조리신고 민 원에 대하여 답변할 때에 는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 의를 거치고 철저한 조사 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 인한 후 민원인이 오해가 없도록 구체적이고 정확 하게 답변함으로써 행정 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 겠음	완결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기 획 홍보실 [시정요구]	③ 위원회 정비 및 회의록 작성 ○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다수 있음.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하고 기능이 유사한 것은 서로 통합 운영하여 행정적 낭비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위원회 개최시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함에도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므로 이에 시정 요구함	○ 우리구에서 구성·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중 개최 횟수가 저조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합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년이상 미개최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위원회 정비 방안 자료 제출토록 해당부서 통보 ○ 위원회 정비 실적 정비대상 15개위원회 중 ⇒ 5개위원회 통·폐합 조치중 ⇒ 10개위원회 존치(의무적 설치) ○ 각종위원회 개최시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 하도록 실과 통보 ⇒ 근거 : 공공물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추진중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기 획 홍보실 [시정요구]	④ 공공부분 비정규직 종합 대책 추진 ○'06.8.2일 정부에서 공공부 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 립하여 시행토록 되어있으 나 총괄 추진부서가 지정되 지 않아 추진실적이 미진한 상태임. ○기간제의 무기근로자 전환, 비정규직차별처리 고충처리 담당자 지정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총괄부서 를 지정하여 세부추진계획 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필수 적이므로 시정 요구함.	○총괄부서는 기획홍보실로 지정하고 세부 항목별 관리 부서는 총무과로 지정 •기간제 근로자 무기근로자 로 전환 : 기획홍보실 •비정규직 차별처리 고충처 리 담당자 : 총무과 공무 원단체 담당 •퇴직금·법정수당 및 사회 보험료 별도 편성 : 당초 예산편성 완료 •저임금 근로자의 예산 노 무단가 인상 : 예산편성지 침 등 관련 규정 개정에 따 라 조치 •합리적인 외주화 원칙 정립 •외주화중인 업무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07.1월말)하 여 시에 보고 후 중앙추진 위원회 결정에 따라 사후 조치('07. 5월후)계획임	추진중
[시정요구]	⑤ 창안제도 활성화 ○우리구의 창안에 대한 구민 과 공무원들이 참여가 저조 한 실정임. 공무원의 경우 인사상우대 등 각종 인센티	○제안제도의 실적 저조 원인 •선거법 개정으로 주민들에 게 보상기회가 제한되었고, 내용 또한 전년도를 답습한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기획 홍보실 [시정요구]	브가 주어지지만 올해의 경우 3건밖에 접수가 되지 않은 것은 상당히 큰 문제이며, 구민 또한 2건 밖에 접수되지 않아 창안을 통한 구정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구민과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내용과 단순 건의사항이 대부분으로 제안 채택 불가하였음 • 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들이 창의적인 제안을 보장하는 근거 법규 마련 -울산광역시 북구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2006. 9. 25 공포) • 2007년에는 주민제안보상금을 3백만원을 확보하여 구홈페이지, 게시판, 구정소식지, 구민만남의 날, 각종 회의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중
[시정요구]	⑥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통정회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올리게 되는데 그 반영률이 저조한 실정임. 비록 우리구 재정형편상 모두 반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의회시정·건의 요구뿐만 아니라, 예산제도 변경에(목별 예산제도→사업예산제도) 따라 운영방법 개선이 요구됨 ○2006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결과보고를 위한 시민위원회 개최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개선방안 의견 수렴하고,	추진중

제4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기획 홍보실 [시정요구]	구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사업이 우선 순위가 뒤쪽에 있고 반영되지 않아야 할 것이 반영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관리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통하여 새로운 예산제도에 맞는 운영계획 및 개선방안 마련 • 2007. 2 ~ 3월 -결과보고를 위한 시민위원회 개최 :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개최 :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개선 방안 마련 • 2007. 4월 -운영계획 수립 및 필요시 조례개정안 수립 및 의회 제출	추진중
[시정요구]	⑦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강화 사회단체에 대한 고유목적에 분명히 하여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 실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울산광역시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 “운영비는 보조금의 50%를 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각 단체들이 운영비 확보를 위해 무리한 사업을 올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례 개정등 제반사항 검토	○사업 신청·접수시 소관부서별 사회단체 사전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성격에 맞는 사업이 신청되도록 적극 유도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시 지원액 결정전, 단체의 성격 및 고유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지원 제외 ○조례개정 : 운영비 지원을 받기위해 무리한 사업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상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보조금의 50% 제한규정사항을 삭제 등	추진중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기 획 홍보실 [시정요구]		• 2007. 1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개정 검토 • 2007. 2월 개정조례안 의 회제출	
기 획 홍보실 [건의사항]	① 여성을 위한 정책 수립반영 ○ 각종 통계를 보면, 성별분리 통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여성정책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며,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여성위원이 23%정도(여성발전기본법 여성30%할당)로 너무 낮은 편으로 추후 새로 구성되거나 새로운 위원 위촉 시 좀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현재 중요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에는 여성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며, 여성정책을 총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여성정책 15개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 각종 통계자료 작성시 성별 분리통계 작성토록 유도 ○ 여성정책의 적극적 반영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임기만료, 결원발생시 위촉위원의 40%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해당 부서에 통보하였으며,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여성정책 총괄부서는 복지서비스과로 추진하되 각종 신규시책보고회, 주요업무계획 수립시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제4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총무과 [시정요구]	① 정확한 인건비 추계 ○ 잘못된 인건비 추계로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시정 요구	○ 철저한 정·현원 관리와 대상자별 호봉의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정확히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잔액의 면밀한 관리로 잔액이 구정시책을 위한 사업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완결
[시정요구]	② 주민자치센터 설치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주민자치, 문화여가, 주민편의, 시민교육 등 다양한 기능이 있거나 현재 문화여가 기능의 역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운영 요구	○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에어로빅, 요가, 헬스 등 일부 종목으로 한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확대 전환하고, ○ 특히, 1동 1특화사업 추진과 야간이나 주말, 일요일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장인, 학생, 주부,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추진중
[건의사항]	①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 조성 ○ 직원들의 연가사용 실적이 저조하므로 이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총액인건비제	○ 공무원휴가업무예규(행정자치부)에 의거 소속직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 연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완결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도입시 연가보상비도 총액인 건비에 포함되므로 향후 조직의 활성화 및 개인의 발전을 위해 자유로운 연가 사용 분위기 조성 필요	연가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 지정 및 인계인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전 부서에 통보	
총무과 [건의사항]	② 학교신설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강구 ○ 달천아이파크 건립과 관련하여 당초 예정부지에 문화재 문제로 학교가 건립되지 못하게 됨. 따라서 시공업체, 교육청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대체부지를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바랍.	○ 문화재 보존결정 재심의를 요청하여 발굴 결정되면 당초 계획대로 부지를 조성하고(재심의 요청자 : 현대산업개발) ○ 보존결정이 철회되지 않으면 고등학교 부지를 일부 줄여 초등학교를 조성하는 계획추진(울산광역시 교육청) ○ 학교시설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기간(4~6개월)이 소요되므로 기존 농서초등학교를 20학급에서 50학급으로 증축하여 달천아이파크 입주 학생들을 임시 수용하고, 학교가 건립되면 기존 농서초등학교는 중학교로 변경 계획 ○ 향후 복구청, 교육청, 시공사와 유기적인 협조로 학생 수용에 만전을 기하겠음.	추진중

제4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총 무 과 [건의사항]	③ 공무원노조 관련 상생의 신노사문화 정립 ○ 노조사무실 강제폐쇄로 1층 로비에 노조간부들이 임시 사무실로 차려 놓고 있어 민원인들과 직원들이 안타깝게 생각함. 공무원노조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로 징계 받은 노조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할 것임.	○ 현관로비 농성장에 대한 철거를 수 차례 걸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자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전국적으로 합법노조 움직임이 있는 만큼 우리구 또한 합법노조 전환시 가능한 행정지원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도 동시에 모색할 것임. ○ 현실적으로 노조사무실을 다시 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나,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음.	추진중
[건의사항]	④ 보건소 행정직 공무원 재직기간 조정 ○ 보건소 행정직 공무원 재직기간이 평균 1~2년 정도로 다른 부서와 달리 보건소는 예산규모 및 업무의 연속성, 특수성이 높아 가능한 오랜 기간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법령과 규정의 범위내에서 보건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 사회적 소외계층 건강관리와 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완결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회 계 정보과 [시정요구]	① 차량유지보수비 과다집행 시정 ○ 신차 구입시 2~3년간 차량보수비가 크게 들어가지 않는데 과다하게 차량유지보수비가 집행 ○ 관용차량 운전기사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차량관리 집행에 만전	○ 차량 유지보수비 과다 집행에 따른 조치 계획 【단기방안】 ▪ 차량수리 방법 개선 : 정비사유 발생시, 회계정보과 협조 요청후 수리 ▪ 실·과별 차량 전담 직원 지정 → 교육 계획 ▪ 차량별 관리대장 작성 ▪ 신차·특수차량 집중관리 대상 지정 【장기-’08년도 시행】 ▪ 사용부서별 차량선택비 예산편성 검토 ▪ 관용차량 운전기사 사용실과별로 배치안 검토	추진중
[시정요구]	② 구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및 소화시설 점진 추진 ○ 보건복지부 선정 장애인 편의시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청사 내 장애인 및 소화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됨	○ 1층 장애인 화장실 입구 스위치 사용에 불편함이 있어, 파티션 이전 조치(’06.12.26) ○ 장애인 화장실 비데설치(5대) 및 안전사고대비 비상벨 설치(5대) ○ 청사 전층 소화기 위치 야광표시판 부착 및 법규에 맞게 소화기 구입비치(120대)	추진중

제4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온도가 조정이 어려워 화상위험이 있어, 온도조절을 위한 혼합탱크 설치완료('07.1.18)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및 소화시설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에게 한층 더 높은 편의시설을 제공토록 하겠음.	
회 계 정보과 [건의사항]	① 북구생활체육협의회 구청 별관 무상사용 관련 ○북구생활체육협의회는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협의회와 달리 무상으로 구청사를 계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2006년말 계약이 만료되는 생활체육협회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임.	○생활체육협회의의 경우는 개별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2007년도까지는 이전에 기간이 필요함으로 무상 임대토록 하고, 2008년도에는 유상대부하거나 이전 조치토록 통보('06.12.28)	추진중
[건의사항]	② 카메라 관리 개선방안 검토 ○전실과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 현황을 보면 현재 163대로 취득가액이 90,000천원 정도로 직원 3명당 1대 정도임.	○06.12.26~07.1.4 까지 전실과 소동 카메라 보유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68대중 연말에 내구연한 경과된 42대를 폐기처분하고,	완결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물론 필름을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카메라로 전환하면서 이렇게 많은 보유대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사용하지 못하는 것 등은 정리해야 할 필요설이 있으므로 현대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카메라 등에 대하여 일제정리가 필요할 것임	일제정리하여 현 보유 카메라는 126대임 ○실태조사과정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는 카메라 25대는 고장으로 수리를 요하는 대수로 실제 사용가능한 것은 101대로 조사 되었음 ○정수물품이 아닌 관계로 실과구입시 통제에 한계가 있으나 불필요한 구입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조치하겠으며 ○'08년도부터는 예산부서와 협조하여 카메라 구입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여 카메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완결
회 계 정보과 [건의사항]	③ 공사대금 지급예고제 확대시행 ○공사대금 지급예고제는 실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더욱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현재 운영실태를 보면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만 시행하고 있는데, 3천만원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도 이 제도가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홍보를 철저히 하기 바람.	○소액공사의 경우 직영인력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으나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2007년부터 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시행토록 하겠음	완결

제4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회 계 정보과 [건의사항]	④ 시군구간 이중화 프로젝트 사업 관련 ○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동사무소의 이중화 프로젝트 사업 관련 현재 한국통신에서 2개선 모두 지중화로 2004년 설치를 완료한 실정임. 그러나 지하로 모두 선로가 구축되어 도로굴착 등 문제 발생 시 안전을 도모할 수 없으므로 한 선로는 지하로 다른 한 선로는 지상으로 하는 것이 이중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정보통신망은 무중단 민원서비스를 위한 안정성이 중요하며 사업자 이원화를 할 시 기존 시스템과 새로운 시스템 간 상호 호환성 및 안정성 미 검정으로 인한 동사무소 온라인 민원업무 전면 중단될 요소 내재하고 있음. 사업자 이중화보다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 구축되어 운영중인 회선 이원화 방식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정적인 시스템이라고 판단됨.	불가
[건의사항]	⑤ 수의계약시 관내업체 계약 확대 ○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총99건으로 이중에 북구관내 사업계약 건수는 9건으로 극히 저조한 실정임. 우리지역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동종의 업종일 경우 우선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소액수의견적입찰을 제외한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1천만원이하의 공사로 대부분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며, 전문건설업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울산전체 894개 등록업체중 북구소재 업체는 35개로 등록업체가 타 구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나 지속적으로 북구업체와 우선	추진중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음 ※ 06.10~07.1.25 : 총 50건 중 14건 북구업체 계약율이 28%임	
지방세과 [시정요구]	① 과오납 환부발생 최소 요구 ○과오납의 경우 대부분이 이중납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과오납의 이중납부 사유는 독촉장과 기존의 고지서 동시 납부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므로 고지서 발송 시 신중한 아이디어로 안내문을 작성하여 납부자가 혼란을 일으켜 이중납부 않도록 하는 등 다양한 홍보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지방세 과오납 환부건수가 작년에 비하여 증가한 것은 국세경정(연말정산 등)에 따른 주민세의 과오납환부가 증가 하였으나,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과오납 환부는 2003년 60건에서 2004년에는 25건으로, 2005은 1건으로 줄임 ○앞으로도 정기분 고지서 지속적인 홍보와 면밀한 과세자료관리 및 정확한 고지로 과오납 발생을 제로화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운영하겠음.	완료
[시정요구]	②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자동차 미검사차량 등은 대부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현재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미흡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은 2007년 주요업무계획으로 년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먼저 1~2월은 2006년 년도 폐쇄기 체납세 일제정리기	완료

제4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한 실정임. 영치활동을 함에 있어 실제 차량이 많이 주차한 곳을 위주로 그리고 야간에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므로 영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해야 할 것임.	간 설정·운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계획을 수립하여 매일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은 야간영치 활동을 병행하고 있음. 영치장소로는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장, 상가 주변 등 차량이 많이 주차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음. 2007년은 강력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여 자동차세 완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음.	완료
지방세과 [건의사항]	① 고액체납자 관리 강화 ○ 고액체납자의 경우 악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하여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음으로 실제 체납자의 재산이라고 밝혀진다면 압류 등의 가능할 것임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노력이 필요함	○ 수시 주소지 방문하여 체납자 재산상태 파악, 징수가능 여부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고, ○ 2006. 11.~2006. 12. 관외거주 고액체납자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실태조사 실시 2007년 2월 관외거주 고액체납자의 주소지 방문실태조사 및 징수독려를 실시할 계획 ○ 연중수시 실태조사, 은닉재산조사 등 실시 재산 발견시는 강력한 체납처분 하겠음.	추진중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민원지적과 [시정요구]	① 장애인을 위한 민원실 운영 민원실 장애인 전용창구 안내판 설치 및 구청 청사 내 무인민원발급기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 부족	【민원실 내 시각장애인 전용창구 개설】 (※붙임 사진 참조) ○민원실 정문에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청사안내판에 기점자안내판이 부착되어 있으며, 기 설치된 점자블럭을 따라 진입하는 곳에 “시각장애인 전용창구”를 개설하여, 시각장애인이 점자안내판을 확인 후 벨을 누르면 직원이 민원응대 및 안내 할 것임 ○무인민원발급기 시각장애인 프로그램설치는 행자부의 방침에 의해 결정될 문제이며, 향후 건의할 것임.	완결
[시정요구]	② 무인민원발급기 활용 제고 이화농협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야간 운영방안 강구	○이화농협에 공문으로 협조 의뢰한 결과, 무인민원발급기의 야간 운영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음 ○이화농협에 무인민원발급기 야간운영 협조 의뢰(민원지적과-14729, 2006.12.08.호 참조) ○'06. 12. 14. 이화농협지소장 결과 365일코너 공간 협소로 야간개방 불가 답변	불가

제4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민원 지적과 [건의사항]	① 도로명 및 새주소 부여 사업 홍보강화 ○이상의 경우 아주 오랫동안 기존 번지 개념으로 주소가 쓰여져 왔으므로 일시에 새 주소 사용하기는 다소 혼란이 예상되므로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시행하여 혼란을 최소화 할 필요성이 있음.	○각 실과 및 행정기관에 도로명 주소의 홍보안내문을 발송하여 공문서에 도로명 주소사용은 물론 민원발송용 우편봉투에도 도로명 주소를 활용 할 것을 협조('07. 1. 17) ○도시 및 주택재개발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관련 기관(부서)에서는 도로명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을 안내('07. 1. 30) ○우리구 전광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누구라도 실시간에 도로명 주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함('07. 1. 15)	추진중
환경 위생과 [시정요구]	① 공사장 주변 소음 및 분진 대책 강구 ○공사장 소음 발생시 주간, 야간 소음측정 수시 실시 및 방진벽 설치지도 철저	○'07년 소음·진동 지도·점검 및 비산먼지 저감대책 세부계획 수립('07.01.24) ○소음측정기 추가구입 : 2월중 ○소음 및 비산먼지 민원신고 접수시 즉시 현장확인 후 소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음측정,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방음벽 설치 등 지도단속 강화 ○2006년 소음민원 처리실적 - 공사장 소음관련 민원 : 130건(현대아이파크 민원 77건, 현대아이파크 소음측정 64건) - 특정공사장 행정처분 : 8회 (현대아이파크 행정처분 4회 : 아침시간대 1, 주간시간대 2, 야간시간대 1) - 현대아이파크공사장 소음관련 환경순찰 : 11회(야간 6회)	추진중
[시정요구]	②먹는물 관리 강화 □ 약수터 관리 미흡 ○무룡산약수터 물탱크 시건 장치 미설치 및 오물산재 ○차일약수터 호스파손 ○심천골약수터 폐쇄조치 미흡 ○아남아파트 옆 폐쇄약수터 무단방치 ○수질검사성적서 교체 미흡	○“물탱크주변 뢰스설치공사” 완료 - 설치장소 : 무룡산, 성내 마을 약수터 ○호스(X-L파이프) 교체완료 ○2006년 11월 29일 약수터 폐쇄작업 및 안내판 설치 완료 ○안내판 노후시트교체 완료 ○교체 완료 ※약수터주변오염원제거 및 환경감시 등을 위해 2007년 1/4분기부터 공공근로인력(남1) 활용 중	완료

제4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환경 위생과 [시정요구]	☐ 마을상수도 관리 미흡 ○시례마을상수도 “불소”초과에 따른 조치미흡 ○마을상수도 관리자 건강검진 미흡 ○마을상수도 관리대장 전산화 필요	○2007년 말까지 마을상수도 폐쇄 계획 : 폐쇄 전까지 시상수도 급수신청완료예정 ○100% 건강검진 실시 완료 ※ 2007년 부터는 “찾아가는 검진” 등 보완계획 ○전산화작업 완료(엑셀)	완료
환경 위생과 [건의사항]	① 학교 앞 유해환경 단속을 위한 제도 개선 ○학교 인근 유해환경 단속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식품 첨가물 관련법 개정 요구	○'06. 12. 14 ~ 15 양일간 학교 앞 문구점, 슈퍼 등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33개소 지도 점검 ○7개소에 대하여 현지 시정 조치(불법게임기 철거) ○법령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 회시 개정요구 건의	추진중
[건의사항]	② 오존관련 ○오존 및 미세먼지 기준초과 시 즉시 구민에게 알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 요구	○오존경보제 발령시 주민 대처 요령 홍보계획 수립('06.12.18) ○홍보 리플렛 2000매 제작 및배부('06.12.27) ○홈페이지 홍보 협조 요청('06.12.22) 북구청홈>생활정보>청소/환경>대기환경>	완료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 배출가스정밀검사 - 오존경보/황사경보 - 자동차공회전 - Free & Call 서비스 ○시 대기보전과에 대기오염 옥외 전광판 설치 건의('07. 1.19)	
주민생활 지원과 [건의사항]	① 자원봉사자 확충 및 효율적 관리방안 강구 -자원봉사자 중 공무원 수는 93명으로 참여자 수가 작으므로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자원봉사자 관리에 있어 자원봉사센터 및 해당과에서 개별로 봉사활동을 가는 것에 대한 현황과악 정도는 되어야 혜택이 골고루 가게 할 수 있을 것임	○2007년도부터 공무원 자원봉사 동아리를 활성화시켜 많은 공무원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대책을 강구토록 하며, 자원봉사센터 및 각 부서별 자원봉사 활동사항을 철저히 파악하여 자원봉사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완결
	② 자원봉사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련 - 내년부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방법을 직영에서 위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위탁보다는 자체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관련조례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대다수 지자체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어 자체 법인설립이 이론상	완결

제4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주민생활 지원과 [건의사항]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회관 수탁자 공고에 있어서도 실제 많은 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서 모집해야 가장 적당한 법인이 선정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으나 인력 및 예산, 설립시일이 많이 소요되어 우리 구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법인설립이 불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함 ○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2006. 12. 1자 위탁운영 공개 모집시에 수탁자의 자격기준을 “신청법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울산으로 설립등기를 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였으나, 2006. 12. 5자 위탁운영 수정공고시 수탁자의 자격기준을” 신청법인 정관사업의 종류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관운영” 과 노인복지법 제31조의 사업이 포함된 법인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서 공고 및 모집하여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탁법인을 선정함	완결
복지서비스 [시정요구]	① 직원들에 대한 성교육 참여율제고 및 홈페이지 관리 철저 직원들의 성교육 참여현황을 보면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한	○ 성희롱예방 집합 교육시 인원필수 요원, 교육, 연가 등	완결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실정임. 좀더 많은 직원들이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홈페이지에 옛날 자료가 수정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시정이 요구됨	부득이 불참한 직원을 대상으로 실과 텔레비전을 통한 비디오교육을 추가 실시하여 참석율을 높이고 성희롱예방 지식습득과 관심을 제고시키고자 함. ○ 2006년 하반기 불참자 비디오교육('07.1.30실시) ○ 홈페이지 자료정비 완료	완결
[시정요구]	②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내실화 장애인작업장은 일반인들과 달리 장애인들이 작업을 하는 장소이므로 바닥의 점자블록을 조속히 보수해야 할 것이며, 안전을 위하여 작업상자를 너무 높게 쌓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함과 아울러 많은 장애인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점자블록 보수 및 작업장내 박스 적재 높이를 2단 이하로 적재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토록 조치 완료	완결
[건의사항]	①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방안 강구 “노인이 살기 좋은 북구” 건설을 위하여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장수수당 지급을 도입하였으나, 지금은 다른	○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한 지급 대상자, 지급금액등 수혜자 확대 방안을 강구하여 '07년 상반기 중 장수수당	추진중

제4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지자체에 비하여 수혜폭이 적으므로, 현행 90세이상의 지급연령을 확대하는 등 수혜자 확대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지급 조례를 개정·시행하고자 함	
문 화 체육과	① 국민체육센터 건립관련 민원해소방안 강구 ○ 당초건립부지가 농소1동에서 농소2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농소1동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어 주민들에 대한 설득 및 인센티브제공이 필요함	○ 농소1동장을 통한 각종회의 시 주민설득 ○ 주민만남의 날('07.1.25)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설득 ○ 구청장 동 순회방문('07.2.1) 시 구청장의 설명	추진중
	② 북구 생활체육협의회 지도 및 감독철저 ○ 생활체육지도자 생체협 사무실에 상근직으로 사무를 보는 것은 옳지 않으며 근무시간도 3시간정도로 규정에 맞지 않아 시정요구함	○ 북구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침 시달('07.01.05)하여 출근부, 근무상황부를 작성토록하여 근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 생활체육지도자 근무시간은 종전 일평균 3시간에서 평균 4시간이상으로 조정하여 현재 4~4.5시간을 근무하고 있음 ○ 사무실에 근무하는 생활체육지도자를 없애고, 현장수업이 없는 지도자를 사무실에 복귀토록하여 사무실 잔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	추진중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문 화 체육과 [시정요구]	③ 청소년체육활동장 관리 철저 ○이용자의 대부분이 일반인이기에 청소년체육활동장의 취지대로 청소년이 우선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일반이용자의 고성방가 등 으로 인한 인근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 해소요구	○청소년활동장 사용을 일반인보다 청소년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접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신청서에 명기하도록 하고, 접수 시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금지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음	추진중
문 화 체육과 [건의사항]	① 운동장 사용료 인상 및 개방 검토 ○현재의 사용료로는 유지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어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용료인상이 요구되고 운동장이 일부동호회의 전유물이 아닌 진정한 지역주민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개방을 건의	○운동장사용료 조례안을 개정 중이며 운동장의 개방문제도 검토중임	추진중
환 경 미화과 [시정요구]	① 불법쓰레기투기 단속카메라 운영방법 개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감시카메라 운영에 있어 카메라를 한 방향으로만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 단속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감시카메라를 통한 불법투기자의인적사항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과태료 부과에 앞서 증거물 확보에 어려움이 많음.	추진중

제4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환경미화과 [시정요구]	수시로 방향을 바꾸어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예방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쓰레기 불법투기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생활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시정 요구함.	○감시카메라를 통해서 투기자를 적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주·야간 경고방송이나 안내방송을 통해 불법투기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수시로 방향을 바꾸는 등 감시카메라의 탄력적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중
[시정요구]	② 효문공단내 장기 방치폐기물 처리 추진 ○효문공단내 합성수지 원단을 가공하여 자동차시트를 제조하던 공장이 오래전 부도처리 되어 약 1만 5천톤 가량의 산업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음. 감사자료에 의하면 완결로 처리하였으나 실제로는 처리되지 않은 사항으로 장기방치에 따른 화재발생 등 2차적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되므로 중앙부처와 협의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 바람	○'06년 4월 토양오염 실태조사 의뢰 •결과:오염결과 기준 미달 통보 ○조치계획 ① '07년 토양오염조사 의뢰 실시 : 시료채취 지점의 복수로 조사의뢰 ② 정기적인 환경순찰 실시 : 장기방치로 인한 화재발생 등 2차 오염에 대한 대책 ③ 중앙부처에 처리비 전액 국비무상 지원 요구 건의 ④ 토지소유자에게 자체 처리토록 권유 조치	추진중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환 경 미화과 [시정요구]	③ 나눔장터 운영방법 개선 ○나눔장터 운영을 평일로 하던 것을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토요일 오후에 개장 ○나눔장터 운영장소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소 선정 운영	○2007년 1분기부터는 학교 수업이 없는 둘째, 넷째 토요일 중 개장하도록 계획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체험 학습의 장 마련과 경제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기회 제공 ○나눔장터 운영장소를 우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선정하여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자발적인 참여와 기부가 될 수 있도록 운영 하겠음	추진중
환 경 미화과 [건의사항]	①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며 그 결과가 6개월 후 나옴.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자원화시설은 가동되므로 냄새 최소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용역결과에 대해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시 주민들에게도 이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임.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5개구군 단체장들이	○지난 '06년 10월 21일부터 반입물량을 1일 15톤으로 줄여 처리하고 있으며, 냄새 저감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냄새 저감을 위한 자체노력도 병행해서 추진 중임 ○학술용역기간 중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현재의 환경과 조건(설계상 허용 처리용량 조건 등)에서 추진되어야 하므로 다소의 간헐적인 악취발생으로 주민불편이 예상된다	

제4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환경 미화과 [건의사항]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광역화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 강구가 요구됨.	○향후 복구 발전과 연계한 음식물처리를 위하여 구청에서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광역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광역화를 건의하였으나 ○광역시의 음식물 처리에 대한 입장으로는 배출자 부담 원칙, 배출지 처리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미준수시 기초단체의 책임처리 의식 결여로 판단하고 있음. 또한 대규모 음식물쓰레기 플랜트 건설은 성공률이 매우 낮고 검증된 설비나 안정된 기술 수준이 열악하여 기초단체별로 소규모시설 설치 운영을 권장하고 있음 ※용역추진 과정에서도 용역내용과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착수보고회 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해를 구했고, 중간·완료 보고회시 관계공무원, 구의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중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도 시 녹지과 [시정요구]	① 소나무 재선충 제거목 및 간벌목 처리 ○ 소나무 재선충 감염 제거목 훈증 처리를 위하여 관내 곳곳에 포장 을 쳐 처리중인데 인근에 농약병 등이 방치되어 미관상 좋지 않고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속히 조치되어야 할 것이며, 제거목 및 간벌목 처리시 등산로 변과 임도 등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곳만 정비할 경우 우수기에 제거되지 않은 제거목으로 인하여 하천이 막혀 장마 등 호우시 하천범람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잘 보이지 않은 계곡의 제거목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임	○ 도로, 등산로, 계곡부 위주로 총4,583개 훈증부산물을 파쇄 조치하였으며 훈증처리용 농약병 및 폐비닐은 별도 수거하여 폐기물 처리하였음	완결
[시정요구]	② 불무천 하천정비구간 안전 조치 강구 ○ 불무천 하천 정비시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난간대 사이가 너무 넓어(폭간25cm) 어린이들이 들랑날랑 할 수 있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 성원쌍떼빌아파트 바로 뒤편 하천 끝부분에는 안전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30m정도) 우수기 빠른 유속으로 인하여	○ 침사지 2개소 안전난간 보강 • 난간 간격(25cm→13cm) • '07.01.17.완료 ○ 안전난간 2개소 추가 설치 • L=30m, H=1.3m • L=4m, H=1.3m • '07.01.04.완료	완결

제4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도 시 녹지과 [건의사항]	상당히 위험한 실정이므로 시일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① 상안어린이공원 조성관련 주민의견 수렴 ○ 상안어린이공원 조성을 위 한 공사 설계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 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상안어린이공원 조성을 위 해 3차에 걸친 주민의견수 령 추진중에 있음. -2006. 10. 30(착수전) -2006. 12. 15(2차) -2007. 2월중 개최예정(3차) ※문화재청 협의 결과에 따라 시기 조정	추진중
경 제 교통과 [시정요구]	① 학교(초등학교)주변 안전 조치 강구 ○ 천곡초등학교 통학로의 포 장마차로 인한 보행 방해, 이화초등학교 인근 미끄럼 방지물 훼손 등 상당한 위 험을 안고 있으므로, 초등학 교 인근 교통시설물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하여 장·단기 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천곡초등학교 인근 포장마 차 단속 협조요청('07. 1. 24, 건설과) ○ 이화초등학교 인근 미끄럼 방지물 보수 예정('07. 3월 중, 건설과) ○ 초등학교 인근 일제조사 결 과 시정 요구되는 교통 시 설물 관련 문제점은 향후 스쿨존 사업계획에 반영토 록 하겠음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② 석유 판매업소 단속 강화 ○석유 판매업소 단속강화 석유판매업소에서 정량 미달이 될 수밖에 없는 말통으로 양을 속여 판매하는 것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 하지 않도록 시정요구함	○비법정 계량단위 및 용기 사용 지도 단속 계획 통보- 주유소 : 30개소 -일반판매소 : 5개소 ○계량기 수리(수시)검정 시 비법정 용기 사용여부 지도단속 추가 실시 -판매업소에 대해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에 의거 고발 조치 ○석유판매업소 시료채취 및 가격표시 단속시 비법정 용기 사용여부 단속 실시 (연중) -관계 규정에 의거 고발등 조치 ○1년2회 비법정 계량단위 용기 (말통) 배달업소 일제단속 실시	추진중
경 제 교통과 [건의사항]	① 교통지도 단속요원(비전임) 계약관련 ○교통지도단속요원 13명을 비전임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올해 12월 말로 13명 전원을 해지하고 2007년 새로이 7명을 모집하는 계획은 재고의 여지가 있음. 13명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실적평가를 통하여 7명을 선발하는 것이	○2007년도 총액인건비 시행에 따른 비전임 계약직 인건비 (101-08) 발생분 총액인건비에 미포함 -총액인건비 산정기준 : 2005년도 결산기준 -비전임계약직 채용 : 2006. 6. 1	

제4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기타직 보수(101-08) 과목이 총인건비 대상 목에는 포함되나, 인건비 산정기준이 2005년 결산기준임에 따라 2006년 6월부터 채용한 주차단속 비전임 계약직의 인건비는 승인된 총액 인건비 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비전임 계약직 채용시 총액인건비 금액이 초과되므로 종합적인 검토후 주차단속요원을 채용할 계획임	추진중
건설과 [시정요구]	① 지하수 개발관련 사후 관리 철저 ○지하수개발과 관련 수질검사 불합격, 물부족 등으로 폐공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 안되어 지하수 오염원이 되고 있는 실정임. 무허가 및 무신고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폐공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동사무소 협조요청 -폐공 후 사후관리 및 무신고 무허가 지하수에 대한 개발·이용 준수사항 홍보 협조 ○시공업체 협조요청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시 신고 및 허가를 득하였는지 확인 후 시공토록 협조 ○현 개발·이용자 -지하수개발·이용신고 및 허가자가 준수할 사항 홍보	완결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② 신명화장실 옆 나무계단 처리방안 강구 ○ 신명화장실 옆 나무계단은 2001년 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2002년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관리 소홀로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어 흉물스러운 실정임. 해안가에 이러한 시설 설치 시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치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방치된 나무계단은 제거, 보수사용 또는 보수하여 다른 적당한 장소에 사용하는 등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06. 12.27 신명화장실 옆 나무계단 철거 완료 - 목재계단 1개소, 철계단 3개소 ※ 소요비용 : 440,000원	완결
건설과 [시정요구]	③ 자전거 전용도로 관리 철저 ○ 실제 자전거를 타고 전용도로를 이용해 보면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많은 실정이며, 특히 자전거 보관대의 관리상태가 전반적으로 불량한 실정임. 실제 거의 이용하지 않는 장소에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고 정작 많이 사용하는 장소에는 보관대가 설치	○ '06.12.11 ~ 12.15 5일간 자전거 보관대 일제 점검 및 파손부분에 대하여 정비(화봉시장사거리 연암동 버스승강장 부근 자전거 보관대 프라스틱벽 철거) ○ 기 설치된 보관대중 이용이 적은 곳은 2007년도 실시예정인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추진중

제4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설과 [시정요구]	되어 있지 않는 경우 등이 있으며, 보관대 유지관리 상태가 대체적으로 불량한 실정이므로 시정 요구함	(3월 예정)시 이설토록 하겠으며, 분기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파손부분은 정비토록 하겠음	불가
[시정요구]	④ 원지삼거리~농소운동장 구간 자전거전용도로 시정요구 ○ 원지삼거리~농소운동장구간 자전거전용도로 폭이 0.8m~1.2m로 기존의 인도는 거의 없어진 상태임. 특히 농번기에는 지역특성상 경운기의 운행도 고려되어 저야하나 가로등으로 인해 운행이 어려워 도로를 이용해야 하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실정임. 따라서 경운기 안전운행에 저해되는 가로등 이설이 요구되며, 미곡처리장 앞 급커브 지점은 아주 위험한 실정임으로 시정이 요구됨	○ 상기구간은 인도를 겸한 자전거도로로 당초의 도로 폭을 그대로 남겨둔 채 노면부분을 활용 개설 되었으며,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겸한 도로로써 만약 가로등을 이설한 경우에도 인도에 경운기가 다닐 수 없다고 여겨짐 ○ 만약 경운기의 주행을 위하여 가로등을 철거하여 자전거도로 가변으로 이설한다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도와 자전거도로사이에 도로경계석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당초처럼 경운기는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가로등 이설은 이중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할 것임	불가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설과 [시정요구]	⑤ 건설공사장 뒷마무리 및 도로굴착 실명제 운영 철저 ○공사완료 후 현장을 보면 제대로 마무리가 안되 공사자재 방치, 철근콘크리트 노출, 청소 등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도로굴착공사 후 굴착된 부분과 기존도로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도로굴착에 대한 실명제 운영에 있어서도 공사명, 공사기간, 시공자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 구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므로 시정 요구함.	○건설공사 현장 뒷마무리 미흡에 대하여 관계기관(상수도 북부사업소, 경동도시가스, 한국전력 등)에 시공철저 및 보수를 지시하였으며, ○'07. 1. 15~1. 19 (5일간)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 재보수할 것을 지시함 ○향후 지속적인 관리로 도로굴착과 관련한 구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겠음	완결
[건의사항]	① 불법노점상 단속 관련 ○쌍용아진APT 2,3단지 사이 목요장터 관련 인근상가. 이용주민, 아파트 전체주민, 2,3단지 사이 주민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하여 행정기관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현재 관망하고 있는 실정임. 전체적인 실태 및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명확한 기준(방침)을 정하여 목요장터를 양성화(도로폐쇄, 차없는	○도로상 노점상행위는 불법으로 당연히 단속이 되어야 하나 쌍용아진APT 2,3단지 사이 노점상행위(이하 “목요장터”)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섞여 있어 해결이 어려운 실정임. ○목요장터를 양성화하는 방안(도로폐쇄, 차 없는 거리	완결

제4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설과 [건의사항]	거리 지정)하든지 아니면 적극적 단속을 펼쳐 목요장터를 폐쇄하던 구의 결단이 필요함.	지정)도 재난시 긴급차량 진출입로 확보 문제로 불가능하며, 강제로 목요장터를 폐쇄할 경우 노점상인들의 강력한 항의와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될 것임 ○쌍용아진APT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들어서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아파트 주변 상가가 형성되고 주민불편이 감소될 경우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됨	추진중
[건의사항]	② 동천 모래채취 시 문제부분 우선정비 ○동천 퇴적모래 채취시 원동현대아파트 인근의 경우 퇴적된 모래로 인하여 하수관 물이 배수되지 않아 하수역류가 우려되므로 공사시 우선정비가 요구됨.	○상반기 우수기전(4월경) 하천 퇴적토 정비를 위하여 장비를 투입하여 하수관 배수원활을 추진할 계획임	추진중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축주택과 [시정요구]	① 방치된 기계식 주차장 처리방안 모색 ○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된 기계식주차장 관리개선 여부를 최근 살펴본 결과 여전히 대부분의 시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출입을 못하게 막아 놓고 있었음. 기계식 주차장 설치 목적은 도심지 주차난 해소가 목적이지만 건물주들이 관리인 문제 등으로 운영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법적 규정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시설이라고 보면 무방할 것임. 따라서 행정에서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를 강요할 수도 없는 실정이므로 도색을 실시하여 1층이라도 개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거나 인근에 공동으로 토지를 임대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상급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제도개선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주차장법 제19조의 13규정에 의거 기계식주차장의 설치후 5년이 경과한 화봉동 650-2번지 “부전금속(주)”외 7개소에 대하여 철거 후 자주식 주차장으로의 전환을 촉구함(2개소는 건축주 면담결과 긍정적인 반응얻음) ○ 건설교통부와 시 교통과에 주차장법 개정건의(건의내용 : 20대 이하의 소규모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지역별 조례로, 제한 할수 있도록 개정 건의함)	추진중

제4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축주택과	② 종합복지회관 부지석재 정비 ○ 보건소 뒤편 종합복지관 부지에 석재가 쌓여져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조속한 정비가 요구됨.	○ 석재업자 및 건축자재업자 방문 및 면담한바, 1월말까지 이전완료 예정임을 확인(입주업체 3개사중1개사 이전완료)	추진중
[건의사항]	① 천곡아남아파트 분양관련 ○ 천곡아남아파트 분양관련 분양회사(우방)가 임대법에 따라 분양을 하여야 함에도 40,000천원에 분양을 하였고 구청은 임대사업자가 분양을 임대법에 분양하도록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데도 관리를 하지 않아 임대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임으로 앞으로 입주민들이 최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청은 분양회사와 입주민 사이의 중재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분양회사가 분양 철회시 입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요구됨.	○ 아남아파트 임대사업자인 (주)C&우방ENC에서는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함에 있어 임대주택법령에 근거하여 가격산정 및 분양전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나, 회사 임의로 4,000만원의 가격으로 아남아파트 임의매매를 강행하였습니다. 북구청에서는 '06.12.4(주)C&우방ENC를 고발조치 하였으며, 이후 법령에 의한 분양전환 절차 이행을 2차례('06.12.18, '06.12.22)에 걸쳐 촉구 하였으며, 2006.12.28 임차인 대표와 (주)C&우방ENC 간 분양가격 4,000만원, 부대시설 교체시공, 희망세대 전체 분양조치 등의 조건으로 최종 분양 합의 하였습니다.	완결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생명 산업과 [시정요구]	① 가축전염병 관리 시정 ○부루셀라병에 감염된 소살 처분 시 장소를 잘못 선정하여 인근 토양 및 물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발생하여 언론의 질타를 받은 사례가 있었음. 살처분 대상지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노력이 필요함.	○매몰장소는 발생농가 소유의 사유지나 자가 소유의 매몰지가 없을시 불가피하게 국공유지를 선정하고 있음. ○살처분 매몰지 선정시 제반 주변 환경 조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다하겠음.	추진중
[시정요구]	② 농·도한마당 축제 개선 ○농·도한마당 축제가 농민과 어민만이 참여한 반쪽짜리 행사가 되었음. 도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며, 날짜를 금요일로 정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없었으며, 개최장소(농소운동장)도 재고해야 할 것임. 전체적으로 볼거리가 작아 참여율이 저조하였음. 이 축제와 관련 추후에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농·도한마당 행사의 지속적인 개최를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도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음. ○1회성 행사에서 탈피하여 소비자들에게 북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코자 각종 행사시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볼거리 개발 등 노하우를 쌓겠음 ○자체평가 실시로 문제점,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보완토록 하겠음	추진중

제4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생 명 산업과 [시정요구]	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활동 강화 ○우리구 관내 67농가에 40,500두의 닭과 오리를 사육하고 있음. 대규모 사육농장의 경우 자체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으나 소규모로 사육하고 있는 곳은 그러지 못하는 형편임으로 가축방제단을 적극 활용하여 방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공동방제단 5개반 11개팀을 편성하여 동별 소규모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소독 방역을 실시하고 있음. ○9~12월까지 8회 소독 방역 실시 하였으며 농가에 소독 약품을 배부하여 자가 방역활동도 병행중임 ○2월말까지 지속적인 방역과 예찰활동을 실시하겠음	추진중
재 난 관리과 [시정요구]	① 방독면 관리 철저 ○유사시에 대비하여 보관중인 방독면의 보관상태 등을 전수 조사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방독면 정비·점검 및 관리실태 점검 【재난관리과-3399('06.12.11)】 -점검일시 : '06.12.14 ~ 12.15 -점검대상 : 전동 -점 검 반 : 민방위 담당외 1명 -점검내용 : 방독면 관리실태 등 점검 ※ 매년 2회(상·하반기) 점검 실시	완결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재난관리과 [건의사항]	① 재해대장 전산화 추진 ○수기로 관리하는 재해대장은 효율적인 관리가 미흡하므로, 전산화하여 대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	○2006년도 재해대장부터 전산화 추진 -수기 재해대장을 한글문서화 작업 완료하여 수시로 복구현황 기재 -재난상황관리정보시스템(http://www.bukgu.ulsan.kr/rescue)상 공공시설 복구현황(공사명, 공사비, 공정율, 시공사 등) 기능 추가하여 D/B화 및 통계 관리 가능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국비 보조 복구사업 추진현황 기재 가능	완결
보건소 [시정요구]	① 방역활동 강화 ○올해의 경우 모기가 10월말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실정임 더위가 늦게까지 지속되고 가뭄이 오래 지속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내년부터는 방역기간을 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모기성충 출입 방지를 위하여 정화조 환풍구 방충망 설치 ○모기유충서식지를 없애기 위하여 정화조유충조사 후 방제 ○취약지역 살충 및 연막소독 실시 등을 실시하였으며, ○예산부족으로 방역사업이 9월말 종료되었으나, 2007년에는 방역 기동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여 년중 방제 실시	추진중

제4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모기성충방제를 위하여 동절기에 집단 서식처 중점관리 (공동주택지하시설물 등) ※전염병예방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1조에 의하여 방역기동반 편성운영	
보건소 [건의사항]	② 보건소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 보건소 장애인화장실의 경우 1, 2, 3층 모두 점등이 되지 않고 있으며, 층별 비상키는 갑작스런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장애인화장실 점등시설 교체 완료 ○ 층별 비상키는 사무실 열쇠보 관함에 보관	완결
보건소 [건의사항]	① 보건소 인력 적재적소 배치 검토 보건소 인력배치 현황을 보면 간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진료담당으로 그리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보건담당을 맡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인력배치로 이는 조직 활성화를 위한 순환배치와는 무관할 것이므로 재고해야 할 것이며, 또한 신규로 임명된 물리치료사의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보건소 [건의사항]	업무분장을 보면 물리치료와 무관한 업무를 하고 있어 본연의 업무인 물리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007년 1월 정기인사 시 적의 배치코자 함.	추진중

제5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1. 감사의 개요

가. 목 적

2007년 자치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예산안 심사 및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나.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다. 감사세부계획

- 감사기간 : 2007. 7. 11 ~ 7. 20(7일간-실제감사기간)
- 감사장소 : 북구의회 소회의실

라. 감사의 주체 : 본회의

- 의 장 : 유 재 건
- 부 의 장 : 윤 임 지
- 의 원 : 전 의 원
- 전문위원 : 박 민 수
- 사무직원 : 장 판 성

제5장 행정사무감사

2. 감사실시기관(부서) 및 출석요구 공무원

감사대상 기 관	감사대상 부 서	출 석 요 구 공 무 원			감사대상 사 무
		직	성 명	전 임 자	
울산광역시 북 구 청		구 청 장	강 석 구		감사요구 자료참고
		부 구 청 장	양 성 진		
	기 획 홍 보 실	기 획 홍 보 실 장	구 일 우		
	총 무 국	총 무 국 장	권 혁 진		
		총 무 과 장	조 계 현		
		회 계 정보 과 장	박 경 규		
		지 방 세 과 장	서 강 수		
		민 원 지 적 과 장	박 삼 점		
		환 경 위 생 과 장	정 순 상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장	박 봉 환		
		주민생활지원과장	송 태 호		
		복지서비스과장	이 차 범		
		문 화 체 육 과 장	김 경 재		
		환 경 미 화 과 장	박 경 수		
	도시경제국	도시경제국장	김 정 성		
		도시녹지과장	김 덕 룡		
		경제교통과장	강 결 수		
		건 설 과 장	이 근 배		
		건축주택과장	박 성 근		
		생명산업과장	주 수 생		
		재난관리과장	신 종 도		
	보 건 소	보 건 소 장	이 병 희		
	의 회 사 무 과	의 회 사 무 과 장	이 상 헌		

제5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감사대상 기 관	감사대상 부 서	출 석 요 구 공 무 원			감사대상 사 무
		직	성 명	전 임 자	
울산광역시 북 구 청	전 동	농 소 1 동 장	이 상 련		감사요구 자료참고
		농 소 2 동 장	홍 장 희		
		농 소 3 동 장	윤 규 태		
		강 동 동 장	김 종 구		
		효 문 동 장	강 수 상		
		송 정 동 장	신 해 진		
		양 정 동 장	오 광 희		
		염 포 동 장	송 지 환		

○ 관계공무원 출석

- 출석일시 : 2007. 7. 11 ~ 7. 20(7일간)
- 출석장소 : 감사장(소회의실)
- 기 타 : 당일 감사대상 부서의 출석공무원은 항상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 출석공무원은 대상사무에 따라 추가 될 수 있음.

제5장 행정사무감사

3. 행정사무감사 일정

구 분 일 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07. 7. 11(수)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증인선서 •국·소·실·과·동장 ○총 무 국 •총 무 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2007. 7. 12(목)	10:00	"	○총 무 국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2007. 7. 13(금)	10:00	* 대상사무현장	* 현장확인	
2007. 7. 14(토)	토요일			
2007. 7. 15(일)	일요일			
2007. 7. 16(월)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주민생활지원국 •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 •환경미화과	
2007. 7. 17(화)	공휴일			
2007. 7. 18(수)	10:00	"	○도시경제국 •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2007. 7. 19(목)	10:00	"	○도시경제국 •건축주택과 •생명산업과 •재난관리과	
2007. 7. 20(금)	10:00	"	○보건소 ○기획홍보실 ○의회사무과	

※ 일시, 장소 및 대상기관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 감사자료 제출요구

○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

계	공통	기획홍보실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경제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344	17	21	66	95	120	22	3

※ 감사당일 제출된 자료와 관련된 원본서류 일체

○ 제출서류

- 행정사무감사자료 : 15부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15부
- 작성요령 : 「별첨 2」 참조
- 감사범위 : 2006. 11. 1~2007. 5. 31

※ 요구자료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감사관련 필요한 별도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작성기준일 : 2007. 5. 31일 현재

○ 제출기한 : 2007. 6. 18한

5.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 감사선언(의장)
- 의장인사
- 증인선서(집행기관)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소개
- 주요업무보고(청취)
 - 개괄적 총괄 보고 : 실·국·소장
 - 세부사항 보고 : 해당 실·과·소장

제5장 행정사무감사

-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서류검증 또는 현지 확인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6. 증인 선서 방식

- 선서장소 : 감사장(소회의실)
- 선서방법
 - 감사 첫날 국·소·실·과장·동장 합동 실시 - 29명
(국장 3명, 소장 1명, 실·과장 17명, 동장 8명)
 - 선서문 낭독 : 총무국장
- 선서문 : 감사 첫날 선서 후 일괄 제출

7. 행정사항

- 감사장 설치 : 장관성외 2명
- 감사지적사항 당일작성 제출 : 감사의원
- 감사지적사항 취합 작성 : 장관성
- 녹음, 녹화 등 회의록 작성 : 허순자외 2명
- 현장확인 활동
 - 준비사항 : 차량, 장비 및 담당공무원 현지안내

8. 2007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현황

소 속		요 구 건 수	비 고
합 계		344	
공 통 사 항		17	
기 획 홍 보 실		21	
총 무 국	소 계	66	
	총 무 과	16	
	회계정보과	13	
	지 방 세 과	11	
	민원지적과	11	
	환경위생과	15	
주민생활지원국	소 계	95	
	주민생활지원과	19	
	복지서비스과	38	
	문화체육과	19	
	환경미화과	19	
도시경제국	소 계	120	
	도시녹지과	20	
	경제교통과	28	
	건 설 과	20	
	건축주택과	19	
	생명산업과	22	
	재난관리과	11	
보 건 소		22	
의 회 사 무 과		3	

제5장 행정사무감사

【 전 부 서 】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울산광역시 북 구 [공통사항]	1. 예산집행현황(일반·특별회계 구분 작성)						
	항 목		예 산 액	집행액	잔액	주 요 집행내역	
	2. 각종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민원명	접수일자	처리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3. 사업비 3,000만원 이상의 사업현황						
	사업명	위 치	사업개요	사업비	진 도	시공사	예산확보시기
	계						
	4.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단체에 대한 일자별 세부집행내역 - 2006. 11. 1~2007. 5. 31(일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포함) ※ 정산서 사본 첨부						
5.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용역종류	용역비	착수일자	완료일자	용역결과	계약자	
6.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 및 반납내역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반납액		반납사유
	국비	시비	국비	시비	국비	시비	
7. 3,000만원이상 도급공사 하자 보수 보증금 관리 현황 및 하자발생 처리내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울산광역시 북 구 [공통사항]	8.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붙임 1) 9.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붙임 1) 10. 인·허가 처리불가 및 반려된 내역(사유) 11.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 12. 2006년 예산 2007년도 이월사업 현황(계속비·명시 · 사고이월) 내역 및 추진현황 13. 공사금액 1억원 이상 설계변경 내용 <table><tr><th>공사명</th><th>변경사유</th><th>공사금액 증 가 액</th><th>설계변경 요 청 자</th><th>설계자</th><th>비 고</th></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14. 시설부대비 및 특별회계에서 지출된 출장여비 지급내역 (지급방법 - 계좌이체 또는 현금지급 명시) 15. 법인카드 발급대장(2006. 11. 1 이후 추가분) 16.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 - 위탁·용역 현황 : (붙임 2) - 위탁·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 : (붙임 3) 17. 주민참여감독 운영현황(공사명, 기간, 공사금액, 감독 인적사항)	공사명	변경사유	공사금액 증 가 액	설계변경 요 청 자	설계자	비 고							
공사명	변경사유	공사금액 증 가 액	설계변경 요 청 자	설계자	비 고									

제5장 행정사무감사

(붙임 1)

☐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 예산과목 :

지급일자	지 출 액	지 출 처	지출목적(내용)	대상인원 전체명단
계				

※ 예산과목(203-01, 203-03) 별지작성

(붙임 2)

☐ 위탁용역 현황(2007년도)

위탁 부서 및 기관	위탁 용역 업무명	수탁 용역 기관	계약 기간	모집 방법	재계약 횟수	총 수탁 기간	입찰 참여 업체수	입찰 예정 가격	수탁 총액 (낙찰가격)	수탁 업체 고용 인원	수탁자 선정 방법과 근거

※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1) 민간위탁과 용역업무를 구분 작성

(2) 모집방법은 일반경쟁, 공개경쟁, 수의계약, 조달청 등으로 분류

(3) 제출서류

- 도급(위수탁, 용역)계약서 및 표준계약서
- 과업지시서 혹은 시방서
- 복구의 입찰시 내정한 전체 용역원가 및 인건비 내역
- 도급체결(낙찰)시 반영된 전체 용역원가 및 인건비 내역

(붙임 3)

□ 위탁·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2007년도)

구분	위탁기관명		위탁 용역 업무 명	수탁용역기관			근로 계약 서	임 금	상 여 금	퇴 직 금	근로 시간	법 정 수 당	법 정 휴 가	사 회 보 험	계 약 기 간	근 속 기 간	재 계 약 방 법
	실국	부서명		업체명	구성	인원 (명)											
본청	기 획 홍보실	기 획 홍보실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총무국	총무과			:												
					:												
					:												
	주민 생활 지원국	주민 생활 지원과															
		...															
...	...																
의 회	구의회																
직속 기관	보건소																
	농소1동																
	...																

(1) 구성 :

- 정규직 : 계약기간 정함없이 상시고용된 자
- 계약직, 임시직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 파견직 : 상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상이한 자

(2) 근로계약서 : 서면 근로계약서 있으면 ○, 없으면 ×

(3) 임금 : 2007. 5월 지급된 임금, 상여금 제외(천원단위)

(4) 상여금 : 연간 지급율(%)

(5) 퇴직금 : 퇴직금 지급지급대상 ○, 지급대상이 아니면 ×로 표기

(6) 근로시간 : 2007. 5월 실근로시간

(7) 법정수당 :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으면 ○, 지급하지 않았으면 ×
(단, 사유가 없어 미지급하였으나, 사유발생시 지급할 것이라면 ○로 표기)(8) 법정휴가 : 주휴, 연차유급휴가 등 법정휴가 부여하였으면 ○, 미부여하였으면 ×
(단 부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미부여하였으나, 충족될 경우 부여할 것이라면 ○)(9) 사회보험 : 산재보험 1, 고용보험 2, 국민연금 3, 건강보험 4로 하여 적용되는 것의 번호를
모두 기재 (예 : 1, 3 / 1, 2, 3, 4)

(10) 계약기간 : 계약기간이 없으면 무기, 계약기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입

(10) 근속기간 : 평균근속기간

(11) 재계약방법 : 자동갱신 1, 재선발(공개채용) 2, 재계약 안됨 3

(12) 제출서류 : 업무별 임금대장(월급명세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무편성표

기획홍보실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기획홍보실	1.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 실적 2. 구청장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 3. 2007년 주요사업 투·융자 사업 심사내역 4. 주민참여예산제 2007년 당초예산 반영내역 5. 예산 전·이용 현황 및 사유(전부서 취합) 6. 행정심판 및 소송(행정, 민사)수행사항 (일시, 사건내용, 담당부서, 진행상황 등) 7. 승소사례금 지급내역(건수 및 금액) 8. 자체감사, 시, 행자부, 감사원 등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일상감사 포함) 9. 동 종합감사 실시 결과 및 조치내역 (동명, 감사기간, 지적사항, 조치사항, 징계처분사항, 모범사례) 10. 구정홍보 관련 업무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11. 구정소식지(전자신문 등) 발간 및 배부내역 12. 주민편의시설 기동감찰 실시결과 13.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제 및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실적 14. 기자실 브리핑 및 기자회견 자료 15. 구정조정위원회 '07년 회의록 16.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관련 상급단체 결과 보고 내용 일체 17. 참여예산시민위원회 분과별 회의록 및 순위, 조정위원회 회의록 및 조정결과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기획홍보실	18.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교육청 및 각 학교별 요구사항 및 관련 공문																										
	19. 특별감사의 목적, 감사내용, 감사기간 및 결과 조치사항																										
	20. 구민감시관 운영 현황(공사명, 기간, 공사금액, 감시관 인적사항)																										
	21. 위원회 현황 관련																										
	① 설치근거별 현황																										
	- 법령, 조례/ 비상설, 의결적, 행정내부, 기금관련으로 세분																										
	② 성격별 현황																										
	- 심의, 의결, 자문, 협의로 구분, 위원회 개수 및 위원회명																										
	③ 위원 구성현황(공무원, 민간위원-시민사회단체추천 별도)																										
	<table><tr><td>구 분</td><td>여성위원 (비율)</td><td>공무원</td><td>구의원</td><td>민간위원</td><td>시민단체추천 (비율)</td></tr><tr><td>총 계</td><td></td><td></td><td></td><td></td><td></td></tr><tr><td>위원회</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구 분	여성위원 (비율)	공무원	구의원	민간위원	시민단체추천 (비율)	총 계						위원회								
구 분	여성위원 (비율)	공무원	구의원	민간위원	시민단체추천 (비율)																						
총 계																											
위원회																											
④ 위원장 현황																											
<table><tr><td>구 분</td><td>구청장</td><td>부구청장</td><td>실국장</td><td>지역주민</td><td>시민단체</td></tr><tr><td>총 계</td><td></td><td></td><td></td><td></td><td></td></tr><tr><td>위원회</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구 분	구청장	부구청장	실국장	지역주민	시민단체	총 계						위원회										
구 분	구청장	부구청장	실국장	지역주민	시민단체																						
총 계																											
위원회																											
⑤ 각 위원회별 기본 현황 및 운영 실적																											
<table><tr><th rowspan="2">위원 회명</th><th rowspan="2">설치 근거</th><th rowspan="2">설치 목적</th><th rowspan="2">설치 일</th><th colspan="3">위원구성(여성)</th><th rowspan="2">임 기</th><th rowspan="2">위원 장</th><th rowspan="2">주관 부서</th></tr><tr><th>당연 직</th><th>민간 위원</th><th>시민단 체추천</th></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위원 회명	설치 근거	설치 목적	설치 일	위원구성(여성)			임 기	위원 장	주관 부서	당연 직	민간 위원	시민단 체추천										
위원 회명	설치 근거	설치 목적	설치 일	위원구성(여성)					임 기	위원 장	주관 부서																
				당연 직	민간 위원	시민단 체추천																					
⑥ 위원회별 위원명단(성명, 위원회내 직위, 직업, 남녀, 연령 등)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기획홍보실	⑦ 위원회, 협의회, 운영위원회, 자치위원회, 실무협의회 등 위원회 변동사항(별도 표기)																																												
	- 위원회별 직위, 남녀 등 변동사항																																												
	- 기존위원회 위원의 변동시 여성위원으로 위촉현황																																												
	- 신설위원회 위원 여성위원 위촉 현황																																												
	⑧ 위원회 개최 실적																																												
	- 위원회명, 회의주기, 개최실적(참여인원), 회의록, 주관부서																																												
	⑨ 각 위원회 위원 전체 출석율 및 개별 위원 출석율																																												
	- 위원회명, 위원성명, 직업, 성별, 최초임명일자, 출석율																																												
	⑩ 각 위원회별 회의참석 수당 및 집행실적																																												
	<table><tr><td>구분</td><td>국</td><td>과</td><td>위원회</td><td colspan="4">집 행 내 역</td></tr><tr><td rowspan="2">일반 회계</td><td>총무국</td><td>총무과</td><td>00위원회</td><td>예산액</td><td>인원</td><td>회수</td><td>집행실적</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 rowspan="2">특별 회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구분	국	과	위원회	집 행 내 역				일반 회계	총무국	총무과	00위원회	예산액	인원	회수	집행실적								특별 회계													
구분	국	과	위원회	집 행 내 역																																									
일반 회계	총무국	총무과	00위원회	예산액	인원	회수	집행실적																																						
특별 회계																																													

총 무 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총 무 과	1. 인력운용 관련					
	- 전체 인력현황 : 서식 - (붙임 1)					
	- 기관별 인력현황 : 서식 - (붙임 2)					
	- 기타 인력현황 : 서식 - (붙임 3)					
	- 상근인력, 일시사역인부 근로조건 - (붙임 4)					
	2.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					
	[(연수 및 출장) 목적, 부서명, 연수기간, 경비 등]					
	3. 민간인, 공무원, 유공자 표창 수여 현황					
	4. 성과별 연가, 특별휴가, 관외출장, 교육 등 월별 사용 인원 및 사용일수					
	성과명	월별	정원	사용인원	사용일수	비고
※ 성과별, 구분별(연가, 특별휴가 등) 별지작성						
※ 교육현황은 기간, 과정명, 장소 등						
5. 일용인임(일시사역인부임 포함) 현황 - 전부서 취합						
부서명	성 명	사역목적	사역기간	단가(원)	비 고	
6. 공문서 수·발신 목록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총 무 과	7.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동별 취합) 8. 동별 예산 집행현황(동별 취합) 9.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용자금 회수 실적 10.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신설 또는 변동된 프로그램 비고란 별도표기- 동별 취합) 11. 2006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 종합평가 결과 12.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13.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동별) 14. 온라인 고객만족도 조사/시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조사문항, 조사대상, 결과 15.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 설문조사 관련 조사문항, 목적, 조사방법, 결과 16. 전년도대비 상근/비상근 일용직 증원현황 (부서, 업무, 비용, 사유)	

(붙임 1)

□ 전체 인력 현황 (2007년 5월 31기준)

구분	지방공무원인력									기타 인력				
	정 무 직	일 반 직	기 능 직	연 구 직	지 도 직	별 정 직	기 능 직	소 방 직	기 타	상근인력				일시 사역 인부
										단순 노무원	도로 보수원	환경 미화원	청원 경찰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전 동														
:														

※ 위 표의 각 항목마다 현원을 기입하고 만약 정원과 현원이 다를 경우에는 (괄호)안에 정원을 표기

(붙임 2)

□ 기관별 인력 현황(2007. 5 31기준)

구분	기관명		지방공무원인력											
	실국	부서명	정무직	일반직	기능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계약직	소방직	기타			
본 청		계												
	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												
	총무국	총무과												
		회계정보과												
		:												
		:												
	주민생활 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												
		:												
	도시경제국	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												
		:												
의 회	의 회													
보건소	보 건 소													
동	농 소 1 동													
	:													
	:													

제5장 행정사무감사

(붙임 3)

□ 기타인력 규모(2007. 5. 31기준 단, 일시사역의 경우 연인원을 표기)

구분	기관명			기타 인력															
	실국	부서명	업무	상근인력				일시사역인부											
				단순 노무원	도로 보수원	환경 미화원	청원 경찰	30일 이하		60일 이하		90일 이하		180일 이하		240일 이하			
								현재	연인원	현재	연인원	현재	연인원	현재	연인원	현재	연인원		
본 청	기획홍보실																		
	총무국	총무과	:																
			:																
			:																
		회계 정보과																	
		:																	
:	:																		
의 회	의 회																		
직속 기관	보건소																		
	농소1동																		
	:																		

※ 업무란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인원을 기입

제5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붙임 4)

□ 상근인력, 일시사역인부 근로조건(2006. 6. 1~2007. 5. 31)

구분	기관명			구분	서면 근로 계약 서	임금(천원)		상여금 (천원)	퇴직 금	법정 수당	법정 휴가	사회 보험	경조사 휴가	재계약 방법
	실국	부서명	업무			총액	단가							
본청	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	상근인력	단순노무										
				도로보수										
				환경미화										
				청원경찰										
			일시사역	30미만										
				60미만										
				90미만										
				180미만										
				240미만										
			상근인력											
			일시사역											
	총무국	총무과	상근인력	단순노무										
				도로보수										
				환경미화										
				청원경찰										
			일시사역	30미만										
				60미만										
				90미만										
				180미만										
				240미만										
			상근인력											
			일시사역											
		:	:											
		:	:											
		:	:											
의회	구의회	:	:											
직속 기관	보건소	:	:											
	농소1동	:	:											
	:	:	:											

제5장 행정사무감사

※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 (1) 구분 : 직종별 분류
- (2) 근로계약서 : 서면 근로계약서 있으면 ○, 없으면 ×
- (3) 임금 1
 - 총액임금 : 2006. 6. 1~2007. 5. 31 까지 지급된 임금(천원단위)
 - 단가 : 업무별 책정 단가
- (4) 상여금 : 2006. 6. 1~2007. 5. 31 까지 지급된 상여금 총액(천원단위)
- (5) 퇴직금 : 퇴직금 지급대상이면 ○, 지급대상이 아니면 ×로 표기
- (6) 법정수당 :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으면 ○, 지급하지 않았으면 × (단, 사유가 없어 미지급하였으나, 사유발생시 지급할 것이라면 ○로 표기)
- (7) 법정휴가 : 주휴, 연차유급휴가 등 법정휴가 부여하였으면 ○, 미부여하였으면 × (단 부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미부여하였으나, 충족될 경우 부여할 것이라면 ○)
- (8) 사회보험 : 산재보험 1, 고용보험 2, 국민연금 3, 건강보험 4 로 하여 적용되는 것의 번호를 모두 기재(예 : 1,3 / 1, 2, 3, 4)
- (9) 교육훈련 : 교육훈련을 받았을 경우 ○, 받지 않았을 경우 ×
- (10) 경조사휴가 : 상근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 있으면 ○, 없으면 ×
- (11) 재계약방법 : 자동갱신 1, 재선발(공개채용) 2, 재계약 안됨 3
- (12) 업무란은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인원을 기입
- (13) 상근인력에 대한 제출서류**
 - 상근인력관리대장,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무편성표 각 1부
- (14)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제출서류**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무편성표, 인부사역부 각 1부

총 무 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회계정보과	1. 각종 공사·물품구입 계약현황 (공사 3,000만원이상, 물품·용역 500만원 이상)							
	부서명	일자	건명	사업량 (수량)	예정가	낙찰가	낙찰율	낙찰자
	2.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전부서 취합) - 차량번호, 종류, 용도, 구입연월일, 상태							
	3. 각종 공사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현황							
	4. 공사 지체상금 징수 현황							
	5. 계약위반업체 행정조치 현황							
	6. 공유재산 대부, 임대, 매각, 임대료 체납 등 관리현황							
	7. 공유 재산현황(구소유 - 토지, 건물)							
	품명	구입(취득)일	구입(취득)방법	구입(취득)가격	구입(취득)목적	비고		
	8. 대회의실 월별 사용료수입/횟수 현황(사용자 표기)							
	9. 전산·통신장비 유지보수비 사용내역							
10. 관급공사 계약현황 (발주부서명, 계약일자, 방법, 공사명, 공사개요, 설계금액, 계약금액,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계약금액 500만원이상								
11. 수의계약 현황 - 부서명, 일자, 공사명, 설계금액, 계약금액,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12.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13. 계약심사제 실시 전·후 비교현황 및 효과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지방세과	1.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세목별) 2. 고액 체납자 및 체납처분 현황 (1백만원 이상, 압류, 독촉사항 등) 3.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현황과 환급내역 (건수, 금액, 사유 : 10만원 이상) 4. 지방세 부과징수 이의신청(민원)내용 및 처리현황 5. 세무조사 현황 및 결과, 실적 6. 지방세,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 (시효소멸제외 건당 10만원 이상) 7.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황 8. 비과세 감면, 면세, 세액감면 현황 9. 체납세 징수 활동 주요 실적 10. '07년 세외수입의 잡수입 중 변상금,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상세내역 11. 지방세 기업지원 전담창구 운영 실적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민원지적과	1.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정현황(과년도 대비) 2.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 실적 및 향후계획 3. 민원 1회방문처리제 추진실적 4. 토지거래 계약허가제 운영 및 사후관리 현황 5. 재택전자민원 (G4C)신청 및 처리실적 6.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및 발급건수(월별) (설치일자, 발급종류 등) 7.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추진 현황 및 실적 8.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따른 부과·징수 현황 9. 공부 불일치 필지 전수조사 결과 10. 진장유통단지 자동차관리사업등록 심의 관련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 11.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결과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환경위생과	1. 위생접객업소 위생검사 단속실적 및 불법 영업업소 단속실적 2. 환경감시요원 단속실적 및 각종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3.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대기, 수질) - 배출업소 현황 - 점검결과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4. 공중화장실 및 간이 화장실 관리현황(개소수) (근린공원, 정자해변 등) 5.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처분사항 6. 관내 숙박시설 관리현황<table><tr><th>업 소</th><th>위 치</th><th>건축허가일</th><th>객실수</th><th>위반현황</th></tr><tr><td></td><td></td><td></td><td></td><td></td></tr></table> 7.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비 집행 내역 8.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내역(자동차, 시설물) 9. 게임장 현황 (성인게임장, 청소년게임장, PC방 구분, 폐쇄현황 포함) 10. 게임장 단속실적 및 처리현황 11.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검사 관련 대장 12.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개·보수 현황 (공사일자, 공사내역, 공사금액, 업체명 등) 13. 학교앞 유해환경 지도 점검 - 점검결과, 조치내역 및 건수, 처리결과 - 향후 학교 앞 유해환경 지도점검 계획 14.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현황 및 실적 15. 1사 1하천 참여단체 활동 현황	업 소	위 치	건축허가일	객실수	위반현황						
업 소	위 치	건축허가일	객실수	위반현황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주민생활 지 원 과	1.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운영현황 2.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 3.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운영 실태 4. 자활후견기관 사업추진현황 및 실적 - 2007년도 사업계획, 예산지원현황 - 2007. 5. 31현재 사업실적 - 총수익금 - 수익금 집행내역 5. 고용촉진훈련 추진 내역(예산집행내역 포함) 6.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7.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현황 8.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추진내역 및 실적, 예산 및 결산 현황 9. 자원봉사센터 월별 예산 및 결산현황, 사업내역 및 실적, 자원봉사자 관리 현황 10.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아동놀이시설 신청과정과 내용, 사업비 반환 이유, 구청과 복지관의 업무협의 과정에 서 발생한 상호간의 문제,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요인, 향후계획 11. 복지사업의 현황, 예산, 사업계획, 홍보, 대상 및 실적 12.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및 2007년 시행계획 13. 사회복지 정책 평가내용 및 결과 14. 자활후견기관 1/4분기 집행결과 정산내역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주민생활 지 원 과	15. 사회복지 상담실 운영현황(동별 취합) - 예산 집행 내역 - 민원접수 현황 - 사회복지 상담내용(내용별 분류), 상담 인원수, 상담수(월별), 처리상황 및 조치결과 16. 종합사회복지관 2006년 운영실적 평가결과 및 평가회의 자료 일체 17. 자원봉사센터 2006년 운영실적 평가결과 및 평가회의 자료일체 18. 직업소개소 등록현황 및 점검현황 19. 자활후견기관 각 사업현황 및 인원현황(근무기간 명기), 각 적립금 현황, 예산 및 결산 현황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복지서비스과	1.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현황 - 시설현황, 시설별 이용자수(상주인원과 비상주하여 이용하는 인원수 구분 표시), 미이용자수 현황 2. 아동, 노인, 여성복지 지원사업 현황 3. 경로당 및 북구 노인회 지원 현황(실적) 4.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현황(판매실적 등) 5. 가정의 달 행사 개최 내용 및 실적 6.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지도점검 및 조치 내용 포함) 7.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현황 8. 장애인 차량 식별표지 스티커제작 및 발급현황 - 부정 부착 적발현황 및 조치내역 9. 노인복지기금 운영실태 10. 태연재활원·메아리복지원 운영현황 - 2007년도 사업계획, 예산 지원현황 - 2007년도 현재까지 사업실적 - 총수익금(후원금 포함) - 재단출연금 현황 - 기부금 영수증 발급현황 - 재학생 입학 및 대기자 현황 11. 장수수당 지급현황(동별/월별/인원 등) 12. 2007년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지원 현황 및 내역 - 장애아 아동수, 전담보육시설이용수, 미이용아동수 및 그 사유 - 민원 및 문제점, 만족도 13. 노인복지회관 2006년 운영실적 평가결과 및 평가회의 자료일체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복지서비스과	14. 노인복지회관 사업추진내역 및 실적, 예산 및 결산 현황 15. 보육시설 지도점검 내용 및 결과 16.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내용 및 결과 17. 사회복지법인 운영 및 보조금 관리실태 감사결과 및 조치내역 18. 2006년 북구여성주간사업 내용, 평가결과, 일자별 세부 지출 내역 및 정산서 19.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 추진계획, 접수현황, 사업진행 내용 및 현재까지의 결과 20. 2007년 여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내용 21. 천곡경로당 확장공사 현황 및 결과, 일자별 세부지출 내역 및 정산서 22. 가정·성폭력상담소 지도점검 결과 23. 장애인 사회체험활동 사업내용, 평가결과, 일자별 세부 지출내역 및 정산서 24.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25. 한부모가족캠프 사업내용, 평가결과, 일자별 세부지출 내역 및 정산서 26. 양성평등여성학교 사업내용, 평가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27. 장애인복지증진대회 사업내용, 평가결과, 일자별 세부 지출내역 및 정산서 28. 성희롱예방 및 양성평등교육(2006 하반기, 2007상반기) 내용 및 참가자 현황 29. 정림은하수 노인정 개·보수공사 사업내용,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복지서비스과	30. 지자체 보육관련 특수시책사업 현황과 예산, 추진실적 31. 2007년도 여성정책 기본시책 - 예산사업내역, 추진결과, 집행내역, 미추진사업내역 32. 2007년도 보육서비스의 실태와 보육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계획 -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수, 나이별 수 -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부모 직업별 현황 -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현황과 아동수 - 장애아 보육 확대를 위한 계획 - 야간근무를 하는 부모를 위한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현황과 확대 계획 -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등 응급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한 보육도우미 사업단 운영계획 33. 노인복지관련 ① 동별 노인의 달 행사 현황 - 예산, 집행내역, 정산서, 영수증, 참가가수, 행사주체 ② 노령화사회에 대비한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34. 보육시설 관련 - 보육시설 관리를 위해 관련 지역협의체구성, 지역현실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각종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는 계획 35.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현황(대상, 금액, 내용 포함) 36. 경로당 기능 활성화사업 현황(대상, 금액, 내용 포함) 37. 종합사회복지관 및 북구청 어르신일자리사업 추진현황 (건별 예산 및 추진실적, 참여인원 등) 38.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 추진실적 및 인원현황(도우미 및 대상자 현황)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문화체육과	- 주민자치대학 운영 실적 - 일시, 참여인원, 강사, 주제 등 - 예산집행내역(강사수당 등 포함) - 강사 경력 - 생활체육시설 신규설치 및 보수현황 - 체육시설업 등록 및 지도단속 현황 - 청소년 관련 단속 실적(과태료 부과 등) - 각종 체육관련 행사 개최 및 지원현황 (행사명, 일시, 예산, 내용, 주관) - 문화예술회관 운영 현황 (문화교실, 공연 등 계획 및 실적) - 문화예술회관 월별 대관료 징수실적 - 문화재 지정현황 및 정비실적 - 권역별 도서관 운영 현황 및 실적 (예산, 하루평균 이용자수, 연령대별) - 공공도서관 건립 현황 - 권역별 도서관 및 공공도서실 도서구입 현황 (예산포함) - 공공도서실 운영 현황 - 예산, 운영주체, 하루 평균 이용자수 - 사업현황 -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 위원현황, 위원위촉 등의 개정 계획 - 운영실적 및 계획	

제5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문화체육과	14. 축제 및 문화행사 (예산, 집행내역,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15. 2006년 어린이체능교실 운영 관련 사업내용, 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16. 2006년도 구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 내용 및 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17. 쇄부리문화축제 사업내용, 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향후 사업운영 계획(자체 축제준비 여부 등) 18. 2007년 정월대보름행사 추진실적, 일자별 세부지출 내역 및 정산서 19. 공공도서관(농소 1, 3동 및 기적의도서관) 운영계획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환경미화과	- 폐기물 수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현황 - 청소대행업체 계약현황(음식물 포함) - 청소구역 및 투입인원(구청지역 포함) - 위탁업체 미화원 현황(구청포함) -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포상금 지급실적 현황 ※ 불법투기감시카메라 설치현황 및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내역 등) - 별도작성 - 환경미화원 정·현원(2007) 및 담당구역현황 - 병·의원 적출물 배출업소 지도 점검내용 - 분리수거 추진실태 - 재활용교환판매장 현황 및 운영실태 - 매출실적 - 예산지원 현황 - 이용자수 -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 관련 - 사용료 월별 징수 내역, 처리물량 - 민원접수현황(자원화시설 접수민원과 과에서 접수한 민원을 분리하여 월별로 작성)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내역 등 - 쓰레기 불법투기감시단 운영실적 - 재활용 홍보관 운영 실적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환경미화과	12. 폐기물 처리현황 및 표본(2개정도)업체의 폐기물 처리 대장 13. 음식물쓰레기수거통 제작예산, 제작수, 지정동 등 14. 환경단속반 운영 현황 및 실적 15. 폐기물배출업소 지도점검 내용 및 조치현황 16. 클린환경 나눔장터 사업계획, 사업내용, 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17. 2007년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내역, 판매내역, 판매소 지도점검 결과 18. 2007년 청소체계 개선에 따른 민원발생 내용, 조치결과, 현재까지 평가내용 19.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 이전과 이후 비교 현황, 사업내용, 예산,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도시경제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도시녹지과	1.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사업 공사현황(발주내역 포함)					
	사업명	위 치	공사규모	사업비	업체명	추진상황 (진도)
	2.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점검결과 및 조치현황					
	3. 도시계획사업 추진현황					
	4. 도시계획수립후 장기 미집행 소방도로, 공원 추진 계획 및 대책					
	5. 산림훼손 지도단속 현황					
	6. 임도 개·보수 현황 및 계약업체 내역					
	7. 공원시설물 보수 정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8. 산림병해충 방제 현황 및 실적					
	9. '07년 세출예산 정리부					
	10. 도로변 꽃길 및 화단조성 실적 (시기, 장소, 품종, 소요예산, 주관단체 등)					
	11. 공원조성 현황(장소, 시설현황, 개·보수내역, 관리대장)					
	12.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3. 각종 공사 현황(계약 및 완료 포함)					
	14.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요구 현황					
	15. 등산로 정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16. 도시벽면녹화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17. 2007년 가로수식재,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현황					
	18. 양정동 송전탑 복구공사 관련자료 일체					
	19. 무룡산 공원화사업 추진계획					
	20. 2007년 녹지작업단 운영현황 및 실적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경제교통과	1.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 점검 현황(행정처분 내역)											
	2. 가스판매업소 점검 현황(행정처분 내역)											
	3. 가격표시제 및 부정경쟁행위 지도단속 및 처리결과											
	4. 가스관련 허가, 신고 접수처리 현황											
	5. 달천농공단지내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실적											
	6.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현황											
	7. 솔라(Sola)프로젝트 사업 추진실적(에너지절감 효과 등)											
	8. 노동자 지원관련 사업 및 행사추진 실적											
	9.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항 및 실적											
	10. 자동차 관련 과태료부과 및 징수실적											
	- 현·과년도 구분작성											
	- 주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등											
	11.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자 조치사항 (부과대상 시설물 현황 등)											
	12. 공영주차장 관리현황 및 운영실태											
	13. 화물차 차고지 현황 및 단속현황											
	<table><tr><td>사 업 주</td><td>차 고 지</td><td>허가대수</td><td>단속 및 조치내용</td></tr><tr><td></td><td></td><td></td><td></td></tr></table>				사 업 주	차 고 지	허가대수	단속 및 조치내용				
	사 업 주	차 고 지	허가대수	단속 및 조치내용								
14. 주·정차위반차량 견인 실적 및 문제점 등												
15.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현황 및 실적												
16. 공인노무사 업무실적, 민원접수현황 및 조치사항 등												
17. 주정차단속 실적(이동식 불법주차단속차량 단속실적 별도 표기)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경제교통과	18. 달천농공단지 운영실태(매출, 고용현황, 가동여부 등) 19. 여성기업인 및 중소기업지원 상담실 설치운영 실적 20.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보고서 21. 공장등록현황 및 취소현황 22. 경제살리기 선도업소 실태조사 내역 23. 지역 대규모점포와 재래시장과의 협력사업 추진실적 (시장특별법시행령 제10조 참조) 24.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25. 각종 공사 현황(계약 및 완료 포함) 26. 노사정구민협의회 현황 및 추진실적 27. 여성기업인 상담내역 및 조치결과 28. 국제교류 추진 현황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건 설 과	1. 하천 점 사용료 부과 및 납부현황, 무단사용자 조치내역			
	2. 도로굴착허가 및 조치내역			
	3. 긴급도로 복구공사 현황 (도로명, 위치, 복구내용, 공사기간, 사업비 등)			
	4. 도로 점 사용료 부과, 징수내역			
	5. 가로등·보안등 용역업체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민원접수일자	내 용	완료일자	비 고
	6. 가로등, 보안등 관련 주민불편사항 신고내역 및 조치사항			
	7. 제방 응급복구 공사 내역			
	8. 불법노점상 단속 실적 및 조치상황, 향후 대책			
	9. 전문건설업등록 및 관리현황			
	10.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추진현황(개설구간/부대시설 포함) (예산 투입액-2007년, 향후예산투입예상액등)			
	11. 우·오수관로 뚜껑교체 정비현황			
	12. 소방도로 개설 현황 (위치, 사업개요, 사업비, 문제점 및 대책)			
	13. 하수도 정비 실적(하수도 준설, 보수, 맨홀 교체·수리 등)			
	14. '07년 세출예산 정리부			
	15. 교량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현황			
	16. 도시시설 지장물 철거현황 및 소요예산			
	17.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8. 각종 공사 현황(계약 및 완료 포함)			
	19. 기존 정화조시설 현황과 오수관로 연결시설 현황 (오수관로 연결아파트 현황과 비교)			
20. 오수관로 계획현황 및 추진실적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건축주택과	1. 무허가건물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 2. 건축허가 미준공 건물 및 방치된 건축물 내역 및 대책 3. 공유수면, 하천부지, 국·공유지상의 건축허가 현황 4. 관내숙박업 허가관련 허가사항 및 관리 현황 5. 건축허가 취소내역(취소 및 반려) - 건별 6. 준공검사 후 불법 확장공사 단속 및 조치 현황 7.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 8. 주요투자사업(공사) 추진현황 9.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사항 및 조치내역 (과태료 부과 등) 10. 임대아파트 현황 및 향후 분양일정 11.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2. 각종 공사 현황(계약 및 완료 포함) 13.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회의내역 (일시, 참가자, 내용, 회의결과 등) 14.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15. 현수막 지정게시판 및 벽보 지정게시판 위탁현황 16.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실시 현황 17. 건축허가관련 민원발생내역 및 조치현황 18. 평창리비에르아파트 관련 행정지원팀 지원현황 및 대책 19. 공공임대아파트 관리내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생명산업과	1. 농어촌 육성기금 운영실적 2. 농업인(농업관련단체)보조금 지원 및 자부담 내역 3. 쌀소득 보전직불제 보조금 집행내역 4. 농업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내역 5. 농축산물 불법유통(원산지표시 등) 단속실적 6. 수산물 관련 인허가 현황 7. 불법어업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8.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현황 및 사용료 부과징수 내역 9.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 내역 및 대책 10. 대체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11. 농지 무단전용 현황 및 처리결과 12.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13. 호접란 해외수출진단단지 수출실적 및 향후계획 14. 수산종묘 방류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15.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6. 각종 공사 현황(계약 및 완료 포함) 17. 1아파트 1자연마을 자매결연 추진현황 및 후속사업 현황 18. 강동수산물축제 평가서 및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19. 농정심의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결과 20. 농사용 폐비닐 수거실적 및 새비닐 교환 실적 21. 2006년 농·도한마당축제 평가서 및 일자별 세부지출 내역 및 정산서 22. 가을꽃, 봄꽃 전시회 사업계획, 주요내용,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재난관리과	1. 재해위험시설 지정내역 및 관리현황 2. 재해대책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3. 민방위교육 실시 현황 - 일시, 참여인원, 교육내용, 강사 - 민방위 교육불참자 처리 현황 4. 공익근무요원 복무 및 관리 현황 - 부서별 근무현황(인원, 복무목적 등) - 공익근무요원 징계현황(복무연장 등) 5. 재난 중점관리 대상물 현황 및 관리 실태 6. 수해피해 내용 및 복구 현황 (피해내용, 피해금액, 복구비용, 복구현황, 시공사 - 건별작성) ※ 전실·과·소·동 취합 제출 7. 재해대장 사본 8.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9. 각종 공사 현황(계약 및 완료 포함) 10. 안전관리위원회 위원현황 및 활동실적 11. 장마철 풍수해 대비 사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보 건 소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보 건 소	1. 수질검사 검사건수 및 결과 2. 방역, 소독 대행업자 지정사항 3. 진료비조정 및 징수현황 4. 주요약품 구입내역 및 관리현황 5. 의료장비 구입 및 관리 실태 6. 예방접종(정기 및 임신) 유형별 약품구입 및 접종 실적 7.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 및 보상내역 8. 방역장비 현황 및 방역실적 및 대책 9.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10. 특수학교 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 11. 결핵예방접종에 관한사항 12. 체력진단실 및 체력단련실 운영현황 및 실적 13. 비만·당뇨 예방대책 및 실적(효과) 14. 모스키토-존 효용성 및 경영수익실적, 업체계약서, 홍보비용 15. 출산장려사업 추진실적 16. 암치료비 지원 실적 17. 장애아 재활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실적 18. 방문보건사업 기초조사결과, 대상자선정, 실적, 만족도 조사결과 19. 요리교실 운영실적 및 비만클리닉 참가자 중 참여실적 20. 산모 신생아도우미 사업계획, 실적, 지원대상자 21. 전염병별 예방접종 실적(보건소, 병원, 의원), 접종률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보 건 소	22. 보건소(보건지소 포함) ① 보건의료 예산 및 집행내역 (사업별 세부예산 및 집행내역) ②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 대비 현재 근무인력 현황 - 의사, 간호사 등 직무별 정원대비 현원 기재, 과부족 사유 제출 ③ 보건의료 필수의료 장비 규정에 따른 보유 장비 현황 - 사용기간, 장비별 구입연도, 구입단가, 내구연한, 정상작동 여부, 노후정도, 교체계획 명기 ④ 관내 의료취약계층 현황 및 보건소진료실적, 예산 내역 - 진료실적을 건강보험적용인구, 의료급여수급자 이용현황 취약계층, 이용환자수 구분 제출 - 의료취약계층 관련 사업계획, 추진실적, 편성예산, 집행내역 제출	

의회사무과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의회사무과	1. 예산집행 현황 2. 각종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3. 의회개최 및 회의록 발간배부 현황	

제6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1. 목 적

2007년 자치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예산안 심사 및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2.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기간 : 2007. 7. 11 ~ 7. 20(7일간 - 실제감사기간)

4. 감사실시기관

기 관 명	대 상 부 서	비 고
울산광역시북구	○ 기획홍보실 ○ 총 무 국 ○ 주민생활지원국 ○ 도시경제국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5. 감사실시 경과

① 감사주체 - 본회의

의 장	부의장	의 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유 재 건	윤 임 지	문 석 주·유 인 목 박 병 석·이 은 영 이 영 희	박 민 수	장 판 성

② 감사일시 및 장소

일 시		구 분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7. 11(수)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증인선서 •국·소·실·과·동장 ○도시경제국 •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7. 12(목)	10:00		"	○도시경제국 •건축주택과 •생명산업과 •재난관리과	
7. 13(금)	10:00		* 대상사무현장	* 현장확인	붙임 참조
7. 14(토)			감사중지(토요일)		
7. 15(일)			감사중지(일요일)		
7. 16(월)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총 무 국 •총 무 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7. 17(화)			감사중지(공휴일)		
7. 18(수)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총 무 국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기획홍보실	
7. 19(목)	10:00		"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	
7. 20(금)	10:00		"	○주민생활지원국 •환경미화과 ○보건소 ○의회사무과	

제5장 행정사무감사

③ 감사방법

- 감사선언(의장)
- 의장인사
- 증인선서(집행기관, 감사첫날 관계공무원 합동실시)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소개
-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청취)
 - 개괄적 총괄보고 : 국·실·소장
 - 세부사항 보고 : 해당 실·과·소장
-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서류검증 또는 현지 확인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④ 증인출석 및 감사실시 현황

감사대상부서	감사자료 제출건수	증인출석	참고인출석
계	344	29	
공 통 사 항	17		
기 획 홍 보 실	21	1	
총 무 국	66	14(동장 8)	
주민생활지원국	95	5	
도 시 경 제 국	120	7	
보 건 소	22	1	
의 회 사 무 과	3	1	

⑤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110	77	33
공 통 사 항	5	4	1
기 획 홍 보 실	6	6	-
총 무 국	27	17	10
주민생활지원국	27	20	7
도 시 경 제 국	41	27	14
보 건 소	3	3	-
의 회 사 무 과	1	-	1

⑥ 현장확인 감사

○ 현장확인 대상지

- 공공도서관
- 보리수 어린이집
- 7765부대 2대대
- 숲속 어린이집
- 명춘천

○ 참 석

- 의 회 : 전 의원, 사무직원
- 담당부서 : 건축주택과, 문화체육과, 복지서비스과, 총무과, 건설과

○ 감사내용 : 대상 현장에 대한 현지 확인

6. 감사결과

시정요구

共通事項

①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철저

주민참여 감독 운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 공사를 추진하는 대부분의 부서에서 조례에 규정된 “주민참여감독자”를 임명하여 운영하는 실적이 미미하였음. 「울산광역시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면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 5억원미만의 일반건설공사”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그 대상공사는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등 주민과 밀접한 공사의 경우 지역현황을 잘 알고 있는 주민을 참여시켜 부실공사를 막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저조하므로 시정이 요구됨.

②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을 보면 부서마다 제각각으로 정산하고 있는데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집행내역

등에 대한 표준서식을 만들어서 시행하면 이와 같은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시행하기 바람.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은 담당부서와 예산부서의 검토 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예산삭감 시 무조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므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사업 중 삭감된 부분 등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에 충분한 이해와 설명이 되도록 하기 바람.

③ 체납정보 공유를 통한 체납세 확보 노력

체납정보가 각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어 체납자에게 인·허가를 해주는 사례, 토지보상금 지급 등 불합리한 점이 있음. 금융기관처럼 정보온라인을 구축한다면 인·허가 시 고질적 체납자를 조회하여 인·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고 체납세 징수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④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철저

금번 행정사무감사자료의 경우 개인의 정보가 보호되어야 할 자료가 공개된 경우, 오타, 단위표시 미기재, 합계금액 계산오류 등 자료작성이 불성실하게 작성되어 감사자료 검토 시에 문제가 많았으므로 감사자료 임을 감안하여 작성에 오류를 최소화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직원들에 대한 적정한 업무분배 및 배려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업무가 어떤 특정인에게 집중되어 과중한 스트레스로 인한 행정효율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정한 업무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업무 외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간, 동료 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융화를 위한 유기적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직원들이 활기차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직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임.

企劃弘報室

① 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

우리구 전체 58개 위원회 중 남성으로만 구성된 위원회가 25개, 여성이 1명인 위원회가 8개로 전체 50%를 넘고 있는 실정이며, 한 여성이 여러개 위원회에 중복참여하고 있는 위원회가 다수 있었음. 작년과 비교해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지역에 있는 전문성을 지닌 여성을 적극 발굴하여 새로이 구성되거나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회 경우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② 무기근로자 전환대상자 재검토

2006년 8월 2일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여 우리구에서 무기근로자 대상자에 대하여 제출하였으나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시에 보고한 상태임. 우리구의 경우 “방문보건사업을 수행하는 간호사”, “체육시설 관리자”, “도서관 업무 보조자”, “녹지작업단” 등에 대해서는 무기근로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신중한 검토로 대상여부에 대하여 재검토 해 보기 바라며, 총액인건비제에 매몰되어 이 문제가 등한시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③ 국제외국어고 유치와 평생학습도시 지정 관련

국제외국어고등학교 유치에 전 행정력을 쏟아 부었으나 울산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와의 협의문제와 재정문제로 현재 답보상태에 있으며, 만일 백지화 된다면 약수동산회 부지 기증에 따른 문제 등 후유증은 매우 클 것으로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관계기관에 전달해야 할 것임. 추후로는 이와 같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치밀하고 충분한 검토 후 추진해야 할 것임.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중구의 경우 치밀한 준비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음. 우리구의 경우 실사단 실사 시 자료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아 답변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아쉬웠음. 평생학습도시 선정의 중요한 평가기준은 “기업투자”, “민간자율 참여”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는데 우리구의 경우 현대자동차와 협약서라도 체결하여 미리 준비하였더라면 좀 더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며, 학교와의 네트워크 구성이 안 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을

제5장 행정사무감사

것임. 너무 즉흥적으로 준비한 면이 있었으므로 향후 모든 시책이나 사업 추진 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주도면밀하게 준비하여 내년에는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④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조례 위반

제9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보제호를 기존 “희망북구”에서 “행복일번지 울산북구”로 개정하였음.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구정소식지 제41호와 제42호를 발간하여 배부한 것은 명백한 조례위반으로 법을 지켜야 할 부서에서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이므로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여 처리하고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주기 바람.

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 관련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에 있어 사전에 담당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즉흥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화봉제2어린이공원에서와 같이 규모가 비교적 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되어야 이번과 같은 부실시공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규모가 작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옳을 것임.

⑥ 내실 있는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제 운영

5억이상의 대형공사의 경우 구민감시관을 임명하여 공사를 감시하고 있는데 이들이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감시관들에 대하

여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하면 감사관제가 본래의 기능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임.

總務局

1. 총무과

① 업무추진비 투명성 제고

업무추진비의 경우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주 단위로 제출되어 전혀 내역을 알 수 없게 되어 있음. 지난해에도 제대로 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활한 감사활동을 저해한 사례가 있었는데 금번에도 재차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음. “투명하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투명하게 사용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울산시민연대에서 울산시, 구·군에 업무추진비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상태로 업무추진비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내역에 대한 공개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들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향후에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반드시 제출하여 할 것임.

② 가로기 꽃이 관리 철저

각종 국경일, 기념일, 중요행사 시, 민방위의 날 행사시 가로기를 게양하고 있으나 가로기 꽃이가 파손된 곳이 많고, 원래는 2개 달

제5장 행정사무감사

리는 것이 정상인데 1개만 있는 곳과 아예 없는 곳도 있고, 높낮이가 맞지 않아 차량소통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 조치하기 바람.

③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확대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남·여 구성비율을 보면 여성비율이 저조한 실정임. 특히 4개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은 극히 저조하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여성에 대한 참여비율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임.

2. 회계정보과

① 북구생활체육협의회 구청 별관 무상사용 관련

생활체육협의회는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협의회와 달리 무상으로 구청사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2007년말 계약이 만료되는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든지 아니면 2층 별관을 비워달라고 하든지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② 구청 홈페이지 관리 철저

구 홈페이지의 경우 의원현황이 제각각이고 구인·구직, 생활경제 등 내용이 알차지 못한 실정임. 클리어노사민원센터의 경우 구청장 공약사항 중 역점사업으로 홍보도 많이 하였는데 현재 내용이 비어 있는 상태이며,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자료에 있어서도 내용이 미흡한 실정임. 관련부서에 독려하여 자료를 받든지 아니면 게시물을 정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알차

고 내실 있는 자료가 홈페이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전반에 대한 보강 노력이 요구됨.

③ 구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들이 대부분 시정되었으며, 특히 장애인 화장실 청소상태 및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고, 열쇠비치 및 비상벨 설치 등은 좋은 아이디어임. 그러나 구청사 3개소에 “사용중”이라는 전등이 미점등 되어 있으므로 꾸준한 관리를 해주기 바라며, 1층 장애인 화장실 앞 파티션 설치로 인하여 전등을 켤 수 없는 실정이므로 장애인 화장실 스위치를 입구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장애인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안내를 위한 점자블럭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민원지적과와 협의하여 시각장애인용 무인발급기가 장애인들에게 무용지물이라고 판단된다면 민원실 안내창구로 안내할 수 있는 점자블럭을 설치하기 바람.

④ 기존 관용차량 매각 등 검토

작년 예산편성시 구청버스의 경우 내구연한 경과로 차량유지비가 과다 소요되어 기존 차량을 매각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 매각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며, 구의회 의장차의 경우에도 매각하지 않고 의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당초 의회보고와는 완전히 다른 실정임. 연식이 오래된 차로 향후 과다한 수리비용 등이 예상되므로 매각하는 것이 경제성 측면에서 옳을 것임. 꼭 주민의 편의나 활용면에서 필요하다면 신중히 판단하여 계속 사용여부를 판단하기 바람.

3. 지방세과

① 과오납 최소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과오납 최소의 경우 금년도에도 여전히 줄지 않고 있으므로 다양하고 신선한 납세제도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임

② 고액 납세액 고지방법 다양화

30만원이상의 고액 고지서의 경우 등기로 발송하고 있으나 납세자가 등기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 본인의 납부의지와는 상관없이 납부기한을 넘겨 증가산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4. 민원지적과

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도로명 변경

도로명 및 새주소 부여사업의 경우 사업초기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한 주민의견 수렴시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통정회원 위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지역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현실을 외면한 측면이 있음.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지어진 도로명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일단 도로명에 대한 고시공고가 끝나면 실제 도로명을 바꾸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고시·공고 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도로명이 주민누구나 알기 쉽게 부여되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② 건물번호판 관리 철저

건물번호판의 경우 아크릴판으로 제작되어 본 사업이 시작된 지 오래되어 탈색된 곳이 많고, 훼손된 곳이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시·공고 후에는 건물주가 교체해야 하므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교체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부착 시에는 떨어지지 않도록 반영구적으로 부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5. 환경위생과

① 마을 간이상수도 상수도 인입을 위한 방안 강구

마을 간이상수도 총 44개소 중 15개소가 시 상수도가 설치되었음에도 인입하지 않아 간이상수도 관리에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이상수도 수질문제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시 상수도가 설치된 지역에 대하여는 주민에 대한 집중홍보 후 지원을 중단하여 안전한 시 상수도를 인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② 바깥시레 간이상수도 문제해결 방안 강구

간이 상수도에 대한 관리부실로 불소 과다검출로 인한 어린이 치아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2003년 3월말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2006년까지 제대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큰 문제임. 최근에 취수보를 2개소에 설치하였으나 양이 작아 일부 주민은 물을 사다먹고 있는 실정임으로 시에 강력히 건의하여 내년 성혜마을 시 상수도 설치시 이 지역에도 반드시 설치될

제5장 행정사무감사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계곡수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계곡수 배관이 최대한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③ 마을 상수도 뢰스 설치

현재 마을상수도 시설보호를 위한 뢰스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22 개소가 있음. 만일 간이상수내 독성물질 투입시 인명사고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기 바라며, 시건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즉시 시건장치를 설치하여 만일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조치하기 바람.

④ 공중화장실 관리 철저

최근에 설치된 매봉재 화장실의 경우 진입로가 흙으로 되어 있어 우천시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쇠석을 깔 수 있도록 조치하고 화장실 시건장치에 대하여 점검해 보기 바라며, 관련부서(농림수산과)와 협의하여 염포산 팔각정 화장실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같이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⑤ 시료 채수방법 준수

시료채수 방법은 알콜램프, 종이, 가스버너, 라이터 등으로 수도꼭지 에 1분이상 화염멸균을 하여 손이나 기타 물건이 닿지 않도록 채수하여 아이스박스 등에 넣어 10℃이하로 유지하여 최단 시간내 검사의뢰하여야 하므로 이 방법을 정확히 준수하여 채수하여야 할 것임.

⑥ 오존관련 대기환경 오염원 최소화

관내 차량수에 비해 배출가스 단속건수가 너무 작음. 농소1동과 효문동에 대기오염 측정망이 설치되어 있는데 측정결과 오존과 미세먼지 수치가 기준치를 상회하는 횟수가 상당히 많이 나타났음. 이는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배출가스단속을 강화함과 아울러 자전거 활성화를 추진하여 오염원을 최소화하고 공사장 비산먼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야 할 것임.

住民生活支援局

1. 주민생활지원과

① 소외계층에 대한 대민서비스 활동 강화

2006년 7월 1일자 8대 서비스 강화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직개편이 이루어짐으로써 사회복지직이 4명 충원되었음. 동사무소 사회복지직의 경우 직원 혼자서 동 전체의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실제 대민서비스보다는 행정업무에도 벅찬 실정이므로 행정업무를 줄이고 대민서비스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② 성혜마을 공동취사장 설계도면 확보

공동취사장 애찬관의 경우 2003년도에 시에서 포괄사업비로 건립한 시설로 현재 부실공사로 인한 보수가 필요하여 예산을 확보한

제5장 행정사무감사

상태이므로 효과적 보수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당초 설계도면이 필요함. 시에 도면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파악해보고 없을 경우 설계발주처에 문의하여 설계사무소에서라도 도면을 확보해야 할 것임.

③ 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집행 및 관리 철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출내역에 있어 자부담 10,000천원 중 지역 아동센터 공부방 교사 인건비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하는 것은 회계상 명백한 오류임.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선 자부담분에서 처리하는 것이 옳을 것이므로 시정하기 바라며, 자원봉사센터 인력이 본연의 자원봉사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④ 푸드뱅크사업 운영 철저

구청에서 본 사업을 직영으로 추진할 때와 위탁운영 시를 비교해본 결과 지원품을 배부하기 수월한 시설위주로 지원하고 있어 실수요자인 저소득층 개개인에 대한 배부는 거의 없는 실정임. 푸드뱅크 사업의 경우 배분의 형평성, 관리투명성 제고, 적재적소 배분 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기존의 유기적 네트워크망이 무너진 상태이므로 운영위원회 활성화 및 자원봉사단체와 개인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푸드뱅크 지원품으로 바자회를 여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시정하기 바람.

2. 복지서비스과

① 주제에 맞는 여성주간행사 개최

여성주간행사의 경우 여성의 권익신장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그러나 매년 행사가 식전행사, 기념식, 특강, 화합한마당 등 늘 틀에 박힌 행사가 되고 있고 참여자에 있어서도 일반주민은 거의 없고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들과 연관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음. 좀 더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주제와 목적에 맞게 일선에 있는 단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② 보육시설 지도·점검 강화

농소3동에 위치한 H 어린이집 원아 사망사건과 잇따른 어린이집 사건사고가 발생하였음. 본 어린이집의 경우 2006년 6월 15일 연장보육시설로 인가가 났으나 아동학대 문제, 추가비용 납부문제 등에 대하여 야간에 한번도 점검을 하지 않았음. 또한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원아사망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점검한 결과와 사건발생 후 점검결과를 비교해 보면 지적사항 등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동안 지도점검을 형식적으로 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번에 모든 시설을 점검 하기 보다 나누어 꾸준히 점검하는 것이 세밀하게 점검할 수 있을 것이며, 되풀이 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중과 처분하여 앞으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임.

③ 홈페이지 자료 보완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전체적으로 내용이

제5장 행정사무감사

부실하고 어린이 집 현황에 있어 24시, 24시간 등 연장보육시설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할 것이며, 여성정책사업의 내용이 부실하며, 여성 통계인구를 보완하여야 할 것임.

④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재배치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어르신들이 일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일자리사업 발굴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노인 서로간의 유대관계 프로그램운영도 필요할 것임.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전담인력이 지침에 의하면 노인복지회관 2명, 구청 1명, 노인지회 1명으로 배치되어야 하나 임의적으로 지침을 어겨 노인복지회관 1명, 구청 2명, 노인지회 1명을 배치하고 있으므로 즉시 시정하기 바람.

⑤ 한부모 가정캠프 행사 재위탁 금지

한부모 가정캠프 행사의 경우 M단체에 위탁하였으나 M단체에서 이벤트 업체에 하청을 주어 행사를 하였으므로 추후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⑥ 노인복지회관 예산지원 확충

노인복지회관의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2006년도까지 2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올해 2007년에는 2억원만 지원하였음. 작년보다 예산이 5천만원 적게 지원됨으로써 근무자가 인건비 문제로 줄어들어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음. 노인보건 복지사업 지침에 의하면 “다”형 복지관 예산지원 기준은 최소 2억 5천만원으로 올해의 경우 5천만원 적게 지원된 것임. 우리와 유사한 타구 예산과 비교해

보더라도 제일 열악한 실정이므로 지침에 의한 최소 예산이상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⑦ 농소어린이집 건립공사 미비사항 보완

농소어린이집 건립관련 현장 확인 결과 어린이집 외부경계에 나무 식재하지 않아 경계가 모호하고, 2층 문턱이 너무 높아 어린이들이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며, 2층 화장실 소변기가 어린이용이 아닌 일반용으로 되어있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난간대 높낮이가 맞지 않아 어린이 안전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외부 잔디식재 부분이 흙으로 되어 있어 물이 잘 빠지지 않을 것이므로 마사토 교체하는 등 개원 전 이러한 모든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완하여야 할 것임.

3. 문화체육과

① 문화예술회관 화장실 관리 철저

회관 2층 장애인화장실이 문이 열리지 않아 장애인들이 전혀 사용할 수 없으므로 조속히 점검하여 보수토록 하고, 1층 화장실의 경우 주민들을 위하여 야간에 개방하였으나 늦은 시간 청소년 우범 지역으로 변하고 있고 이로 인해 화장실이 불결하므로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② 쇠부리축제 개최방법 전면 재검토

쇠부리축제의 경우 그동안 예산에 비하여 너무 부실하게 행사가 개최되어왔음. 행사연출에 있어서도 3일간의 본 행사는 문화원에

제5장 행정사무감사

서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벤트회사에서 행사를 준비하였음. 그동안 보조금 정산에 있어서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행사준비요원 인건비가 5개월치 집행되었고 행사연출대행료 1천만원 등 방만한 예산집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행사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구에서 강동수산물축제와 같이 T/F팀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본 행사가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③ 문화제 관리 철저

관문성의 경우 전체길이가 12km정도로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방치상태에 있음. 잡풀이 무성하고 안내간판 훼손, 청결문제 등 관리소홀로 문제점을 노출하였고, 중산동 고분군의 경우 청결상태가 불량하고 철장으로 가려져 있으므로 개방하여 어린이 공원과 함께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기 바람, 전체 문화제 14개소에 대하여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④ 위원회 구성원에 대하여

문화정책위원회 전체 19명중 단 6명만이 문화예술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육시설 사용자 결정을 위한 체육시설사용허가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운동장을 많이 사용하는 생활체육협의회 소속된 위원이 많으므로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하기 바람.

⑤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보완대책 강구

공공도서관 건립현장의 경우 주민들이 도대체 무슨 공사를 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입간판 및 조감도를 설치하기 바라며, 3층 성인열람실의 경우 바로 옆에 체육을 할 수 있는 공원이 위치해 있어 소음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음이 최소화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현재 계획된 주차장이 총14면으로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므로 주차장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도서관 이용객들과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⑥ 생활체육지도자 불합리한 수당 지급 금지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보조금으로 구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일과시간(근무시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불법이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생활체육지도자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경로당 등 수업하는 곳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임.

⑦ 어린이 대상 체육프로그램 투명성 제고

어린이체능교실과 소외계층스포츠캠프 운영에 있어 일부 계층(통정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자녀위주로 운영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다양한 계층의 어린이 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4. 환경미화과

① 중산동 음식물자원화 시설 관련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당초 사업추진에 있어 미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용량부족 문제, 주거지에 인접한 장소에 시설건립, 검증되지 않은 시설, 전문가 참여 미비 등 근본적인 문제

제5장 행정사무감사

를 안고 시설이 건립되어 인근 주민들에게 막대한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안겨 주었음. 이러한 정책실패에 대하여 누군가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해 안타까우며, 인근 주민들에 대하여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임. 용역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앞으로 시설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임. 중구 음식물 가동중지, 포항시설 반입근지 등 음식물처리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동구와 협조하여 광역화를 추진하는 등 음식물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② 클린환경 나눔장터 운영 내실화

본행사의 경우 운영되는 형태를 보면 바자회 형태로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 벼룩시장의 형태와는 다소거리가 멀고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위주로 진행되어 어린아이들 참여가 저조하였음. 행사장에 일반상인들이 일부 참여하였고 자발적인 면이 다소 떨어져 활력이 떨어짐. 상인은 배제하고 경제교육을 위해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자율성을 유도하여 활력을 불어넣고 상설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都市經濟局

1. 도시녹지과

① 화봉제2어린이공원 전반적인 하자보수 실시

어린이공원내 다목적구장 우레탄 포장과 관련하여 현지확인 결과 우레탄 두께가 설계도면에는 15mm로 되어 있으나 확인결과 가장 두꺼운 부분이 이정도 이고 가장 얇은 곳은 4mm인 곳도 있었음. 또한 칼라 우레탄으로 시공된 부분에 있어서는 재질선택이 잘못되어 우천시 미끄럼이 심해 오히려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실정이었으며, 평탄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전반적인 부실이 발생하였음. 본 공원 공사와 관련 시설물 배치를 위한 설계도면 부재, 공사내용과 맞지 않는 신규 임업직 공무원의 부실한 공사감독, 주민참여 문제, 예산문제(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집행, 계약심사 등)등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었음. 하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검토로 빠른 시일내 하자보수가 이루어져 주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할 것임.

② 특성화된 공원조성과 공원관리 철저

현재 조성 완료된 공원 19개소의 경우 3개소는 근린공원이고 16개소는 어린이 공원으로 대부분 구획정리 사업시 무상 귀속된 화봉, 호계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임. 어린이 공원 대부분이 “어린이 공원”이라는 이름에 맞는 어린이들의 정서안정,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못하고 천편일률적으로 다목적 구장 형식의

제5장 행정사무감사

공원이 조성되고 있음. 공원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당초 목적에 충실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청소년 공원, 교통안전 테마공원 등 특성화된 공원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또한 화장실 위생문제, 쓰레기 방치 등으로 공원환경이 쾌적하지 못한 곳이 많으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공원 관리에 있어서 지역주민과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③ 강동 신명해안 소공원 관리 철저 및 활용도 제고방안 강구

신명해안 소공원 관리실태 점검결과 수종선정이 잘못되어 해풍에 많은 나무가 고사하였고 관리에 있어서도 계속 방치되어 오다가 최근에 들어 제초작업을 한 상태임. 또한 본 소공원의 경우 재경부와 해양수산부 등 국유지로 5년간 무상 대부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대부기간이 도래하였으므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계속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보다 더 많은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본 소공원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공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④ 달령재~장등마을 산사태 지역 복구

달령재에서 장등마을 구간 사이(2개소)에 산사태가 발생하여 100m²정도 훼손되어 있어 등산객들의 안전과 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신속히 복구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⑤ 천곡동 산24번지 경관조림지 사후관리 철저

천곡동 산24번지 일원은 1998년도에 수종갱신 허가를 득하여 배나무를 식재하여 과수원으로 사용하다가 최근에 과수원이 폐원한 실정임. 그런데 과수원이 폐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수원 소유주의 요청에 의해 목백합을 식재한 것은 문제임. 과수원 폐원에 따른 상황을 확인하고 배나무 제거후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여 심는 것이 옳을 것이므로 이제부터라도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⑥ 양정동 송전철탑 복구공사 하자보수 실시

양정동 송전철탑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현지 확인결과 왕벚나무 규격이 미달하였고 편백 고사문제, 13호기 홀씨뿌리기 실패, 복구에 있어 목책쌓기를 얹고 응급복구 형식으로 처리, 철쭉 식재하다가 왕벚나무로 변경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설계내역이 없는 등 많은 하자과 관리감독이 허술하였으나 준공 처리된 실정임. 복구공사에 따른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조속한 시일내 보수를 요청하고 향후에 구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 경제교통과

① 경동도시가스 정압기문제 관련 조치 철저

우리구의 경우 경동도시가스 정압기 설치 현황을 보면 총 26개소로 9개소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17개소는 등재되어 있지 않아 불법 건축물로 볼 수 있으므로 다른 구에서 처리하는 추이만

제5장 행정사무감사

을 보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할 것임.

②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 단속 철저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인한 단속실적을 보면 극히 저조한 실정임. 현실태를 보면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식으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는 행위가 목격되고 있고 고정식으로도 판매하는 행위도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요구됨.

③ 상용인력 관리 철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교통시설물 관리를 목적으로 채용한 상용인력이 채용목적에 맞지 않은 유가보조금 정산을 위한 보조업무와 동향파악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래의 목적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④ 노동자 지원사업 관련

공인노무사를 채용하여 민방위 교육시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하여 근로기준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내실 있는 교육이 되지 못하고 형식에 치우친 감이 있음. 또한 클리어 노사민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으나 주로 사무실에서 상담만 해 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실제 근로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그리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효문공단문제 등 현장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 노사정구민협의회 구성에 있어 사측에 치우친 감이 있고 홈페이지 비

정규직 문제 해결에 실질적 열쇠를 쥐고 있는 노사는 서울에 있어 우리 북구에 있는 홈에버의 경우 분회로 노사정협의회 운영에 한계가 있을 것임. 또한 이 협의회는 결정권이 없는 권고로만 그칠 가능성이 높을 것이나 우리구가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노동조합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노사양측이 모두 참여하여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3. 건설과

① 원지삼거리(창평천 인근) 자전거 전용도로 보완

공항확장계획에 따른 동천이설로 원지삼거리 일부구간이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2010년정도가 되어서야 가능할 것이므로 그 동안까지만 이라도 자전거전용도로를 통해 출퇴근하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가로·보안등설치 및 바닥작업을 실시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것임.

② 쌍용아진아파트 불법노점상 단속 관련

쌍용아진아파트 2~3단지 사이 목요장터 관련 인근상가, 이용 주민, 아파트 전체주민, 2~3단지 사이의 주민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하여 행정기관에서 단속과 묵인을 병행하고 있는 실정임. 전체적인 실태 및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명확한 기준(방침)을 정하여 목요장터를 양성화(차 없는 거리 지정, 소공원 조성 등)하든가 아니면 불매운동과 적극적 단속을 펼쳐 목요장터를 폐쇄하든 구의 결단이 필요함.

제5장 행정사무감사

③ 철저한 공사마무리 추진

음식물자원화시설 진입로 우수관로 공사후 마무리가 제대로 안된 부분·신상안교 하부공사(에워니아 태풍시 제방둑 붕괴된 곳) 돌망태 공사시 공사차량 진출입으로 자전거전용도로 훼손부분·호계수동마을 오수관로 공사시 우수맨홀 턱이 높아 교통사고 유발문제·대안마을 회관 앞 대안천은 수행복구 공사시 실질적으로 물이 치는 부분은 복구되지 않고 덜 시급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한 부분 등의 문제가 발생되었으므로 우리구에서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고 시에서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의하여 조치되도록 하기 바람.

④ 정자천 하류 및 명촌천 호우대비 조치 철저

작년에 시행한 정자천 하류 응급복구 공사와 명촌천 응급복구 공사와 관련하여 지금 당장 항구복구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우수기 집중호우시 매우 위험한 실정이므로 제방이 유실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조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⑤ 효문로타리 오수분출 문제 대책 강구

매년 집중호우시 효문로타리의 경우 차집관로 우수가 분출하여 도로침수 및 인근 농경지 침수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실정임.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여 관리청인 울산광역시와 협의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⑥ 천곡본동 도로개설에 따른 전주 이설

천곡본동 도로개설시 도로는 공사가 잘 되었으나 인도부분의 경우 실제 폭이 1.35m로 매우 좁은 실정임. 그런데 인도 한가운데 대형 전봇대가 인도 중앙에 자리하고 있어 인도보행이 거의 힘든 상태임. 인도보행에 지장을 최소화 하도록 전봇대를 이설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⑦ 염포동 소3-13호선 개설 관련

염포동 304번지 일원에 개설된 소방도로의 경우 폭6m도로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일부구간이 7m로 개설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 문제 또한 시공시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도 문제이므로 향후에는 이에 따른 실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가까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⑧ 자전거 보관대 보수 및 이동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에이스건물 자전거보관대의 경우 현재 아크릴판이 모두 깨어져 있는 상태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조속히 보수하고 보관대 2개중 1개는 꼭 필요한 장소로 옮겨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4. 건축주택과

① 방치된 기계식주차장 처리방안 모색

기계식주차장 설치 목적은 도심지 주차난 해소가 목적이지만 건물주들이 관리인 채용문제 등으로 운영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

제5장 행정사무감사

이며, 법적 규정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시설이라고 보면 무방할 것임. 따라서 행정에서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를 강요할 수도 없는 실정이므로 도색을 실시하여 1층이라도 개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거나 인근에 공동으로 토지를 임대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상급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제도개선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② 목욕탕 굴뚝 안전관리 철저

현재 대부분의 목욕탕의 경우 에너지 사용이 전환되어 굴뚝이 필요 없어진 상태임. 현재 관내에는 8개의 목욕탕이 있는데 굴뚝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점검 시에도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높은 굴뚝에 대해 단지 육안으로만 판단해 등급을 매기는 것은 문제가 아주 심각함. 만일 굴뚝이 붕괴하는 사고 발생시 엄청난 인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굴뚝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임.

③ 달천그린카운티 4차 아파트 관련 마무리 철저

4단지의 경우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음.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된 부분이 차이(모서리부분 곡선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을 직선으로 처리 등)가 나므로 시정되어야 함.

④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 철저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부서에서 현장확인 한 사

진 몇장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움으로 추후로는 심의위원도 같이 현지에 가서 확인할 수 있었으면 하며, 현재 편성된 80,000천원의 사업비는 생색내기밖에 되지 않으므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증액이 요구됨. 또한 아파트 담장 허물기 등을 하는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동기부여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배려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이에 따른 세부 규칙제정 등도 필요하며, 한번 지원받으면 향후 5년동안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실제 50%의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5. 생명산업과

① 생활개선회 천연염색 체험 행사 개선

농·도한마당 축제시 같이 개최하는 생활개선회가 수행하는 천연염색 체험행사의 경우 예산편성에 있어 농·도한마당 행사비에 포함하기 보다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옳을 것임. 행사진행 방식에 있어서도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판매위주 보다는 체험위주로 진행되어야 하며, 여성주관사업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도 좋을 것임.

② 봄꽃 전시회 활성화 방안 강구

봄꽃 전시회의 경우 행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행정보다는 작목반이 위주가 되어야 하는데 쇄부리축제와 같이 행사를 함으로써 쇄부리에 묻혀 본 행사의 홍보나 작목반원들의 불만으로 참여가 저조하였음. 향후 쇄부리축제와 봄꽃 축제가 공동으로 개최를 하더라도 행사추진 주체들이 협의하여 원활한 행사준비로 두 행사

제5장 행정사무감사

모두 실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행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③ 유기동물 처리방안 강구

현재 유기동물 처리에 있어 대부분 안락사 위주로 분양과 주인을 찾아주는 실적은 저조한 실정임.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분양이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라며, 이를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예산확보에도 노력해 주기 바람.

6. 재난관리과

① 장마철 대비 재해예방활동 강화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구비확보 지연문제로 복구공사가 늦어지고 있음.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조치 및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해 주기 바람.

② 재해장비 관리 및 운영 철저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대비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재해장비 점검을 철저히 해주기 바라며, 재해장비 작동여부를 확인함과 아울러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임. 특히 보트의 경우 실제 시운전을 통한 작동여부를 확인함과 아울러 소방서, 해병전우회 등과 협의하여 비상시 이를 운전할 수 있는 인력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保健所

① 장애인 화장실 비상키 관리

2층 장애인 화장실 키가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안내판 등이 없음. 구청사와 같이 입구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② 모스키토-존 경영수익사업 관련

모스키토-존 경영수익 실적이 적자로 나타났음. 수입에 비해 지출이 과다하므로 감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조치해야 할 것임.

금형제작과 일반부대경비에 과다한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감사를 철저히 하여 밝혀내야 할 것이며,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순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재무제표 조작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히 감사를 해야 할 것임. 향후 이와 같은 민간기업과의 계약에 있어서는 틀러리가 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하여 하여야 할 것임.

③ 방역활동 강화

올해의 경우 모기가 더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최적의 모기퇴치 방법을 강구하여 효과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건의사항

企劃弘報室

總務局

1. 총무과

① 설치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 강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자치센터 본래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사항에 대해 현재 각 동 자치센터에서 한 두개의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호응도 좋은 실정이므로 계속 활성화 되도록 인센티브 강화에도 노력해 주기 바라며, 자치센터 운영평가를 통한 시상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어져야 할 것임.

2. 회계정보과

① 동사무소 업무용 차량구입 배치

현재 강동동만 더블캡을 구입하여 해안청소, 야외행사 등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 각 동사무소의 경우 이러한 차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각동에 이러한 차량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② 청사내 주차장 주차면수 확장 검토

청사의 전체 주차면수는 총455면으로 최근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외부 장기주차차량 및 직원들의 차량을 통제하여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장을 확보한 것은 매우 잘 되었음. 청사내 주차장에 대해 주차면수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라며, 민원전용 주차장의 경우 산불방제차량, 현수막 수거차량, 교통지도차량의 경우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청사뒤편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③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계약 확대

기술적으로 그리고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수의계약 공사의 경우 우선적으로 우리구 소재 업체에 맡기는 것이 지역업체의 경쟁력 향상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임. 지역업체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람.

④ 계약심사제 탄력적 운영

계약심사의 목적이 예산절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어야 함.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집행한 화봉 제2어린이공원 부설시공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절감에만 치중하지 말고 공사의 경우 꼭 필요한 예산의 경우 충분히 집행되어 부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심사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바람.

⑤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노력 경주

기적의 도서관 청소용역업체에서 최저임금제를 위반하고 있는 실

제5장 행정사무감사

정임. 이와 같은 문제는 용역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구도 일정부분 책임이 돌아올 수 있으므로 용역설계서와 계약서상에 최저임금 보장을 명시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⑥ 농협 현금지급기 운영시간 연장 협의

구청 민원실 입구에 있는 현금지급기의 경우 은행 업무시간에만 운영하고 있어 구청을 찾는 구민들이 매우 불편해 하고 있는 실정임. 구청을 야간에 방문하는 구민이 상당히 많으므로 농협과 협의하여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해 보기 바람.

3. 지방세과

4. 민원지적과

① 구민위주의 민원실 운영

우리구의 경우 예산절감 및 민원안내 효과성 때문에 민원안내도우미를 배치하지 않았다면 창구 앞 직원들에 대한 친절 및 안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들이 거리낌 없이 민원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② 효문공단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관하여

효문국가공단내 편입된 토지소유자들은 보상이 끝나면 타 지역으로 이주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본인 소유의 토지가 편입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안내(홍보)가 필요할 것임. 또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본 지역의 경우 보상 후 이주가 결정된 지역으로 도시계획상 도로부지의 경우 이주를 하지 않는 지역과 동일한 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합리할 것임. 이주를 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 향후 도로개설 후 어느 정도 이득이 예상되어 당초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작게 받더라고 문제가 없지만 이주하는 지역은 보상의 산정항목에 포함되는 개별공시지가가 낮아 보상도 작아질 것이고 도로개설 후 이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특수한 지역의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특수성이 인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기 바람.

5. 환경위생과

① 학교앞 유해환경 단속을 위한 제도개선

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문방구, 슈퍼에서 판매하는 각종 색소 등 첨가물이 포함된 빙과류, 과자류, 젤 등의 경우 관련법에 첨가물에 대한 세부 단속기준이 없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단속규정이 없어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식품위생법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관련법 개정 요구가 필요함.

住民生活支援局

1. 주민생활지원과

① 장애아 통합놀이시설 사업취소 관련

현대·기아차가 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한 예산에 대해 사전협의 문제와 사업의 시행주체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사업권이 취소된 것은 경위야 어떻게 되었던 이 시설에 대하여 큰 기대를 갖고 기다려온 장애아들을 생각해 볼 때 매우 안타까운 일임. 어울림복지재단의 경우 비록 시설의 소유권자인 북구청과 사전 사업신청에 따른 협의는 하지 않았으나 공모를 통해 어렵게 확보한 사업이니 만큼 사업을 직접 해야 한다는 입장과 북구청의 경우 시설운영에 따른 위탁을 준 것이지 시설자체를 위탁준 것이 아니므로 구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 결국 사업비가 반납되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음. 서로 조금씩만 양보했더라면 이러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향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무산된 장애아 놀이시설이 반드시 건립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아들의 열망을 채워주기 바람.

② 공무원 자원봉사자 적극 참여

“with family” 작은 봉사 큰 기쁨 시책과 관련하여 공무원가족 참여는 14가족 32명으로 저조한 실적임. 주5일제 시행으로 여가시간이 늘어난 만큼 좀 더 많은 공무원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와 인센티브 제공에 노력해 주기 바람.

2. 복지서비스과

① 연장보육시설 확충방안 강구

연장보육시설의 경우 대부분 저소득층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연장보육시설을 확충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국·공립어린이집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사립 어린이집 원장들에게도 연장보육시 국가지원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하여 연장보육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② 12세가 넘는 장애아를 위한 시설 건립

현재 12세가 넘는 장애인이 갈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중앙부서에 건의하여 우리구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3. 문화체육과

① 달천운동장 조기 건립 추진

농소3동 지역은 운동장 등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한 실정임. 달천운동장 조기 건립의 관건은 GB 관리계획 승인이므로 시와 건교부에 운동장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여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조기에 받아 주민들의 욕구를 최대한 빨리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제5장 행정사무감사

② 문화공간협의회 지원방안 강구

문화공간협회의 경우 그동안 신규에 대해서는 5백만원을 그리고 18개 문화공간에 대해서는 면적에 따라 지원하였으나 현재 지원이 중단된 상태임.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의 교육인프라 구축에도 부합하고 단순한 도서영역을 뛰어 넘는 문화영역으로 발전하는데 토대가 될 수 있으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4. 환경미화과

① 음식물쓰레기 30%줄이기 관련

“물기를 빼면 돈이 된다”는 홍보의 경우 처리비용과 소각시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나 자원화 시설에서 처리할 시 큰 도움이 안될 것 이므로 처리방식에 적합한 방식으로 홍보해야 할 것임. 음식물종량제 추진과 관련하여 양을 측정하는 문제, 아파트 공동체 문화 등을 감안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와 아울러 음식물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표준(좋은)식단 홍보,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사업장(음식점)의 경우 성과가 미진하므로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② 재활용 위탁업체 계약방법 개선

상반기 재활용 분리 문제로 시에서 받아주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였음. 정책의 변화로 재활용이 40%이상 늘어났음에도 당초 계약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만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다면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도와줄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임.

都市經濟局

1. 도시녹지과

① 완충녹지 관련 행정적 보호방안 강구

덕하검문소~연암까지 완충녹지로 되어 있는데 완충녹지의 경우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현재까지 법적제한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덕양산업 인근 주차장으로 사용중인 완충녹지와 화훼단지의 경우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시에 건의하여 이 부분부터 보상하여 녹지조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기 바라며, 추후에 완충녹지 부분에는 차폐기능 뿐만 아니라 저수조 역할을 하면서 녹지로 활용하여 특색 있는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② 안전한 통학로 확보방안 강구

중로1-122호선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상안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절실한 실정임.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지하도 설치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육교를 설치하는 것은 이용의 불편, 육교 밑 교통사고 위험 등으로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행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2. 경제교통과

① 청사내 에너지 절약을 위한 관리 일원화

현재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총괄부서는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으나 청사의 경우 총괄부서에서 점검시스템 부재로 점검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회계정보과와 협의하여 청사내 에너지 절약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일원화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② 주·정차 단속의 탄력적 운영방안 강구

차량에 이동식카메라를 장착하여 운영중인데 물론 주·정단속의 경우 무경고 단속이 원칙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여 교통유발지역의 경우에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무경고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이면도로나 교통흐름에 큰 방해를 주지 않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안내경고 전광판 활용과 안내방송을 실시하여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단속에 융통성을 발휘하여 주기 바람.

③ 속심이 마을 인근 농로길 교통정체 완화를 위한 대책 강구

경주 입실 문단공단 아침과 저녁 출퇴근 차량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중산동 주민과 한라동아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 옥동~농소간 도로신설 계획은 2012~2013년 정도로 시에 지속적 건의를 통하여 그 이전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인근 교통상황을 감안하여 조금이라도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④ 우리구 경계지역 경주시 공장승인 관련

경주시에서 공장신설 관련 지침을 위반하여 우리구 경계지역에 공장신설을 승인하여 만석골 인근 오염 뿐만 아니라 동천도 오염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임. 수계를 경주방면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동천으로 유입되므로 경주시장과 구청장의 행정협의회로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및 감사청구 등의 방법으로 주민피해가 없도록 강력 대응해야 할 것임.

⑤ 호계공설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호계시장 아케이드 설치를 위한 계획수립과 홍보를 주민들에게 하였고, 아케이드 설치가 여의치 않아 칸막이 해체 등을 통한 내부 인테리어 수정 등 지금으로서는 명확한 계획이 없는 상태로 행정 불신만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상인들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더 이상 행정 불신을 낳지 않도록 하기 바람.

3. 건설과

① 아파트간 연결 문제

협성노블리스에서 귀영아파트를 지나 구국도7호선으로 연결되는 소방도로가 있는데 아파트간을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현재 귀영아파트에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아파트간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여 통로를 내어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제5장 행정사무감사

② 수성마을 포시즌 인근 통행로 확보

수성마을 포시즌 인근 신호등 설치 예정지 인근의 도로가 현재 끊겨져 있음. 현재 구청에서 대형교회 올라가는 계단 형태의 통행로를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로 확보를 검토해 주었으면 함.

4. 건축주택과

① LPG 충전소 허가 관련

진장동 LPG 충전소 허가와 관련하여 3차례 농지전용관련 반려되었으나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허가가 났음. 허가가 난 과정을 보면 당초 농지담당부서에서 집단농지로 계속 농사를 짓는다는 사유로 반려를 하였으나 울산광역시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지 않았다는 사유로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아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하여 심의결과 허가를 받았음. 본 허가건의 당초 신청인은 개인택시연합회였으나 허가를 득한 후 개인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다시 개인택시연합회에서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는 단순한 소유권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허가를 받기 위해 개인이 아닌 개인택시연합회를 동원하여 외압에 통한부동산투기 등을 하였다는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음. 더군다나 인근 자원재활용 행정소송이 패소한 것을 보면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행정에서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형평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여 주기 바람.

② 임대아파트 입주민 보호 노력

천곡아남아파트 분양관련 분양회사(우방)가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권을 주지 않고 일반분양을 시도하고 있는 실정임. 물론 강제적으로 이를 제지할 수는 없으나 행정지도를 통해 기존의 분양가 4,000천원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건설교통부에 이에 따른 질의 등 법적 근거 확보에도 노력해 주기 바람. 또한 정립은하수의 경우 79세대 중 10세대만 우선분양을 신청하였고 나머지는 포기서를 작성하였음. 해당부서에서 이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금만 신중을 기해 현황을 파악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현재는 56세대가 분양을 원하고 있으므로 당초 포기서를 조금만 관심을 갖고 검토했더라면 위조 여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을 것임. 임대아파트의 경우 5년이 경과하면 분양권을 주어야 하는데 이 아파트의 경우 10년이 지나서야 분양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1년내 임대료를 5%이하로 올리더라도 구에 신고는 했어야 하는데 정립의 경우 총 5차례 임대료를 올리고도 단 2차례 신고를 하였음. 관련부서의 대처가 아쉬움. 또한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되 않아 많은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구성되도록 홍보와 행정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③ 광고물 게시에 따른 뚜렷한 기준 확립

국제외국어고등학교 유치와 관련하여 각급 단체, 기관, 통정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기 다른 여러 단체에서 지정게시판이 아닌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 홍보하였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에 의하면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러한 단체 등이 설치하는 광고물이 이에 해당되는 지는

제5장 행정사무감사

신중히 판단하여 일관성과 형평성에 맞게 광고물이 관리되어져야 할 것임.

④ 화봉지구 택지개발 관련 민원 최소화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화봉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공사차량들이 소방도로를 이용하여 진출입하고 있어 소음, 분진, 교통체증, 어린이 안전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방도로가 아닌 별도의 진입로를 만들어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

5. 생명산업과

① 강동수산물 축제 관련

강동수산물 축제는 다양한 체험행사 위주로 진행되어 축제다운 축제가 되었음. 본 축제의 경우 상인을 위한 축제가 되어야 하며, 준비를 위한 축제준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수산관계자 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며, 축제 후 평가보고서 작성에 있어 부문별 위주로 작성되어 전체 축제에 대한 목적달성도를 알기가 어려웠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주요내빈에 행사를 맞추다보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므로 의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도 강구해 보기 바람.

保 健 所

議 會 事 務 課

① 의원 의정활동 보좌 강화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문스크랩 방법에 있어 집행부와 상의하여 스캔을 떼서 보관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하여 회기별로 정리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또한 각종 동향파악을 철저히 하여 의원들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민원관리에 있어 월별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제7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 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서,
- 2007년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344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각종 정보와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여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였음.
- 감사의 중점 방향으로 구정 전반에 대하여 그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거론되었거나 문제점이 도출된 각종 사안들에 대한 적법성과 주민의 요구가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감사를 실시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었던 사항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직도 주민을 위한 소신있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행정은 무엇보다 구민들에 대한 신뢰성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예산집행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고 대안이 제시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
- 각종 사항별 감사지적 사항으로는 총 110건이며 시정요구사항 77건, 건의사항 33건으로서 지적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조치하기 바라며, 그 처리결과를 2007년 8월 31일까지 보고하기 바람.

제8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공통사항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직무교육실시》 ○ 일 시 : 2007. 8. 30(목)15:00 ○ 장 소 : 구민대화의 방 ○ 대 상 : 실과소 주무담당 차석(17명) ○ 교육내용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공통지적사항에 대한 직무교육실시			
공통사항 (시정)	①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철저 대부분의 부서에서 조례로 규정된 “주민참여감독자”를 임명하여 운영하는 실적이 미미 하였음. 주민참여 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일반건설공사”임. 주민과 밀접한 공사의 경우 지역현황을 잘 알고 있는 주민을 참여시켜서 부실공사를 막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적이 저조하므로 시정이 요구됨.	○주민과 밀접한 공사 시행시 “주민참여 감독자”를 적극 임명토록 전실과 교육 실시. ○착공시에 주민감독제 시행을 발주부서에 명시하여(회계정보과) 감독제 시행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음.	추진중
	②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 보조금정산을 보면 부서마다 서식 다름. 표준서식을 만들어서 시행. 사회단체보조금은 담당부서와 예산부서의	○사회단체보조금의 정산서식은 동일하나 민간경상보조금의 정산서식을 부서별 달리 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추진중

제8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검토 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됨. 삭감된 부분 등에 대해 단체에 의회에서 무조건 삭감하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므로 충분한 이해와 설명이 되도록 하기바람.	서식으로 통일토록 부서에 요구토록 하겠음.	추진중
공통사항 (시정)	③체납정보 공유를 통한 체납세 확보 노력 체납정보가 각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어 체납자에게 인·허가를 해주는 사례, 토지보상금 지급 등 불합리한 점이 있음. 금융기관처럼 정보온라인을 구축한다면 인·허가 시 고질적 체납자를 조회하여 인·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고 체납세 징수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시스템구축은 신규시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임(회계정보과) - 사업기간 : 2008. 1~3월 - 주요내용 :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내역 통합조회 의뢰 - 체납확인시 담당자 PC에서 즉시 납부고지서 출력 등 - 활용대상 : 민원업무 (인·허가, 신고, 제증명) ○ 인·허가시 체납세 조회를 통하여 관허사업 제한을 실시하고 있음. - 지방세법 제40조 관허사업의 정지 취소	추진중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공통사항 (시정)	④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철저 ○자료작성이 불성실하게 작성되어 감사자료 검토 시에 문제가 많았으므로 감사자료 임을 감안하여 작성에 오류를 최소화하기 바람.	○자료작성시 오류·오타 최소화를 위하여 자료제출전 전 직원 릴레이식 자료검색 및 검토자의 검토철저 등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건의)	①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업무 분배 및 배려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어떤 특정인에게 집중되어 과중한 스트레스로 인한 행정효율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업무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직원들의 업무분배는 부서장의 권한임. ○직원상호간 적절한 업무배분이 되도록 9월 월간 업무보고시 실과·소장에게 지시.	추진중
기획 홍보실 (시정)	① 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 ○지역에 있는 전문성을 지닌 여성을 적극 발굴하여 새로이 구성되거나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의 경우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 강구	○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방안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임기만료, 결원발생시 위촉위원의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해당부서에 분기별 통보하고 있으며,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완결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기 획 홍보실 (시정)	②무기근로자 전환대상자 재검토 ○2006년 8월 2일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토록하여 우리 구에서 무기근로자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시에 보고한 상태임. 우리구의 경우 “방문보건사업”을 수행하는 간호사, “체육시설 관리자”, “도서관 업무보조자”, “녹지작업단”등에 대해서는 무기근로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총액인건비제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무기계약 전환기준 대상자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근속기간이 ‘07. 5. 31. 현재 2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 • 우리구의 경우 - 녹지작업단과 방문보건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상시적·지속적 업무이나 정부의 복지, 실업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 제공인력으로 서 제외사유에 해당되나, 보건복지부에서 무기근로계약자로 전환을 계획추진하고 있음 - 체육시설 및 도서관 등 업무보조는 상시·지속적 업무이나 업무량으로 보아 상시인력 배치보다 시간대별 교대근무가 더 필요하며, - 환경정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문화재 관리업무는 상시업무의 성격보다는 일시적인 업무성격이 강함. ○향후 정부의 무기계약 전환기준집행지침 시달시 검토하겠음.	추진중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기 획 홍보실 (시정)	③국제외국어고 유치지정 관련 ○국제외국어고 유치에 전 행 정력을 집중하였으나, 울산 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와 의 협의문제와 재정문제로 현재 답보상태에 있음 ○추후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치밀하고 충분한 검 토 후 추진토록 바랍	○울산국제외국어고 유치 관련 교육청 방문 •방문일시 : 7. 30(월) •내용 : 기획관리국장, 교육 국장, 행정과장 등과 면담 하여 조속히 결정토록 건의 ○향후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예산 및 재정여건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신중히 추진하겠음.	추진중
	③ 평생학습도시 지정관련 ○평생학습도시 중요한 평가 기준인 “기업투자”, “민간자 율 참여”가 중요하게 다루 어졌는데 우리구의 경우 현 대자동차와 협약서 체결 및 학교와의 네트워크 구성이 안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 을 것임. ○향후 모든 시책이나 사업추 진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 고 주도면밀하게 준비하여 내년에는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평생학습도시 추진상황 •‘07.6.11 : 평생교육조례 제 정(공포) •‘07.6.19 : 평생교육협의회구성 •‘07.6.28 : 교육부 현장평가 •‘07.7.15 : 평생학습도시 선언 ○2007년도 평생학습도시 선정 의 주된 평가 기준은 전담조 직, 전담인력, 조례제정, 협의 회구성, 네트워크 구축 등 추진체제 기반구축 여부에 중점을 두었음 ○‘07.5.4 현대자동차, 강북교육 청과 평생학습도시 추진 협약 체결 검토공문을 송부하였으	추진중

제8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기획 홍보실 (시정)		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지 못하였으나 교육부 의도를 간파하여 대처토록 노력하겠음. ○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에서 현대자동차, 강북교육청간의 네트워크는 필수적이므로 협약을 이끌어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④ 「울산광역시 복구 구보조례」 위반 ○ 「울산광역시복구구보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정소식지명을 “희망복구”에서 “행복일번지 울산복구”로 개정하여 발간한 것은 조례위반으로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요구	○ 추진배경 • 민선 3기 구정목표인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복구”에 부합되도록 변경 ○ 추진내용 • 소식지 명칭 변경 공모결과 “행복일번지 울산 복구”로 채택('06.8.30 ~ 9.6) • 소식지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 개정('07. 7. 16) • 휴대하기 쉽고, 보다 알찬 생활정보지를 만들기 위해 책자형으로 발행형태를 바꿈 (2007년 1/4분기부터) ○ 향후계획 • 앞으로는 개정된 조례를 준수하여 발간하겠음	추진중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기 획 홍보실 (시정)	⑤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관련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에 있어 사전에 담당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즉흥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화봉 제2어린이공원에서와 같이 규모가 비교적 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되어야 이번과 같은 부실시공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규모가 작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옳을 것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은 주민이 요구하는 긴급한 보수 및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만 집행하도록 사업부서와 협의하겠으며 향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사고 및 재해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 편성후 시행도록 하겠음.	추진중
	⑥내실 있는 대형공사 구민 감시관제 운영 ○5억이상의 대형공사의 경우 구민감시관을 임명하여 공사를 감시하고 있는데 이들이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감시관들에 대하여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하면 감시관제가 본래의 기능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임.	○전 실·과·소·동에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제도 시행철저」 공문을 발송하여 구민감시관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당부.(2007. 7. 12)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위촉통지 시 구민감시관제도 안내문을 활용하여 감시관의 역할과 처리절차 및 활동사례 등을 교육.(2007. 7. 23)	추진중

제8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총무과 (시정)	① 업무추진비 투명성 제고 업무추진비가 투명하다는 것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총무과 업무추진비는 주별로 제출되어 원활한 감사활동을 저해하였음. 울산시민연대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한 상태이며, 반드시 내역에 대한 공개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향후 업무추진비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것임.	○ 업무추진비는 구청 홈페이지에 일자별로 공개를 하고 있는 사항이며, ○ 울산시민연대의 정보공개 청구권에 대해서는 부분공개결정(2007.8.3)을 통보, 10월초까지 공개예정임. ○ 향후 업무추진비 공개의 보다 나은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중
	② 가로기 꽃이 관리 철저 각종 국경일, 기념일, 중요행사 시, 민방위의 날 행사 시 가로기를 게양 하고 있으나, 가로기 꽃이가 파손된 곳이 많고, 높낮이가 맞지 않아 차량소통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 조치바람.	○ 가로기 꽃이 관리 강화 지시 • 2007. 8. 14(전동) ○ 2008년도 당초예산 확보계획 • 훼손 및 신설가로기 꽃이 파악(훼손 : 203개, 신설 : 256개)	추진중
	③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확대 각종 주민자치위원회의 남·여 구성 비율을 보면 여성비율이 저조한 실정임. 여성 참	○ 여성참여 비율 확대에 따른 조치 계획 시달 : 2007. 8. 2	완결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총무과 (시정)	여 비율이 적은 4개동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참여 비율을 높여나가야 할 것임.	• 지속적으로 여성위원 위촉 확대(남성위원 해촉시, 임기만료시, 적임자 발굴시) • 해당동 : 농소3동, 강동동, 송정동, 양정동	완결
총무과 (건의)	①설치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 강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자치센터 본래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사항에 대해 현재 각 동 자치센터에서 한 두개의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호응도 좋은 실적이므로, 계속 활성화 되도록 인센티브 강화에도 노력해 주기 바라며, 자치센터 운영평가를 통해 시상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어져야 할 것임.	○우수 주민자치센터 인센티브 제공 • 11월중 주민자치센터운영 평가 실시 • 평가 후 우수 주민자치센터(1~3위) 선정 : 연말(종무식) 시상 ※동에서는 평가에 대비하여 평소에 증빙자료 준비토록 조치	추진중

제8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회 계 정보과 (시정)	①북구생활체육협의회 구청 별관 무상사용 관련 ○북구 생활체육협의회의 구청 별관 무상사용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2008년부터는 유상대 부 또는 이전조치하기 바람.	○2008년도는 유상대부 또는 이전조치 하도록 통보하였음. (회계정보과-10954, '06.12.28) (회계정보과-16442, '07.8.24)	추진중
(시정)	② 구청 홈페이지 관리 철저 ○구 홈페이지의 경우 의원현황 이 제각각이고 구인·구직, 생 활경제 등 내용이 알차지 못 한 실정임. ○클리어노사민원센터 등 구 역 점사업에 대한 자료내용이 미 흡한 실정임. ○관련부서에 자료제출 독려 또 는 게시물을 정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자료가 홈페이지에 게재 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전 반에 대한 보강 노력이 요구 됨.	○홈페이지 자료관리 계획 수립 · 시행 ('07. 7월) ○자료 전면대사 실시 : 7. 30 ~ 8. 10 - 오탈자, 오류사항, 변동사 항 전면점검 및 수정·보 완(60건) - 장기간 미활용 콘텐츠 삭 제(2건) ○부서별 자료관리 책임제 운영 - 콘텐츠별 자료 관리부서 를 지정하여 정확한 자료 관리 유도 ○자료별 관리주기(일별, 월별, 분기별, 연간)를 분류하여 정 기적 정비실시 ○클리어노사민원센터 자료 보강(8. 8) ○노무 상담안내 및 사이버상 담 신청, 법률교육 신청방법 등 상세안내	완결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회 계 정보과 (시정)	③구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 ○ 장애인 화장실 3개소 “사용중” 전등 미점등되어 있어 꾸준한 관리 필요 ○ 1층 장애인 화장실 앞 파티션 설치로 전등을 켤 수 없어 장애인 화장실 스위치를 입구에 설치 하는 방안 강구 ○ 장애인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안내를 위한 점자블럭 설치. 만약 시각장애인용 무인발급기가 무용지물이라면 민원실 안내 창구로 안내할 수 있는 점자블럭 설치	○ 보건소·문화예술회관 장애인 화장실에 미점등된 전등 및 “사용중” 표시 등은 7월초 수리 완료 ○ 구 본청은 매주 확인·관리하고 있으며, 보건소, 문화예술회관은 ‘07. 7. 18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통보 ○ 1층 장애인 화장실 이용 편의를 위한 파티션 제거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사출입구에서 당직실까지 점자블럭 설치 검토	추진중
(시정)	④기존 관용차량 매각 등 검토 ○ 구 통근버스 노후화 등으로 수리비용 등이 예상되므로 매각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것임. 주민의 편의나 활용도를 감안 하여 사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함.	○ 도시팽창 등으로 구·동 주관 행사규모 및 참여인원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행사기간동안 직원 및 주민 수송용으로 구 통근버스의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계속 사용할 계획임.	완결
회 계 정보과 (건의)	⑤동사무소 업무용 차량구입 배치 ○ 각동에 청소, 야외행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차량 배치	○ 동별 행사지원이나 긴급출동시 차량이 꼭 필요한 실정이므로 차량구입을 위한 예산 반영토록 총무과 통보조치 [회계정보과-13853(‘07.7.18)]	완결

제8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⑥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계약확대 ○수의계약 공사의 경우 우선적으로 우리 구 소재 업체에 맡기는 것이 지역업체의 경쟁력 향상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지역업체와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의 공사로 대부분 전문건설업에 해당되며, 울산 전체 940개 등록업체 중 북구 소재 업체는 27개로 등록업체가 타 구·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이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리 구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우선계약토록 하겠음.	완결
	⑦계약심사제 탄력적 운영 ○계약심사의 목적이 예산절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어야 함.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로 집행한 화봉 제2어린이공원 부설시공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절감에만 치중하지 말고 공사의 경우 꼭 필요한 예산의 경우 충분히 집행되어 부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심사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바람.	○계약심사제 탄력적 운영 ○사업별 특성과 현장 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종합적, 분석적 측면에서 접근 ☐ 원가계산 및 설계의 타당성 위주 심사 ※임의적, 일률적 삭감지양 ☐ 공종별 단위 물량 반영 시 적정성 위주 심사 ※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 ☐ 경쟁입찰 시 낙찰하한율을 고려하여 탄력적 심사 ※자재의 경우 최저 견적을	완결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지양하고, 설계가격이 반영된 전문기관 공표 가격 상호 비교 적용(물가정보, 거래가격, 유통물가 등) ○심사기법의 노하우 축적을 위한 원가계산 전문기관 교육 이수 - 상반기 이수완료 : 3회, 3명 - 하반기 이수계획 : 3회, 3명 ○현장 노하우 수시 습득을 통한 심사의 전문성 확보	완결
회 계 정보과 (건의)	⑧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노력 경주 ○기적의 도서관 청소용역업체에서 최저임금제를 위반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구도 일 정부분 책임이 돌아올 수 있으므로 용역설계서와 계약서상에 최저임금 보장을 명시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008년도 청소용역 계약 시 설계서와 계약서상에 최저임금 보장 조항을 명시하여 계약하도록 하겠음.	완결
(건의)	⑨농협 현금지급기 운영시간 연장 협의 ○현재 은행 업무시간에만 운영하고 있는 농협 현금지급기 운영시간을 구청 야간 방문객을 위하여 연장하는 방안을 농협과 협의하여 주기 바람.	○농협중앙회 양정지점 울산북구청출장소 의견조회 결과, 구청업무 마감시간(18시) 이후 현금지급기 이용객이 거의 없으며, 운영시간 연장시 별도의 공간과 추가공사가 필요하므로	

제8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함.(울산시 관내 공공기관 365코너 설치기관 없음.)	완결
지방세과 (시정)	① 과오납 최소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과오납 최소의 경우 금년도에도 여전히 줄지 않고 있으므로 다양하고 신선한 납세제도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자동차세 일할 계산제, 연납제도 등 납세자위주의 법령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오납건수 증가 추세 ○ 행정착오 과오납에 대해서는 직원 업무연찬(분기 1회) 실시로 최소화 ○ 지방세 안내책자 배부 및 납세제도 교육을 확대 시행하고 아파트 게시, 인터넷 홍보활동 병행 추진	추진중
지방세과 (시정)	② 고액납세액 고지방법 다양화 30만원 이상의 고액 고지서의 경우 등기로 발송하고 있으나 납세자가 등기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 본인의 납부 의지와는 상관없이 납부기한을 넘겨 증가산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고지서는 일반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으며, ○ 최근 맞벌이부부 증가 등으로 주간 등기우편물 전달에 애로가 많고 부전지 부착 및 2회 전달시도 후 반송될 시 주소이전 확인 재 송달 ○ 납기한전 미송달 건에 대해 거소 유무, 연락처 등 소재 파악을 보다 철저히 하여 재차 전달후, 공시 송달 절차 이행	추진중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민원 지적과 (시정)	①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도로명 변경 도로명 및 새주소 부여사업의 경우 사업초기 주민의견수렴시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통정회원위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지역성만을 강조 현실을 외면한 측면이 있음. 다시 한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하여 주민혼란을 최소화 하고 도로명에 대한 고시·공고전 정확한 실태파악으로 주민누구나 알기 쉽게 부여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부적절한 도로명의 변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안내 홈페이지 게재 ○접 수 : ~ 10. 30 까지 ○접수된 도로명 재검토 및 부적절한 도로명 의견수렴 후 한글학회 검증을 받아 지명위원회 심의결정 ○고지·고시전 조치예정 ○각종회의시 홈페이지 게재안내 및 홍보(각동에 협조 요구)	추진중
	②건물번호판 관리 철저 건물번호판의 경우 아크릴판으로 제작되어 본 사업이 시작된 지 오래되어 탈색된 곳이 많고, 훼손된 곳이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시·공고 후에는 건물주가 교체해야 하므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교체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부착시에는 떨어지지 않도록 반영구적으로 부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탈색, 훼손, 착오부착 등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연내 조치계획 ○구 홈페이지 게재 안내 ○각종회의시 주민신고 또는 전화 접수시 일괄 조치계획(연내)	추진중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민원 지적과 (건의)	③효문공단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관하여 효문국가공단내 편입된 토지소유자들은 보상이 끝나면 타 지역으로 이주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본인 소유의 토지가 편입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안내(홍보)가 필요할 것임. 또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본 지역의 경우 보상 후 이주가 결정된 지역으로 도시계획상 도로부지의 경우 이주를 하지 않는 지역과 동일한 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합리할 것임. 이주를 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 향후 도로개설 후 어느 정도 이득이 예상되어 당초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작게 받더라고 문제가 없지만 이주하는 지역은 보상의 산정항목에 포함되는 개별공시지가가 낮아 보상도 작아질 것이고 도로개설 후	○ 효문국가공단내 편입토지 안내(홍보) 및 보상지역을 감안한 적절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 편입토지 안내(홍보) '07.6.1일 울산효문 공장용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 후 6.14일 재해영향평가 초안내용 주민설명회 신문공고 및 6.21일 주민설명회 개최하였으며, 실시계획 보완 승인신청(10월 예정) 후 실시계획(안) 신문공고 및 의견수렴할 계획에 있으며, (자료제공 : 한국토지공사) 또한 일부편입 토지에 대해서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지구계분할신청을 받아 분할정리 및 등기축탁후 토지소유자별 개별통지(분할사유 기재) 하였음. ○ 보상지역을 감안한 적절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가. 현 관계법령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건설교통부)에는 보상지역 예외규정을 두어 별도로 산정·검증하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완결

제8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이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특수한 지역의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특수성이 인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기 바람.	나. 그러나 향후 개별공시지가관련 워크숍, 세미나, 근거법률 개정애 따른 의견수렴 시 적극건의 및 의견제출을 하도록 노력하겠음.	
민원 지적과 (건의)	④ 구민위주의 민원실 운영 우리구의 경우 예산절감 및 민원안내 효과성 때문에 민원안내도우미를 배치하지 않았다면 창구 앞 직원들에 대한 친절 및 안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들이 거리낌 없이 민원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민원 응대요령 및 친절교육 실시 • 일 시 : 2007. 8. 22(수) 17:30 ~ 18:00 • 참석인원 : 총22명 • 강 사 : 민원지적과장 • 교육내용 - 업무연찬을 통한 전직원 민원도우미로서 응대요령 및 친절교육 실시 -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과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친절하게 응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실시 *매월 친절교육 실시예정	완결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환경 위생과 (시정)	① 마을상수도 내 지방상수도 인입을 위한 방안 강구 - 마을상수도 44개소 중 15개소 시 상수도 설치되었으나 인입기피로 관리 예산과 인력 낭비요인이므로 지원 중단 필요	- 지방상수도 인입지역내 급수신청을 기피하는 이유는 100만원 내외의 급수신청비용과 수도사용료 부담으로 주로 연령이 높은 독거가정이 대부분으로 수질이 양호한 이상 일방적인 폐쇄조치는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현재 상수도 인입지역의 지원은 없는 상태로 향후 급수신청토록 지속적으로 지도 및 홍보토록 할 것임	완결
	② 바깥시례 마을상수도 문제 해결 방안 강구 - 바깥시례 계곡수 배관설치 및 시 상수도 설치 요망	- 계곡수 미공급 가구에 대한 배수관로 공사는 현재 공사입찰 중으로 9월 중 완료예정이며 2008년 성혜마을 상수도 인입시 바깥시례마을까지 인입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였음	추진중
	③ 마을상수도 웅스 및 잠금장치 설치	- 22개소에 대한 현장조사 후 웅스 또는 잠금장치 설치를 당초 예산 범위 내에서 9월 중으로 설치 예정	추진중
	④ 공중화장실 관리철저 - 최근에 설치된 매봉재 화장실의 경우 진입로가 흙으로	- 매봉재화장실 쾌적부설 완료 • 완료일 : 2007. 7. 31	

제8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환경 위생과 (시정)	되어 있어 우천시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쾌석을 깔 수 있도록 조치하고 화장실 시건장치에 대하여 점검해 보기 바라며, 관련부서(농림수산과)와 협의하여 염포산 팔각정 화장실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같이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쾌석량 : 10m³, 약5cm - 화장실 시건장치 • 점검완료 : 2007.7.31 - 염포산 팔각정 화장실 관리 • 주민들이 화장실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설치한 화장실로 소관부서(도시녹지과)에 관리 철저토록 통보 (환경위생과-17737('07.7.31))	완결
	⑤의료채취방법 준수	- 수도꼭지 화염멸균 등 의료채취방법 철저 준수토록 하겠음	완결
	⑥오존관련 대기환경 오염원 최소화 - 관내 차량수에 비해 배출가스 단속건수가 너무 적음 - 농소1동과 효문동에 대기오염 측정망 측정결과 오존과 미세먼지 수치가 기준치 초과횟수 많음 - 배출가스단속을 강화와 공사장 비산먼지 지속적인 단속 실시	- '07. 7월 기준 차량등록대수는 60,283대로 전체의 15% 정도로 수시단속 건수는 저조하나 등록된 모든 차량에 대하여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고 있음 • '07년 상반기실적 : 9,320대 (92.7%) - 대기측정망 운영결과 오존 및 미세먼지 수치가 높게 나타난 것은 해풍등에 의한 지정학적인 영향등 기타 요인인 것으로 판단됨	추진중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환경 위생과 (시정)		-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 ('07. 1. 25) • 상반기실적 : 85개소(120%) - 기타 오존 및 황사로 인한 대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리플렛 제작배부 홈페이지 홍보 등 조치완료 -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지속적 단속 실시	
환경 위생과 (건의)	①학교앞 유해환경 단속을 위한 제도개선 - 초등학교 인근 문방구 슈퍼에서 판매하는 과자류 등에 기준에 대한 관련 규정 개정 요구	- 식품첨가물공전에 규제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은 식품에 사용 할 수 없으며, 식품첨가물사용 및 허용기준 위반 시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기준과규격)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의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로드맵” 제도를 도입하고, 어린이가 즐겨먹는 과자류, 아이스크림류, 음료류 등에 사용되는 타르색소(적색 2호)를 전면 사용금지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개정안을 입안 예고 중임	추진중

제8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주민생활 지 원 과 (시정)	①소외계층에 대한 대민서비스 활동 강화 2006년 7월 1일자 8대 서비스 강화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직개편이 이루어짐으로 써 사회복지직이 4명 충원되었 음. 동사무소 사회복지직의 경 우 직원 혼자서 동 전체의 사 회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실제 대민서비스보다는 행정업 무에도 벅찬 실정이므로 행정 업무를 줄이고 대민서비스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동 사회복지직 대민서비스 주력 - '06.7.1일 조직개편이후 8대 서비스강화로 사회복지직이 4명 증원되었고, 동사무소의 경우 종전에는 사회복지직 1명이 복지업무를 담당하였 으나 06. 7. 1 직제 개편이 후 동사무소의 복지업무 담 당자를 2명(사회복지1, 행정 1)으로 증원시켜 저소득층 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담당 하도록 하고 있음.	완결
	② 성혜마을 공동취사장 설계 도면 확보 공동취사장 애찬관의 경우 2003년도에 시에서 포괄사업비 로 건립한 시설로 현재 부실공 사로 인한 보수가 필요하여 예 산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효과 적 보수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당초 설계도면 이 필요함. 시에 도면이 있는 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없을 경우 설계발주처에 문의하여 설계사무소에서라도 도면을 확보해야 할 것임.	○성혜마을 공동취사장 도면확보 - 성혜마을 공동취사장은 건축 당시 시공업체의 부도로 공 사 준공에 상당한 어려움 이 있었으며, 그동안 조직개 편 등으로 관리부서와 담당 자가 수차례 바뀌었고, 준공 된 지 4년 이상 시간이 지 남에 따라 도면 보관이 불 분명하여 현재 관련부서 및 울산광역시, 설계사무소 등 에 도면보관 확인 중에 있 음	추진중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주민생활 지 원 과 (시정)	③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집행 및 관리 철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출내역에 있어 자부담 10,000천원 중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교사 인건비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하는 것은 회계상 명백한 오류임.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선 자부담분에서 처리하는 것이 옳을 것이므로 시정하기 바라며, 자원봉사센터 인력이 본연의 자원봉사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집행 - 호계 및 양정공부방(지역아동센터)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나, 교사의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선 자부담에서 지급토록 하겠으며, 소속직원들은 본연의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음.	완결
	④푸드뱅크사업 운영 철저 구청에서 본 사업을 직영으로 추진할 때와 위탁운영 시를 비교해 본 결과 지원품을 배부하기 수월한 시설위주로 지원하고 있어 실수요자인 저소득층 개개인에 대한 배부는 거의 없는 실정임. 푸드뱅크사업의 경우 배분의 형평성, 관리투명성 제고, 적재적소 배분 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기존의 유기적 네트워크망이 무너진 상태이므로	○2007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대책을 07. 8.10까지 제출토록 자원봉사센터소장에게 지시하였음. - 주민생활지원과-14405 (2007. 8.2) ○푸드뱅크 지원품 적절 배분 - 푸드뱅크 지원품 시설위주 배분지양, 저소득층과 시설 등 적재적소에 배분토록 지도·감독 강화하겠음	완결

제8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주민생활 지 원 과 (시정)	운영위원회 활성화 및 자원봉사단체와 개인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푸드뱅크 지원품으로 바자회를 여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시정하기 바람.	○푸드뱅크 공급 네트워크 정비 - 푸드뱅크 공급 및 자원봉사자의 전산시스템 입력을 통한 네트워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규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등을 통하여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음. ○푸드뱅크 지원품 바자회 - 푸드뱅크 지원물품으로 바자회개최는 푸드뱅크 사업 취지에 맞지 아니함으로 앞으로 지원물품으로 바자회를 개최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음.	완결
주민생활 지 원 과 (건의)	①장애아 통합놀이시설 사업 취소 관련 현대·기아차가 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한 예산에 대해 사전협의 문제와 사업의 시행주체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사업권이 취소된 것은 경위야 어떻게 되었던 이 시설에 대하여 큰 기대를 갖고 기다려온 장애아들을 생각해 볼 때 매우 안타까운 일임. 어울림복지재단의 경우 비록 시설의 소유권자인 북구청과	○장애아 통합놀이시설 설치 - 장애아동 통합 놀이시설은 현대 자동차에서 건립하여 기부채납 예정인 종합복지회관에 일정부분 공간을 확보하여 시설이 수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공문으로 통지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완결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주민생활 지 원 과 (건의)	사전 사업신청에 따른 협의는 하지 않았으나 공모를 통해 어 렵게 확보한 사업이니 만큼 사 업을 직접 해야 한다는 입장과 북구청의 경우 시설운영에 따 른 위탁을 준 것이지 시설자체 를 위탁준 것이 아니므로 구에 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 장이 팽팽히 맞서 결국 사업비 가 반납되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음. 서로 조금씩 만 양보했더라면 이러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향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을 강구하기 바라며, 무산된 장 애아 놀이시설이 반드시 건립 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아들의 열망을 채워주기 바람.		완결
	②공무원 자원봉사자 적극 참여 “with family□□작은 봉사 큰 기쁨 시책과 관련하여 공무원 가족 참여는 14가족 32명으로 저조한 실적임. 주5일제 시행 으로 여가시간이 늘어난 만큼 좀 더 많은 공무원가족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와 인센티브 제공에 노력해 주기 바람.	○공무원 자원봉사 적극 참여 - 2007년 4월부터 시행한 공 무원시범 자원봉사 및 공 무원 가족 자원봉사활동 은 신규사업으로서 당초 계획시 월1회 30명이며 8 월 현재 6회 111명이 참 여하였음.	완결

제8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주민생활 지원과 (건의)		- 공무원이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동아리 활동을 적극 권장토록 하겠음. - 내년부터는 우리 구 전직원이 년1회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장치를 마련토록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공무원이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겠음	
복지 서비스과 (시정)	①주제에 맞는 여성주간행사 개최 여성주간행사의 경우 여성의 권익신장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그러나 매년 행사가 식전행사, 기념식, 특강, 화합한마당 등 늘 틀에 박힌 행사가 되고 있으므로 좀 더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주제와 목적에 맞게 일선에 있는 단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금년행사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후 ○ 다음연도 계획수립시 시정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알찬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도록 추진함	추진중
	②보육시설 지도·점검 강화 농소 3동에 위치한 H어린이집 원아 사망사건과 잇따른 어린이집 사건사고가 발생하였음.	○ '07.7.12~7.23까지 10일간 20개 시설에 하절기 급식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추진중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복지서비스과 (시정)	지도점검을 강화하되 한번에 모든 시설을 점검하기보다 나누어 꾸준히 점검하는 것이 세밀하게 점검할 수 있을 것이며, 되풀이 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중과 처분하여 앞으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임.	○ '07.7.13 지도·점검 강화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및 상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고, ○ 학부모모니터링단 구성을 추진하는 등 향후 이러한 사건·사고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강화하고 있음	추진중
	③홈페이지 자료 보완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에 대해 확인한 결과 어린이 집 현황에 있어 24시, 24시간 등 연장보육시설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할 것이며, 여성정책사업의 내용이 부실하며, 여성 통계인구를 보완하여야 할 것임.	○ 홈페이지에 24시간 보육시설을 포함한 시간연장형 시설에 대한 내역을 즉시 정리하였으며 ○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12시까지 보육이 가능한 시설 4개소에 대하여 안내함으로써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비 완료함	완결
	④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재배치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어르신들이 일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일자리사업 발굴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일자리전담인력은 노인복지회관 2명, 구청 1명,	○ 3개 사업수행기관 북구청, 노인 복지회관, 노인취업지원센터에서 9개 사업 471명이 일자리사업 참여하고 있으며,	추진중

제8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복지서비스과 (시정)	노인지회 1명 등으로 배치 기준에 부합되도록 재배치 하기 바람.	○전담인력 2명을 구청에 배치 한 것은, 올해 일자리 사업 중 48%인 227명의 어르신이 구청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사 업에 참여하고 있고, 환경가 꾸미사업의 경우 4개과, 4개 사업, 202명, 시설입소 어르 신 말벗서비스의 경우 6개 시설, 25명의 어르신이 참여 하고 있음에 따라 전담인력 을 2명 배치하게 되었으며, ○국고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10월말까지 추진계획에 있으 므로 현재의 전담인력을 재 배치시 예산집행 및 사업추 진의 혼선이 예상되므로, 내 년도 사업 추진시 적극 검토 토록 하겠음.	
	⑤ 한부모 가정 캠프 행사 재위탁 금지 한부모 가정캠프 행사의 경 우 M단체에 위탁하였으나 M 단체에서 이벤트 업체에 하청 을 주어 행사를 하였으므로 추후로는 이와 같은 일이 재 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사업자 선정시 추진계획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하겠으 며, 각종행사 추진시 재위탁 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 하겠음.	완결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복지서비스과 (시정)	⑥ 노인복지회관 예산지원 확충 노인복지회관의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2006년도까지 2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올해 2007년에는 2억원만 지원하였음. 작년보다 예산이 5천만원 적게 지원됨으로써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음. 노인보건복지사업 지침에 의하면 “다”형 복지관 예산지원 기준은 최소 2억 5천만원으로 올해의 경우 5천만원 적게 지원된 것임. 우리와 유사한 타구 예산과 비교해 보더라도 제일 열악한 실정이므로 지침에 의한 최소 예산이상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작년과 비교해 보면 예산이 삭감되어 적은 편이지만 종사자를 10명에서 7명으로 감축에 따라 줄어든 예산이며, 타구군의 시설에 비해 종합사회복지관 등 유사사회복지시설이 연접지에 있어 예산 절감 차원에서 2007년에 처음으로 5천만원의 예산을 줄여 2억원을 지원하였음 ○올해 시설 운영에 대한 검토 평가에 따라 내년 당초 예산 편성 시 반영 강구토록 하겠음.	추진중
	⑦ 농소어린이집 건립 공사 미비사항 보완 농소어린이집 건립관련 현장 확인 결과 어린이집 외부경계에 나무 식재하지 않아 경계가 모호하고, 2층 문턱이 너무 높아 어린이들이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며, 2층 화장실 소변기가 어린이용이	○농소어린이집 외부경계에 통로를 제외한 부분에 사철나무를 식재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였고, 2층 보육실 문턱은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없도록 경사를 완만히 하였으며, 2층 화장실 소변기는	완결

제8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복지서비스과 (시정)	아닌 일반용으로 되어있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난간대 높낮이가 맞지 않아 어린이 안전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외부 잔디식재 부분이 흩으로 되어 있어 물이 잘 빠지지 않을 것이므로 마사로 교체하는 등 개원 전 이러한 모든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완하여야 할 것임.	당초부터 일반용이 아닌 어린이용으로 설비되어 있었으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난간대 높이는 어린이 높이에 맞도록 하향조정 보완하였음. ○외부 잔디식재 부분은 우기시 현장 확인 결과 자연배수가 잘 되고 있고, 잔디 활착을 위하여 현상태로 유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완결
복지서비스과 (건의)	① 연장보육시설 확충방안 강구 연장보육시설의 경우 대부분 저소득층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연장보육시설을 확충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국·공립어린이집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사립 어린이집 원장들에게도 연장보육시 국가지원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하여 연장보육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의 경우 시간연장 보육교사 1명의 인건비를 월1,000,000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을 전 보육시설에 안내하여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각종 시설장 회의 및 설치등록시 적극적으로 안내토록 하겠음	완결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복지서비스과 (건의)	② 12세가 넘는 장애아를 위한 시설 건립 현재 12세가 넘는 장애인이 갈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중앙부서에 건의하여 우리구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하면 보육시설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만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바, 현재로서는 해결은 어려우며 ○ 12세가 넘는 장애아를 위한 관내 장애인시설로는 태연재 활원외 12개소의 장애인시설에서 재활치료, 사회교육, 상담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완결
문화체육과 (시정)	① 문화예술회관 화장실 관리 철저 - 1층 외부화장실이 주민들을 위해 야간에 개방하였으나 늦은시간 청소원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있고 이로 인해 화장실이 불결 · 2층 장애인화장실 문이 열리지 않아 장애인들이 전혀 사용할 수 없으므로 조속히 보수	○ 1층 외부화장실 청소 및 관리 1일2회 ⇒ 1일3회(오전8시, 오후1시, 오후3시) 및 수시이행 ○ 2층 장애인화장실 출입문 수리 완료	완결

제8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문 화 체육과 (시정)	② 쇠부리축제 개최방법 전면 재검토 - 예산에 비해 행사내용 부실, 행사 전면 재검토로 구에서 실시하는 방안 등 다각적 방법 강구로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	○ 쇠부리축제 지원조례 제정 추진 - 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 직접 구성으로 축제추진 방법 재검토 중 - 현재 조례규칙심의회 안전상정함	추진중
	③ 문화재 관리 철저 - 관문성 갑골무성, 안내간판 훼손 등 관리소홀 - 전체 문화재 14개소에 대한 전반적 관리대책 마련 시행	○ 문화재 안내판 일제점검 및 정비실시 - 점검일시 : 2007.8.21~8.23 - 점검대상 : 문화재 14개소 - 점검결과 • 안내판 도복·훼손·손괴 : 3개소 • 신규설치대상지 : 7개소 • 문화재주변환경 정비대상 : 2개소 - 조치사항 • 훼손안내판교체 : 3개소 • 쓰레기수거등 환경정비 : 2개소 ○ 향후조치계획 - 안내판신규설치예산확보 : 7개소 (16,000천원) - 하반기 문화재 풀베기 실시 : 9월중 - 문화재 상시관리인부 예산 확보 : 1명	추진중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문 화 체 육 과 (시정)	- 중산동 고분군의 경우 청결 상태불량 해소 및 개방으로 어린이공원과 함께 관리방 안 강구	○ 고분군은 문화재 보호구역으 로 지정되어 있어 개방불가하 며 주변환경정비는 수시로 실 시하겠음	완결
	④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 문화정책위원회 전체19명 중 6명만이 문화예술인으 로 구성 - 체육시설 사용허가 심의위 원회 구성에 있어 생활체 육협의회 소속위원이 많음 -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 으므로 시정바람	○ 문화정책위원회는 조례에 의거 문화예술에 관하여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전문인사, 문화 예술에 관련이 있는 기관·단 체의 임직원 등 기타 구청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을 위촉하게 되어 있음 현재 문화예술관련 위원은 12명으로 적정함, 향후 추가 (재)위촉시 문화예술인으로 위촉토록 하겠음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 조에 따라 위원장은 주민생활 지원국장이 되고, 주민생활지 원과장, 문화체육과장은 당연 직 위원이 되며,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추천 하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 는 4인 이내로 되어 있음에 따라 생체협 이사가 위원으로 구성됨.	

제8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문 화 체육과 (시정)	⑤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보완대책 강구 - 건립현장의 안내표지판 (조감도) 등이 잘 보이도록 조치바람 - 3층 성인열람실이 체육공원과 접해있어 소음 최소화 대책 마련 - 주차대수 14면으로 부족한바 확보방안 마련	○공사장 안내표지판 설치 : 2개소 - 주출입구 좌측 : 1개소(조감도 포함) - 게이트볼장 주변 : 1개소 ○도서관 전체유리는 22mm 복층유리(커튼월)로 시공하여 방음효과 및 기밀성이 확보됨 - 향후 기존조경수 이식때 열람실 부근에 수벽으로 밀실식재 예정임 ○현행법령상 시설이 공원면적의 20%을 초과할 수 없어 도서관부지내 추가설치 불가능 ○도서관 주변 무료주차장이 73면이 있음, 향후 주변지역 공한지 등을 조사하여 주차장 조성방안 강구	추진중
	⑥ 생활체육지도자 불합리한 수당 지급 금지 - 생활체육지도자는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수당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음. 자체 정리하여 주시기 바람.	○수강생이 지급하는 수강료는 주민자치센터의 수입이며, 생활체육지도자가 받는 수당이 아님. ○그러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하여 불합리하게 수당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음.	완결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문 화 체육과 (시정)	⑦ 어린이 대상 체육프로그램 투명성 제고 - 어린이체능교실에서 통장 자녀들이 참여한 경우에 대해서 해명바람.	○ 2006년에는 모범어린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어린이 순으로 선정하여 문제가 있었음. - 그러나 향후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린이,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어린이, 모범 어린이 순으로 참가하도록 하겠음. ○ 또한 사업 시행전 주민홍보를 통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겠음	완결
문 화 체육과 (건의)	① 달천운동장 조기 건립 추진 - 농소3동지역은 운동장 등 체육활동공간이 전무한 실정임 - 달천운동장 조기건립 관건은 GB관리계획승인이므로 시와 건교부에 적극 건의하여 사업 조기 추진	○ 현재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신청 추진 중에 있음. ○ 개발제한구역 2차 관리계획(2007년~2011년) 공고 이후 신청이 가능하나, 공고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사업시기가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음. ○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중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문 화 체육과 (건의)	② 문화공간협의회 지원방안 강구 - 문화공간지원이 중단된 상태임 - 평생학습도시의 교육인프라 구축에 부합하므로 지원노력바람	○ 문화공간지원사업은 구 신설초기 문화기반시설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었던 사업임 ○ 문화예술회관, 각동별 주민자치센터, 권역별도서관, 중앙도서관등 구 자체 문화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있는 상태로 지원사업 중단	불가
환 경 미화과 (시정)	① 중산동 음식물 자원화 시설 관련 -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당초 사업추진에 있어 미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용량부족 문제, 주거지에 인접한 장소에 시설건립, 검증되지 않은 시설, 전문가 참여 미비 등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시설이 건립되어 인근 주민들에게 막대한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안겨 주었음. 이러한 정책실패에 대하여 누군가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	○ 중산동 음식물 자원화 시설 관련 - 중산동 주민이 악취 발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 - 용역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치유하고 장·단기적인 대안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음. - 자원화시설운영에 대한 향후 방향을 설정하고 해결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며,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많을 것임.	추진중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환경 미화과 (시정)	한데 그렇지 못해 안타까우며, 인근 주민들에 대하여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임. 용역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앞으로 시설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임. 중구 음식물 가동중지, 포항시설반입금지 등 음식물처리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동구와 협조하여 광역화를 추진하는 등 음식물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조치와 장단기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 현실성, 경제성, 장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수립하여 나가겠음.	추진중
	② 클린환경 나눔장터 운영 내실화 - 본행사의 경우 운영되는 형태를 보면 바자회 형태로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 벼룩시장의 형태와는 다소 거리가 멀고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위주로 진행되어 어린이들 참여가 저조하였음.	○ 클린환경 나눔장터 운영 내실화 - 북구 클린환경 나눔장터는 가정에서 버려지는 물건을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쓰는 주민 자율참여 형태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완결

제8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환경미화과 (시정)	행사장에 일반상인들이 일부 참여하였고 자발적인 면이 다소 떨어져 활력이 떨어짐. 상인은 배제하고 경제교육을 위해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자율성을 유도하여 활력을 불어넣고 상설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개인과 단체를 불문하고 누구나 “벼룩장터”에 참여하도록 아파트, 학교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주민들이 나눔장터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임.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자유롭게 이용하는 나눔 장터를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음.	
환경미화과 (건의)	① 음식물쓰레기 30%줄이기 관련 - “물기를 빼면 돈이 된다.”는 홍보의 경우 처리비용과 소각시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나 자원화 시설에 처리할 시 큰 도움이 안될 것이므로 처리방식에 적합한 방식으로 홍보해야 할 것임. 음식물 종량제 추진과 관련하여 양을 측정하는 문제, 아파트 공동체 문화 등을 감안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와 아울러 음식물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표준(좋은)식단 홍보, 남은 음식	○ 음식물쓰레기 30%줄이기 관련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의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고, 가장 쉬운 방법이 물기를 빼는 것이라 할 수 있어 자원화 시설에서 효과 유무를 떠나 “물기를 빼면 돈이 된다”는 문구는 좋은 홍보문안이라 할 수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경우 시행초기 다소의 혼란이 예상되나 확고한 사업시행 의지와 지속적인 홍보를 한다면 조기에 정착이 가능하리라 사료됨.	처리중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환경 미화과 (건의)	싸주기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사업장(음식점)의 경우 성과가 미진하므로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아울러 음식점에 대한 정책은 업주와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효과적인 시행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완결
	② 재활용 위탁업체 계약방법 개선 - 상반기 재활용 분리문제로 시에서 받아주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였음. 정책의 변화로 재활용이 40% 이상 늘어났음에도 당초 계약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만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다면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재활용 위탁업체 계약방법 개선 - 「북구 재활용품 선별 위탁관리 계약서」 제5조(위탁대행료), 제16조(의무 및 준수사항)에 의하여 당초 계약된 금액은 변경될 수 없고, 2008년도 위탁계약시 물가상승률 등 사정변경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금액으로 계약토록 하겠음. 단, 수탁업체에서 행정적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음.	

제8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도 시 녹지과 (시정)	① 화봉 제2어린이공원 전반적인 하자보수 실시 ○ 화봉 제2어린이공원내 다목적 구장 우레탄 포장공사가 전반적인 부실 발생 ○ 칼라콘크리트 부위에 우천시 미끄럼이 심하고 재질선택이 잘못되어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많음 ○ 하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검토로 빠른 시일내 하자보수 실시	○ '07. 7. 23~7. 28 하자가 발생된 우레탄 칩 전구간을 철거 후 콘크리트 타설지역의 면고르기등 전면 보수하여 우레탄 칩 재시공 완료하였음 ○ 칼라 콘크리트 상부에 도포된 칼라하드너 부위에 대하여 면고르기를 실시하여 미끄럼 방지기능을 강화하였음 ○ 향후, 유사 공사가 발생할 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하여 설계를하고 금번 부실 공사와 같은 사례가 더이상 발생치 않도록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	완결
	② 특성화된 공원조성과 공원관리 철저 ○ 관내 어린이 공원이 화봉, 호계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천편일률적으로 다목적 구장 형식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청소년공원 교통안전 테마공원 등 특성화된 공원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어린이공원은 유치거리가 250미터 이하로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과 병행·조성되어 무상귀속된 것으로 개발사업이 활발히 전개된 화봉, 호계지역에 편중되었으며	추진중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도 시 녹지과 (시정)	○공원내 화장실 위생문제, 쓰레기 방치등으로 쾌적한 공원이 되지 못하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지역주민과 단체가 함께 공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개발사업승인시 사업주와 협의하여 테마가 있는 공원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구에서 자체 추진할 어린이공원도 특성화된 공원조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공원관리는 '07. 3월부터 10월까지 어르신 환경가꾸미 사업으로 관내 공원 18개소(근린2, 어린이16)에 25명의 인원이 주4회 오전 4시간 공원관리를 하고 있으나, 오후에 이용이 많아 현실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녹지작업단을 활용하여 구민이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민간이 참여하는 공원관리를 위해 '07년도 혁신과제로 「도심공원관리 Net-Work 구축」 사업을 전개하여 동별 1공원 1단체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9월중 참여단체 간담회 개최 및 시범운영으로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증진하겠음.	추진중

제8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도 시 녹지과 (시정)	③ 강동신명 해안 소공원 관리 철저 및 활용도 제고방안 강구 ○ 강동해안 소공원에 대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관계기관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계속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고, 계속적인 관리를 실시해 주기 바람. ○ 더 많은 주민들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관리에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대부기간이 만료되어 2005. 7. 15일 연장 요청을 하였으나, 재정경제부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았으나, 향후 공원부지를 대부하여 주민들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 강동 신명해안 소공원에 대하여 고사목 정비, 지주목 보수, 비료주기, 제초작업을 적기적소에 맞게 실시하고 사후모니터링을 완벽히 추구하여 주민과 관광객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④ 달령재~장등마을 구간 산사태 지역 복구 달령재에서 장등마을 구간 사이(2개소)에 산사태가 발생하여 100m ² 정도 훼손되어 있어 등산객들의 안전과 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신속히 복구 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 '07. 7. 12 현장확인 결과 달령재~장등마을구간(2개소) 등산로가 산사태로 100m ² 정도 유실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사업비 산출 결과 10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당초예산에 확보된 등산로 정비 사업비(60백만원)로 9월중 복구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음	추진중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도 시 녹지과 (시정)	⑤ 천곡동 산24번지 경관 조림지 사후 관리 철저 ○천곡동 산24번지 일원은 수종갱신을 득하여 배나무를 식재하고 과수원이 폐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수원 소유주의 요청에 의해 목백합을 식재한 것은 문제임 ○과수원 폐원에 따른 상황을 확인하고 배나무 제거후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여 심는 것이 옳을 것이므로 이제부터라도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07. 6. 14 과수원 폐원이 신청되어있으며, 과수원 폐원에 따른 배나무제거 작업은 장마철과 집중호우로 작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9월말까지는 완료하겠음	추진중
	⑥ 양정동 송전철탑 복구공사 하자 보수 실시 ○송전철탑 복구공사 관련하여 규격미달, 고사, 목책쌓기 미실시 및 설계내역과 불일치하는 등 하자·관리 감독이 허술한 상황에서 준공 처리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 관계기관에 조속한 보수 요청 및 완전복구 조치	○'07. 3. 6~4. 23까지 한국전력공사 신울산전력소에서 복구공사를 실시하여 복구 준공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현장 확인결과 복구가 미진하여 5. 15자 보완 통지하였고, ○'07. 5. 28 보완사항 완료신청에 따른 현장확인을 통해 6. 1자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하였으나, 7. 19 하자발생이 발견되어 한국전력공사 신울산전력소에 보완을 통지하였으며	추진중

제8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도 시 녹지과 (건의)		○8. 17 하자 복구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9월중 하자복구 공사 실시	
	① 완충녹지 관련 행정적 보호 방안 강구 ○완충녹지내 법적 제한으로 개인 사유재산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주차장 및 화훼판매단지 등에 우선 완충녹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기 바람. ○조성될 시 차폐기능과 저수조 역할 등 특색을 살려 조성하기 바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녹지는 지목상 전, 답은 경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고물상운영, 가설건축물 설치, 화훼판매시설 등은 불법행위로 행정적인 단속이 불가피함 ○구의 지속적인 완충녹지조성 요청에 따라 시 녹지공원과에서 금년도 효문동사무소~효문역까지(16필지) 20,000㎡의 면적에 사업비 5,000백만원(토지보상 3,000, 공사비 2,000)으로 '07년 9월부터 '08. 3월까지 완충녹지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사업 실시설계 수립시 차폐 기능 뿐만아니라 저수조 역할을 하면서 녹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음.	추진중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도 시 녹지과 (건의)	② 안전한 통학로 확보방안 강구 ○중로 1-22호선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상안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필요 ○시행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모든 방안 강구	○'07. 7. 20 관련부서(도시녹지과, 건설과, 건축주택과) 및 시행사(현대산업개발) 관계자가 참석한 회의를 개최하여 시행사가 중부경찰서에 교통규제심의를 재의뢰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였음 ○'07. 8. 28(화) 중부경찰서 교통규제심의회 개최 예정임	추진중
경 제 교통과 (시정)	① 경동도시가스 정압기문제 관련 조치 철저 - 우리구의 경우 경동도시가스 정압기 설치 현황을 보면 총 26개소로 9개소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17개소는 등재되어 있지 않아 불법 건축물로 볼 수 있으므로 다른 구에서 처리하는 추이만을 보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할 것임.	○건축 인·허가 부서로 지적사항 처리 협조요청(2007.7.27) ●경제교통과→건축주택과 ○지역정압기 합법화 계획 제출 지시(2007.7.27) ●경제교통과→(주)경동도시가스 ○지역정압기 양성화 계획 제출(2007.8.10) ●(주)경동도시가스→경제교통과, 건축주택과 ●건설교통부의 공식적인 지침 시달 후 양성화 ○위반건축물 시정통보(2007.8.21) ●건축주택과→(주)경동도시가스 ●빠른 시일내 지침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촉구 ●지침 시달 전 토지소유주와의 협의 등 사전 조치 선행	처리중

제8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경 제 교통과 (시정)	②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 단속 철저 -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인한 단속실적을 보면 극히 저조한 실정임. 현실태를 보면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식으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는 행위가 목격되고 있고 고정식으로도 판매하는 행위도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요구됨.	○ 유사석유제품 합동 및 자체 단속실시 ● 일 시 : 8.3, 8.10, 8.17 ● 단속반 : 구청 1, 중부경찰서 1, 동울산세무서 2, 한국석유 품질관리원 2 ● 단속결과 - 판매·사용자 각 2명 적발 - 유사석유제품 압수 : 52캔 - 불법입간판 1기 철거 ● 조치 : 합동단속반인 중부경찰서에서 직접 처리	완결
	③ 상용인력 관리 철저 -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교통시설물 관리를 목적으로 채용한 상용인력이 채용 목적에 맞지 않은 유가보조금 정산을 위한 보조업무와 동향파악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래의 목적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 교통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채용된 상용인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본래의 목적외 사용에 대하여 채용 목적을 충실히 하기 위해 총 19회의 교통시설물 점검을 위한 출장을 실시하였고, 또한 사무실내에서는 시설물 파손관련 민원을 접수하여 신속히 업체에 연락조치를 취하는 등 시설물 관리 업무에 충실을 기하였음.	완결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경 제 교통과 (시정)		아울러 향후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교통시설물에 대한 주민불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④ 노동자 지원사업 관련 - 클리어 노사민원센터 운영하고 있으나 주로 사무실에서 상담만 해 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실제 근로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효문공단문제 등 현장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 - 홈에버의 경우 노사정협의회는 운영에 한계 있음. 노사양측이 모두 참여하여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 민방위교육 • 교육기간 : '07. 5.2 ~ 5.30 • 교육장소 : 민방위교육장 • 교육인원 : 3,000여명 • 강의내용 : 임금 및 근로기준법 전반 • 교육결과 : 클리어노사민원센터 홍보 및 노동법률상담 증가(교육실시기간 중 상담 31회 실시) ○ 기업체 방문상담 • 8. 16 매곡사업단지 방문상담 실시 • 향후 3회 실시예정(3개업체 접수) ○ 홈에버 노사갈등 조속해결을 위한 노사정구민협의회 개최 • 7. 13(금) 호소문 전달 • 8. 21 중재권고안 채택	처리중

제8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경 제 교통과 (건의)	③ 속심이 마을 인근 농로길 교통정체 완화를 위한 대 책 강구 - 경주 입실 문단공단 아침과 저녁 출퇴근 차량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중산동 주민과 한라동아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 옥동~농소간 도로신설 계획은 2012~2013년 정도로 시에 지속적 건의를 통하여 그 이전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라며, 인근 교통상황을 감안하여 조금이라도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 경주시 문산공단협의회 등에 지속적으로 차량통행 자제 협조 요청 ○ 건설과에서 현대글로리아 아파트 입구, 속심이 마을 입구 등 주요 출입로에 차량통행 자제 안내 간판 설치 예정	처리중
	④ 우리구 경계지역 경주시 공장승인 관련 - 경주시에서 공장신설 관련 지침을 위반하여 우리구 경계지역에 공장신설을 승인하여 만석골 인근 오염 뿐만 아니라 동천도 오염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임. 수계를 경주방면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동천으로	○ 법률사항 질의공문 발송 ● 경 제교통과-27411(2007. 07.26)호로 기획홍보실 발송 ● 내 용 : 행정소송 및 감사 청구의 구체적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우리 구 고문 변호사의 종합 법률사항 검토의견 질의 및 회신요청	처리중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경 제 교통과 (건의)	유입되므로 경주시장과 구청장의 행정협의회로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및 감사청구 등의 방법으로 주민피해가 없도록 강력 대응해야 할 것임.	●처리계획 : 현재 회신 없으며 차후 내용 검토 후 적극 조치	
	⑤ 호계공설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 -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호계시장 아케이드 설치를 위한 계획수립과 홍보를 주민들에게 하였고, 아케이드 설치가 여의치 않아 칸막이 해체 등을 통한 내부 인테리어 수정 등 지금으로서는 명확한 계획이 없는 상태로 행정 불신만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상인들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더 이상 행정 불신을 낳지 않도록 하기 바람.	○호계공설시장 활성화 방안 자문 실시 ●기간 : '07. 5.14 ~ 8. 6 ●자문요청사항 - 아케이드 설치 타당성 - 시설 환경개선 방안 - 경영 현대화 방안 ●자문결과 문제점 - 시장 내부구조가 폐쇄적 - 건물노후 및 간판 난립 - 식당위주 구성으로 시장기능 상실 - 상인조직 미약 및 일부 상인들의 비협조적 태도 ●자문결과 개선방안 - 아케이드 설치 재검토 - 폐쇄적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 공사 필요(활성화 최우선평가) - 생활중심형 시장으로 포지셔닝, 상품구성과 서비스 개선 작업 필요	처리중

제8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경 제 교통과 (건의)		- 지역특산물, 야채, 청과, 생선 등 시장 기능 매장으로 재구성 - 상인교육을 통한 의식개혁 필요 • 향후계획 - 활성화 세부계획 수립 추진	
건설과 (시정)	① 원지삼거리(창평천인근) 자전거 전용도로 보완	○ 비포장 자전거 도로에 마사포설하여 정비 완료함 ○ 원지삼거리에서 자전거전용도로 가기 전 비포장도로 시작되는 구간 50M 간격으로 전주에 보안등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차후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여 동천강둑으로 보안등 4개소를 추가설치 할 계획임	추진중
	② 쌍용아진아파트 불법노점상 단속 관련	○ 도로상 노점상행위는 불법으로 당연히 단속이 되어야 하나 쌍용아진아파트 2, 3단지 사이 노점상 행위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섞여 있고 의견이 분분하여 해결이 어려운 실정임 ○ 목요장터를 양성화하는 방안, 도로 폐쇄, 차 없는 거리 지정,	추진중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설과 (시정)		소공원 조성 등은 재난시 긴급차량 진출·입로 확보 및 도로폐쇄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쌍용아진아파트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들어서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아파트 주변 상가가 형성되므로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음	
	③ 철저한 공사마무리 추진	○음식물자원화시설 진입로 우수관로 공사후 마무리공사는 배수로 측벽 마무리작업을 완료함 ○신상안교 하부 자전거 도로 훼손부분은 호안블럭 기초콘크리트 타설작업 후 '07.8.30 까지 복구완료할 계획임 ○호계 수동마을 우수맨홀은 '07. 7. 18 시행청인 울산광역시에 승고를 요청하였음 ○대안마을 수해복구 요청 구간은 제방안쪽에 돌망태가 기 시공되어 있어 공사구간에서 제외된 사항임	추진중

제8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설과 (시정)	④ 정자천 하류 및 명춘천 호우대비 조치 철저	○정자천 하류는 '07. 8. 6~8. 8 항공마대로 복구 완료 ○명춘천은 '07. 8. 9 하천내 수초 제거작업 완료	완결
	⑤ 효문로타리 오수관로 문제 대책강구	○효문로타리 차집관로 분출과 관련하여 '07. 8. 18 울산광역시 용연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 소통 및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동천내 차집관거 우수유입 방지 등 대책을 요청하여, 울산광역시에서 조치중에 있음	추진중
	⑥ 천곡본동 도로개설에 따른 전주 이설	○'07. 8. 3 한전 동울산지점 방문하여 전주 이설 협의, '07. 8. 7 전주이설 공문 발송 ○한전에서는 이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당장 이설은 어렵다는 입장임 ○한전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07. 12월까지는 이전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중
	⑦ 염포동 소3-13호선 개설 관련	○향후 소방도로 개설시 도시계획도로에 부합되게 시공토록 하겠음	완결
	⑧ 자전거 보관대 보수 및 이동	○에이스건물 자전거보관대 3개를 커버 보수하고, 1개는 화봉동 김밥천국 앞으로 이설하였음	완결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설과 (건의)	① 아파트간 연결 문제	○'07. 8. 8 귀영아파트관리소장과 연결통로개설 가능여부를 협의하였으나 양 아파트 입주자대표들간의 협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의견임 ○귀영아파트측에서는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으나 입주자대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추진중
	② 수성마을 포시즌 인근 통행로 확보	○계단설치시 1~2가구 정도만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활용도가 적고, 옹벽이 설치된 도로가 준공된 이후 주택이 건축된 사항으로, ○옹벽철거 및 계단설치는 사업비 투입에 대한 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단설치는 불가할 것으로 검토함 (계단설치비 : 9백만원정도)	불가
건축 주택과 (시정)	① 방치된 기계식 주차장 처리방안 모색	○방치된 기계식주차장은 재활용토록 하거나 일반주차장을 확보토록 행정 지도 ○기계식주차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 앞으로 기계식주차장은 설치제한하고 일반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건축허가 유도하고 기계식 주차장 설치제한등 법령 개정건의	추진중

제8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축 주택과 (건의)	① LPG충전소 허가관련	○향후 인·허가 업무는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더욱 더 소신 있고 형평성 있게 처리	완결
(시정)	② 목욕탕 굴뚝 안전관리 철저	○개인 시설물과 건축물등의 안전점검과 안전관리등은 소유자의 책임 이므로 ○구청은 목욕탕 굴뚝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등을 실시하도록 행정지도 계획	완결
	③ 달천그린카운티 4차 아파트 관련 마무리 철저	○'07. 5. 30 - 사업주체 시공사 감리자 고발 - 사업주체 행정처분 요청 (서울강남구청장) ○'07. 7. 5 - 시공사 행정처분요청 (경기도지사) ○'07. 8. 14 사업주체, 시공사 및 감리자에게 사업승인 내용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재시공 및 하자보수 촉구 ○'07. 8. 27 - 감리자 행정처분 요청 (부산광역시장) ○민원사항 해결되도록 적극 중재	추진중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 축 주택과 (시정)	④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철저	○ 2007년도 사업 시행 과정에서 필요시 세부규칙 제정을 검토 하고 ○ 2008년도 사업시행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50% 정도 지원이 되도록 적극 검토 ○ 담장허물기 등 정책사업 추진에 적극 동참하는 아파트는 인센티브 부여를 고려	완결
건 축 주택과 (건의)	② 임대아파트 입주민 보호노력	○ 아남아파트 임차인에게 우선분양후 일반분양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고 ○ 정림은하수타운 52세대는 분양 전환계획 처리하였으며 잔여 28세대는 일반분양 계획임 ○ 향후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하도록 행정지도	완결
	③ 광고물 게시에 따른 뚜렷한 기준 확립	○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및 동법시행령 제10조(광고물등의 표시 금지 지역·장소등), 제11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의 규정에 의거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 국가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완결

제8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 축 주택과 (건의)		하는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서 적용배제 대상이나 그 표시방법(기준)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표시금지 지역, 장소, 물건에는 설치할 수 없음 ○현수막의 경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0조의2(기타광고물등의 표시방법등) 및 울산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에 의거 벽면이용, 지정게시대이용, 지주이용 방법 이외에는 설치할 수 없음 ○구민에게 홍보코자 게시하는 공공목적광고물이지만 법에서는 불법광고물로 규정하고 있어 여타 상업내용을 게시하는 불법광고물 단속시 법집행의 형평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있는 등 불법광고물 단속에 애로	완결
	④ 화봉지구 택지개발 관련 민원 최소화	○공사차량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주택공사에서 공사차량진출입로를 별도로 개설 중에 있으며 2007. 9월중 개통할 예정임	완결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생명 산업과 (건의)	① 강동수산물 축제 관련 강동수산물축제는 다양한 체험행사 위주로 진행되어 축제다운 축제가 되었음. 본 축제의 경우 상인을 위한 축제가 되어야 하며, 준비를 위한 축제준비 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며 축제후 평가 보고서 작성에 있어 부문별 위주로 작성되어 전체축제에 대한 목적달성도를 알기가 어려웠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주요내빈에 행사를 맞추다보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므로 의견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도 강구	- '08년 강동수산물축제행사 개최시는 횃집등 상인이 스스로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방문객과 더불어 자연스러운 수산물 홍보 소비효과를 창출하고 내빈 초청시는 수산관계자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 축제후 평가보고서 작성시는 세부 행사별 평가와 동시 행사 전체적인 종합평가를 실시 축제행사 목적달성 여부를 진단하여 향후 행사시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 주요내빈 소개를 간소화하여 방문객들에게 간결하고 자유스러운 이미지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음	완결
생명 산업과 (건의)	① 생활 개선회 천연염색 체험행사 개선 농·도한마당 축제시 같이 개최하는 생활 개선회가 수행하는 천연염색 체험행사의 경우	- 천연염색 체험행사는 생활개선회에서 주관하여 소속회원 및 여성단체 회원들이자생식물을 원료로 천연염색을 실시하는 친환경적인체험행사로서 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완결

제8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생 명 산업과 (건의)	예산 편성에 있어 농·도 한 마당 행사비에 포함하기 보 다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 성하는 것이 옳을 것임. 행사진행 방식에 있어서도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판매 위주 보다는 체험 위주로 진 행되어져야 하며, 여성 주관 사업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도 좋을 것임.	- 작년의 경우에는 농도한마 당 행사시에 함께 행사를 실시했으나, 매년 1회 소속 회원들이 모여 체험행사를 실시하고 있음. - 향후 행사시 판매위주의 행 사는 지양하고 여성단체 회 원 및 많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개 최 하도록 하겠음.	완결
	② 봄꽃 전시회 활성화 방안 강구 봄꽃 전시회의 경우 행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행정보 다는 작목반이 위주가 되어 야 하는데 쇠부리축제와 같 이 행사를 함으로써 쇠부리 에 묻혀 본 행사의 홍보나 작목반원들의 불만으로 참여 가 저조하였음. 향후 쇠부리축제와 봄꽃축제 가 공동으로 개최를 하더라 도 행사 추진 주체들이 협의 하여 원활한 행사준비로 두 행사 모두 실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행사가 이루 어져야 할 것임.	- 봄꽃축제만의 최대 효과를 위해서는 기간을 달리하여 봄꽃 전시회를 7일전에 개최 하고 마지막 3일간 쇠부리축 제와 함께 종료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효율 적으로 향후 행사시 해당 부 서와 적극 검토 하겠음. - 동시 개최시에는 봄꽃 전시 회 행사도 함께 홍보가 요구 되며 분같이 체험행사에 소요되는 화분·꽃 구입비가 동시개최기간 중에는 5배정 도 추가 소요되어 화분·꽃 구입비 일부 지원이 요구됨.	완결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생명 산업과 (건의)	③ 유기동물 처리방안 강구 현재 유기동물 처리에 있어 대부분 안락사 위주로 분양과 주인을 찾아주는 실적은 저조한 실정임.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분양이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바라며, 이를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예산 확보에도 노력해 주기 바람.	- 유기동물 발생 즉시 구청 홈페이지 및 울산동물보호소에 고시·공고 조치하고 관내 유기동물 보호소내에 공고문을 부착하는 등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유기동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음.	완결
재난 관리과 (시정)	① 장마철 대비 재해예방 활동 강화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구비 확보 지연문제로 복구공사가 늦어지고 있음.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조치 및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해 주기 바람.	○수해복구사업 소관부서인 건설과, 도시녹지과의 사업 추진이 우수기 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음. (29건 중 24건 완료, 5건 공사중)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하여 현재 미완공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 집중관리 및 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추진중

제8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재난관리과 (시정)	② 재해장비 관리 및 운영 철저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대비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재해 장비 점검을 철저히 해주기 바라며, 재해장비 작동여부를 확인함과 아울러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임. 특히 보트의 경우 실제 시운전을 통한 작동여부를 확인함과 아울러 소방서, 해병전우회 등과 협의하여 비상시 이를 운전할 수 있는 인력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평상시 재해장비 및 시스템을 정기적(분기별 또는 월 1회)으로 점검하여 미작동시 보수하고 있음. 재난 및 민방위장비 고무보트(2대)는 지역자율방재단 단원중 운전 자격이 있는 인력을 시운전 및 비상시 활용하도록 하겠음. ● 확보인원 : 10명	완결
보건소 (시정)	① 장애인 화장실 비상키 관리 2층 장애인화장실 키가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안내판 등이 없음. 구청사와 같이 입구에 설치 될 수 있도록 하기바람.	● 장애인화장실 비상키 보관 안내문 부착과 장애인화장실 안내판 설치	완결
	② 모스키토-존 경영수익사업 관련 모스키토-존 경영수익 실적 적자로 나타났음. 수입에 비해 지출이 과다하므로 감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 시설투자비(금형제작비29,900천원) 과다 지출	완결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보건소 (시정)	실태를 파악하여 조치해야 할 것임. 금형제작과 일반부대경비에 과다한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감사를 철저히 하여 밝혀내야 할 것이며,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순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재무제표 조작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히 감사를 해야 할 것임. 향후 이와 같은 민간기업과의 계약에 있어서는 틀러리가 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하여 하여야 할 것임.	☞제품의 기술적인 결함으로 금형이 자주 변경되어 금형제작비가 다량 지출되었음(2회 제작) ○일반부대경비(45,085천원) 과다지출 ☞영광태-크에서 제출한 세출내역을 검토 한 바 총부대비용(45,085천원)은 납품부대경비(물류비, 특허관련비 : 8,675천원), 포장비용(포장 박스비, 도안비: 2,410천원), 2007년형 금형제작비(14,000천원), 일반부대비용(20,000천원) 이 포함된 금액이며 감사에 지적된 순수한 일반 부대비용은 제품무상교환비: 7800천원, 운영비: 4,500천원, 홈페이지제작비: 1,800천원, 인건비 및 기타경비: 5,900천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확인 ○담당세무사가 제출한 재무제표를 검토 영업에 따른 총매출액을 확인 한 바 정산자료가 재무재표상으로는 동일하게 산정된 것으로 확	완결

제8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보건소 (시정)		인되었으며 2007년도부터는 모스키토-존사업과 일반 방역관련사업을 분리하여 정산하도록 하며 또한 경영사업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겠음.	완결
	③ 방역활동 강화 올해의 경우 모기가 더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최적의 모기퇴치 방법을 강구하여 효과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동별 방역담당자 및 방역인부 간담회 개최(2007. 8. 10)등 ☞ 효과적인 방역을 위하여 취약지역(풀숲, 축사주변, 하수구 등)의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민원발생지역을 우선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동별 방역담당자 및 방역인부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방제효과를 높이도록 조치하였음.	완결

제5장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의 회 사무과 【건의 사항】	①의원 의정활동 보좌 강화 ○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신문스크랩 방법에 있어 집행부와 협의하여 스캔을 떠서 보관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하여 회기별로 정리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또한 각종 동향 파악을 철저히 하여 의원들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민원관리에 있어 월별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신문스크랩 방법 개선 : 의회 홈페이지에 “란”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탑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음. ○ 조례안 회기별 정리 : 회기별로 정리하여 의원들께 배부 완료 ○ 동향파악 철저 :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매일 관내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동향파악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 민원관리를 위한 의회차원의 토론의 장 마련 : 매월 세 번째 금요일에 의회차원에서 주요 민원해결을 위한 토론의 장 마련	추진중

2007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 처리결과 현황

8. 31현재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완결	추진 중	처리 불가	계	완결	추진 중	처리 불가	계	완결	추진 중	처리 불가
총 계		110	51	57	2	77	33	44	0	33	18	13	2
공 통 사 항		5	0	5	0	4		4		1	0	1	0
기획홍보실		6	1	5	0	6	1	5					
총무국	계	26	13	13	0	17	6	11	0	9	7	2	0
	총무과	4	1	3	0	3	1	2		1		1	
	회계정보과	9	7	2	0	4	2	2		5	5		
	지방세과	2	0	2	0	2		2					
	민원지적과	4	2	2	0	2		2		2	2		
	환경위생과	7	3	4	0	6	3	3		1		1	
주민 생활 지원국	계	28	16	11	1	20	11	9		8	5	2	1
	주민생활 지원과	6	5	1	0	4	3	1		2	2		
	복지서비스과	9	5	4	0	7	3	4		2	2		
	문화체육과	9	4	4	1	7	4	3		2		1	1
	환경미화과	4	2	2	0	2	1	1		2	1	1	
도시 경제국	계	41	18	22	1	27	12	15	0	14	6	7	1
	도시녹지과	8	1	7	0	6	1	5		2		2	
	경제교통과	9	3	6	0	4	2	2		5	1	4	
	건설과	10	3	6	1	8	3	5		2		1	1
	건축주택과	8	6	2	0	4	2	2		4	4		
	생명산업과	4	4	0	0	3	3			1	1		
	재난관리과	2	1	1	0	2	1	1					
보건소	보 건 소	3	3			3	3						
의회 사무과	의회사무과	1		1						1		1	



제 6 장 기타의정활동



제1절 구정질문

1. 구정질문 현황

일 시	회 순	의 원	질 문 요 지
계	3회		3건
2007.7.23	제98회 제1차정례회	류인목 의원	○총무국 총무과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2008.4.25	제103회 임시회	문석주 의원	○국·시비 확보대책 및 평창리비에르 민원 관련
2008.5.28	제104회 임시회	박병석 의원	○동 주민센터 신축, 종합복지관 건립 및 구내식당 미국산 쇠고기 식재료 사용 금지 여부 관련

2. 구정질문 및 답변요지

가. 총무국 총무과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 질문의원 : 류인목 의원

○ 2007. 7. 23(제98회 제1차정례회 제8차본회의)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류인목 의원 질문〉 ○대주민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복구청의 거듭나는 노력을 바라면서 다음의 자료를 요구	〈강석구 구청장 답변〉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와 주요시책추진, 주요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제반

제6장 기타 의정활동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하고 구청장님의 의견과 실천의지를 묻고자 함. 북구청의 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지급일자/지출액/지출처/지출목적/대상인원 전체 명단의 형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경비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실·과·소 직원들과 통상적인 업무추진 및 조직운영, 주요시책홍보, 대민활동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지출됨. 또한 구의회,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등 유관기관은 물론 타 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 유대강화 등 구청장의 직무수행에 따른 경비로 사용되고 있음.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고,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 관계법령과 규정에 맞게 사용하고 있음. ○업무추진비 사용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번 감사원과 행정자치부, 국가청렴 위원회, 그리고 울산광역시로부터 이미 감사 및 조사를 받았으며, 감사결과 관계법령과 사용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검증 받은바 있음. ○공공기관의 정보관계에 관한 법률에도 개인의 사생활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돼 있어, 금년도 의회행정사 감사 자료제출시 업무추진비 내역을 주단위로 묶어 제출하게 되었음. ○우리 북구는 금년으로 구신설 10주년과 아울러 인구 15만을 넘어 급속도로 발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전해 가는 신흥개발 지역으로 할 일이 정말 태산 같이 산적해 있음.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업무추진비 문제로 행정력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것은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구가 전국 어느 타 자치단체보다 앞장서서 가장 모범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와 계약심사제 시행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만큼 구정에 대한 신뢰를 보내 주셨으면 함. ○우리 북구는 국제외국어고 유치, 음식물쓰레기 30% 줄이기, 평생학습도시 유치 등 당면한 구정 주요시책추진이 시급하고 또한 매우 중요함. ○이러한 구정주요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 되어 15만 구민이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행복 북구가 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나. 국·시·비 확보대책 및 평창리비에르 민원 관련

- 질문의원 : 문석주 의원
- 2008. 4. 25(제103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제6장 기타 의정활동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문석주 의원 질문〉 ○첫째, 국·시비 확보 대책에 대한 질문 - 오토밸리 2공구 개설공사 등 우리구 사업에 대한 2008년도 예산 확보 계획은? -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비 확보 계획은?	〈강석구 구청장 답변〉 ○오토밸리 2공구 중 송정택지 ~ 1구간중 점인 연암IC까지 3km 구간은 도시개발법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송정택지 개발사업의 주변도로 개설공사와 연계하여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 주택공사 측에 2011년까지 개설을 요구중에 있음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로 확장 공사는 2008년 1회 추경예산에 보상비 50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할 계획임 ○울산공항 확장공사 계획이 최종 확정된 후에 산업로 확장 공사를 시행할 계획임.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신천 근린공원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금년 5월 발주예정임 ○총사업비 73억 3천만원 중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원과 구비 27억원은 이미 확보하였고 ○금번 울산광역시 제 1회 추경예산에 시비 15억을 신청하였으며 확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둘째, 평창리비에르 입주민 민원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 - 임차인들의 최소한의 희망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우리 구는 2006. 12. 26일 평창토건(주) 부도이후 신속하게 행정지원팀을 구성하여 민원사항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지원방안과 아울러 이해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 임차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으며,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임대주택 분쟁조정 위원회”을 3차례 개최하여 분양전환에 따른 중재는 물론 상호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였으나 분쟁조정절차 진행중에 소송이 제기되어 조정을 중지하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고, 부도난 민간 건설업체와 임차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분쟁이기 때문에 조정에 한계가 드러나기도 하였음. ○금년 6월 22일 법 시행 이전에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분양전환 계획을 신청할 경우에는 “임대주택 분양전환 계획서”와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분양전환이 가능하므로 우리 구에서는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임, ○금년 6월 22일 법 시행 이후에 임차인 명의로 분양전환 신청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처리할 계획임.

다. 동 주민센터 신축, 종합복지회관 건립 및 구내식당 미국산 쇠고기 식재료 사용금지 여부 관련

○ 질문의원 : 박병석 의원

○ 2008. 5. 28(제104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박병석 의원 질문〉 ○신축되는 동 주민센터 규모에 대하여?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사항과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농소1동 주민센터의 경우 연면적이 1,127㎡, 송정동, 강동동, 염포동 주민센터는 모두 1,091㎡로 계획되어 있음. 구청장님께서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서서 융통성을 가지고 동 주민센터 건립 계획을 재수립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강석구 구청장 답변〉 ○현재 동 주민센터의 기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으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동의 고유 행정기능은 축소되고 있는 상황임. 우리 구에서는 노후된 동 주민센터의 신축계획 수립시 인구유입에 따른 행정 수요와 관할 면적, 동간 형평성, 구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규모로 결정하고 있음. ○참고로 농소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면적은 이러한 인구증가 등의 주변 환경을 감안하여 당초 990㎡ 300평 규모에서 1,127㎡ 341평 건축비 17억원 정도로 당초보다 더 크게 건립하도록 1차추경 예산안에 반영한 바 있음. ○향후에도 예측가능한 모든 상황을 검토하여 동 주민센터 건립이 탄력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음.
○종합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 종합사회복지관 건축공사가 당초 2009년 6월말까지 완공목표로 2007년 11월 23일 기공식을 가졌고, 공사를 시작하는 듯 하였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현재까지 6개월여 기간 동안 건축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지난해 11월 23일 기공식을 가졌으며, 그 이후 현장사무실 설치, 공사현장 외곽 펜스설치, 세륜 세차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4월 30일 시공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었고, 일주일 전인 5월 22일 착공계가 이미 접수되었음. ○현재 소음피해 방지대책으로 방음벽 설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만간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됨. ○종합복지회관 내에 내부시설과 외관, 설계등에 대해서는 모두 협의를 마쳤으나 다만 산재환자 재활시설과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반영여부에 대해서는 현대자동차 노·사간의 합의사항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일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미국산 쇠고기 구내식당 식재료 사용금지 여부에 대하여? - 북구 한우사육농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또한 북구 주민과 구청 공무원들의 건강한 단체 급식을 위하여 우리 구청 구내 식당에서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미국산 수입쇠고기를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박봉환 총무국장 답변〉 ○우리 구 직원들과 구민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은 무엇보다도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철저한 식재료 검수와 모든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받고 있음. ○우리 구내식당에서는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그 어떠한 식재료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 나갈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아울러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우리 지역 한우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다각적인 행정 지원과 아울러 한우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음.

3. 서면질문

- 질문요지 :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유치 관련
- 질문의원 : 박병석 의원
- 질문일시 : 2008. 4. 21
- 답변일시 : 2008. 4. 30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외고유치가 북구의 교육환경과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입장은 ?	○울산광역시에서는 아직 특수목적고에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아 학력신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려진 바는 없지만, 외고가 위치한 지역에 우수인재가 집결되고 학부모들의 경쟁심을 유발시켜 학업능력이 향상될 것이라 사료되며, 우리 지역에 특수목적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내외적인 교육도시 이미지가 높아질 것임. ○좁게는 우리 구, 넓게는 울산전체의 입장에서 우수 인재들을 양성하여 지역발전 위한 글로벌 지역인재를 육성하여 우리 지역을 위한 일꾼으로 육성하고자 하는데 외고유치의 근본 목적이 있음. ○'07 구민만족도 조사결과에서도, 우리 구의 교육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구·군간 불균형한 교육인프라 구축의 계기를 마련하는 외국어고등학교 신설 등 명문 중·고등학교 육성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반여건들을 고려해 볼 때, 지역 내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은 지역발전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국제고를 유치하는 것이 북구의 예산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과 직결되어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서의 여건을 갖추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우리 구에서는 외국어고를 우리 구에 유치하겠다는 의지로 외교 북구유치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대내외적으로 외교유치를 공식입장으로 천명하였음. 만약, 외교유치를 포기한다면 시가 100억원 상당의 유치부지를 기부하겠다는 중산동 주민들의 여망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예산 절감 차원과 별개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구에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세계적 기업인 현대자동차에서 외교유치 및 운영 지원에 대하여 수차례 의사 타진 결과 지원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기 때문에 국제고에 대한 설립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더욱이 우리 구에 국제고가 설립된다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향후 발생될 사안에 대하여 예측만 가능하리라 판단됨. ○또한, 울산시 전체로 보아 전국학력이 낮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 등 기초자치단체들이 국립대 유치 경쟁과 같이 국제고 유치경쟁에 또 다시 들어갈 것이며, 타 지역소재 기업체가 북구에 국제고를 설립할 가능성은

제6장 기타 의정활동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희박하므로 국제고 북구유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 예상됨. ○외국어고 유치에 대한 접근은 예산의 절감차원이 아닌 우수고 육성을 통하여 북구가 교육 불모지가 아닌 교육특구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뿐 아니라 우수한 인재를 지역 내 육성하여 북구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자치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학력과 교육격차의 불균형도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외국어고 설립에 지원되는 예산을 5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북구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지원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실제 북구주민과 북구 학생들에게 직접적이고 절실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북구에 우수한 명문고가 육성되어 교육이 타 도시에 남부럽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 되면 신도시(New Town) 형성과 아울러 인근지역에서의 인구유입이 가속화 될 뿐 만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지역발전이 가속화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은 주민에게 돌아 갈 것임. ○또한 외교설립 지원예산을 일반학교에 대체 지원하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장기적인 견해로 볼 때 충분히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그의 일환으로 보아 현재 우리 구에서도 교육지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울산에서 최초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지속적인 지원을 확충할 계획임.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듯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것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재원과 현황 등 각종 여건들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고 또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라 판단됨. 모든 학교를 동시에 육성하여 특화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며, 선택과 집중에 의한 순차적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우선 당면시 되는 울산외국어고를 유치하여 지역의 명문고로서 자리를 잡게 하고 동시에 일반학교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투자를 해나가는 것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순차적 투자로서 북구의 교육을 발전시키는 가장 적합한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함.

제2절 5분 자유발언

□ 박병석의원

- 발언일시 : 제92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2006. 9. 11)
- 건 명 : 우리 북구의회가 연구하고 토론하는 의회로 거듭났으면,
북구 행정의 축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에 관하여
- 발언내용

○ 우리 북구의회가 연구하고 토론하는 의회로 거듭났으면
존경하는 류재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이 의원선서를 하면서 첫 마음을 가다듬었던
날이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초심을 잃지 마라.”이 말은 정치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시작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초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초심은 주민들에게 판단의 대상이 되었던 우리의 공약이고,
당선인사이고, 두 달여 전에 본회의장에서 했던 선서일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북구의회가 연구하고 토론하는 의회로 거듭났으면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 이슈 중 가장 우리 생활과 밀접한 것이 한미 FTA라는
것을 부정하실 분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관련 산업, 그리고 농수산업이 대부분을 차지
하는 우리 북구 주민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IMF가 뭘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서민들은 차가운 현실로 내몰아
졌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이었습니다.

한미 FTA에 대해 찬반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연구하고 알려낼 의무가 우리 의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과 뜻을 같이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전문가들을 모시고 FTA포럼을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북구의회로부터는 차가운 반응뿐이었습니다.

제9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장 선거후 본회의장에서 류재건 의장님께서 일성으로 하신 말씀 중에도 “우리 지역의 발전을 걱정하고 토론하는 의회를 만들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토론회 등 의원들이 나서서 지역의 발전을 연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주민들을 위해 연구하는 북구의회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 북구 행정의 축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에 관하여

둘째, 북구 행정의 축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에 관한 것입니다.

요즘 공무원노조에 관한 기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공무원노조사무실 폐쇄와 관련된 정치적 기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대한민국을 수식하는 말 중에는 올림픽, 월드컵 개최국, OECD가입국, 무역교역 세계 12위국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발전의 뒀안길에 있는 노동관련 수치를 보면 1991년 국제노동기구 가입 이래 비준대상 협약 100개 가운데 20개만을 체결했습니다.

노동기구 회원국(177개국)의 협약체결 평균 41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72개에 크게 못 미치는 저조한 수치입니다.

얼마 전 이웃도시 부산에서 개최되었던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 태평양 총회에서도 국제노동기구는 우리 정부에 대해 △공무원 단결권

보장(5급 이상과 소방관 결사의 자유 보장)을 비롯해 △기업단위 복수 노조 허용 △제3자 지원 처벌 규정 삭제 △노조활동에 대한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중단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 행사가 열리고 있는 특히, 노동기구의 총회가 열리고 있는 와중에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모든 사무실을 폐쇄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북구청에서도 공무원노조사무실 폐쇄와 관련해서 15일까지 자진철수와 그 이후에는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는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모든 관계의 기본은 상대방의 인정, 그리고 대화와 신뢰입니다.

구청에 있는 한 식구끼리 “행정대집행”등 무서운 글귀가 담긴 서류를 주고 받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열심히 구정에 힘을 쏟고 있는 강석구 북구청장님의 첫 맹세, 즉 공약 중에 “신노사문화건설”이 있습니다.

그 공약에는 노와 사의 대립적 관계를 해결 할 실마리를 내놓겠다는 구청장님의 복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구청 집행부가 공무원노조에게 보인 신뢰의 수준은 아쉽게도 30분간의 만남과 무서운 계고장이 전부인 것으로 압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집행부가 상생 없이 파국으로만 치닫는 행자부의 지침에 휩쓸리지 말고 엄연한 실체인 공무원노조와 열려진 관계 속에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신노사문화건설”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으로 북구청 안에도 비정규직으로서 하루하루의 생존권에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직원들이 있다는 것과, 이들의 안정된 지위보장을 위해 집행부와 관련 부서에서 보다 높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류인목의원

- 발언일시 : 제94회 제2차정례회 제17차본회의(2006. 12. 27)
- 건 명 : 북구청의 노사관계에 대하여
- 발언내용

○ 존경하는 류재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류인목의원입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루는 등 다사다난했던 2006년 한 해도 저물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주민의 선택을 받으신 분들은 어느 해 보다 기억에 남는 한 해였을 것입니다.

당선이후 6개월여 동안의 공직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주민들은 본인들의 선택에 얼마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언제부턴가 본 의원의 출근길은 무거운 발걸음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좋은 일만 생길 것이라고 자기 암시를 하면서 힘차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을을 지나 겨울에 이르는 100여 일 동안 로비에 앉아 공무원노조 탄압에 항의하는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을 보면서 의회로 출근하는 본 의원의 가슴은 아픕니다.

비단 본 의원뿐만 아니라 동고동락을 했던 동료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1890년12월27일 오늘은 영국의 우정성 하급직원들이 우정성 장관으로부터 조합승인을 얻어내고 교섭에 성공한 날입니다.

116년 전의 일로써 공무원들의 단결권을 처음으로 인정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현실 앞에 서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첫째, 1세기 전 남의 나라를 부러워할 만큼 우리에게 2006년 9월 22일은 참담한 하루였습니다.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부정부패추방, 공무원사회 개혁을 외치던 공무원노조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닙니다.

직장협의회로 시작할 때부터 꾸준히 외쳐왔던 구호였고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을 불법단체로 각색해 버리고 노조사무실에서 처참하게 끌어냈습니다.

공무원노조가 이루려고 하는 “부정부패 추방, 공직사회개혁,”을 우리 사회에 해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6개월도 지속하지 못하는 정책의 문제입니다.

바로 불법주·정차 단속원들입니다.

12월 말일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집행부의 재계약의 의지도 없습니다. 북구청을 믿고 푸른 꿈을 가졌던 13명의 주부들에게 2006년은 짧았고 2007년은 암울할 것입니다.

셋째, 문화는 막힘없이 강물처럼 흘러야 마침내 대양에 이르러 찬란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북구청 문화예술회관 사용에 관한 건입니다.

산업의 메카, 대한민국 산업 수도, 바로 울산을 일컫는 말들입니다. 이 말들을 피땀 흘려 일궈놓은 노동자들에게 행정은 어떤 것을 했습니까!

백보 양보 하더라도 노동자이기 이전에 우리의 가족이고 이웃입니다. 구태여 문화예술회관의 사용에 차별성을 뒀야 했는지 안타깝습니다.

넷째, 북구자원봉사센터의 문제입니다.

구청장과 자치노조간 기관 대 기관으로써 맺었던 단체협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상근직 전환과 변동사항의 통지의무 위반건 및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청장 면담이 무시되고 있는 점입니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북구청의 행정에는 반 노동자적 행위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노사문화를 만들겠다고 추진하는 노사정구민협의회가 잘 운영이 되겠습니까?

노사정구민협의회에 노동자 없이 운영할 생각인지 재차 묻고 싶습니다.

2006년을 마무리 하면서 굴절된 노동자 정책에 대해 수정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2007년에는 구민 모두가 행복한 정해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6장 기타 의정활동

□ 이은영의원

- 발언일시 : 제94회 제2차정례회 제13차본회의(2006. 12. 20)
- 건 명 : 북구청이 여성정책을 확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 발언내용

○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류재건 의장님!

이은영입니다.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청이 여성정책을 확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였습니다. 지역구 후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시작하면 지나가던 여성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귀담아 듣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왜 이겠습니까!

수많은 남성후보들 사이에 여성후보라는 것이 신기했을 수도 있겠지만 여성과 관련된 정책이 바뀌려나하는 희망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대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희망과 마음을 안고 저는 당선이 되어 여성의원으로서 활동을 6개월 가까이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개인에 대한 지지도 있겠지만 제도 덕분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덕분에 울산도 여성 시의원이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고, 구의회도 1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선거제도는 여성정치 참여의 비율을 높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법과 제도를 집행하는 구청이 법과 제도를 기반으로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여성정책을 확대하라는 기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치구로 보면 정책 결정의 최고라고 하는 북구의회에서 여성이어도 비켜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 예산심의를 준비하면서 밤늦게까지 준비하는 선배동료 의원들의 모습이 정말로 좋았습니다.

저도 그러고자 노력하였으나 육아를 책임지는 역할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쫓기듯 준비하고 누군가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개인의 노력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의원이라는 제가 이런 실정인데 뜻을 가지고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 그리고 전업주부는 오죽 하겠습니까?

일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아이들 사교육비라도 벌고자, 어려운 경제에 남편의 월급으로는 안 되기에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도 있고,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여성 가장도 있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노동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고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과 비정규직, 파트타임에 있습니다.

일하는 동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이 학원에서 저 학원으로 보내고, 야간보육시설이 부족해 이 집으로 저 집으로 아이를 맡기는 실정입니다.

여성공무원도 사정은 똑같습니다.

직장내 보육시설이 없다면 여기 저기 누군가에게 맡기고 출근을 했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이 여성정책을 확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성정책을 하자면 기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성별분리 통계입니다.

두 번째로 성인지적 여성정책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영역, 모든 국, 과, 소에서 여성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성평등이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요구는 1975년 유엔에서 세계여성의 해를 선포하면서 각 나라마다 정부가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가시화하였고, 1995년9월 제4차 세계여성회의 북경행동강령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하여 여성기본시책을 정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음에도 울산광역시 여성정책 시행계획에 북구청은 15개 여성기본시책을 보고하고 집행함에 있어 법과 정신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 실적을 취합해 보았더니 여성정책 시행계획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여성들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여기에 대한 기초통계 조사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두 번째로 방과 후 시설과 야간보육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세 번째로 지자체 자체 보육예산이 0%에 가깝습니다.

네 번째로 여성노인을 위한 사업에서 노인을 위한 사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성장애인을 위한 특수사업에서 남성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여성한부모사업 등 매년 여성정책 사업을 줄이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열거하기도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첫 번째, 여성정책을 담당할 과나 계 신설을 요구하고 싶지만, 실정이 있으므로 여성정책 총괄부서를 두어 모든 국, 과, 실, 소에서 여성정책 집행을 관장 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취합하고, 실적을 평가하여 반영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별분리 통계를 하여 여성정책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공립보육 시설을 확대하여 안전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을 늘려가길 바랍니다.

연장보육과 직장내 보육시설을 확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여성일자리 창출과 여성노동환경에 대한 기초통계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 복지서비스과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여성정책을 확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시대 아닙니까?

아무리 평등을 목소리 높여 외쳐도 여성들이 평등하지 않습니다.

법과 제도로 정책으로 평등하게 만들어도 여성은 육아와 가사노동을 안고 똑같은 출발선에 서있다면 평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이 필요합니다.

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한 여성정책이 필요합니다.

북구청장님의 시정연설 2007년 정책계획에서도 여성정책은 없습니다.

2007년 예산에서도 여성정책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구청은 여성정책을 확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6장 기타 의정활동

□ 박병석의원

- 발언일시 : 제98회 제1차정례회 제8차본회의(2007. 7. 23)
- 건 명 : 북구청의 복지정책에 관하여
- 발언내용

○ 존경하는 류재건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5만 북구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강석구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농소1동, 송정, 강동 지역구 박병석 의원입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현재 북구청 행정의 구태와 정책의 부재를 비판하고 진정한 15만 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전하는 북구를 함께 만들어가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북구청 건물을 드나들 때 본의원의 시선을 머물게 하고 더불어 북구청의 현재를 되돌아보게끔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관 승강기 입구에 부착된 행정혁신을 홍보하는 포스터가 그것입니다.

지난주 게시물의 내용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부분적인 것에 매몰되며 핵심을 꿰뚫지 못하고 주변만 맴도는 조직사회를 경계하기 위한 메시지가 담긴 혁신포스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480여명의 북구청 공무원들과 15만 구민이 서로 부대끼며 믿음과 신뢰로 만들어가는 것이 북구의 미래이며 희망이지, 기자 브리핑 룸에서 북구의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15만 북구 주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4대 북구의회 의원으로 일한지 만 1년이 지난 오늘,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15만 북

구주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북구청의 복지정책에 대하여 실망을 넘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아동놀이기구 관련 건을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의 취임사 중 첫째가, 행복한 환경·복지 북구를 만들겠다는 것이었고 그 내용 중 장애인과 어르신,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가 소외 받지 않는 복지 북구를 다져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 첫 맹세에도 불구하고 지난2월 장애아동 놀이기구의 사업비 반납을 지켜보면서 본의원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도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설의 수혜자는 구청장도 복지관도 아닌 지역에 있는 장애아동들이기에 이번 사건의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구청이 꼭 사업권자가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과 수혜자를 중요시하는 사고로 접근했다면 이미 지금쯤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이들이 서로 어울리며 환하게 웃고 있을 생활놀이 시설이 준공식을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주민의 이익보다 구청의 생색내기에 혈안이 되어 대기업이 지역사회에 공한한 예산을 고스란히 반납하는 사례는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기대에 부풀어 있던 지역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올해부터 직영에서 위탁으로 넘어간 자원봉사센터의 건입니다.

사회복지의 절대적 재원은 정부의 몫이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민간 영역의 봉사활동으로 보충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자체에서는 드물게 직영으로 운영해 오던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으로 넘긴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을 접는다면 하더라도 지금까지 수년 동안 자리매김한 자원봉사자의 인력 및 지역의 많은 재가보호세대의 푸드뱅크 서비스 공급 네트워크 망이 무너졌다는 것과 구청의 관리 감독 또한 전무하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물론, 위탁운영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평가하기엔 너무 일찍 다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결론은 사업초기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함으로써 제대로된 복지서비스가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더불어 자원봉사센터의 인력은 다른 영역의 일에 신경 쓰기보다 북구의 소외계층과 행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는 곳을 향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노인복지예산의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북구 어르신들의 복지정책 또한 강석구 구청장님의 1년 전 취임사에서 약속한 굳은 맹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북구 어르신복지회관의 예산지원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노인보건 복지사업지침에도 나와 있는 ‘다’형 복지관 예산기준 2억5천만원이상 지원하라는 지침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06년도보다 오히려 5천만원이나 예산을 깎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강석구 구청장님의 취임사가가 한낱 구호에 그치는 말장난은 아닐 것인데 누구의 잘못인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후 사업에 있어서 지침 또는 일반적 기준의 준수 또는 상향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15만 구민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넷째, 각종위탁시설의 예산지원과 관내 노동현안에 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되어야 할 예산이 빠트려지면서 위탁기관의 운영 또한 어려워지고 더불어 사업이 지연되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비정규직지원센터 등 위탁기관에 대한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국비지원이 되는 여러 복지시설에 대한 예산도 제때 집행

하여 계획된 사업과 시설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관내 홈에버 사업장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지키기 위한 파업투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자 측의 홈에버 분회장과의 면담한번 없이 사용자 측에 의한 정보만 파악한 채 개최한 북구노사정 구민협의회는 절차적 모순과 호소문 채택의 보도까지 접하면서 자랑스런 우리 북구주민이며 홈에버사업장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실망감을 가져다 준 것에 대해 구청은 고개숙여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 홈페이지의 구청장님 인사말에도 나와 있듯이 “풍요롭고 행복한 북구”가 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증폭되고 사용자측의 부당 노동행위가 판을 치고 있는데도 북구청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청이 어느 한 쪽 편에 기울지 않은 객관적 사실과 넓은 통찰력을 가지고 구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복지 북구는 허울 좋은 구호 몇 마디와 언론브리핑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15만 구민 전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존경하는 강석구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복지정책 마인드와 모든 정책결정에 앞서 항상 구민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행정서비스 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북구청의 행정이 내실없는 겉포장 꾸미기에만 급급하여 주민을 소홀히 하고, 사회적 약자를 내팽개치고, 구청장과 공무원이 주인이 되는 잘못된 지방자치의 길로 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말씀드리며 본의원 또한 15만 북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혼신을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6장 기타 의정활동

끝까지 경청해주신 류재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강석구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이은영의원

- 발언일시 : 제103회임시회 제1차본회의(2008. 4. 25)
- 건 명 : 2008년 어린이 날 행사 지원단체 선정 관련
- 발언내용

○ 존경하는 류재건 의장님!

이은영 의원입니다.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 마음이 아픕니다.

무척 많은 고민을 하고 여러 분들의 조언도 들어 보았습니다

소고기 수입협상을 두고 축산농가들이 시름에 찬 지금 농가들의 눈물을 이야기해도 시원찮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북구 어린이 날 큰잔치의 의미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상방공원에서 첫 행사를 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아마 그 아이들이 지금은 군에도 가고 대학생이거나 고등학생입니다. 어린이 날 행사가 없고 놀이공원에 다녀오면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 구청에서 어린이 날 행사를 한다기에 반갑게 보러갔다가 실망하였습니다. 이벤트를 불러 상업성 짙은 어린이 날 행사를 하는 것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북구에서 소박하지만 시작한 어린이 날 행사입니다.

그 여성들이 투덜거리기는 했지만 돈도 내고 시간도 내고 꽃을 밤새워 만들었습니다. 젓먹이를 업고 만들어진 꽃은 수레가득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상방마을 이장님이 리어카를 빌려주셔서 꽃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어린 대학생들이 꽃수레에 아이들을 태우고 연암초등학교를 몇 바퀴돌고는 운동장에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어린이들이 동극을 준비하고 옷도 직접 만들어 무대에 오르는 그 날 만큼은 주인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류재건 의장님이 함께하던 풍물패들 덕분에 강강수월래를

숨이 턱턱 막히도록 하였습니다. 행사시작 전까지 바람도 불고 비도오 더니 행사 시작하자 햇볕이 나 애를 태우기도 했습니다. 미술대회도 있었지만 누구는 상을 받고 누구는 상을 받지 못해 속상해 하자 어린이 날 취지에 맞지 않다고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굴렁쇠 굴리기에서 아이들은 뒷전이고 아버지들이 더 재미있어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노동조합에서 북구청 야외무대에 전기볼트가 맞지 않아 새로 산 앰프를 태워 수리하면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동천초등학교와 연암초등학교 두 군데서 동시에 하기도 하였습니다. 3대의원인 김진영, 김재근, 이재경, 김대영, 류인목 의원이 체육복을 입고 오셔서 기념식에도 참가하지 않고 바로 떡매치기에 도우미로 참가해 오신 분들과 소탈하게 어울리기도 하였습니다. 구청장님도 인사 짧게 하고 바로 도우미로 참가해 새끼꼬기 강습을 하였습니다.

밀려오는 어린이들로 인해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자신의 아이들은 잘 놀고 있는지 밥은 먹었는지 모른 채 걱정하면서 산에 가서 따다가 냉동실에 뒀다가 가져온 진달래로 화전굽기에 열심이던 행사도우미들이 400명 넘게 참가를 하였습니다.

아이스크림과 음료수를 팔아 이북에 용천초등학교에 돕기도 하였습니다. 학교선생님들이 반 아이들과 약속을 하고 함께 오셔서 하루를 즐겁게 보낸 분들도 무척 많았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칠교놀이를 할 색종이를 자르느라 고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엔 어려워하던 아동위원회도 딱지치기가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자 자신들이 더 신나하던 모습이 선합니다.

그러다가 지역사회로 넓혀졌습니다. 평창, 쌍용아진 쪽 그리고 저 멀리 중산동의 아파트 자치회에서도 방송을 해 주시고 어린이들이 올수 있도록 차량도 마련하여 오셨던 행사입니다. 문방구에서는 스케치북을 선물로 주셨고 빵집에서는 도우미들의 아침빵을 주시고 팬시점에서는

작은 선물을 모아왔습니다. 병원과 한의원에서 무료진료와 엠블란스도 지원하셨습니다. 농소3동 자율방법대는 조용히 정복을 입고 밀려드는 차량을 군소리 없이 정리하였습니다. 올해는 장애인부모단체가 참여한다는 귀중한 해였습니다. 회장들이 부모들을 한집 한집 전화해서 설득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지역사회가 키워온 어린이 날 행사입니다.

북구청에서 예산지원을 하면서 규모가 커지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하여 11년을 이루어온 귀중한 북구의 자랑입니다. 아이를 둔 부모라면 거의가 북구청 앞마당에서 하는 어린이 날 행사를 알고 있습니다.

“북구 어린이날 큰잔치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는

첫째, 전래놀이로 만들었습니다.

둘째, 부모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셋째, 지역의 단체들이 앞장서고 주민참여를 이루어냈습니다.

넷째, 지역사회가 함께 하였습니다.

다섯째, 주민통합의 장 이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를 내고, 시간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내고, 몸이 되는 사람은 몸으로 움직여 만들어진 행사입니다.

북구청은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은 폭력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양해의 말 한마디 없이 의미를 알아보는 노력도 없이 일반적 관례가 없는 민간경상보조예산을 심의를 해서 결정하였습니다. 계획서를 넣고 결정이 되면 결정된 계획서대로 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전에 같이 의논하자는 제안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서를 접수했으니 받아 심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나 몰라라 모르쇠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라는 이유를 설명하셨으나 행정사무감사 결과서 어디를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잘 지내온 단체들끼리 소원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덮어두고 역행하였습니다. 밤새가며 준비했던 참여자들이 다른 곳으로 결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용서가 안 된다고 합니다. 북구청은 사람들의 마음을 멎들게 했습니다.

참신성이 높다하셨으니 구청 앞마당에서 하는 행사는 당연히 잘될 것 입니다. 꼭 잘 되어야 할 행사입니다. 그 동안의 성과가 뒷받침을 하고 다른 여러 행사들이 돕기도 하니까요. 그래도 안 되면 직원을 모두 동원해 잘되게 하실 겁니다. 오는 어린 손님을 귀중히 대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잘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처음엔 수많은 단체들이 참가하고 의미가 깊은 행사를 알지 못하는 북구청에 분노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잘된 일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이 기회에 어린이 날 행사에 필요 없는 의전을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소박하지만 북구 어린이 날 큰잔치의 정신을 살려 땀으로 일구어가는 해맑은 웃음으로 어린이 날을 즐길 수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행복한 행사가 될 꺼라 예상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요구 하겠습니다

첫째, 민간경상보조사업을 모두 공고하고 심의하여 결정하십시오. 양해도 없이 계획서가 들어오면 심의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원칙을 지켜서 결정하십시오. 농민관련행사, 여성 관련행사, 축제관련행사 등 모든 민간경상보조사업을 공고를 내고 계획서를 접수하고 심의하십시오.

둘째 참여하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화합과 융화를 모르는 독단적인 행정을 지양 하십시오.

북구 아파트 문화공간에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 때 14곳에서 참여하는 분들의 의견이라도 들어봤는가를 물었습니다. 북구자원봉사센터를 위탁 했을 때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는지 물었습니다. 동네별로 반장명단을 받을 때도 의회가 두 번이나 예산삭감을 하였던 사항이라 아파트자치회나 통장들의 의견을 들어

보았는지 물었습니다. 농소어린이집 위탁을 바꿀 때도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는지 물었습니다. 결국 주민의 의견들 들어도 구청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자세가 주민을 귀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제 일방적인 방식과 태도는 그만할 때도 되었지 않습니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는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이 참여를 어떻게 하면 높일까 만족도를 높일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일 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양해를 바라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윤임지의의원

- 발언일시 : 제104회임시회 제7차본회의(2008. 6. 5)
- 건 명 :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강화
- 발언내용

○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축산농가가 수입을 반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재협상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류재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일류 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윤임지의의원입니다.

저는 요즘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과 관련해 촛불집회 등으로 국론이 분열되는 현상에 대해 언론을 통해 접하면서 저 자신이 축산농민으로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협상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과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입니다만, 그러나 이를 빌미로 광우병의 지나친 위험성에 대한 것은 모두가 광우병에 걸리는 것처럼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하면 아니함만 못하다는 말이 있듯이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온 국민 그리고 농민 축산농가의 목소리를 이젠 정부에서 보고 듣고 있으니 기다려 보는 것도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6월 4일에 강석구 구청장께서 미국쇠고기 수입협상과 관련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 발 빠르게 기자회견을 통해 자체적인 대책을 발표한 것을 언론을 통해 봤습니다만, 농가의 피부에 와 닿는 근본적인 지원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다른 구청에 앞서 축산농가를 위해 미국쇠고기 협상관련 대책으로 농림수산 식품부에서 발표한 품질고급화 장려금 두당 10만원

에서 20만원과 소 브루셀라병의 근절을 위한 다산우 지원금 두당 10만원을 먼저 시작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벌써 700kg 기준 한우의 경우 150만원 정도의 가격이 떨어져 농민의 한숨은 깊어가는데, 옆친데 덮친 격으로 수입 곡물 가격까지 올라 사료 값이 50% 이상 인상되어 축산농가는 이중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우를 사육하는데 사료 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이상으로 이대로 2,3년만 지속되면 몇 년 후 영세한 한우농가는 대부분 사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계신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사료 값 인상에 따른 조사료 생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1,800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그에 따른 각종 수확장비 구입비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셨는데,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모든 축산 농가의 희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쇠고기 유통 실태를 보면 생산지에서 소 값이 하락하고 있는데, 식당은 종전의 가격대로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당까지 가격이 반영되는데 2개월에서 3개월이 걸림으로 소비자 피해가 매우 크다고 보는데,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통구조를 개선할 방법을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3월경 한우불고기 특화단지를 만들기 위해 축산농가와 구청관련 부서에서 경북과 전남의 불고기단지를 현장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다녀온 축산농가는 직거래 추진으로 농가소득에 큰 기대를 걸다시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구청 차원에서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지금 유가 및 곡물가 상승으로 모두가 무척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농민은 더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십분 이해하시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정의 최우선 농정시책에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농민은 우리들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흔들리면 그 나무는 고사하고 맙니다. 우리의 뿌리가 튼튼하게 발육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은영의원

- 발언일시 : 제104회임시회 제7차본회의(2008. 6. 5)
- 건 명 : 고시 철회, 재협상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발언내용

○ 사랑하는 16만 국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은영의원입니다.

지난 1월에 기관단체장 신년행사에서 윤두환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바뀌니 오신 여러분들의 얼굴이 환하다며 희망의 시대가 열린다고 인사말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그러길 기대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취임 100일이 된 상황은 돌풍과 장대비였습니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7가지 최소안전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그 기준은 첫째, 광우병 발생국에서의 쇠고기 수입 전면 금지 또는 2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 수입, 두 번째, 광우병 위험물질을 모든 연령의 편도,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 장 전체, 장간막, 뇌, 눈, 삼차신경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및 척주로 규정, 세 번째, 혀, 곱창,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 전면 수입 금지, 넷째, 도축장 승인권 및 취소권한을 한국정부가 갖도록 할 것, 다섯째, 수입검역 중 광우병 위험물질 최초 1회 발견 시 즉각 미국산 쇠고기 전체에 대한 검역 중단, 원인 규명 후 개선 조치 이후 재발 시에는 수입 중단, 중단일 이전 수입된 쇠고기도 검역 중단, 여섯째, 미국산 수입 쇠고기 모든 부위 율령 표시 의무화, 일곱 번

째, 수입위생조건 중 수입 중단 조건 5조 삭제입니다.

또한 5월29일 발표된 장관고시에 대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 중단을 할 수 없는 점, 도축장 승인권을 미국 정부에게 넘겨준 점, 수입 도축장 취소 권한을 포기한 점, 전수 검사를 제한한 점, 수입 검역 중단을 하지 못하게 한 점 등 검역주권을 전면적으로 포기한 협상을 그대로 고시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3일로 예정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장관고시의 관보 게재를 결국 연기하였습니다.

관보게재 연기 정도로 여론 악화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무차별 전면 개방하는 고시를 철회하고, 전면 재협상을 통해 국가의 검역주권을 회복하고 국민건강권을 확립하는 것만이 사태 해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 달간 계속된 촛불집회는 이명박 정부의 일방 독주에 대한 시민불복종 운동입니다. 유모차를 밀고 나선 젊은 엄마들의 이야기를 대통령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고시를 철회하고 전면적인 재협상을 통해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5월29일 민변에서 제안된 미국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농림부장관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의 청구인단 모집이 마감시간까지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었고 현재 1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5월31일 주말 촛불집회는 전국 100곳이 넘어섰습니다.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대구, 부산, 대전, 울산 등 수 십 만명이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폭력진압을 중단하라, 물대포를 발사하고 방패를 세

워 무장하지 않은 시민들을 공격하는 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인정될 수 없다. 한국정부는 국민들을 보호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6월2일 공무원노조가 광우병 쇠고기 수입 관련 행정홍보를 거부하였습니다.

아이 셋을 데리고 촛불집회에 참가한 어머니의 이야기, 유모차를 경찰 대치선과 집회참가자 사이에 세우고 경찰의 폭력을 막고 있는 아버지 이야기가 여성시대와 9시 뉴스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6월2일 MBC에서 여론조사 한 결과 이명박정부 100일에 즈음하여 국정운영평가에 대해 지지율이 20%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불과 석 달 전 60%를 육박하던 것과 비교됩니다.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87.4%를 넘었고,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 원산지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수의과학검역원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96%가 쇠고기 협상이 잘못되었다고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반드시 고시는 철회되어야 하고 쇠고기 수입은 재협상 되어야 합니다.

의장은 본 의원이 하고자 했던 구정질문을 재협상 문구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못하게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북구민을 위해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던 강석구 구청장님의 취임선서를 되새기며 질의하고자 했습니다.

첫째, 미국산 쇠고기 사용 영업점을 공개하는 등 유통단계부터 국민들에게 원산지 표시 제도를 전면 강화하여야 할 것.

둘째, 북구지역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입니다.

셋째, 농산물과 쇠고기 생산이력정보시스템의 정착화.

넷째, 단체급식에 대한 대책.

다섯째, 지방정부의 장으로서 즉 강석구 구청장께서 중앙정부 즉 이명박 대통령께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강력하게 촉

구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논의조차 없이 농민들과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심의보류 시키더니 의원의 고유권한인 구정질문까지 의장이 막았습니다.

절차에 하자가 없음에도 의장은 고시철회와 재협상 요구에 대한 문구를 수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의원의 권한침해이며 사전검열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의장은 의원들의 활동을 의사규칙대로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의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민심이 천심’이라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겨우 취임 100일 되는 날에 국민들의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 7% 성장에도 못 미치는 4%에 그치고 있으며,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 국민들이 울고 있습니다. 장관인사에 강부자, 고소영, S라인을 임명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습니다.

학생들이 0교시 수업에 우열반에 영어몰입교육에 교육부장관의 모교 지원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PD수첩을 고발하고 KBS를 감시하는 등 언론을 탄압하고 있으며, 대운하는 이랬다저랬다 말 바꾸기 일쑤이며, 의료, 수도, 전기 등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오죽하면 취임 100일 공무원들이 촛불집회에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보궐 선거 결과에서 한나라당 대변인은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야겠다고 했습니다. 민심을 읽고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진정 의원이 국민의 대변자가 됩시다.

의원의 책무를 버리지 맙시다.

문석주의원이 심의보류 안을 내면서도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우리 지역구에 축산농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요장터에서 재협상 서명을 받으니 줄을 서서 합디다.

민심을 읽읍시다.

부의장님이 제일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부의장님이 계신 강동에 얼마나 많은 축산농가들이 있습니까?

부의장님이 몇 달간 열심히 뛰어 당선 시켰더니 오히려 부의장님 목을 죄어 온다고 하셨지요.

대통령께 읍소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영희의원, 쇠고기 수입 재협상은 서울 가서 말하라고 하셨지요.

대통령은 서울에서만 뵙습니까?

울산에서도 투표합니다.

대통령이 잘못한다고 국민들이 이야기하면 지방의회도 함께 이야기 해서 제대로 길을 가도록 하는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은 성의가 없고 ...

준비도 안 되고 조급하게 했다는 것은 초딩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연기가 아니라 고시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 쇠고기 수입은 재협상 되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제3절 진정·건의서 처리현황

1. 처리현황

(2006. 7. 1 ~ 2008. 6.30)

연도별	접 수	처 리 결 과			
		계	완 료	추진 중	불 가
계	47	47	28	3	16
2006	5	5	2	1	2
2007	26	26	15	2	9
2008	16	16	11	0	5

2. 2006년 접수 및 처리내용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 원 인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및 내용
계	5건		
○ 2006. 8. 14 ○ 7호 구국도변에서 소1-10호선도로 확장 포장 건의	호계동 손○○ 외 39명	○ 농소1동사무소앞 소 1-10호선 소방도로가 구국도7호선과 연결 부근에서 굴곡 되어 차량통행에 지장이 많아 도로선형을 직 선화하여 개설	○ 2006. 8. 16 ○ '02.3월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타당성 검토 및 집행 계획수립시 북구도시계획위 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써 현재 변경계획 없음.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 주변 여건 변동이 있을 경우 검토될 사항임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 2006. 8. 24 ○극동건설의 신축 공사로 인한 소 음 및 비산먼지 에 대한 진정	호계 청구그린@ 입주자 214세대	○극동건설의 스타클 래스 공사장에서 발 생하는 소음, 비산먼 지 등의 피해에 대 한 진정	○2006. 8. 25 ○'06.8.25 호계 청구그린타워 방문하여 소음 측정 결과 57, 60dB로 규제기준미달 공사장현장 점검 및 시공사 에 공사장내 수시 살수토록 지도하겠음
○ 2006. 9. 18 ○국민체육센터 건 립에 따른 건의	농소1동 비상대책위 공동대표 외 4853명	○국민체육센터를 당 초계획대로 호계동 723-5일대에 건립 또 는 농소1동사무소 부 지에 건립을 추진하 여주시길 바람	○2006. 9. 20 ○당초계획대로 추진 시 부지 매입비에 대한 예산확보가 어려움, 동사무소는 부지가 협소하여 국민체육센터 건 립 불가함
○ 2006. 9. 19 ○달천지방산업단 지 조성에 대한 진정	달천동 석○○외141명	○달천동에 산업단지 조성 시 수목훼손, 마을황폐화 및 사유 재산권 침해의 우려 가 있으므로 달천산 업단지조성에 반대	○2006. 9. 20 ○우수, 지표수에 대한 구거 설치, 배수지에 펌프설치, 달천마을주변 진입도로 등 조기개설토록 시와 협의계 획. 시에서 친환경적으로 사업추진 예정
○2006. 11. 13 ○북구 진장동 도 시계획시설(완 충녹지)해제 또 는 지목 변경	진장동 완충녹지해 제및변경추 진위원회	○진장동 859번지 일 원은 완충녹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지역 이고 농민들의 사유 권을 침해하고 있으 므로 완충녹지지정을 해제 요구	○2006. 11. 13 ○도시계획시설 입안과 결정 권자인 울산광역시에 이첩 진장동 859일원 완충녹지 토지보상 및 조성은 2016년 이후에 계획임

제6장 기타 의정활동

3. 2007년 접수 및 처리내용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 원 인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및 내용
계	26건		
○ 2007. 1. 17 ○ 북구 진장사거리 교통체계 관련 건 의	남외동 김○○ 외158명	○ 북구 진장사거리를 오거리 체계로 만들 어 줄 것을 건의	○ 2007. 1. 19. ○ 진장사거리를 오거리로 변 경하여 운영할 경우 교차로 통과거리가 길어지고 신호 시간 연장 등으로 인해 사 거리 운영체계 변경 어려움
○ 2007. 3. 12. ○ 농소2동 11통을 분통 건의	중산동 강○○ 외52명	○ 농소2동 11통을 아 파트와 자연부락으로 분통해줄 것을 건의	○ 2007. 3. 12. ○ 2007. 5. 3자 농소2동 자연 부락 11통, 아파트 24통으 로 분할됨
○ 2007. 3. 12. ○ 단지입구 하부도 로 과속방지턱 설 치 건의	달천동 그린카운티 1단지 입대위	○ 과속방지턱 설치 요망	○ 2007. 3. 15. ○ 설치 요구하는 장소는 커브 와 경사진 도로이기에 과속 방지턱 설치 시 오토바이,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우려 되어 요청하신 구간에 과속 방지턱 설치 어려움
○ 2007. 3. 20. ○ 효문동 229-2 면적 946㎡ 미불 용지 신청	효문동 유○○	○ 효문동 229-2번지 미불용지 보상	○ 2007. 3. 22. ○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한 보상지연,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예산확보후 보상토록 하겠음

제3절 진정·건의서 처리현황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 원 인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및 내용
○ 2007. 3. 27. ○ 아파트 건립허가 로 인한 생활권 침해 구제에 대 한 진정	천곡동 박○○ 외 7명	○ 천곡동 507-2번지일 대 한신공영아파트 건립 시 조망권, 일 조권 침해	○ 2007. 3. 30. ○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권 자인 울산광역시와 사업시 행자인 한신공영(주)에 통보하여 진정민원사항 검토 요청
○ 2007. 4. 9. ○ 신천동 구 7호국도 도로확장에 따른 노면레벨수정 요 청	신천동 류○○	○ 스타클래스아파트 진입로를 위한 7호국 도 4차선 확장공사로 인해 달라진 도로높 낮이로 침수우려 및 진입불편 야기	○ 2007. 4. 12. ○ 실시계획인가권자인 북구청 과 사업시행자에게 주민 다수가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
○ 2007. 4. 19. ○ 염포동 중리마을 체육공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 치 건의	염포동 장○○	○ 염포동 중리마을 체육공원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요구	○ 2007. 4. 24 ○ 염포동 중리소공원에 비소 가 검출이 되어 음용수로 부 적합하여 고려화학사택 뒤편 으로 옮겨서 08.5월에 준공
○ 2007. 4. 23. ○ 신천동 사업장 진입로 아스콘 처리요청	신천동 류○○	○ 신천동 481-3번지 철 공소 진입로에 아스 콘 설치 요구	○ 2007. 4. 26. ○ 시종합 건설본부, 도시녹지과, 건설과에 통보하여 민원해소 방안강구

제6장 기타 의정활동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 원 인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및 내용
○2007. 5. 9 ○단지입구 하부도로 과속방지턱 설치 협조 요청	그린카운티 1단지	○아파트 입구도로에서 올라오는 과속차량으로 인하여 주행차량과 보행자간의 안전사고 발생하니 과속방지턱 설치요구	○2007.3.12자에 접수된 진정서와 동일한 건으로 울산광역시북구의회진정서처리에 관한규정제4조(불수리사항)에 의거 불수리 처리함
○ 2007. 5. 14. ○신상안교~달천도로 연결에 대한 진정서	달천동 그린카운티	○아이파크 신축현장 까지 확장도로를 그린카운티까지 포함하여 확장요구	○2007. 5. 18. ○아이파크입구에서 남북방향 도로와 그린카운티와 아이파크를 연결하는 도로개설 완료예정, 신상안교~달천간 도로가 연계할 경우 그린카운티로의 통행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
○2007. 5. 16. ○울산시 강동유원지분할개발 방식에 대한 유원지지구 지주들의 입장 진정	구유동 강동유원지 개발추진위	○강동유원지지구 분할개발방식을 철회하고 강동개발추진위원회의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개발토록 요구	○2007. 5. 18. ○강동 유원지의 조성계획 수립권자인 울산광역시에 진정서를 전달하여 처리함
○2007. 5. 18. ○무룡동 달곡 373-2번지 호우시 피해에 대한 진정	무룡동 장○○	○달곡373-2번지 위쪽 최○○씨 정원수리로 인해 호우피해발생	○2007. 5. 18. ○이웃간의 상호협의조정바람 향후 지속적인 예찰활동 통하여 집중호우 시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활동에 노력

제3절 진정·건의서 처리현황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 원 인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및 내용
○2007. 6. 13. ○도로 교통사고 예방관련 가드레 일 설치 요청	연암동 최○○	○벽산아파트와 연암 초교간 도로 무단횡 단이 빈번하여 가드 레일 설치 또는 중앙 분리대 설치	○2007. 6. 15. ○중앙분리대, 안전휰스 설치 검토하며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단속, 지도하겠음
○2007. 6. 21. ○아파트건립 허가 로 인해 생활권 침해 구제 에 대 한 진정	천곡동 박○○ 외7명	○한신공영아파트 건 립 시 조망권, 일조 권 침해에 따른 생 존권, 생활권, 재산 권 침해 조치바람	○2007. 6. 21. ○2007.3.27자 접수된 진정서 와 동일하여 불수리 처리함
○2007. 6. 27. ○상안초교 통행로 안전대책 요청건	천곡동 코아루아파트 입주자대표	○상안초교와 코아루 아파트 사이 아이파 크에서 4차선 도로개 통에 따른 어린이 등하교시 교통사고위 험에 대비코자 지하 통행로 등 설치요구	○2007. 6. 29.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개설 토록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도로이며 지하통행로는 이 용자의 편리성과 사업비 등 을 감안하여 설치가 어려우 며 표지병, 미끄럼방지시설, 신호등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2007. 8. 21 ○대 한주택공사아 파트 공사로 인 한 대우아파트 입주민 피해보상 요구	화봉동 대우아파트 비상대책 위원회	○대한주택공사 아파 트 건립에 따른 공사 차량, 각종 중장비, 공사현장 소음·먼지 피해 보상 요구	○2007. 8. 24. ○특이한 작업소음 없음 비산 먼지 발생 억제시설 정상운 영 등 특이사항 없음 소음 발생 작업 시 야침시간대를 피하고 이동식 살수 차량 이용 등 철저한 관리가 되 도록 행정지도 함

제6장 기타 의정활동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 원 인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및 내용
○2007. 8. 22. ○동천초교입구에서 농소3동도서관 구간 도로침하에 따른 정밀구조안전진단 실시 요청	쌍용아진4차 입주자대표 회장	○동천초교 입구에서 농소3동도서관 도로 간 반복된 침하로 주민에게 위험을 주므로 정밀안전진단 실시하여 근본적인 대책	○2007. 8. 28. ○대한구조물진단연구원에서 용벽정밀점검 결과 :양호 아이파크 하수관로 개설시 도로 점검 및 보수 강화
○ 2007. 8. 22. ○중로1-122호선 도로 공사에 따른 지하보도개설 협조요청	쌍용아진4차 입주자대표	○중로 1-122호선 도로 개설에 따른 상안초교 학생들의 통학에 안전위험을 주므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지하보도 설치 요구	○2007. 8. 30. ○중앙분리대, 안전휀스 설치 검토하며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단속, 지도하겠음
○2007. 8. 22 ○상안동 엘림종합복지센터 증축에 따른 주거환경, 일조권, 조망권 피해우려	상안동 한○○외2	○상안동 426-1번지 4층 건물증축에 따른 주민들의 주거환경, 일조권, 조망권 피해 진정	○2007. 9. 5. ○(사)엘림사회복지재단과 협의하여 9.3자 건축(증축)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허가 취소함
○2007. 9. 3. ○당아파트 도로 이정표 표기 요청	달천동 그단가운터 1단지	○단지 진입로 주위 6곳에 이정표 설치 요구	○2007. 9. 6. ○도로표지판은 공공시설명, 교차로명 등 지형지물명이나 행정구역명 위주로 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아파트 명칭은 도로표지판표기 어려움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 원 인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및 내용
○2007. 9. 3 ○단지입구도로 하 부 오르막길 과 속방지턱 설치 요청	달천동 그린카운티	○아파트 입구단지 도 로 하부에 과속방지 턱 설치 요구	○2007. 9. 6. ○커브와 경사가 된 도로이므 로 과속방지턱 설치 시 오 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교 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설치 어려움
○ 2007. 9. 27. ○염포동 주민편의 시설 조성 사업 에 따른 보상	염포동 박○○	○염포동 347-1, 348, 348-1번지 염포동 주 민자치행정타운 설 치에 따른 원활한 보상 요구	○2007. 10. 9. ○기 발송된 보상계획과 같이 보상 추진예정하오니 협조 요청
○2007. 10. 26 ○사업승인 조건 제34조에 의한 토양정화명령 위 반에 따른 공사 중지 명령 요청	달천아이파크 허○○	○사업승인 조건 제34 조의 토양정화계획에 반한 불법행위에 관 리 감독 요청, 오염 토양에 대한 시료채 취, 지하갱도 동공에 관한 조사용역 자료 공개 공청회 요구	○2007. 11. 2. ○사업승인 조건 제34조의 토 양정화계획에 의거 수행되 고 있으며 오염토양이 성토 되지 않도록 선별, 토양정 화 완료 후 검사 시 입주민 입회하에 시료채취 예정

제6장 기타 의정활동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 원 인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및 내용
○2007. 11. 12. ○평창리비에르3차 정문, 후문 과속 방지턱 설치요청	명촌동 평창리비에르 임차인대표회장	○평창리비에르3차 정문, 후문 4곳에 과속 방지턱 설치 요청	○2007. 11. 19. ○2008.3~4월 평창리비에르 3차 앞 과속방지턱 설치완료
○2007. 11. 20 ○평창리비에르3차 조례개정 진행 사항에 대한 건	명촌동 평창리비에르 임차인대표회장	○'06년 12.27평창토건의 부도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하기위한 복구 조례개정에 대한 문의	○2007. 11. 23. ○제101회 울산광역시북구의 회 제2차 정례회 중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원안 가결됨
○2007. 11. 29. ○오폐수관로 및 도로를 아이파크에서 그린카운티까지 연장개설에 대한 입주민 진정	그린카운티 입주자대표	○신상안교-달천간 기존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을 연장하여 그린카운티까지 개설 그린카운티앞까지 오폐수관 연장개설	○2007. 12. 7. ○신상안교~달천간(대2-33호선)도로 개설 공사의 종점부와 아이파크내 남북방향 도로를 연계할 경우 그린카운티 방향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옥동~농소(대2-18호선)도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시 하수관리과에서 북구지역 오수 미분류에 대해 실시설계 완료되었으며 향후 오수관로 매설공사 계획 있음

4. 2008년 접수 및 처리내용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 원 인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및 내용
계	16건		
○ 2008. 1. 16 ○ 달천아이파크 1차 준공거부 사유서 제출 및 부실시공 확인 요청	달천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	○ 옹벽과 건물의 이격 거리 미준수에 따른 준공거부 기간도로 하부오수 관로 연결공사 설계 기준 관련 정보공개	○ 2008. 1. 18. ○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의 지하갱도에 대한 정밀조사 및 보강방안에 따라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시설물안전진단 전문기관인 (주)대한이엔씨로부터 지반의 안정성이 확보되었다는 보고서 제출됨.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시공, 사업승인 조건이 행사항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2008. 1. 16. ○ 달천동 싯곳마을 내 오수관로 및 도로개설 요구	달천동 이○○ 외13명	○ 달천동 893(도) 도로를 37-1번지에서 69번지 구간 내까지 오수관로 및 도로 설치	○ 2008. 1. 18. ○ 893번지 마을진입도로는 일부구간이 농로로 기능이 변경되어 진입도로로 개설 필요하며 오수관로 설치요구건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하수관거공사 계획 중으로 소규모집단부락까지 매설 건의함
○ 2008. 1. 25. ○ 단지입구 하부도로 과속방지턱 설치협조요청	달천동 그란키운터 1단지 입대위	○ 과속방지턱 설치 요망	○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진정서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불수리사항)에 의거 접수하되 수리하지 아니함

제6장 기타 의정활동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 원 인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및 내용
○ 2008. 2. 11. ○도시계획도로 중 로 1-121호선 공 사관련 건	천곡동 삼성코아루 입주자대표 회의장	○천곡동 일대 중로 1-121호선의 도로 높 이가 최저 4~10m로 인해 차량불빛, 소음 피해 우려가 되오니 도로높이를 단지 내 바닥높이로 낮춰주 고 소음차단시설 설 치요구	○2008. 2. 18.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삼 성코아루 단지 바닥높이와 도로계획고를 동일하게 시 공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도로관리청 및 시 행사와 협의하여 도로계획 고를 하향조정 및 소음차단 시설 설치에 대해 조정 가 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겠음
○2008. 2. 25 ○달천아이파크 진 입로 공사로 인 한 어린이 보행 로 설치 요청	달천동 그린카운티 입주자대표	○달천아이파크 진입 로 공사로 인해 그린 카운티 입주자의 어 린이 등하교시 차량 사고 위험 발생하므 로 어린이 보행로 급 히 설치바람	○2008. 2. 28. ○신상안교~달천간 도로개설 구간에 어린이 보행로 설치 는 도로개설사업의 시행청 인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 부로 귀하의 건의내용을 충 분히 설명하여 조치사항 및 계획을 충분히 검토토록 진 달하였음
○ 2008. 2. 25 ○간담회 개최요청	달천아이파크 비상대책위원 회	○달천아이파크 입주 자의 요구를 관철하 기위한 의원들과의 간담회 요청	○2008. 3. 5. 민원접견실에서 간담회 개최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 2008. 2. 28. ○보행로 설치공사 중지요청의 건	연암동 비케이로직스	○연암동 보행로 설치 로 인해 귀 회사의 보안상 문제 등 피 해가 우려되므로 설 치에 대한 재검토 요구	○2008. 3. 4. ○도로개설부지는 사유지로서 인근 주민들이 도로를 이용 할 권리가 있고 회사는 안 전사고 및 제품도단우려에 대한 철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현재 도로 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 에 대한 부지경계를 명확히 하여 점용료 징수 예정
○2008. 3. 17. ○중로1-122호선 도 로개설에 따른 주변아파트 발생 민원 해결건	쌍용아진1~4 코아루아파트 연합대책위	○중로122호선 도로개 설에 따른 쌍용아진 1~4, 삼성코아루 아 파트에서 집단민원	○2008. 3. 19. ○2008. 3. 18 14:00 집행부와 의 민원간담회를 통해 대표 자와 집행부담당과 아파트 진정사항에 대해 토론했음
○ 2008. 3. 24. ○달천아이파크2차 입주예정자 진정	달천아이파크 비상대책위원회	○토양환경평가 실시, 오염된 토양이 반입 되어있으니 조사하여 제거 후에 사용승인	○2008. 3. 27. ○토양환경평가 실시의 행위 주체는 양도인, 양수인으로 행정기관에서 강제할 규정 이 아님, 주택법에 의거 주 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주 택에 대하여 사업계획내용 에 적합여부 확인하는 것으 로 단지 내 토양오염정화방 법의 적정성여부는 울산광 역시의 의견을 받아 처리함

제6장 기타 의정활동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 원 인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및 내용
○ 2008. 4. 10. ○ 새중앙금고의 농 소 업무 구역 내 지점개소불인가 요청	농소새마을 금고 이사장	○ 지역 금융질서확립 과 주민들의 혼란 방지하고자 새중앙 금고 철회 호소	○ 2008. 4. 17. 취하원 접수
○ 2008. 4. 22. ○ 주택신축위한 진 입도로 개설관련 지원 요청	천곡동 이○○	○ 중산동-799묘에 주택 신축하기 위한 진입 도로 개설 지원 요청	○ 2008. 4. 29. ○ 중산문화센터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 어 불가하며 1216-4, 1104-15번지는 구거로 사용 목적에 따라 이용되어야하 므로 도로로 인정불가
○ 2008. 5. 2. ○ 쌍용아진 4차 아 파트 과속방지턱 설치의 건	쌍용아진 4차 코아루아파트 연합대책위	○ 쌍용아진 4차 정문 앞에 과속방지턱 설 치요구	○ 2008. 5. 8. ○ 쌍용아진 4차 앞 도로는 보 조간선 도로로 이동성을 갖 는 도로이므로 과속방지턱 설치할 수 없음 상안초교 생, 입주민들의 안전한 통 행을 위해 신호등설치 건의
○ 2008. 5. 26. ○ 통심미뜰 도시계 획입안에 관한 진정	호계동 박○○	○ 호계동 218-7번지 일 원 통심미뜰을 주거 지역 및 상업용지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요청	○ 2008. 5. 29. ○ 호계동 218-1번지 일원은 지방1급하천인 동천의 경계 로부터 500M이내에 위치함 에 따라 토지 적성평가지침 상 “우선보전지역”에 해당 하여 현시점에 도시관리계 획 입안 곤란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 원 인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및 내용
○ 2008. 6. 5. ○하수종말처리장 관로 조기연결	삼우타운아파트 이○○	○하수종말처리장 관로를 삼우타운아 파트 정화조 관로까 지 연결	○2008. 6. 18. ○방어진처리구역 지선관거부 설 사업구간에 포함되어 실 시계획완료, 사업예산이 확 보되면 2009년부터 단계별 로 사업시행예정, 사업이 조기에 시행되도록 울산광 역시 하수관리과에 건의
○2008. 6. 5. ○과속방지턱 설치 의 건	달천아이파크 관리사무소장	○달천아이파크 2,3단 지 진입도로(중2-149) 의 단지 내 진입구간 에 과속방지턱 3개소 설치	○2008. 6. 13. ○달천아이파크 2,3단지 사이 과속방지턱 2개소 설치 완료
○ 2008. 6. 17. ○하수종말처리장 관로 조기 연결	중산동 백산그린타워 임○○	○하수종말처리장 관 로를 백산그린타워 정화조까지 연결	○2008. 6. 19. ○방어진처리구역 지선관거부 설 사업구간에 포함되어 실 시계획완료, 사업예산이 확 보되면 2009년부터 단계별 로 사업시행예정, 사업이 조기에 시행되도록 울산광 역시 하수관리과에 건의

제4절 주요 의정활동

1. 의회민원상담실 운영

□ 의회민원상담실 운영

주민들의 불편사항 및 애로사항과 여론을 청취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제공하고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가. 운영개요

- 운영일시 : '98. 10. 12부터 연중 계속 실시

나. 운영방법

- 기간 : 년 중(월~금 매일실시)
- 장소 : 의원실 내(의회민원상담실)
- 일일근무조 편성운영
- 일일근무조 편성운영(의장단 매일 출근, 의원1명 윤번제 근무)

요 일	월	화	수	목	금
성 명	이은영	박병석	류인목	문석주	이영희

- 근무시간 : 10:00 ~ 17:00
- 상담보좌 : 전문위원 1명
- ※민원접수방법 : TEL(052-289-8111), FAX(052-219-7549)
- 상담내용 : 각종 민원불편 및 애로사항 상담·처리, 여론수렴
- 홍보안내관설치 : 청사현관, 승강기내, 의사당복도에 홍보안내관 설치

다. 운영실적

구 분	운 영 기 간	접수건수	처리건수			비고
			완결	추진중	불가	
계		202	149	27	26	
2006년도	2006. 7. 1 ~ 12. 31	12	11		1	
2007년도	2007. 1. 1 ~ 12. 31	133	112	4	17	
2008년도	2008. 1. 1 ~ 6. 30	57	26	23	8	

- 운영반응 : 주민들의 고충을 상담·처리함으로써 대의기관의 기능수행을 충실히 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이며, 특히 개소 1주년('99. 10. 12)을 맞아 지방언론사로부터 호평을 받았음.

라. 기대효과

- 의회민원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생활 편익제공 및 주민복리증진 기여
 - 친근감 있는 의회분위기 조성
- 집행부와 관련된 각종 민원처리 불편사항을 의회에서 중계역할을 함으로써 민원 조기해결 도모

□ 의회민원상담실 운영 정례회

북구의회는 신뢰받는 「의회민원상담실」을 운영코자 정기적으로 매월 세 번째 금요일 오후 3시에 의장실에서 『상담실운영 관련 정례회』를 개최하고 있다.

『상담실운영 관련 정례회』는 현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당번

제6장 기타 의정활동

제로 운영중인 「의회민원상담실」을 민원상담과 주민 진정서 내용에 대한 담당부서와의 토론을 통해 추진상황과 처리결과에 대해 정리·분석하여 의견을 나누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내실있는 의회 상담실 운영으로 의정활동 신뢰도 향상 및 진정서 민원에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함이다.



▲ 민원상담실 운영 정례회 개최(의장실)

2. 『조례입법연구회』 운영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조례입법연구회(회장 윤임지)는 2008년 5월 19일 북구의회 민원접견실에서 조례입법연구회 첫 회의를 가졌다.

19일 오전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개최된 연구회는 조례입법연구회 윤임지 회장을 비롯한 연구회원 6명 전원이 참석하여 연구회 운영기간, 운영방법, 주요임무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기획감사실부터 조례에 대한 연구활동을 시작하였다.

제4절 주요 의정활동

당초 이번 조례입법연구회 활동은 지방분권화에 따른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구의 조례 중 제정이 필요한 조례, 상위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지 않은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거나 통·폐합이 필요한 조례, 구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복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조례를 제·개정하여 구민편의 증진을 통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아울러 의원 유급제 실시에 따른 의원들의 자질 향상과 연구하는 의정상 정립을 위해 전 의원들이 공감하여 연구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연구회는 5월 19일 첫 회를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오전12시에 의회 민원접견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복구의 모든 조례에 대하여 제·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선별하고 관련 자료를 연구·분석하여 의원들간 토론을 통해 조례를 제·개정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 조례입법연구회 연구활동중 의원들간 토론장면 >

3. 정례회 및 임시회 현장활동 강화

□ 정례회 · 임시회 회기중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실시

회 기	일 시	현장활동 대상지	비고
제91회 임시회	2006.7.21	정자 해안도로 옹벽공사 현장 외 8개소	
제94회 제2차 정례회	2006.12.2	장애인보호작업장 외 5개소	행정사무감사
	2007.6.28	비소문제 관련 달천 I-PARK아파트 공사 현장 외 5개소	행정사무감사에 앞선 현장활동
제98회 제1차 정례회	2007.7.13	보리수 어린이집 외 4개소	행정사무감사
제100회 임시회	2007.10.23 ~ 25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현장 외 4개소	
제102회 임시회	2008.2.25	중앙도서관 신축현장	
제103회 임시회	2008.5.1	명촌문화센터 건립현장 외 3개소	

- 제4대 북구의회 개원 후 류재건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들이 관내 주요사업장들에 대한 첫 현장 점검 활동에 나섰다.

2006년 7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이날 현장활동은 제91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현장활동으로 북구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사업장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과 사업진행 점검 등에 대해 의원들이 직접 현장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현장활동 대상지는 동천 제전보와 음식물자원화 시설, 박상진 의사 생가, 태연재활원 등 모두 9곳을 둘러보고 점검했다.

이날 현장활동에서 의원들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점검하는 등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며 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의원들은 특히 시설물 설치 후 지역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안전시설 등에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 북구의회는 2006년 11월 30일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의 일정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12월 2일 북구의회는 현장확인을 실시했다.

류재건 북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들은 2일 오전 9시 북구청을 출발, 농소2동 음식물자원화시설과 동천강 제전보, 장애인보호작업장, 농소1동 도서관을 확인했다. 이어 오후에는 염포동 불무천과 강동 해안가꾸기사업에 대해 현장확인 활동을 펼쳤다.

이날 의원들은 현장을 둘러보고 “각종 시설물 운영에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원들은 관내 현장을 둘러보면서, 현장확인 대상지 일정에는 없지만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지 고민하면서 차량 이동중에도 의원들간 많은 의견을 나누고, 중간 중간에 시설물 설치 현장을 둘러 보느라 현장확인 일정시간이 한참 지난 6시가 넘어서야 일정을 마치고 구청에 도착하였다.

- 북구의회는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내실있는 감사활동을 위해 자전거 도로, 어린이집, 간이상수도 등 주요 현장 확인활동을

제6장 기타 의정활동

을 펼쳤다.

2007년 6월 28일 오전 10시부터 하루동안 진행된 이날 현장확인에는 류재건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동행했다. 이번 현장확인에는 오는 7월 개최되는 제9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주요 현장에 대한 확인에 나선 것이다.

주요 확인 대상지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간이상수도 등 6곳. 의회는 28일 오전 10시 농소1동 원지삼거리 일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현장을 둘러보고, 이어 농소2동 매곡마을 농소어린이집과 농소3동 천곡마을 꿈나무어린이집을 시찰했다. 북구의회는 또 농소3동 달천 I-PARK 학교문제와 비소문제, 문화재 관련 주요현장을 확인하고, 시례 성혜마을 공동취사 시설과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확인활동을 펼쳤다.

북구의회는 “이번 현장확인에는 각종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제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7월 2일부터 23일까지 22일간 열리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고, 7월 11일부터 20일까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 북구의회는 2007년 7월 13일 오전 10시부터 북구 공공도서관 건립현장 등 5개 시설에 대한 2007년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을 실

시했다.

이날 북구의회 류재건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들은 오전에는 연암동 공공도서관 건립현장과 보리수 어린이집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7765부대 2대대와 숲속어린이집, 명촌천 등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확인에서 북구의회 의원들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북구의회는 제100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의의결 후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해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2007년 10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이날 현장확인에는 류재건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했다.

이번 현장확인은 북구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사업장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과 사업 진행사항 점검 등 의원들이 직접 현장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현장활동 대상지는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5곳. 북구의회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강동리조트 사업(워트파크지구),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 달천 I-PARK 비소문제 관련 주요현장을 확인하고, 이어 25일에는 양정동사무소 건립사업 현장을 점검하였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번 현장활동은 각종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며 각종 사업들이 내실있게

제6장 기타 의정활동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 북구의회는 제102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2월 25일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이날 현장확인에는 북구의회 전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현장활동의 주요 대상지는 오는 5월 1일 개관을 앞둔 중앙도서관으로, 현장활동에서 의원들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중앙도서관 내부 인테리어 및 도서구입 등에 대한 개관 추진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의원들은 “이번 현장활동은 개관 추진사항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현장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며 “내부 인테리어 설치와 도서구입등 사업들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내부 인테리어 공사시 안전시설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북구의회는 북구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사업장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과 사업진행 점검 등을 위해 의원들이 직접 현장확인에 나서고 있다.

- 북구의회는 제103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5월 1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이날 현장확인에는 북구의회 류재건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동행했다. 이날

제4절 주요 의정활동

현장확인은 북구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사업장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과 사업진행 점검 등에 대해 의원들이 직접 현장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현장활동 대상지는 1일 오전 10시 개관하는 중앙도서관을 시작으로 명촌문화센터 건립현장과 교량하부 체육시설 설치 현장인 오토밸리로 교량하부 체육시설과 국도31호선 교량하부 체육시설이었다.

이날 현장활동에서 의원들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점검하는 등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며 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의원들은 특히 명촌문화센터 건립과 체육시설 설치 후 지역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안전시설 등에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명촌천 현장확인)



(제100회 임시회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현장확인)

4. 의원별 민원 간담회 및 현장활동

□ 의원별 주요민원 및 간담회 개최현황

직 위	성 명	민 원 내 용	간담회 개최 및 현장활동	비 고
북구의회 (전 의원)		『의회민원상담실 운영 정례회』 관련 매월 1회 의원간담회 개최		현장활동 병행
의장	류재건	연암동 소방도로 개설공사 외 다수	연암동 소방도로 개설공사 관련 간 담회 개최 및 현장점검 외 다수	"
부의장	윤임지	강동 해안가 너울 파도 피해 상황 외 다수	강동 해안가 너울 파도 피해상황 간 담회 개최 및 현장점검 외 다수	"
운영 위원장	문석주	달천 I-PARK 아파트 비소 오염관련 외 다수	달천 I-PARK 아파트 비소오염관련 간담회 개최 및 현장점검 외 다수	"
의원	박병석	신현동 교량하부 체육시설 설치공사 외 다수	신현동 교량하부 체육시설 설치공사 관련 간담회 개최 및 현장점검 외 다수	"
의원	이은영	아남임대아파트 분양관련 외 다수	아남임대아파트 분양관련 간담회 개 최 및 현장점검 외 다수	"
의원	류인목	양정동 송전철탑 이설 관련 외 다수	양정동 송전철탑 이설 관련 간담회 개최 및 현장점검 외 다수	"
의원	이영희	북구공공근로사업 관련 외 다수	북구공공근로사업 관련 간담회 개최 및 현장점검 외 다수	"

- 북구의회는 『의회민원상담실 운영 정례회』 관련 매월 1회 의원간담회 개최와 현장활동을 펼치고 있다. 북구의회 류재건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들은 2007년 2월 12일 오후 2시 민원접견실에서 (사)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광역시지부 북구지회(회장 이란)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사)의·사·들이 지역의 현안문제 논의와 정책제안을 위해 간담회를 요청해 이뤄진 것이다.

(사)의·사·들은 북구발전을 위한 제언 등 지역의 각종 현안사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건의사항을 주문했다. 한편 북구의회의원들은 북구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 제시와 격려를 당부했다.

- 북구의회는 2007년 3월 2일 오전 10시 30분 북구 달천 만석골저수지 상부 경주 공장신설 승인 관련 민원현장을 방문하고 현장확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확인에는 류재건 의장을 비롯한 북구의회 전 의원들과 권혁진 총무국장 등 북구청 관계공무원과 경주시청 관계공원, 북구 달천마을 주민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북구의회는 이날 공장설립현장을 확인하고 경주시청 관계공무원들의 공장설립 승인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또한 참석한 달천지역 주민대표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현장확인을 실시한 북구의회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관련 조항 등 규정에 의하면 농업용저수지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5km 이내는 개별입지 지정승인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장이 신설될 경우 강우시 토사 및 오물질이 만석골 저수지에 유입되는 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적절한 방지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구의회가 현장확인을 실시한 공장신설 승인지역은 경주시 외동읍 녹동리 산 23-28번지 일대 25,965㎡로, 북구 달천동 주민들이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만석골 저수지에서 약 1.2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제6장 기타 의정활동

- 북구의회 류재건 의장은 2006년 8월 16일 오후 2시 북구 연암동 국도31호선(연암동~신현동)부분 개통지역 사고현장을 방문하고 민원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구간은 지난달 14일 개통된 이래 북구 연암동에서 31호선으로 이어지는 지역에 위험요소가 많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또 며칠전 일어난 자동차 사고에 따른 교통시설물 설치에 대한 요구에 따라 북구의회는 울산시 관계자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중부경찰서 담당 직원들이 현장에 나와 주민들의 의견을 교환했다.

류재건 의장은 2008년 3월 6일 오후 1시 연암동 소2-49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날 현장점검에서 류재건 의장은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관계자에게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많은 민원들과의 간담회 및 현장활동을 펼쳤다.

- 북구의회 윤임지 부의장은 2006년 10월 24일 오후 3시 강동 해안가 너울 파도로 인한 피해현장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하였다.

윤임지 부의장은 당사항에 어선 1척 침몰 지역을 둘러보고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누었으며, 판지마을 암석 및 모래 범람으로 차량통행 불가 지역을 점검하고, 북정자 해안도로 일원 모래 및 자갈 범람 지역에 현장을 둘러보고 해당 부서 관계자들에게 신속한 조치를 당부하였다.

이 외에도 많은 민원들과의 간담회 및 현장활동을 펼쳤다.

- 북구의회 문석주 운영위원장은 달천아이파크 비소오염관련 달천

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와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008년 3월 5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는 북구의회 류재건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달천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 허태운 회장 외 비상대책위 관계자들이 함께하였다. 이 외에도 많은 민원들과의 간담회 및 현장활동을 펼쳤다.

- 북구의회 박병석 의원은 2008년 2월 13일 오전 10시 북구 신현동 체육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현장점검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박병석 의원은 신현동 산210-3번지 외 1개소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량하부 체육시설 설치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관계자로부터 공사진행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한편 체육시설 설치공사 현장점검에서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관계자에게 체육시설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많은 민원들과의 간담회 및 현장활동을 펼쳤다.

- 북구의회 이은영 의원은 2006년 12월 27일 오후 4시 북구 천곡동 아남임대아파트 상가1층 우방건설 분양사무소에서 열린 분양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은영 의원은 우방건설 관계자 및 아파트 입주자 대표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외에도 많은 민원들과의 간담회 및 현장활동을 펼쳤다.

- 북구의회 류인목 의원은 현재 공사가 중단된 양정동 송전철탑 관

제6장 기타 의정활동

런 간담회를 2006년 9월 8일 오전 10시 30분 북구의회 5층 민원 접견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류인목 의원을 비롯한 현미향 양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회장, 박경수 양정동 주민자치위원장, 이춘건 양정동 통정회장, 허명순 새마을아파트 재건축조합장, 강철원 한국전력공사 신울산전력소 송전부장, 강영주 (주)진성기전 대표 등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은 송전철탑 13-1호기 문제와 관련 해결방안에 대해 의미있는 얘기를 나누었다.

간담회 결과 오는 22일까지 한전과 주민대표가 송전탑 13-1호기를 13호기 부근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구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북구청은 앞으로 한전·주민대표·학교운영위원회의 통보 결과에 따라 공사재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많은 민원들과의 간담회 및 현장활동을 펼쳤다.

- 북구의회 이영희 의원은 2007년 5월 10일 오전 10시 북구공공근로사업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현장점검활동을 펼쳤다.

이날 이영희 의원은 북구청 담당 공무원과 함께 농소3동 천곡 자전거도로 풀베기작업과 강동 바닷가 해변쓰레기수거 현장을 찾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공공근로 참여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영희 의원은 관계 공무원들에게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공공근로 참여자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수렴해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많은 민원들과의 간담회 및 현장활동을 펼쳤다.



(북구의회와 (사)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북구지회 회원들과 간담회)



(북구 달천 만석골저수지 상부 경주 공장
신설 승인 관련 민원 현장확인)

5. 『경주방폐장 피해대책』 서명운동 전개

북구의회, 『경주방폐장 피해대책』 서명운동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
울산광역시 5개 구·군의회 의원 합동 서명운동 등 총 5회 실시

2005년 3월 31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2005년 11월 2일 “방폐장” 주민 찬반투표 실시로 경주시가 확정되었다. 방폐장 설치지역으로 확정된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는 경주시청보다 울산시청이 더 인접해 있어 만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지점에서부터 가까운 우리 울산지역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임.

북구의회는, 경주 방폐장 설치로 인한 만일의 사고 발생시 우리 울산이 오히려 직·간접적으로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피해지역 위주가 아닌 행정구역을 단위를 기준으로 삼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의 불합리성을 홍보하여 범 시민의 뜻을 모으기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총 2만 4천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제6장 기타 의정활동

- 2006년 12월경 : 북구 동별(8개동) 서명운동 : 2만 1천여명 서명
- 2007년 1월경 : 북구 소재 농협 협조 서명 : 6백여명 서명
- 2007년 1월 11일 : 북구의회의원, 시의원, 전 동장, 각동 통정회장 등 참석하여 호계시장에서 팜플렛 등을 활용하여 홍보활동 전개와 동시에 서명운동 실시 : 2백여명 서명
- 2007년 1월 18일 : 북구의회의원, 시의원, 전 동장, 각동 통정회장 등 참석하여 쌍용아진 목요장터에서 팜플렛 등을 활용하여 홍보활동 전개와 동시에 서명운동 실시 : 3백여명 서명
- 2007년 4월 7일 :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장협의회 주최로 롯데백화점 광장 일원에서 구·군의회 의원 50여명과 북구 자생단체 회원 200여명이 참여하여 ‘경주 방폐장 피해대책 울산시민의 기본권 보장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체르노빌사고현장 사진 25점 전시로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전단지 2천 5백여매를 배부하는 등 5개 구·군의원 합동 서명운동 실시 : 1천 4백여명 서명



(경주방폐장 설치 관련 지원금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구·군의회 의원 합동 경주방폐장 피해대책 서명운동)

6. 의정실무능력향상 특별연수

□ 지방 예산·결산 심사 실무요령 특별연수(거제도 현대지방의정연구원
2006.8.21 ~ 8.23)

북구의회 의원들과 관계공무원들은 2006년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 동안 거제도 현대지방의정연구원에서 ‘의정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가졌다.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성을 높여 의정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실시한 이번 연수는 첫 날 박봉국 현대지방의정연구원 원장으로부터 ‘민선 자치, 제5기 지방의회 운영과 과제’에 대한 강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자치관계 법령의 이해와 조례 입안 심사 요령’에 대한 특강을 들었으며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이 날 야간특강에서는 김희창 박사의 <지방 예산·결산 심사 실무 요령>에 대한 강의를 통해 예산안 심의의 절차와 유념해야 할 사항, 결산 심사의 절차와 중점 착안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받았다.

이튿날 22일 오후에는 지역현장 답사 프로그램 일환으로 거제도 내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주)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현황 설명을 듣고 작업장 곳곳을 둘러봤다.

이 날 견학에서 의원들은 특히 평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 환경관련 분야로서 대우조선해양 사업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종합오수처리장을 둘러보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의원들은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모아 1, 2, 3차로 정화해 다시 재활용하고 방류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어 배울 점이 많았다”고 입을 모았다.

제6장 기타 의정활동

의원들은 이번 연수 기간 동안 쉬는 시간마다 틈틈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등 적극적인 열의를 보였다.

□ 조례안 입안 및 심사와 의정전략을 위한 2007년도 지방의회 의원연수 (국회사무처 2007.9.5 ~ 9.7)

북구의회는 2007년 9월 5일부터 7일까지 제주 오리엔탈호텔에서 열린 국회사무처 주관 ‘2007년도 지방의회 의원연수’에 참석했다.

북구의회 류재건 의장을 비롯한 의원 7명 전원이 참석한 이번 지방의회 의원연수는 예산안 심사를 비롯,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입안, 의정 전략 등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다. 이번 연수에는 북구의회를 비롯한 충청북도의회 등 21개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 총 132명이 참석했다.

연수 1일차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해룡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 심사에 대한 강의를 들었고, 2일차 오전에는 국회 의정연수원 김대현 교수로부터 조례안 입안 및 심사에 대해, 오후에는 한국산업기술원 서우선 지방자치연구소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조사에 대한 강의를 청취했다. 이어 연수 3일차에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최민수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정전략에 대해 집중 강의를 들었다.

한편 의원들은 이번 연수에서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상호간 우호협력 체제를 더욱 공고히 다지고 지역 현안 문제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조체계 구축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건설분야 전문과정을 위한 지방의회 의원연수(국회사무처 2008.5.21 ~ 5.23)

북구의회는 2008년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국회사무처 주관, 전문 건설분야 과정특별연수를 위한 ‘2008년도 지방의회 의원연수’에 참석한다. 이번 건설분야 전문과정 의원연수는 의원들이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시에 한층 더 높은 의정실무 능력 배양을 위해 참가하였다.

7. 자원봉사활동 실시

□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자원봉사활동 등 『분기 1회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북구의회는 2008년 1월 7일과 8일 이틀간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자원봉사에 참여했다. 이날 봉사에는 북구의회 류재건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 7명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함께 하였다. 의원들은 태안군 소원면 모항항에서, 가져간 헌옷과 흡착포로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해안가 기름띠 제거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 또한 3월 7일에는 북구 달천동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에는 북구의회 류재건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 7명과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참여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비누 생산 작업에 참여하고, 작업장 근무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북구의회는 관내 시설 및 어려운 계층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직접 현장 방문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펼침으로써 피부에 와닿는 현장 체험활동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제6장 기타 의정활동

적극적인 지역봉사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어려운 시설 등에
몸으로 부딪치는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태안반도 기름유출 피해지역 자원봉사활동)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자원봉사활동)

8. 서울시 송파구의회 의원 일행 우리구 방문, 상호 정보교환 간담회

북구의회(의장 류재건)는 2008년 4월 30일 오전 11시 민원접견실에서
송파구의회(의장 정동수) 의원 24명과 직원 8명, 취재기자 2명의 내방을
맞고 환담을 나누었다.

이날 류재건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들은 북구의회를 방문한 송파구의
회 정동수 의장 및 의원들과 함께 우리구 의회의 현황과 의회의 활동에
대해 환담을 나누었다. 송파구의회 정동수 의장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송파구 의원들은 북구의회의 요일별(월요일 ~ 금요일)로 의원 1명이
당번제로 운영중인 『민원상담실 운영』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며 많은
의견들을 나누고 벤치마킹하였다. 또한 송파구의회와 북구의회와의 상호간
의정활동 발전방향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 공통 관심 사항들에 대한 많

은 의견들을 나누었다.

이날 송파구 의원들은 민원접견실에서 환담을 나눈 후 본회의장 시설을 둘러보았다.



(민원접견실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본회의장 시설을 둘러보고 기념촬영하였다)

9. 중국 상해시 남회구 대표단 북구의회 방문

중국 상해시 남회구 대표단은 2007년 6월 18일 오후 4시 30분 북구의회를 방문하고, 북구의회의 활동현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육명 남회구 부구장 등 대표단 일행은 북구의회 민원실에서 북구의회 류재건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준비한 선물을 교환했다. 이어 북구의회 현황에 대해 북구의회 류재건 의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고, 의정에 대해 상호 질문과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마친 대표단은 북구의회 본회의장을 둘러보고 북구의회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북구의회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함께했다.

북구의회는 오후 5시 20분 롯데호텔 샤롯데룸에서 열린 환영만찬에 참석, 남회구 대표단들과 상호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제6장 기타 의정활동



(민원접견실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본회의장 시설을 둘러보고 기념촬영 하였다)

10.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연수 보고회

□ 2006년 의원 일본연수 보고회

북구의회는 11월 27일 오후 2시 5층 민원접견실에서 ‘2006년 북구의회 의원 일본연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류재건 북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들과 북구청 간부공무원, 북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평가자문위원, (사)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지부회장 및 회원,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울산지부회장 및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보고회는 ‘친환경 북구건설을 위한 선전사례 벤치마킹’이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30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일본 소공원 운영실태 및 쓰레기처리장 견학 내용을 보고하기 위한 것이다. 북구의회는 이번 일본연수에서 요코하마 미쓰이케 공원과 야마시타 해상공원, 오사카 마이시마 쓰레기 처리공장, 고베 시아와세 무라 복지시설 등을 견학했다.

류재건 북구의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연수는 하나라도 더 보고 느껴 우리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다녀왔다”며 “일본의 도시기반 및 공원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견학하며 의원

상호간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류 의장은 또 “특히 일본의 일상화된 복지시스템을 분석해 고령화로 접어드는 북구의 노인복지방향과 장애인복지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쳤다”며 “일본 선진 해양공원과 우수시설 견학으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 2007년 의원 홍콩·싱가폴연수 보고회

북구의회는 11월 26일 오후 1시 30분 5층 민원접견실에서 ‘2007년도 북구의회의원 홍콩, 싱가포르연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특히 관광개발사업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지역을 벤치마킹함으로써 강동권 개발 등 시책추진에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류재건 북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들과 구청 간부공무원, 북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평가자문위원, 각동 주민자치위원장과 통정회장,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북구지회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보고회는 ‘홍콩, 싱가포르의 선진시설 벤치마킹’이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29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홍콩, 싱가포르의 선진 복지·문화·환경·도시계획시설 등의 견학 내용을 보고하기 위한 것이다.

북구의회는 이번 홍콩·싱가폴 연수에서 홍콩의 정부지원 노인요양시설, 싱가포르의 도시개발국(URA), 싱가포르의 POLY CLINIC(보건소), 싱가포르의 NEW WATER(하수도 시설) 등을 견학했다.

류재건 북구의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연수는 하나라도 더 보

제6장 기타 의정활동

고 느껴 우리 지역을 위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고민하며 다녀왔다”며 “홍콩, 싱가포르의 선진 복지·문화·공원·환경·도시계획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견학하며 의원 상호간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류 의장은 또 “특히 홍콩의 해양공원은 우리지역 강동산하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광정책 자료수집 및 지역민들의 관광자원 개발실태를 직접 견학 및 체험하였다”며 “싱가포르의 도시기반시설과 및 공공시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들을 두루 견학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구의회는 “이번 국외연수에서 홍콩 오션파크와 싱가포르 센토사섬 등 세계적인 관광명소의 운영실태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북구의 관광자원 개발에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며 “다양한 선진 복지정책들이 구정에 접목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 말했다.



(2006년 의원 공무원연수 보고회)



(2007년 의원 공무원연수 보고회)

11. 청소년 모의의회

미래의 정치지도자인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 모의의회가 북구의회에서 열렸다. (사)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광역시 북구지회(회장 이 란)는 2007년 10월 17일 오후 2시 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북구 청소년 모의의회’를 북구의회 류재건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 지역 청소년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모의의회에서 청소년들은 두발자유에 관한 조례안 심의를 의제로 정하고 회의를 열었으며, 교내 냉·난방기 설치문제, 교내 매점 설치에 대한 문제 등 내용으로 구정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의의회에 참석한 화봉중학교 이은영양은 “의원들의 모습을 TV를 통해서만 보았는데 직접 체험해보니 의회의 기능과 필요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모의의회는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의 원리와 풀뿌리 지방자치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게 하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사)의·사·들 북구지회 이 란 회장은 “모의의회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대해 체험하고 동기부여하는 의미를 지닌다”며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차세대 정치지도자를 키워내는 소중한 체험의 장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북구의회 류재건 의장님의 인사말씀)



(청소년 모의의회 참여 학생들과 기념촬영)

12. 『제100회』 임시회 개회 및 기념 행사

- 북구의회는 2007년 10월 16일 제100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개회식과 함께 기념행사를 가졌다. 제100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이 이날 오전 10시 북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강석구 북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어 북구의회 제100회 임시회 기념행사가 10시 30분 민원접견실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북구의회 류재건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 김성보 북구의회 초대의장 등 역대의장과 의원, 강석구 북구청장, 간부공무원,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북구지회(회장 이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행사는 내빈소개 및 인사말, 축하 시루떡 절단, 건배제의, 다과회 등 순으로 진행됐다.

북구의회 류재건 의장은 “오늘은 북구의회 임시회 제100회를 맞이하는 뜻깊은 날로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그동안의 노력하신 선배 의원들의 뜻을 잘 이어받아 보다 발전된 의회상을

정립해나갈 것”이라 말했다.

강석구 북구청장은 “북구는 이제 인구 15만을 넘어 2010년 인구 20만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며 “뜻을 모아 살기좋은 북구, 풍요로운 북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준비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정보 초대 북구의회 의장도 “의회가 구성된 지 10년이 되는 이때 제100회를 맞이하니 너무나 감회가 남다르다”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축하 시루떡 절단과 건배제의, 다과회를 함께 의회의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많은 의견을 주고 받았다.



(제100회 임시회 기념 시루떡 절단)



(제100회 임시회 기념 참석 내빈들과 함께 기념촬영)

- 북구의회 개원 10주년 기념 『의정활동 10년사 사진전시회』가 북구청 1층 민원실과 5층 본회의장 입구에서 열렸다. 이번 사진전에는 지난 97년 부터 현재 2007년까지 북구의회의 다양한 활동이 담겨 있다. 2007년 7월 13일부터 18일까지는 1층 민원실에서 전시하고, 19일부터 23일까지는 5층 본회의장앞에서 전시하였다.

이번 사진전시회는 초대의회(97. 7. 15)부터 제4대의회(2007. 7. 14)까지 의정활동 사진 31점을 액자로 만들어 전시하였다.

13. 初心 현판 제막식

- 초심으로 의정활동 -

북구의회는 2008년 3월 3일 오후 2시 본회의장 입구에서 "初心"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初心"의 현판은 가로 200cm, 세로 60cm의 소나무에 예서체의 글씨로 제작되었으며, 그 뜻은 "선거 때 먹었던 마음자세를 변함 없이 끝까지 구민들을 위해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初心"의 휘호를 본회의장 입구에 게첨하게 된 것은 북구의회를 상징하는 의미있는 현판을 제작하여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현판을 보며 의원들이 항상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현판 제막식에서 의원들은 "현판 제막을 계기로 구민들을 위한 발로 뛰는 의정활동과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초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初心(초심) 현판 제막식)



(初心(초심) 현판 제막식 후 기념촬영)

14. 사회복지시설 방문 설·추석 위문품 전달

□ 2006년 방문

북구의회 의원들이 추석을 맞이해 10월 4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추석 위문품을 전달했다

류재건 의장을 비롯한 북구의회 의원 7명은 10월 4일(수)오전 10시 30분 북구 호계동에 있는 북구재가어르신복지센터(시설장 이정석)와 북구어르신복지회관(시설장 설진화)을 찾아 농소농협 친정청결미 20kg들이 10포를 전달하고 어르신들과 환담을 나눴다.

의원들은 이어 천곡동에 있는 울산명성전문요양원(시설장 강순세)를 방문해 역시 쌀 20kg들이 10포를 전달했다. 또 시설 곳곳을 둘러보며 요양 중인 어르신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연휴 기간 동안에도 요양원에 계셔야 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덜 적적하길 바라는 뜻에서 어르신들을 찾았다"며 "몸은 불편해도 마음만은 보름달처럼 넉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2007년 방문

북구의회는 2월 15일 오후 4시 관내 사회복지시설들을 방문하고 설 위문품을 전달했다.

먼저 성인지체장애인 생활시설인 어울림 화봉공동생활가정과 어울림 연암공동생활가정에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내도록 격려했다. 이어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인 상안동에 위치한 엘림 노인복지시설에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어르신들과 환담을 나누었다.

제6장 기타 의정활동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시설이용자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배려해 줄 것"을 당부하고 따뜻한 설 연휴가 되기를 기대했다.

□ 2007년 방문

북구의회 의원들이 9월 17일 오후 3시 태연재활원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들을 방문해 추석 위문품을 전달했다.

류재건 의장을 비롯한 북구의회 의원 7명은 이날 정신지체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태연재활원에 이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시설인 어울림 화봉공동생활가정과 어울림 연암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해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추석연휴를 보내도록 격려했다.

이날 의원들은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시설수용자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배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2008년 방문

북구의회는 2월 4일 오후 2시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관내 복지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더불어 어려운 이웃을 되돌아보고 다함께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복지시설을 방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류재건 의장을 비롯한 북구의회 7명의 의원들은 먼저 중산동 메아리동산을 방문하여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내도록 격려했다.

이어 달천동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생활용품을 전달하였으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시설인 어울림 화봉공동생활가정

제4절 주요 의정활동

과 어울림 연암공동생활가정에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내도록 격려하고 환담을 나누었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시설 수용자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배려해 줄 것"을 당부하고 따뜻한 설 연휴가 되기를 기대했다.



(사회복지시설 방문 추석 위문품 전달)



(사회복지시설 방문 설 위문품 전달)

15. 전국 선진지 벤치마킹

□ 2007년 전국 유명축제 벤치마킹(낙안읍성축제,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4월 27일 개최되는 제3회 쇄부리문화축제를 앞두고 북구의회는 4월 16일과 17일 이틀간 순천 ‘낙안읍성 축제’와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개최지 현장견학을 다녀왔다.

이번 견학은 지난 3월 개최된 제1회 강동수산물축제와 올해 3회째를 맞는 울산쇠부리문화축제와의 비교 검토를 통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제6장 기타 의정활동

북구의회는 “이번 견학은 북구와 비슷한 지리적·문화적 환경을 갖춘 도시의 축제 참관을 통해 북구의 축제와 비교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개최되는 쇄부리축제와 해변영화축제 등 북구의 축제가 우리나라 대표축제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 2008년 1/4분기 선진시설 벤치마킹(광양시의회, 여수시의회 및 2012 여수세계박람회 홍보관 등)

북구의회는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광양시의회와 여수시의회를 방문하고, 광양항, 여수 해양수산과학관, 광양 매화문화축제 등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북구의회의 선진지 견학은 의정활동을 위한 다양한 참고 자료 수집을 통해 의정활동의 폭을 넓히고 북구 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이번 견학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 홍보관 등 현장을 둘러봄으로써, 제2회 강동수산물축제와 올해 4회째를 맞는 울산쇠부리축제와의 비교 검토를 통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도 많은 초점이 맞춰졌다. 북구의회는 견학일정 첫날 광양시의회를 방문하고 의정활동 방안에 대한 정보교류를 하였으며, 이어서 제12회 광양 매화문화축제 현장을 둘러보았다. 둘째날에는 광양항의 홍보관과 컨테이너부두 현장을 방문하고 광양제철소도 견학했다. 마지막 3일차에는 여수시의회를 방문하여 의정활동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이어서 2012 여수세계박람회 홍보관 견학과 우리 지역 강동에 벤치마킹을 위한 여수 해양수산과학관도 둘러보았다.

□ 2008년 2/4분기 선진시설 벤치마킹(목포시의회, 함평군의회 및 2008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 시설 등 현장견학)

제4절 주요 의정활동

북구의회 류재건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시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목포시의회와 함평군의회를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자료수집과 상호 의정활동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교류를 위해 현장견학을 다녀왔다.

이번 북구의회외 타 시,도 의회의 방문 및 시설 견학은 전국의 여러지역을 방문하여 견문을 넓히고 의정활동의 참고 자료를 수집하여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북구 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견학은 목포시에 있는 국내유일해양전시관인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을 둘러보고 우리지역 강동에 복합해양도시로 조성되고 있는 강동권 개발에 접목할 방안을 검토하고,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견학하여 생태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우리지역에 접목할수 있는 방안 비교검토를 통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북구의회는 견학일정 첫날 목포시의회를 방문하여 목포시의회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및 의정활동 방안에 대한 정보교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어서 한국산업도자전시관과 국내유일해양전시관인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을 견학하였다.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견학중 목포시장(시장 정종득)의 영접을 받고 환담을 나누었다. 이어 둘째날에 함평군의회를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자료수집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과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시설을 견학하였다. 또한 우리지역에 벤치마킹을 위한 생태체험공원인 자연생태공원을 중점 견학하였다. 자연생태공원 견학중 함평군수(군수 이석형)의 영접을 받고 환담을 나누었다.

제6장 기타 의정활동

북구의회는 “이번 견학은 북구와 비슷한 지리적·문화적 환경을 갖춘 도시의 해양 시설들과 축제 참관을 통해 우리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비교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계속 개발되는 강동권개발과 생태도시로 변모하는 북구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목포시의회 방문)



(2012 여수세계박람회 홍보관 견학)

16. 극기훈련 및 지역임도 현장답사활동

- 북구의회는 2006년 11월 18일 류재건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 20여명이 참여한 관내 동대산, 무룡산, 염포산을 일주하는 코스로 진행된 ‘의원 극기훈련 및 지역임도 현장답사’를 통하여 심신단련과 내부결속을 강화하였으며, 아울러 환경정화활동을 병행하여 지역사랑에 대한 정신을 고취시켰다.
- 북구의회는 2007년 7월 23일 제1차 정례회를 마치고 류재건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무룡산 극기훈련과 단합대회를 실시하였다. 의원들은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2007년 행정사무

제4절 주요 의정활동

감사 실시에 따른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 더 나은 행정사무감사 활동 방안들에 대한 많은 의견들을 나누었다.

- 북구의회는 2007년 11월 22일 류재건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울주군 간월산 배내골 지역임도 현장답사와 의원 극기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의원 및 직원들의 극기훈련과 지역임도 현장답사는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심신단련과 울주군의 지역임도 시설을 둘러보고 우리 지역의 임도와의 비교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지역임도 현장답사와 주변 환경정화활동도 함께 하였다.



(2006 극기훈련 및 지역임도 현장답사)



(2007 극기훈련 및 지역임도 현장답사)

17. 유관 기관과의 친선축구대회 및 커플마라톤대회

□ 2006년도 의원 친선축구대회

9월 30일 오후 2시 문수월드컵 경기장 보조구장에서 '2006년도 울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친선 축구대회'가 북구의회 전 의원을 비롯, 각

제6장 기타 의정활동

구·군 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과)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강석구 북구청장과 박맹우 울산시장을 비롯,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 행사를 축하했다.

□ 제3회 선출직 친선축구대회

2006년 11월 12일 북구의회 의원들은 국회의원, 시장, 자치단체장, 지역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구 미포구장에서 열린 제3회 울산광역시 구·군 선출직 친선축구대회에 참가하여 구·군간의 유기적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화합과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110만 울산시민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울산지역 선출직들의 화합과 단결,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교류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각 구·군별로 팀을 이뤄 예선 경기와 준결승, 결승 등 4경기로 승부를 가리며, 여성의원들도 팀당 2명씩 참가하였다. 각 구·군의 국회의원과 구청장도 선수로 참여해 화합의 시간을 보냈다.

□ 제5회 경상공플마라톤대회

북구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은 5월 13일(일) 오전 08:30 울산대공원 남문 sk광장에서 개최된 울산광역시 승격 10주년 기념 제5회 경상공플마라톤대회에 참석하였다.

북구의회에서는 이번 대회에 참가한 의원들과 직원들 모두 북구의회 로고가 새겨진 조끼를 입고 마라톤대회에 참가하였고, ‘생동하는 북구의회 화이팅’ 문구를 담은 플랜카드를 내걸어 참석한 시민들의 많은 주목을

제4절 주요 의정활동

받기도 했다.



(울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친선축구대회)



(제5회 경상커플마라톤대회)

제5절 의정활동일지

2006년도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7. 3(월) 10:00	본회의장	임 시 회	○ 제90회 북구의회 임시회	
7. 3(월) 14:00	본회의장	개 원 식	○ 제4대 북구의회 개원식	
7. 4(화) 11:00	농소농협	수 료 식	○ 농소농협 주부대학 제16기 수료식	
7. 6(목)	동천체육관	기념행사	○ 2006년도 울산광역시 여성대회	
7. 7(금) 14:00	가족문화센터	심포지엄	○ 울산광역시 사회복지 심포지엄	
7. 8(토) 09:00	농소중학교	체육행사	○ 제2회 건강생활실천 줄넘기 한마당	
7.10(월) 12:00	마우나오션 리조트	기념행사	○ 울산시 농업인 전진대회	
7.12(수) 18:30	롯데호텔	축 하 연	○ 국제라이온스협회(울산, 양산지구) 총재, 부총재 취임 축하연	
7.13(목) 17:30	북구청 3층 상황실	월 레 회	○ 북구 무릉회 월례회	
7.14(금) 10:00	동해농장 식당 앞	기념행사	○ 국도31호선(울산~강동) 부분 개통식	
7.14(금) 14:00	염포동 주민센터	노래자랑	○ 제2회 염포동 한마음 노래자랑대회	
7.19(수) 11:00	문수컨벤션센터	기 념 식	○ 울산매일신문 창간 15주년 기념식	

제5절 의정활동일지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7.19(수) 14:00	북구문예회관	기념행사	○북구여성주간행사	
7.20(목) ~7. 28(금) <9일간>	본회의장	임 시 회	○제91회 임시회	
7.20(목) 14:00	농소농협	취 임 식	○(사)한국여성유권자 울산연맹 북구지부 취임식	
7.20(목) 14:00	시교육청	복지대회	○2006 울산시장장애인문화협회 복지대회	
7.21(금) 18:00	다이아몬드 식당	협 의 회	○구·군 의장단 협의회	
7.24(월) 19:30	일산해수욕장	해변축제	○제6회 동구해변축제	
7.25(화) 14:00	북구문예회관	개 강 식	○북구 주민자치대학 개강식	
7.27(목) 14:00	양정생활체육공원	일일호프	○새마을지도자 양종동 협의회, 부녀회 사랑의 일일호프	
7.28(금) 11:00	민원접견실	간 담 회	○양정동송전탑관련 관계자 간담회	
8.16(수) 10:30	달천농공단지	기관방문	○달천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방문	
8.17(목) 10:30	나정해수욕장	체험캠프	○적십자 장애인 사랑의 바다 체험캠프	
8.18(금) 14:00	지하상황실	격려방문	○을지연습훈련 방문 격려	
8.24(목) 15:00	3층 소회의실	심의위원회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8.28(월) 14:00	국회의원회관	토 론 회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	

제6장 기타 의정활동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8.29(화) 15:00	롯데호텔	위 크 쉑	○민주평통 울산지역회의 위원 워크숍	
9. 7(목) 11:00	3층 소회의실	창립총회	○(사)의사들 북구지회 창립총회	
9. 7(목) 18:30	한국폴리텍 Ⅶ울산대학	준 공 식	○한국폴리텍Ⅶ울산대학 잔디구장준공식	
9. 8(금) 10:30	민원접견실	간 담 회	○양정동 송전탑관련 간담회	
9.11(월)~ 9.19(화) <9일간>	본회의장	정 령 회	○제92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9.11(월) 19:20	북구문예회관	무룡예술제	○2006 울산 무룡예술제 개막식	
9.12(화) 18:30	울산종합운동장	개 막 식	○전국 장애인 체전 개막식	
9.13(수) 18:00	문수보조구장	축 제	○2006 대한민국장애인축제 희망의 한걸음	
9.14(목) 14:00	이화초등학교	개 소 식	○이화초등학교 구강보건실 개소식	
9.14(목) 19:00	호반광장	개 막 식	○처용문화제 개막식	
9.16(토) 18:00	문수월드컵 컨벤션센터	개 막 식	○시민생활체육대회 개막식	
9.19(화) 11:00	근로복지회관	결 단 식	○전국지능경기대회 선수단 결단식	
9.21(목) 17:30	3층 소회의실	월 령 회	○북구 무룡회 월례회	
9.23(토) 10:00	농소운동장	축구대회	○제3회 북구청장기 축구대회	

제5절 의정활동일지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9.26(화) 13:00	강동분관	개 소 식	○강동재가어르신복지센터 이전 개소식	
9.27(수) 10:00	국 회	의원연수	○국회 의원연수	
9.29(금) 10:00	농소운동장	체육대회	○제6회 북구청장배 게이트볼 대회	
9.30(토) 10:00	문수구장	체육대회	○구·군 선출직 친선 축구대회	
10.4(화) 19:30	북구문예회관	예 술 제	○2004년 무룡예술 한마당	
10.12(목) 10:00	민원접견실	위 원 회	○해외연수 자문위원회 개최	ok
10.17(화) 10:00	의장실	간 담 회	○의원 간담회	
10.18(수) 10:00	효문동사무소	개 소 식	○효문동사무소 개소식	
10.20(금) 11:00	정자해변	기 념 식	○자연보호헌장 선포 제28주년 기념식	
10.20(금) 14:00	북구청 광장	전 시 회	○가을꽃전시회 및 북구민건강한마당	
10.23(월)~ 10.24(화) <2일간>	본회의장	임 시 회	○제 93회 임시회	
10.24(화) 19:00	북악스카이	간 담 회	○제3대 의원과의 간담회	
10.27(금) 15:30	롯데호텔2층	공 연	○새터민초청강의 및 예술단 공연	
10.28(토) 10:30	송정초등학교	복지증진대회	○북구장애인 복지증진대회	

제6장 기타 의정활동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0.28(토) 11:00	연암초등학교	경로잔치	○ 효문동 경로잔치	
10.28(토) 11:00	농소중학교	경로잔치	○ 농소1동 경로잔치	
11.8(수) 18:30	북구문예회관	축 제	○ 제4회 북구청소년 어울림마당	
11.9(목) 15:00	시의회	토 론 회	○ 방폐장 반대 토론회	
11.10(금) 10:00	농소운동장	축 제	○ 제2회 북구 농. 도 한미당 축제	
11.10(금) 14:00	상안초등학교	개 교 식	○ 상안초등학교 개교식	
11.11(토) 10:00	화봉제1공원	대 회	○ 북구자원봉사자 대회	
11.11(토) 11:00	강동초등학교	경로잔치	○ 강동동 경로잔치	ok
11.13(월) 14:00	시의회	스피치대회	○ 제4회 의회사랑 스피치 대회	
11.14(화) 10:00	농소운동장	체육대회	○ 회원친선 게이트볼 대회	
11.14(화) 15:00	강 릉	대 회	○ 2006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	
11.17(금) 09:00	2층 대회의실	전진대회	○ 바르게살기 전진대회	
11.17(금) 10:30	무룡산매봉제	산불고사	○ 2006 옥림의 날 및 산불고사	
11.20(월) 10:30	의장실	간 담 회	○ 의원간담회	

제5절 의정활동일지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1.22(수) 17:00	북구문예회관	발 표 회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11.24(금) 10:00	농소운동장	체육대회	○북구생체협 게이트볼 대회	
11.27(월) ~12.27(수) <31일간>	본회의장	임 시 회	○제2차 정례회	
11.27(월) 14:00	민원접견실	보 고 회	○해외연수 보고회	
11.30(목) 11:00	북구보훈회관	위안행사	○2006년 연말고령회원 위안행사	
12. 2(토) 09:00		현장 확인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12. 7(목) 14:00	북구문예회관	보 고 회	○강북교육 실적 보고회	
12. 8(금) 18:00	북구문예회관	전 시 회	○아카데미서예반 동호회 작품전시회	
12. 9(토) 12:00	농소운동장	축구대회	○북구생체회장배 축구대회	
12.11(월) 14:00	현대백화점정문	시 중 식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	
12.13(수) 17:30	3층 소회의실	월 레 회	○북구 무룡회 월례회	
12.14(목) 16:30	의장실	설 명 회	○울산투명사회협약체결 추진상황 설명	
12.13(수) 17:30	삼산동	간 담 회	○민주평통 자문위원 간담회	
12.15(금) 15:00	시의회당강당	지도자대회	○새마을울산지도자대회	

제6장 기타 의정활동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2.15(금) 19:00	북구문예회관	발 표 회	○태연학교 “함박웃음 잔치”	
12.18(월) 18:00	롯데호텔	발 기 식	○매곡 지방산업단지 협의회 발기식	
12.19(화) 14:00	북구문예회관	수 료 식	○북구주민자치대학 수료식	
12.19(화) 18:00	2층 대회의실	기 념 식	○체육인의 밤	
12.21(목) 10:00	3층 소회의실	보 고 회	○환경보전계획 최종보고회	
12.22(금) 19:30	북구문예회관	정기연주회	○북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12.27(수) 10:30	민원접견실	종 무 식	○북구의회 종무식	
12.29(금) 11:00	2층 대회의실	종 무 식	○북구청 종무식	
12.30(토) 14:00	곡리경로당	주민총회	○송정택지개발관련 주민총회	

2007년도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4(목) 11:00	롯데호텔	신년인사	○상공회의소 주관 신년인사회	
1.5(금) 11:0	대회의실	신년인사	○북구관내 기관단체장 신년인사회	
1.11(목) 10:00	의장실	간 담 회	○의원간담회	
1.11(목) 14:00	호계시장	서명운동	○방폐장 서명운동	
1.17(수) 12:20	중 구	협의회	○전국 시·군·구 의장단협의회	
1.18(목) 14:00	쌍용아진 목요장터	서명운동	○방폐장관련 서명운동	
1.19(금) 16:15	의 장 실	방 문	○한전 동울산지점장 의장 방문	
1.23(화) 18:30	농소 새마을금고	총 회	○농소1, 2동 자율방범대 총회	
1.24(목) 14:30	의 장 실	전 달 식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	
1.25(목) 10:30	농소농협	정기총회	○농소농협 제38기 정기총회	
1.27(토) 17:00	명 춘 동	이취임식	○자연보호 효문동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1.30(화) 11:00	보훈회관	총 회	○(사)6.25참전유공자회 총회	

제6장 기타 의정활동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31(수) 11:30	소회의실	정기총회	○새마을운동단체 합동 정기총회	
2.1(목) 17:00	의 장 실	간담회	○의원 간담회	
2.2(금) 15:00	농소2동	순회방문	○구청장 동 순회방문	
2.5(월)~ 2.14(수) <10일간>	본회의장	임사회	○제95회 임사회	
2.6(화) 15:00	강동동	순회방문	○구청장 동 순회방문	
2.7(수) 15:00	효문동	순회방문	○구청장 동 순회방문	
2.8(목) 15:00	송정동	순회방문	○구청장 동 순회방문	
2.9(금) 18:20	마우나오션	신년회	○바르게살기 북구 신년회	
2.12(월) 14:00	민원접견실	간담회	○의사들과의 간담회	
2.12(월) 15:00	염포동	순회방문	○구청장 동 순회방문	
2.13(화) 11:00	상황실	위원회	○쇠부리문화축제추진위원회	
2.14(목) 10:30	정보통신고	졸 업 식	○울산정보통신고 졸업식	
2.15(목) 14:00	신전경로당	개 소 식	○신전경로당 개소식	
2.22(목) 11:00	서울코엑스	협의회	○전국 구·군의장단 협의회	

제5절 의정활동일지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2.23(금) 14:00	시의사당	보고회	○울산사랑운동 추진계획보고회	
2.24(토) 18:00	야외공연장	기념행사	○민주평통 통일염원 대행진	
2.24(토) 19:00	대회의실	이취임식	○북구배드민턴연합회장 이취임식	
2.26(월) 14:30	대회의실	정기총회	○음식업북구지부 제11차 정기총회	
2.27(화) 14:00	시의사장	체결식	○투명사회협약체결식	
2.28(수) 18:30	중 구	협의회	○구·군의장단 협의회	
3.1(목) 10:00	시문예회관	기념행사	○3·1절 기념식	
3.5(월) 14:00	의장실	간 담 회	○양정동 철탑관련 간담회	
3.6(화) 16:00	효문동	기 원 제	○정월대보름 기원제	
3.7(수) 10:30	북구사회 복지관	개 강 식	○북구어르신대학 봄맞이 개강	
3.10(토) 10:00	효문구장	축구대회	○화봉·연암·강동 친선 축구대회	
3.13(화) 10:00	무 룡 산	등반대회	○북구선출직과 선관위 공명선거다짐 등반대회	
3.16(금) 10:00	달천공원	나무심기	○제62회 나무심기 행사	
3.16(금) 14:00	사청경로당	준 공 식	○사청경로당 준공식	

제6장 기타 의정활동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3.17(토) 14:00	농소운동장	축구대회	○ 제14회 북구축구연합회장기 축구대회	
3.20(화) 15:00	북구문예회관	개 강 식	○ 제5기 북구주민자치대학 개강식	
3.20(화) 19:00	대회의실	성과보고회	○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	
3.21(수) 18:00	양정동	이취임식	○ 양정동 생체회장 이취임식	
3.22(목) 16:00	민원접견실	설 명 회	○ 외국어고 유치 설명회	
3.22(목) 19:00	대회의실	이취임식	○ 북구 생체회장 이취임식	
3.23(금) 12:00	보훈회관	정기총회	○ 무공수훈자회 북구지회 정기총회	
3.24(토) 15:00	울산YMCA	이취임식	○ 울산YMCA 준공식 및 사무총장 이취임식	
3.24(토) 19:00	정자항	개 막 식	○ 강동수산물축제 개막식	
3.26(월) 14:00	국도31호선	꽃길조성	○ 민주평통 무궁화꽃길조성	
3.27(화) 10:00	노인지회	정기총회	○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정기총회	
3.27(화) 11:00	강동농협	수 여 식	○ 유포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	
3.28(수) 10:00	율동등산로	식재행사	○ 묘목식재행사	
3.29(목) 14:00	대회의실	토 론 회	○ 외국어고 유치 토론회	

제5절 의정활동일지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3.30(금) 15:00	진장매매단지	준 공 식	○울산자동차매매단지 준공식	
4. 2(월) 11:00	민원접견실	간 담 회	○방폐장관련 자생단체 간담회	
4. 3(화) 11:00	중소기업지원센터	창립행사	○도시공사 창립행사	
4. 6(금) 11:00	농소호봉사내	위 령 제	○농소6.25전물군경 합동위령제	
4. 7(토) 12:00	의 장 실	간 담 회	○방폐장관련 의원 간담회	
4. 7(토) 15:00	롯데백화점	캠 페 인	○방폐장 캠페인	
4. 9(월) 15:00	시의회대회의실	정기총회	○(사)자연보호중앙연맹 시협의회 정기총회	
4.10(화) 10:30	농소미곡처리장	기 원 제	○북구 배 풍년기원제	
4.12(목) 17:00	3층소회의실	무 룡 회	○북구 무룡회	
4.13(금) 16:00	3층소회의실	발 표 회	○음시기물자원화시설중간용역발표회	
4.18(수) 10:00	야외공연장	환영행사	○1004희망의 마라톤대회 환영행사	
4.18(목) 11:30	천곡동	추 모 식	○4.19 정임석열사 추모식	
4.20(금) 10:30	자원봉사센터	경로잔치	○자원봉사센터어르신경로잔치	
4.23(월) 11:00	동대산기령고개	의 병 제	○기박산성의병제	

제6장 기타 의정활동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4.26(목)~ 5.3(목) <8일간>	본회의장	임 시 회	○ 제96회 북구의회 임시회	
4.27(금) 19:00	북구청광장	개 막 식	○ 쇄부리문화축제 개막식	
4.27(금) 19:30	북구청광장	개 막 식	○ 봄꽃페스티벌 개막식	
4.28(토) 11:00	청룡암	경로잔치	○ 청룡암경로위안잔치	
4.28(토) 18:30	동 구	협 의 회	○ 구.군 의장단협의회	
4.30(월) 15:00	강동자동차극장	기 공 식	○ 강동산하지구도시개발사업기공식	
5. 3(목) 11:00	의장실	간 담 회	○ 의원 간담회	
5. 4(금) 13:30	2층대회의실	설 명 회	○ 2007자활근로산업 설명회	
5. 5(토) 09:30	북구청광장	기념행사	○ 북구 어린이날 큰 잔치	
5. 8(화) 15:00	의장실	간 담 회	○ 의원 간담회	
5. 9(수) 05:20	북구청	해외연수	○ 민주평통 캄보디아 출발	
5.16(수) 09:50	북구청	연 수	○ 구.군합동연수 출발(경주)	
5.18(금) 11:00	장등마을회관	준 공 식	○ 장등마을회관 준공식	
5.21(월) 15:00	약수초강당	설 명 회	○ 약수초 공원화사업 설명회	

제5절 의정활동일지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5.22(화) 14:00	효문동사무소	설 명 회	○ 효문공단사업 추진 설명회	
5.23(수) 15:00	3층소회의실	보 고 회	○음식물자원화시설용역최종보고회	
5.25(금) 10:00	의장실	간 담 회	○의원 간담회	
5.26(토) 17:00	북구청광장	축 제	○제1회 울산북구 청소년 축제	
5.29(화)~ 6. 4(월) <7일간>	본회의장	임 시 회	○제96회 북구의회 임시회	
6. 6(수) 10:00	현충탑	추 념 식	○제52회 현충일 추념식	
6. 8(금) 10:00	중부경찰서	위 원 회	○교통심의 위원회	
6. 9(토) 10:00	호계초교	바둑대회	○제2회 북조리찰매쌀배 바둑대회	
6. 9(토) 10:00	효문운동장	운 동 회	○지역아동센터 한마음 운동회	
6.13(수) 15:00	신전시장	기 념 식	○염포동 신전시장 단장 기념식	
6.14(목) 11:00	롯데호텔2층	기 념 식	○경동도시가스창립30주년 기념식	
6.18(월) 14:00	의장실	간 담 회	○의원 간담회	
6.18(월) 16:30	민원접견실		○상해시 남회구 의회 방분	
6.19(화) 10:30	2층대회의실	설 명 회	○남회구 지동차부품 및 클류부문 투자설명회	

제6장 기타 의정활동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6.19(화) 12:00	2층 대회의실	오 찬	○ 남회구주재 오찬	
6.19(화) 14:00	시청기자실	기자회견	○ 경동도시가스관련 기자회견	
6.19(화) 17:00	강동제이드	만 찬	○ 의회주재 남회구와의 만찬	
6.20(수) 17:00	의장실	설 명 회	○ 음식물처리장 관련 설명회	
6.21(목) 10:00	동천체육관	축구대회	○ 제1회 한국노총 의장기 축구대회	
6.21(목) 14:00	북구어르신 복지센터	개 원 식	○ 북구어르신행복마을 소규모요양시설 개원식	
6.21(목) 14:00	농소, 쌍용아진	서명운동	○ 의사들북구지회 외국어고유치 서명운동	
6.21(목) 17:00	2층대회의실	월 례 회	○ 6월 무릉회 월례회	
6.21(목) 19:00	울주군	협 의 회	○ 구.군 의장단 협의회	
6.22(금) 10:30	진장유통단지	기 공 식	○ 울산 농수산물유통센터 기공식	
6.22(금) 11:10	세나병원	기념행사	○ 구민15만명 돌파 기념행사	
6.25(월토) 17:00	2층대회의실	교 육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교육	
6.27(수) 14:00	2층대회의실	글짓기대회	○ 효자송도선생 효사상고취 글짓기대회	
6.28(목) 10:00	2층대회의실	현장 확인	○ 행정사무감사관련 현장 확인	

제5절 의정활동일지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6.29(금) 11:00	중산I.C	준 공 식	○오토밸리3공구 개설공사 준공식	
7. 2(월)~ 7.23(월) <22일간>	본회의장	임 시 회	○제98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7.10(화) 18:30	현대백화점	사 진 전	○제11회 경상일보 보도사진전	
7.14(토) 18:00	북구청광장	축 제	○청소년 어울마당	
7.14(토) 19:00	정자해변	축 제	○정자해변 영화축제	
7.18(수) 14:00	북구문예회관	여성행사	○제12회 울산여성주간행사	
7.25(수) 15:00	롯데호텔	기 념 식	○울산신문창간 1주년 기념식	
7.25(수) 18:00	양정동사무소	토 론 회	○주민참여예산토론회	
7.26(목) 18:30	중 구	협 의 회	○구.군 의장단 협의회	
8. 8(수) 10:00	양남 나정해수욕장	체험캠프	○적십자 장애아동 사랑의 바다체험캠프	
8.11(토) 14:00	북구청	창 립 식	○(사)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울산지부 북구지회 창립식	
8.17(금) 18:30	핸드볼협회 사무실	개 소 식	○울산시 핸드볼협회사무소 개소식	
8.20(월) 10:00	북구청 충무상황실	상황보고회	○통합방위협의회위원 을지연습 상황보고회	
8.21(화) 14:00	의장실	간 담 회	○의원 간담회	

제6장 기타 의정활동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8.21(화) 16:00	북구청 충무상황실	을지연습	○2007 을지연습 민관 참관	
8.24(금) 18:00	태화강둔치	농업경영인 대회	○ 제7회 울산광역시 농업경영인대회	
8.25(토) 10:00	화봉중학교	체육대회	○송정 동민체육대회	
8.27(월) 10:00	농소새마을금고	개 점 식	○농소새마을금고 본점 개점	
8.30(목) 12:00	의장실	간 담 회	○2008 의회 당초예산 편성관련 간담회	
8.30(목) 12:00	시의회 3층대회의실	토 론 회	○87년 노동자 대투쟁 20주년 학술토론회	
8.30(목) 17:00	3층소회의실	월 례 회	○북구 무룡회 8월 월례회	
9. 5(화)~ 9.7(금)	제 주 오리엔탈호텔	의원연수	○지방의회 의원연수	
9.10(월) 11:00	마우나오션 리조트입구	기 념 식	○공명선거 공원조성 기념식	
9.10(월) 19:30	북구청광장	예 술 제	○2007 울산무룡예술제	
9.11(화) 11:00	무룡청소년 수련장	실천다짐대회	○2007 새마을운동 실천다짐대회	
9.12(수) 10:00	양정새마을회관	개 소 식	○무료공구대여센터 개설 개소식	
9.12(수) 16:00	의 장 실	간 담 회	○의원 간담회	

제5절 의정활동일지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9.15(토) 16:00	롯데백화점 광 장	캠 페 인	○울산사랑 카폴운동 캠페인	
9.17(월) 10:30	민원접견실	위 원 회	○의원공무국외연수 평가자문 위원회	
9.17(월) 14:00	농소어린이집	개 원 식	○국공립 농소어린이집 신축 개원식	
9.17(월) 18:00	현대백화점 9층	사 진 전	○제6회 울산매일 보도사진전	
9.17(월) 19:00	염포횃집	협 의 회	○구.군 의장단 협의회	
9.18(화) 15:00	2층대회의실	발 대 식	○지역자율방재단 발대식	
9.19(수)~ 9.20(목) <2일간?>	본회의장	임 시 회	○제99회 임시회	
9.19(수) 13:30	롯데백화점 광장	리본달기	○민주평통 평화메시지 리본달기 행사	
9.19(수) 11:00	의장실	정 려 회	○상달실 운영관련 정례회	
9.21(금) 14:00	호계구확장리지구	재래시장 방문	○추석 재래시장(호계, 화봉, 신전) 방문	
9.28(금) 11:40	울산교육수련원	위 크 쉑	○간부공무원 혁신리더쉽 워크숍 격려	
9.29(토) 16:00	북구문예회관	마 술 대 회	○청소년 마술대회	
10. 3(수) 09:00	매곡초등학교	주민 잔 치	○농소2동 주민한마음 큰잔치행사	
10. 3(수) 18:00	KBS울산홀	기 념 식	○제7회 울산광역시민의 날 기념식 및 제41회 처용문화제 전야제	

제6장 기타 의정활동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0. 5(금) 11:00	태화동	기 념 식 경진대회	○ 제29주년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식 및 경진대회	
10. 5(금) 15:00	창원체육관	대 회	○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10. 5(금) 17:00	문수월드컵 컨벤션센터	개 회 식	○ 제10회 시민생활체육대회 개회식	
10. 8(월) 15:00	북구문예회관	중 강 식	○ 제5기 북구주민자치대학 종강식	
10. 8(월) 19:00	김서방횃집	협 의 회	○ 구.군 의장단 협의회	
10. 9(화) 14:00	북구청 충무상황실	임시회의	○ 통합방위협의회 임시회의	
10.10(수) 14:00	북구문예회관	구정설명회	○ 부구신설 10주년기념 구정설명회	
10.12(금) 14:00	방송통신대	세 미 나	○ 구군의원 사업예산제도관련 세미나	
10.12(금) 18:00	북구문예회관	설 명 회	○ 평창리비에르@ 소송관련 주민설명회	
10.15(월) 15:00	3층소회의실	회 의	○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촉장수여 및 1차회의	
10.16(월)~ 10.25(목) <10일간>	본회의장	임 시 회	○ 제100회 임시회	
10.16(화) 10:30	민원접견실	기념행사	○ 북구의호 제100회 임시회 기념행사	
10.17(수) 11:00	의회소회의실	설 명 회	○ 대선 및 교육감 재선거관련 매니페스토 설명회	
10.17(수) 13:00	본회의장	모의의회	○ 청소년 모의의회	

제5절 의정활동일지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0.19(금) 14:00	3층소회의실	심의위원회	○ 제2차 의정비 심의위원회	
10.19(금) 18:00	북구문예회관	주민설명회	○ 평창리비에르@ 소송관련 주민설명회	
10.20(토) 10:30	염포초등학교 급식소	경로잔치	○ 염포 어르신 위안잔치	
10.22(월) 10:30	의장실	정 령 회	○ 10월 민원상담실 운영 정례회	
10.24(수) 10:30	북구어르신 복지회관	축 제	○ 2007 어르신 문화축제	
10.24(수) 16:00	의장실	설 명 회	○ 해외연수관련 설명회	
10.25(목) 10:00	양정동	현장 활동	○ 현장 활동(양정동사무소 건립사업)	
10.25(목) 17:00	3층소회의실	월 령 회	○ 무릉회 월례회	
10.26(금) 11:00	태화강 고수부지	축 제	○ 울산광역시 한마음보육축제	
10.29(월)~ 11.3(토)	홍콩 싱가포르	공무연수	○ 공무국외연수	
11. 5(월) 10:00	제7765부대	기념행사	○ 육군 제7765부대 창설25주년 기념행사	
11. 7(수) 11:00	우편집중국	개국행사	○ 울산우편집중국 개국행사	
11. 7(수) 11:00	문수축구경기장	농업인대회	○ 제10회 울산광역시 농업인대회	
11. 9(금) 11:00	달천근린공원	기념행사	○ 육림의 날 행사	

제6장 기타 의정활동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1. 9(금) 14:00	의장실	간 담 회	○의원 간담회	
11. 9(금) 17:00	중구의장실	긴급회의	○구군의장단협의회 긴급회의	
11.13(화) 15:00	구청장실	간 담 회	○쇠부리보존회 유지방안에 관한 간담회	
11.15(목) 19:00	북악스카이	간 담 회	○사격팀과의 간담회	
11.16(금) 15:00	의장실	환영행사	○남원시 의회 방문	
11.20(화) 10:30	북구보건소 지하	행사격려	○새마을 김장담그기행사 격려	
11.20(화) 15:00	옥동대공원 가족문화센터	출 범 식	○2007 선진국민울산연대 출범식	
11.26(월)~ 12.17(월) <22일간>	본회의장	임 시 회	○제10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11.26(월) 13:30	민원접견실	보 고 회	○의원국외연수 보고회	
11.26(월) 15:00	상안어린이공원	준 공 식	○상안 어린이공원 준공식	
11.27(화) 12:00	북구문예회관	정기연주회	○울산북구 여성합창단 제4회 정기연주회	
11.29(목) 12:00	소구루마식당	경로잔치	○2007년도 연말 고령회원 경로위로연	
12. 7(금) 12:00	소구루마식당	경로잔치	○무고수훈자회 경로 위로연	
12.13(목) 14:00	북구문예회관	실적보고회	○2007학년도 강북교육 실적보고회	

제5절 의정활동일지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2.14(금) 14:00	명춘초교 시청각실	개 관 식	○명춘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실 개관	
12.18(화) 10:30	북구어르신 복지회관	송년행사	○북구어르신행복대학 종강식 및 송년행사	
12.21(금) 10:00	의장실	간 담 회	○민원상담실 운영 간담회	
12.21(금) 11:00	대한뷔페	사업평가회	○07 울산북구 지역자활센터 사업평가회	
12.21(금) 18:30	마우나오션 리조트	월 레 회	○북구 기관단체장협의회 월례회	
12.21(금) 19:30	문수컨벤션	행 사	○행복한 보육인의 밤	
12.10(수) 14:00	북구문예회관	구정설명회	○부구신설 10주년기념 구정설명회	
12.27(목) 14:00	2층대회의실	주민설명회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 환경교통영향 평가서 주민설명회	
12.28(금) 10:00	민원접견실	종 무 식	○2007년 북구의회 종무식	
12.31(월) 11:00	구내식당	종 무 식	○2007년 북구청 종무식	
12.31(월) 19:00	산하해변	송년행사	○강동해변 송년행사	

제6장 기타 의정활동

2008년도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1(화) 06:30	산하해변	축 제	○ 2008 강동해변 해맞이축제	
1.4(금) 11:00	의 장 실	신년인사	○ 의원 신년 인사회	
1.4(금) 16:00	상황실	정례회의	○ 북구민주평통 2008년 신년 정례회의	
1.7(월)~ 1.8(화) <2일간>	태안반도	봉사활동	○ 태안반도 자원봉사	
1.15(화)	노조사무실	개소식	○ 지부사무실 개소식	
1.19(토) 10:00	천곡중학교	이취임식	○ 농소3동 생활체육협의회 제6대 회장 이취임식	
1.21(월) 10:00	북구종합사회 복지관	문화행사	○ 문화공간협의회 회원 한마당	
1.29(화) 11:00	보훈회관	이취임식	○ 6·25참전유공자회 지회장 이취임식 및 2008년도 정기총회	
1.30(수) 17:00	다이아몬드 식당	협의회	○ 구군의회장단 협의회 회의	
1.31(목) 13:30	공사현장	기공식	○ 농소농협 농축산물종합유통센터 기공식	
2.1(금) 14:00	이화경로당	준공식	○ 이화경로당 준공식	
2.2(토) 10:00	동천강하구	먹이주기 행사	○ 겨울철새 먹이주기 행사	

제5절 의정활동일지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2.4(월) 14:00	장애인보호작 업장의 2개소	격려방문	○ 설맞이복지시설 격려 방문	
2.6(수) 13:00	효문구장	설맞이행사	○ 상방청년회 주관 설맞이 행사	
2.11(월) 18:30	신천 엘레팡	신년회	○ 의사들 신년회	
2.14(목)	새마을 북구지회	정기총회	○ 새마을북구지회 정기총회	
2.16(토) 10:30	진장중학교	졸업식	○ 진장중학교 졸업식	
2.18(월) 15:00	달천농공단지	이취임식	○ 달천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제10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2.19(화) 11:30	삼성동 코엑스	정기총회	○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정기총회	
2.21(목) ~ 3.6(목) <15일간>	본회의장/ 소회의실	임사회	○ 북구의회 제102회 임사회	
2.21(목) 11:00	각 동별	문화행사	○ 정월대보름행사	
2.22(금) 13:30	울산대 본관	워크숍	○ 울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워크숍	
2.25(월) 11:00	국회의사당	취임식	○ 제17대 대통령 취임식	
2.27() 10:30	북구어르신 복지회관	문화행사	○ 2008 북구어르신행복대학 개강식	
3.1(토) 10:00	울산문화 예술회관	기념 행사	○ 제89주년 3·1절 기념 행사	
3.3(월) 10:00	2층 대회의실	입학식	○ 제3대학 신입생 입학식	

제6장 기타 의정활동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3.4(화) 19:00	경주교육 문화회관	연 찬 회	○2008 읍면동 새마을 회장단 연찬회	
3.5(수) 18:30	명춘초	이취임식	○명춘진장 자율방법대 제4차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	
3.7(금) 10:30	장애인보호 작업장	자원봉사	○북구의회 자원봉사활동	
3.9(일) 11:00	호계초	이취임식	○호계 배드민턴 이취임식 및 개장식	
3.10(월) 14:30	대회의실	정기총회	○2008년도 제12차 한국음식업중앙회 울산북구지부 정기총회	
3.12(수) ~ 3.14(금) <3일간>	광양, 여수	견 학	○타 시도 선진지 견학	
3.19(수) 10:30	청소년체육 활동장	산신제	○강동동 무룡산 산신제	
3.22(토) 17:30	정자항	축 제	○제2회 강동수산물축제	
3.25(화) 11:00	강동농협	수여식	○유포장학회 제15차 장학금 및 장학증서 수여식	
3.26(수) 17:30	3층 상황실	협약식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협약식	
3.27(목) 11:00	중부경찰서	발 대 식	○지역치안협의회 발대식	
3.28(금) 10:30	천곡마을회관 뒷산	나무심기	○제63회 나무심기행사	
3.28(금) 14:00	의장실	나무심기	○의원 민원상담실 운영 간담회	
3.29(토) 14:00	농소운동장	개회식	○제15회 북구축구연합회장기 축구대회	

제5절 의정활동일지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3.30(일) 10:00	호계중학교	이취임식	○북구족구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및 제9회 북구족구연합회장기 족구대회	
4.3(목) 10:30	농소새마을금고	문화행사	○농소새마을금고 주부가요교실 제12기 입학식	
4.5(토) 11:00	전물군경 충훈비	위령제	○제55회 농소 6·25 전물군경 합동위령제	
4.15(화) 10:00	농소농협	기원제	○제7회 북구 배 풍년기원제	
4.16(수) 10:30	북구청	환영식	○1004릴레이 희망의 마라톤 환영식	
4.16(수) 11:30	신명경로당	준공식	○신명경로당 준공식	
4.17(목) 17:00	3층 상황실	월례회	○북구 기관단체장협의회 월례회	
4.19(토) ~ 4.24(목) <6일간>	중국	통일기행	○민주평통 통일기행	
4.25(금) ~ 5.1(목) <7일간>	본회의장	임 시 회	○제103회 임시회	
4.25(금) 19:00	북구청	문화행사	○제4회 울산쇠부리축제 개막식	
4.26(토) 11:00	송정초등학교	경로잔치	○북구아파트연합회 어르신 경로잔치	
4.27(일) 09:30	효문운동장	체육행사	○제2회 청우축구회장배 화봉연암강동 축구대회	
4.27(일) 18:00	북구청 광장	문화행사	○제4회 울산쇠부리축제 어울림한마당 및 폐막식	
4.28(월) 15:00	북구문화 예술회관	개 강 식	○제6기 북구 주민자치대학 개강식	

제6장 기타 의정활동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4.29(화) 14:00	청소년 지원센터	개소식	○ 청소년지원센터 개소식	
4.30(수) 14:00	양정동 주민센터	개 청 식	○ 양정동 주민센터 개청식	
5.1(목) 10:00	중앙도서관	개관행사	○ 중앙도서관 개관행사	
5.2(금) 11:00	양정힐스테이트 경로당	개 소 식	○ 양정힐스테이트 경로당 개소식	
5.4(일) 11:00	상방경로당	경로잔치	○ 상방경로당 경로잔치	
5.5(월) 10:30	북구청 광장	문화행사	○ 북구 어린이 큰잔치	
5.6(화) 10:30	벽산아파트 노인정	경로잔치	○ 벽산아파트 경로잔치	
5.7(수) 08:00	야경추어탕	간 담 회	○ 조찬간담회	
5.7(수) 10:00	북구사회복지관 앞 공원	문화행사	○ 어르신과 함께하는 5월 가족축제	
5.9(금) 16:00	가대마을회관	현장 확인	○ AI 현장 확인	
5.10(토) 11:00	곡리경로당	경로잔치	○ 곡리경로당 경로잔치	
5.11(일)	달곡마을회관	경로잔치	○ 달곡마을회관 경로잔치	
5.12(월) 10:00	도솔암외 8개소	기념행사	○ 석가탄신일 행사	
5.14(수) ~ 5.15(목) <2일간>	목포, 함평	견 학	○ 2/4분기 선진지 견학	

제5절 의정활동일지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5.16(금) 11:00	매곡천	경로행사	○ 농소새마을금고 경로행사	
5.16(금) 19:00	대회의실	개회식	○ 북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회식	
5.17(토) 14:30	농소초등학교	체육행사	○ 제3회 북구청장기 국학기공대회	
5.18(일) 09:00	마우나리조트 입구	체육행사	○ 제1회 북구 숲길 건강걷기대회	
5.19(월) 16:00	태화루	월례회	○ 구군의장단 협의회 월례회	
5.20(화) 15:00	약수 울산외고 유치부지	현장답사	○ 울산외국어고 유치관련 현장답사	
5.21(수) ~ 5.23(금) <3일간>	국회사무처	의원연수	○ 국회주관 지방의회 의원연수	
5.24(토) 10:00	호계초등학교	문화행사	○ 제3회 북조리 찰메쌀배 바둑대회	
5.25(일) 06:30	동천초등학교	체육행사	○ 노사가 함께하는 제9회 행복북구 건강달리기대회	
5.25(일) 09:30	농소운동장	체육행사	○ 농소3동 생체협회장기 축구대회	
5.25(일) 10:30	양정생활 체육공원	체육행사	○ 울산권역 8개롭 JC가족친선 체육대회	
5.28(수) ~ 6/5(목) <9일간>	본회의장	임사회	○ 제10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사회	
5.28(수) 14:00	쌍용아진 4차	재난대응 훈련	○ 200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5.30(금) 11:00	교육청	협약식	○ 울산외국어 설립지원 협약식	

제6장 기타 의정활동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5.31(토) 10:00	문수양궁장	체육행사	○ 제1회 해병대전우회 울산시 축구대회	
5.31(토) 16:00	북구문화 예술회관	문화행사	○ 청소년 주간맞이 진로 페스티벌	
6.1(일) 09:30	동천초등학교	체육행사	○ 제11회 농소3동 한마음 체육대회	
6.1(일) 11:00	염포초등학교	체육행사	○ 염포동 주민한마음 체육대회	
6.1(일) 12:00	울산종합 운동장	체육행사	○ 울산고등학교 제22회 졸업30주년 한마음 가족체육대회	
6.2(월) 08:40	농소농협 천곡지소	개점식	○ 농소농협 천곡지소 개점식	
6.2(월) 10:00	민원지적과	개 소 식	○ 여권업무 개소식	
6.6(금) 09:50	울산대공원 현충탑 광장	기념행사	○ 제53회 현충일 추념식	
6.7(토) 18:30	이조한정식	간담회	○ 정몽준 최고위원과 시의원, 구군의원 간담회	
6.8(일) 11:00	매곡초등학교	창 단 식	○ 푸르지오 FC 창단식	
6.8(일) 12:00	상연암경로당	경로잔치	○ 상연암경로당 경로잔치	
6.10(화) 09:30	청소년체육 활동장	단합대회	○ 상반기 의원 및 직원 단합대회	
6.11(수) 10:30	북구문화 예술회관	강 연 회	○ 2008 부모교육 대강연회	
6.13(금) 14:00	상황실	보 고 회	○ 평생학습도시 컨설팅 보고회	

제5절 의정활동일지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6.14(토) 10:00	화봉중학교	체육대회	○ 제1회 송정동민 생활체육대회	
6.15(일) 11:00	태화강 일원	체육대회	○ 제2회 태화강배 전국 용선대회	
6.16(월) 18:00	김서방Hits집	월례회	○ 구군 의장단협의회 회의	
6.17(화) 12:00	북구협의회	개 소 식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 사무실 이전 개소식 및 현판식	
6.17(화) 19:00	민방위교육장	교 육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 예산교육	
6.18(수) 12:00	다운한정식	상견례	○북구의회 및 중부경찰서 상견례	
6.19(목) 10:30	새마을 북구지회	창립총회	○새마을 법인설립 창립총회	
6.19(목) 14:00	가족문화센터	문화행사	○ 제10회 경상보훈대상 시상식	
6.20(금) 15:00	상황실	심의위원회	○울산광역시북구 건축심의위원회	
6.23(월) 11:00	상황실	협 의 회	○ 제2차 지역치안협의회	
6.24(화) 10:00	어울림작업 활동시설	자원봉사	○2/4분기 자원봉사활동	
6.26(목) 17:00	상황실	협 의 회	○북구기관단체장 협의회	
6.27(금) 10:30	농소새마을금고	문화행사	○농소새마을금고 주부대학 제12기 졸업식 및 2008년 장학생 장학금 전달식	
6.27(금) 13:00	대회의실	문화행사	○ 제8회 효자송도선생 효사상 고취 글짓기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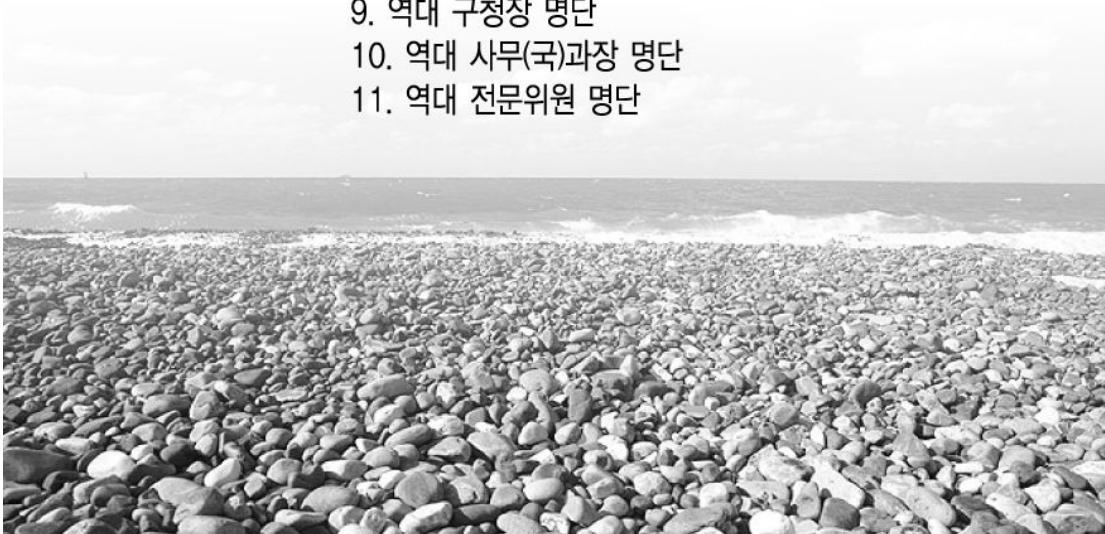
제6장 기타 의정활동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6.27(금) 14:00	동천강변	대 청 소	○ 동천강변 대청소	
6.30(월) 10:00	본회의장	임사회	○ 제105회 임시회	
6.30(월) 16:00	명촌문화센터	개 관 식	○ 명촌문화센터 개관식	



附 錄

1. 역대 의장단 명단
2. 초대의원 명단
3. 초대의원 사진
4. 제2대의원 명단
5. 제2대의원 사진
6. 제3대의원 명단
7. 제3대의원 사진
8. 북구지역 전직의원 명단('97.7.15이전)
9. 역대 구청장 명단
10. 역대 사무(국)과장 명단
11. 역대 전문위원 명단



역대 의장단 명단

□ 의장 명단

구 분	선 거 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초 대	강 동 동	김 성 보	1937. 4. 4	1997.7.15 ~1998.6.30	
제2대 전반기	송 정 동	윤 두 환	1955. 3. 5	1998.7.7 ~2000.2.21	
"	농소3동	박 춘 환	1952. 1.11	2000.2.21 ~2000.7.6	
제2대 후반기	양 정 동	진 한 결	1953.11.15	2000.7.7 ~2002.6.30	
제3대 전반기	송 정 동	김 진 영	1964.10.11	2002.7.9 ~2004.7.6	
제3대 후반기	염 포 동	하 인 규	1959. 9.17	2004.7.7 ~2006.6.30	
제4대 전반기	효문동,양정동, 염포동	류 재 건	1961. 2. 5	2006.7.3 ~2008.7.2	

□ 부의장 명단

구 분	선 거 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초 대	송 정 동	윤 두 환	1955. 3. 5	1997.7.15 ~1998.6.30	
제2대 전반기	농소3동	박 춘 환	1952. 1.11	1998.7.7 ~2000.2.21	
"	양 정 동	진 한 결	1953.11.15	2000.2.21 ~2000.7.6	
제2대 후반기	강 동 동	박 광 식	1955.11.15	2000.7.7 ~2002.6.30	
제3대 전반기	농소2동	김 재 근	1958. 9.11	2002.7.9 ~2004.7.6	
제3대 후반기	농소1동	이 재 경	1956. 4.25	2004.7.7 ~2006.6.30	
제4대 전반기	농소1동,강동동, 송정동	윤 임 지	1952.10.15	2006.7.3 ~2008.7.2	

부 록

초대의원 명단

연번	직 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의 장	강동동	김성보	1937. 4. 4	1997.7.15 ~1998.6.30	환경수도
2	부의장	송정동	윤두환	1955. 3. 5	1997.7.15 ~1998.6.30	교육사회
3	의 원	진장동	정석수	1937. 4.15	1997.7.15 ~1998.6.30	운영·건설
4	의 원	농소동	한성두	1941. 3.31	1997.7.15 ~1998.6.30	도시경제
5	의 원	농소·강동 (제10선거구)	이상원	1941. 8.29	1997.7.15 ~1998.6.30	운영·내무
6	의 원	효문동	이병우	1942. 2. 8	1997.7.15 ~1998.6.30	내무위원장
7	의 원	양정동	진한걸	1953.11.15	1997.7.15 ~1998.6.30	도시경제 (간사)·운영
8	의 원	염포동	조승수	1963. 1.22	1998.3.2 ~1998.6.30	환경수도 (간사)·운영

※ 초대 울산광역시의회의원 겸직

초대의원 사진

□ 의장단

강 동 동(면)



의장 김 성 보

송 정 동



부의장 윤 두 환

□ 의 원

제10선거구



이 상 원

농 소 동(읍)



한 성 두

진 장 동



정 석 수

효 문 동



이 병 우

양 정 동



진 한 결

염 포 동



조 승 수

부 록

제2대의원 명단

연번	직 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의 장	송정동	윤두환	1955. 3. 5	1998.7.1 ~2000.2.21	전반기
2	”	농소3동	박춘환	1952. 1.11	1998.7.1 ~2002.6.30	전반기 부의장 및 의장(보궐)
3	”	양정동	진한걸	1953.11.15	1998.7.1 ~2002.6.30	전반기 부의장(보궐) 및 후반기 의장
4	부의장	강동동	박광식	1955.11.15	1998.7.1 ~2002.6.30	
5	의 원	농소1동	김수현	1957.11.15	1998.7.1 ~2002.6.30	전반기 운영위원장
6	”	농소2동	강혁진	1961.10. 1	1998.7.1 ~2002.6.30	
7	”	효문동	류재건	1961. 2. 5	1998.7.1 ~2002.6.30	
8	”	송정동	김진영	1964.10.11	2000.6.8 ~2002.6.30	보궐선거 당선
9	”	염포동	윤종오	1963. 8.14	1998.7.1 ~2002.6.30	후반기 운영위원장

제2대의원 사진

□ 의장단

송 정 동



의장 윤 두 환

농 소 3 동



의장 박 춘 환

양 정 동



의장 진 한 걸

강 동 동



부의장 박 광 식

□ 의 원

농 소 1 동



김 수 현

농 소 2 동



강 혁 진

효 문 동



류 재 건

송 정 동



김 진 영

염 포 동



윤 중 오

부 록

제3대의원 명단

연번	직 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의 장	송정동	김진영	1964.10.11	2002.7.1 ~2006.6.30	전반기 의장
2	"	염포동	하인규	1959. 9.17	2002.7.1 ~2006.6.30	후반기 의장
3	부의장	농소2동	김재근	1958. 9.11	2002.7.1 ~2006.6.30	전반기 부의장
4	"	농소1동	이재경	1956. 4.25	2002.7.1 ~2006.6.30	후반기 부의장
5	의원	농소3동	김대영	1960. 2. 2	2002.7.1 ~2006.4.10	후반기 운영위원장
6	"	강동동	윤임지	1952.10.15	2002.7.1 ~2006.6.30	
7	"	효문동	류재건	1961. 2. 5	2002.7.1 ~2006.6.30	
8	"	양정동	류인목	1961.12.30	2002.7.1 ~2006.6.30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3대의원 사진

□ 의장단

송 정 동



의장 김 진 영

염 포 동



의장 하 인 규

농 소 2 동



부의장 김 재 근

농 소 1 동



부의장 이 재 경

□ 의 원

농 소 3 동



김 대 영

강 동 동



윤 임 지

효 문 동



류 재 권

양 정 동



류 인 목

부 록

북구지역 전직의원 명단 ('97.7.15 이전)

연 번	직 위	선거구	성 명	생년 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의원	울산시제 10선거구	이상원	1941. 8.29	1995.7.1 ~1997.7.14	제5대 경남도의회의원 운영·내무위원
2	의장	울주군 농소읍	한성두	1941. 3.31	1991.4.15 ~1997.7.14	초대 울산군의회의원 통합·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울주군의회의장 통합시의회 부의장
3	의원	울주군 강동면	김성보	1937. 4.4	1991.4.15 ~1997.7.14	초대 울산군의회의원 통합·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환경수도위원
4	"	중 구 송정동	윤두환	1955. 3.5	1991.4.15 ~1997.7.14	초대 울산시의회의원 통합·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도시경제위간사·교육사회위원
5	"	중 구 진장동	김두현	1936. 4.15	1991.4.15 ~1995.6.30	초대 울산시의회의원 도시경제위원
6	"	중 구 효문동	한기찬	1938. 4.3	1991.4.15 ~1995.6.30	초대 울산시의회의원 건설위원
7	운 영 위원장	중 구 양정동	류재락	1945. 8.15	1991.4.15 ~1995.6.30	초대 울산시의회의원 운영위원장
8	의원	중 구 염포동	김춘길	1942. 10.10	1991.4.15 ~1995.6.30	초대 울산시의회의원 내무위원
9	"	중 구 진장동	정석수	1937. 4.15	1995.7.1 ~1997.7.14	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운영·건설위원
10	내 무 위원장	중 구 효문동	이병우	1942. 2. 8	1995.7.1 ~1997.7.14	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내무위원장
11	의 원	중 구 양정동	진한걸	1953. 11.15	1995.7.1 ~1997.7.14	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도시경제위간사·운영위원
12	"	중 구 염포동	조승수	1963. 1.22	1995.7.1 ~1997.7.14	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환경수도위간사·운영위원

역대 구청장 명단

연 번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직무대행	황 성 환	1948. 2.29	1997.7.15 ~1998.6.30	
2	민선초대	조 승 수	1963. 1.22	1998.7.1 ~2002.6.30	
3	민선제2대	이 상 범	1957. 4.15	2002.7.1 ~2006.5.24	
4	민선제3대	강 석 구	1960. 9.18	2006.7.1 ~ 현 재	

역대 사무(국)과장 명단

연번	직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비 고
1	사무 국장	지 방 방 서 기 관	이종영	1939. 9.27	1997.7.15 ~1998.9.30	1998.10.1 구조조정으로 직제개편
2	사무 과장	지방행정 사 무 관	백용한	1946.12.30	1998.10.1 ~2001.1.15	"
3	"	"	최종식	1952.10.20	2001.1.16 ~2004.3.5	
4	"	"	송태호	1955. 1.10	2004.3.6 ~2006.1.11	
5	"	"	이상현	1955. 2. 6	2006.1.12 ~2007.7.26	
6	"	"	홍장희	1956. 7.22	2007.7.27 ~ 현재	

역대 전문위원 명단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비고
1	전문위원	지방행정 사 무 관	백용한	1946.12.30	1997.7.15 ~1998.9.30	
2	"	"	이차호	1960.10.26	1998.10.1 ~1999.9.30	
3	"	"	성낙화	1952. 5. 5	1999.10.1 ~2001.1.15	
4	"	"	김찬수	1955. 9.28	2001.1.16 ~2003.1.27	
5	"	"	이상찬	1971.12.25	2003.1.28 ~2006.1.8	
6	"	"	박민수	1957. 4.27	2006.1.12 ~2008.7.20	
7	"	"	윤규태	1959. 5.10	2008.7.21 ~ 현재	

議政白書 제6집

제4대 전반기

印刷: 2008年 12月 日
發行: 2008年 12月 日
發行處: 蔚山廣域市北區議會
 ☎683-707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1010
 (연암동 1004-1)

編輯處: 蔚山廣域市北區議會事務課
TEL: 052-289-7160
FAX: 052-219-7549
印刷社: 인쇄마을/TEL: 052-227-3040
